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 분석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보고서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 분석

김혜경·이진국·도중진·차종진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 분석" 연구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0월

연구진

연구기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혜경 (교수, 계명대학교)

공동연구원 : 이진국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원 : 도중진 (교수, 충남대학교)

공동연구원 : 차종진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요약문

- 연구기간 2022년 04월 ~ 2022년 10월
- 핵 A 단 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기업과실치사죄, 작업장 과실치사죄
- 연구과제명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 분석

1. 연구의 개요

우리 사회는 이미 2014년 세월호 사건,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 전소 사망사건,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기업에 의한 다중인명사상의 사회적 참사 및 산업재해, 기업의 비윤리적 활동을 통한 이익창출 등 그 피해가 막대한 사 건들을 겪어오면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사 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기업에 의한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목전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건으 로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시행한 지 얼마 지나지 않 은 시점에서 i) 3명이 사망한 양주 채석장 붕괴사건, ii) 2명이 추락사한 성 남 판교 신축건물 승강기 설치 사건. iii)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입은 여수 공장 폭발사건, iv) 16명의 급성중독자가 발생한 창원 에어컨 부품 제조 업체 사건, v) 1명의 노동자가 추락사한 동해공장 사건, vi) 1명의 굴착기 기 사가 사망한 제주 소재 대학교 신축 공사장 사건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여부에 국민의 귀추가 쏠리는 있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초 기에 있고, 실효적인 법적용이 정착되지 않은 과도기적 상황에서 중대재해처 벌법의 현장에의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입법례와 적용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 적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중대재해범죄와 관 련한 선진 입법례와 사례, 특히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의 처벌사례를 면밀 한 비교·분석하여 향후 중대범죄처벌법 적용에 있어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의 대상으로 영국, 독일, 캐나다 및 호주를 선정하였고, 각 국의 중대재해발생 현황 및 법적조치 현황, 중대재해처벌법제 현황, 중대재해 관련 판례를 선정하여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비교 분석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각국의 처벌 방식에 관한 개괄적 비교

먼저 영국은 우선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대법원판결은 없다. 영국의 형사사법체계상 1심 Crown Court에서 유죄인정(Guilty Plea)를 하게 되면, 유죄인정협상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 없이 양형만 고려하게 되므로 항소 자체가 거의 없다.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또는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있어서, 항소심 자체도 거의 없고, 1심 판결이 거의 95% 이상이라고 파악된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2016년 2월 1일부터 최종 선고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살인 및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였다. 기업범죄에 대하여 '상한 없는 벌금'을 입법화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양형위원회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영국은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하여 입법을

통해 강한 통제와 처벌 의지를 표명하였지만, 실제 이러한 입법의지가 관철되고 있는지에 대하여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독일의 경우 전형적인 대륙법계 국가로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처벌은 개인의 처벌과 동일한 형법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 법에 따른 법적용과정과 독일의 법제(특히 형법)에 따라 법적용 과정이 모두 '기업의 배후에 있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책임귀속'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수렴된다.

한편 캐나다와 호주는 전형적인 영미법계 법제를 기초로 하면서, 영국과 동일하게 동일성 이론을 취하면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법인처벌의 법률제정 또는 개정에 이론적 제약은 없다. 그러나 캐나다는 산업재해사건을 포함하여 기업처벌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1992년 5월 발생하여 26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건'으로 큰 전환점을 맞게된다. 1997년 발표된 캐나다 정부의 공개조사 보고서에서는 부실한 작업장 관리가 위험한 작업환경의 원인이었고,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조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후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2004년 3월 31일 'Westray Bill'이라불리우는 'Bill C-45'를 통하여 개정된 형법 제21조, 제22.2조가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호주의 경우에는 '작업장 과실치사' 규정의 도입 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개별법률을 통하여 규율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는 주 형법에서, 퀀즐랜드 주 (Queensland, QLD), 빅토리아 주(Vicoria, VIC),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 NT)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로 발생하는 사망사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연방차원의 통일적 대응을 위하여 각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장 산업치사죄'를 신설 내지는 개정하는 입법이 최근들어 이뤄지고 있다.

2)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입법례

영국은 중대재해의 발생시 기업과 개인의 처벌을 구분하며, 기업과 개인에 적용되는 근거법률 및 적용법조 또한 서로 다르다. 우선 기업에 대하여는 기 업과실치사법 제1조에 해당하는 단체(organisation)가 제2조제1항에 해당하 는 관련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동법 제1조에 따라 기업은 활동이 관리 또는 조직되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 고. 조직이 사망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관련 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면 상한 없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기업은 1974년 산 업보건안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산업보건안전법 제2조제1항은 모든 고용주 (기업)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모든 고용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매우 광범위하고 넓은 보통법상의 안전주의의무위 반으로서, 손해배상이 될 만한 것은 모두 동법상 감독관에 의한 조사 및 형사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업처벌과 별개로 개인은 1974년 산업보건안전 법 제3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동 조는 "조직법인에 의하여 범해진 관련 법령 조항에 따른 범죄가 그 단체의 이사,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유사한 임원, 또 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 자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저질러졌게 나 또는 그 책임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개 인도 그 범죄로 유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이사에 대한 형사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보통법(Common Law)상 중과실치사죄(gross negligence manslaughter)가 성립할 수 있는 바, 이는 개인의 부작위를 포 함한 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기업 이 유죄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형벌감면의 혜택을 부과할 뿐만 아 니라, 개인인 이사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거나 기소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진다.

독일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의 경우 그에 대하여 특별하게 적용되는 법률은 없고 단지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뿐이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몇몇의 형사처벌규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 사망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은 없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 우리 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독립적인 법률도 없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 사 망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는 오로지 형법상 과실치사죄를 포섭·적용하는 길 뿐이다. 중대산업재해의 경 우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 법에 따른 법적용 과정과 독일의 법제 (특히 형법)에 따른 법적용 과정이 모두 '기업의 배후에 있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책임귀속'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수렴된다. 독일에서 산재로 인하여 사망 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독일 형법상 과실치사죄(제222조)나 과실 치상죄(제229조)가 적용된다. 즉,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 즉,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사 사망이나 상해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형법상 과실치사죄 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뿐이다. 이 경우 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며,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 금형이다.

캐나다 산업보건안전법상으로는 산안법위반행위인 산안법상의 개별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최대 100,000달러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유형이 나아가 기업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부과된다. 행위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자유형이나, 2,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 기업에 대하여 100,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기한 범죄보다 중한 범죄인 경우에는 상한 없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캐나다 형법제22.1조와 제22.2조는 책임귀속의 주체를 '조직(organisation)'으로 정하고 있다. 제22.1조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조직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과실행위와 감독의무 해태가 존재한다면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제22.2조는 과실책임이 아닌 행위자가 고의로 행위한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때에 행위자는 '고위 임원

(senior officer)'이며, 적어도 부수적으로라도 조직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고위 임원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조직의 이익을 위한 의사로 범죄의 당사자가 된 경우 기업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217.1조에 의하여, 작업자 등에 대한 생명·신체보호의무 부과 조항으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작업자가 사상되는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상죄 (제219조, 제222조)로 의율된다.

호주의 경우 최근의 작업장 과실치사죄의 도입에 따라 빅토리아주, 퀸즈랜드주, 노던준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신설규정되었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입법안이 국회에제출되어 논의중에 있다. 타즈메니아주에서는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않다. 최근 도입된 작업장 과실치사죄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에 대하여 빅토리아주에서는 25년, 퀸즈랜드주에서는 20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20년, 수도준주에서는 20년, 노던준주에서는 5년 이하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노던준주에서는 3십만 호주달러 또는 6십만주달러의 벌금,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는 5백만 호주달러, 수조준주에서는 3십만 호주달러의 벌금형도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하여는 빅토리아주 약 천팔백만, 퀸즈랜드 천삼백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 천만, 수도준주백육십만, 노던준주 삼백만 호주달러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3) 각국의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평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사례 자체가 매우 적은 편이고, 그 형량 역시 상한없는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무색하리만큼 낮은 편이다. 이러한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면, 우선 기업 기소로 인한 경영진 개인의 면책이 다수 사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대형사건에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믈 고 중소 또는 영세기업의 근로자 1-2인의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판결이 대부 분이다. 영국의 기업과실치사죄 적용에 있어서, i) 기업 기소로 인한 경영진 개인의 면책이 다수 사례에서 인정되었다는 점, ii) 기업과실치사법이 대형 산재나 다수인명피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함을 제정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들은 매우 소규모이거나 중소기업에서의 단일 사망사건이 대부분이었다는 점, iii) 적용사례 자체가 매우 적다는 점, iv) 벌금액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현저히 적게 선고 된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된다.

독일의 경우에는 i)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과실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형사 책임의 소재가 기업의 대리권을 가진 기관에게도 인정되고, ii) 예견가능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것만으로 예견가능성의 정황적 의미를 가진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iii) 근로자 사망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로합법적 대체행위이론을 무죄변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법원은 인과관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항상 구체적인 결과(konkreter Erfolg)와 실제 사건(wirkliche Geschehen)간에 인과적 연결고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판시하며, 당해 사고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사망의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합법적 대체행위를 이유로 의무위반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설시하였고, iv) 양형에 관하여 독일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자유형을 선고하는 예도 있지만 피고인에게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004년 캐나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Westray Bill' 제정 이후 10여년 간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5개의 기업과 12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10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i) 경찰과 검찰 내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을 위한 전문적인 수사팀이 부족하다는 점, ii) 경찰, 연방검찰, 주의 안전보건 감독관들은 산재 사망과 중대재해의 후과와 형사처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iii) 검찰이 중대재해 사건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 iv) 'Westray Bill'의 적용에 대한 캐나다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호주의 각주가 작업장 안전과실치죄의 도입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은 산 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안전의무 준수 위반죄이다. 동죄의 카테고리 1에서는 중과실로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카테고리 2에는 사망, 상해 및 질병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적용된다. 작업장 과실치사죄의 경우 위의 규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법인에 대하여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보건 안전의무 준수 위반죄 중 카테고리 1이 적용된다고 한다. 호주의 작업장과실치사죄는 단체 또는 개인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유죄인정의 요 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과실행위가 사망의 결과의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시적인 수준에서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되면 족하다라고 해 석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 사례에서 의무위반행위와 사망자의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쟁점이 된 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와 달리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사전유죄인정이 있는 경우 이것이 인정되 고, 쟁점화 되지 않는 것이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호주의 중대재해사건에서 요구되는 의무위반은 대부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의무 위반 이 문제되고, 특히 피고인들이 '작업장에 특유한 위험 평가(SSRA)'를 적절히 실행하였는지, 또한 각 회사의 '안전작업방법설명서(SWMS)'를 준수하였는지 도 의무위반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호주 법원은 형벌을 양 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나타난 법익침해의 중대성, 형벌에 의한 일반적·개별 적 범죄억제기능, 범죄자의 전력, 양심의 가책 및 기타 개인적 사정등 을 고 려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호주 법원은 중대재해 관련 사건에서 비교적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개인에 대하여 최소 18개월 복역을 조건으로 하는 5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고, 10개월의 자유형에 20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법인에 대하여는 노동자 사 망사건에서 소기업의 존재자체를 위협할 수 있던 상황에서 약 26억원의 벌금 형이 선고된 바 있다.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에 대하여 10억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3. 연구 활용방안

본 연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초기에 있을 법리적 해석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선진국의 입법례와 판결례를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시사점이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 참고가 되기를 기대한다.

첫째, 우리나라 법제는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양벌규정을 통해서만 기업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목적은 기업이 아닌 기본적으로 기업의 임원이 되고, 임원의 처벌을 근거로 하여 양벌규정에 의한 기업처벌을 하는 방식이 되므로 영미법상 기업과실치사법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국 법제 또는 판결내용의 차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기업 자체의 책임과 기업윤리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보인다.

둘째, 영국의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인과성 입증의 어려움이 오히려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 법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요구하는 의무규정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이 결과발생의 귀속을 부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와 같은 의무이행은 그 자체로 중대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규정을 정치하게 정비하고기업의 준수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회피또는 인과성 판단의 부정적 요인으로서 해당 의무규정들이 작용할 것이지 여부는 매우 정치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 분석

셋째, 현대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사전적 안전장치의 요구와 함께 국 가의 강한 개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위험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 는 듯 보이는 개념은 형법을 매개로 하여 안전을 위한 국가의 강한 조치가 예 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안전형법이라는 용어는 예방형법이자 상징형법을 의미하게 된다. 예방형법은 새로이 창출되는 법익으로서 불명확하고 보편적 인 법익의 보호와 형법 개입의 전치화를 통한 상징형법적 측면을 드러내게 된 다. 이는 형법이 위험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보편적 법익이 형사정책에 있어 서 중심사상으로서 대두되었고. 예방지향적 사고가 지배하는 법익론의 변화 를 보여주는 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여러 가지 측 면에서 안전형법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즉 행위결과 그 자체에 대한 처벌 로서 형벌의 효과보다는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징적인 형법으로서의 특징 을 나타낸다. 그러나 안전이 국가의 공공사업의 영역에서 사회구성원들에게 매우 추상적인 "안전권"을 마치 기본권과 같은 형태의 권리로 양산해내고. 이 를 목적으로 하는 처벌규정을 보편화한다면 국가개입이 형벌의 형태로서 될 수 없는 영역을 국가형벌권의 확대를 통해 넓힘으로써 과도한 개입의 위험을 남겨 놓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혜경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연구위원 송안미
 - **☎** 052) 703. 0827
 - E-mail: kmj1111@kosha.or.kr

Ι.	서론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표	5
3.	연구의 방법	7
Ι.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1	1
1.	영 국1	1
	1) 개관 ······· 1	1
	2) 중대재해 발생 현황1	
	(1) 최근 30년간 현황	
	(2) 지난 5년간(2016/17-2020/21) 산업별 중대재해1	7
	가. 절대적 수치로서의 산업별 사망자수	7
	나. 산업별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수1	9
	(3) 2020/21년도 중대재해 통계분석 2	20
	가. 개관2	20
	나. 부문별 사망자 수	21

(4) 사망률 높은 5대 산업부문의 재해 통계	23
3)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제	25
(1)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영국 법제의 차이	25
(2) 기업과실치사법 제정전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제정과정	26
가. Southall 철도사고와 Lyme Bay canoeing 재해 ··········	26
나. 산업보건안전법상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제정배경	28
(3) 기업과실치사법상의 주요 내용	30
가. 행위주체로서 기업의 의미	30
나. 관련주의의무	31
4) 중대재해 처벌 관련 사례	32
(1)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적용 규정	32
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32
나.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	33
가) 기업에 적용되는 위반죄	33
나) 개인에 적용되는 위반죄	34
다. 보통법(Common Law)상 중과실치사죄(gross negligend	e
manslaughter) ······	34
(1)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이후 10년간 적용 사건	37
가. 최초 적용된 2011년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시	l건 · · 37
가) 사실관계	37
나) 법원의 판단	39

	다) 양형	39
	나. 제정 이후 2017년까지 10년간 적용사건	40
	가) 개관	40
	나) 2012년 JMW Farms Limited 사건 ······	41
	다) 2012년 Lion Steel Equipment Ltd 사건	43
	라) 2013년 J Murray & Son Ltd 사건	46
	마) 2013년 Prince's Sporting Limited 사건: 공표명령 부과 시례·	·· 48
	바) 2014년 Mobile Sweepers (Reading) Ltd 사건	50
	사) 2014년 Cavendish Masonry Limited 사건 ·····	52
	아) 2014년 R. v PS & JE Ward Ltd 사건: 첫 번째 무죄판결 사례·	. 53
	자) 2014년 R V MNS Mining Limited 사건	54
	차) 그 외에 2014년 기업과실치사법 적용 사건	55
	카) 2015년 CAV Aerospace Ltd 사건: 자회사 부지 내에서 발	생한
	사건에 대한 모회사 처벌사례	56
	타) 2016년 Monavon Construction Ltd 사건: 2015 양형기준	최초
	적용 사례	60
	파) 2017년 Koseoglu Metal works Ltd 사건 : 하나의 사건으로	리 두
	기업이 처벌된 사례	61
(3)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후 10년간 사건의 분석	64
	가.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 결과	64
	나. 이사 처벌의 실태와 영국 내의 평가	65

(1)	최근 사례 분석	. 67
(¬)		
	가. 2017년 Grenfell Tower 화재사건: 대형참사임에도 기소를 못	
	있는 사례 ······	
	가) 사실관계	· 67
	나) 조사 경과	68
	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함의	68
	나. 2021년 R v Wood Limited Treatment 사례: 항소심 무죄판결 사례 ·	69
	가) 사실관계	69
	나) 항소심 재판의 쟁점	. 70
	다) 항소심 재판결과	.71
	다. 2021년 W H Malcolm Limited 시건: 가장 고액의 벌금형 선고 시례 ·	73
	가) 사실관계	. 73
	나) 재판결과	. 73
	다) 양형고려요소	. 74
(5)	영국 내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평가	. 75
	가. 주요 사건의 기업과실치사법 적용 결과	. 75
	나. 기업과실치사법 적용 이후 사회적 비판	. 78
	다. 사회적 비판의 핵심	80
	가) 기업 기소로 인한 경영진 개인의 면책	80
	나) 대형 사건에의 적용상 문제점	81
	다) 저조한 적용 사례	81

라) 현저히 낮은 벌금액	82
라. 법원의 양형재량에 관한 평가	85
2. 독일 ·····	87
1) 개관 ·····	87
2) 중대재해 발생 현황	····· 87
(1) 독일의 직업활동 인구수	87
(2) 연령대별 직업활동자 수	88
(3)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건수	89
3) 중대재해 관련 법제	90
(1)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과 독일 법제의 차이	90
(2)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92
(3) 독일 형법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	95
4) 중대재해 처벌 관련 사례	100
(1) 기계조작과 근로자 사망(2009년)	100
가. 사실관계	100
나. 판결요지	101
가) 피고인 1의 과실치사 책임의 근거	101
나) 피고인 2의 과실치사 책임의 근거	104
다. 양형	106
(2)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건축사공 이후의 건물붕괴와 근로자 사망(2008	3년) · · 106

가. 사실관계	106
나. 판결요지	
가) 사고에 대한 일차적 책임: 건축주	107
나) 건축시행사의 책임	109
다) 제3자에 대한 거래안전의무의 위임	109
다. 양형	110
(3) 뒤머호수(Dümmersee) 아세틸렌 폭발사건(2004년)	111
가. 사실관계	111
나. 판결요지	112
가)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유무	112
나) 피고인의 의무위반	112
다) 의무의 위임과 감독에 대한 귀책	114
다. 양형	114
(4) 코헬 기차역(Banhof Kochen) 굴삭기 사고(2014년) ······	115
가. 사실관계	115
나. 판결요지	116
가) 의무위반	116
나) 피고인의 과실책임	117
다. 양형	117
(5) Ingbert시 우레탄폼(건축마감재) 폭발사건(2012년) ··········	118
가. 사실관계	118

나. 판결요지	···· 119
가) 피고인들의 사업주로서의 책임	···· 119
나)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 120
다) 피고인들의 과실	···· 122
다. 양형	
(6) 아헨(Aachen)시 콘크리트벽 붕괴사건(2010년) ······	···· 123
가. 사실관계	···· 123
나. 판결요지	···· 124
가) 대표이사의 지도소홀?	···· 124
나) 현장소장의 감독소홀?	···· 125
다. 양형	···· 126
(7) 호흡기보호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건(1996년)	··· 126
가. 사실관계	
나. 판결요지	···· 127
가) 피고인의 부작위	···· 127
나) 피고인의 형사책임	···· 127
다) 근로자의 독자적인 책임하에서 초래된 자기위태화?	···· 129
라) 의무위반	
마) 인과관계	···· 130
다. 양형	131
(8) Dillingen시 구조물 붕괴 사건(2015년) ······	···· 131

가. 사실관계	131
나. 판결요지	132
가) 피고인의 형사책임	132
나) 피고인의 의무위반	133
다) 인과관계	133
라) 과실	133
마) 사망한 근로자의 공동책임	134
다. 양형	134
(9) Alsdorf시 학교에서의 용해제 폭발 사건(1998년)	134
가. 사실관계	134
나. 판결요지	135
가) 교사의 형사책임	135
나) 교사의 (주의)의무위반	135
다) 과실	136
라) 인과관계	136
다. 양형	136
(10) Heidelberg시 건축마감재 폭발 사건(2011년) ··········	137
가. 사실관계	137
나. 판결요지	138
가)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138
나) 대표이사의 의무위반	138

다) 과실	139
라) 인과관계	139
다. 양형	139
3. 캐나다	139
1) 개관 ·····	139
2) 중대재해 발생 현황	141
(1)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건수	141
3)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제	144
(1)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캐나다 법제의 비교	144
(2) 캐나다 'Bill C-45'의 주요 내용	146
(3) 캐나다 형법 규정 등	147
가. 캐나다 형법 제22.1조	147
나. 캐나다 형법 제22.2조	148
다. 캐나다 형법 제217.1조	149
라. 제재수단	150
4) 중대재해 처벌 관련 사례	156
(1) Scrocrca사건(R. C. Scrocrca, 2010 QCCQ 8218) ··	156
가. 사건의 개요	156
나. 판례의 분석	159
다. 형량의 문제점	160

(2) Kazenelson사건(R. v. Kazenelson, 2015 ONSC 36): 기업이 아닌
관리자 개인에게 적용된 최초의 사례163
가. 사건의 개요163
나. 판례의 분석165
다. 형량의 문제점167
(3) Hoeyeck사건(R. v. Hoeyeck, 2019 NSSC 7):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169
가. 사건의 개요
나. 판례의 분석
다. 형량의 문제점176
(4) Transpavé사건(R. v. Transpavé, 2008 QCCQ 1598) : 퀘백주에서
형법 제217.1조 및 제22.1조를 근거로 기업을 처벌한 판례177
(5) Metron 건설회사사건(R. v. Metron Construction, 2013 ONCA 541)
: 건설회사(기업)을 처벌한 판례178
(6) R. v. Stave Lake Quarries Inc., 2016 BCJ No.2583 : 형법
제217.1조를 근거로 기업을 처벌한 사례179
(7) R. v. Fournier, 2016 QCCS 5456 :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8) R. v. Hritchuk, 2012 QCCS 4525 : 서비스 관리자인 개인을 처벌한
사례 ······ 181

	(9) R. v. Swartz, 2012 ONCJ 505 : 사례 (5)의 Metron건설회사 시	사장이자
	단독이사에 대한 경영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 181
	(10) R. v. Vadim Kazenelson, 2016 ONSC 25 : 사례 (5)의	항소심
	판결	···· 183
4.	. 호주	··· 189
	1) 개관 ·····	···· 189
	2) 중대재해 발생 현황	···· 189
	(1) 발생현황	···· 189
	(2) 법적조치 현황	
	3)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제	···· 192
	(1)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과 호주 법제의 차이	···· 192
	(2) '작업장 과실치사' 처벌 규정의 도입	···· 193
	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 194
	나.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 195
	다.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	···· 195
	라. 퀸즈랜드(Queensland) ······	···· 195
	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	···· 196
	바. 태즈매니아(Tasmania) ·····	
	사. 빅토리아(Victoria) ······	···· 196
	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	···· 196

(3) 호주 '작업장 과실치사' 죄의 주요 내용	198
가. 적용대상	198
가) 조직 또는 자영업자	198
나) 고위 책임자	198
다) 피고용인 및 자원봉사자	199
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199
다. 과실행위	200
라. 인과관계	200
마. 처벌	200
(4) 조사 및 법적 절차	203
4) 중대재해 처벌 관련 사례	203
(1) 지게차 하역 사망사건(2022)	203
가. 사실관계	203
나. 법원의 판단	203
다. 양형	205
(2) 자동차 재활용 사업장 지게차 충돌 사망사건(2020)	205
가. 사실관계	205
나. 법원의 판단	206
다. 양형	208
(3) 건설현장 크레인 전복 사망사건(2021)	209
가. 사실관계	209

나. 법원의 판단	····· 210
다. 양형	
(4) 태양광 발전시설 압사사건(2021)	212
가. 사실관계	
나. 법원의 판단	····· 213
다. 양형	215
(5) 도로공사장 그레이더(grader) 충돌 사망 사건(2016)	216
가. 사실관계	····· 216
나. 법원의 판단	217
다. 양형	····· 217
(6) 전력선 근접 작업 중 감전사 사건(2015)	····· 218
가. 사실관계	
나. 법원의 판단	····· 219
다. 양형	····· 219
(7) 지붕 태양광 판넬 설치 중 추락사건(2016)	····· 219
가. 사실관계	219
나. 법원의 판단	220
(8) 건설현장 추락으로 인한 중상해 사건(2015)	222
가. 사실관계	222
나. 법원의 판단	222
다. 양형	223

	(9) 컨베어벨트 압착으로 인한 중상해 사건(2007)	223
	가. 사실관계	
	나. 법원의 판단	224
	다. 양형	225
	(10) 철도건설 현장 폭발사고로 인한 중상해 사건(2021)	225
	가. 사실관계	225
	나. 법원의 판단	226
	5) 호주 중대재해 사례 처벌 사례 정리	227
гт	기기이 주민계의 위병 내게 비그 미 내내자	4 000
Ц.	. 각국의 중대재해 처벌 사례 비교 및 시사점	: Z33
	. 각국의 처벌 방식에 관한 개괄적 비교	
1.	. 각국의 처벌 방식에 관한 개괄적 비교 ···································	233
1.		······ 233 ····· 236
1.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입법례 비교	233 236
1.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입법례 비교 ···································	······ 233 ····· 236 ····· 238
1.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입법례 비교 ······ 1) 영국 ······ 2) 독일 ·····	233 236 238 243
1.	.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입법례 비교 ······ 1) 영국 ······ 2) 독일 ····· 3) 캐나다 ·····	233 236 236 238 243

1) 영국 ···································	260 261
Ⅴ. 결론: 국내 법제에의 시사점	269
1. 개관	269
2. 영국 내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평가	270
1) 주요 사건의 기업과실치사법 적용 결과	
3. 국내 법제에의 시사점	280

참고문헌	·· 287
3) 상징형법과 안전형법으로서의 중대재해처벌법	····· 283
2) 인과성 판단과 결과 귀속의 문제	281
1) 기업 처벌과 개인 처벌의 분리 문제	280

표 목차

〈丑	Ⅱ-1〉영국의 중대재해처벌 법제 요약	35
⟨丑	II-2〉독일의 연령그룹별 직업활동 인구수(2019년) ······	39
〈丑	II-3〉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건수(2011~2020) ································	90
⟨丑	Ⅱ-4〉독일의 중대재해처벌 법제	98
⟨丑	II-5> A-NWISP 보고서 : 캐나다의 산업재해 사망, Jemal, J.(2019, March 29	9).
	Lost Time Claims and Fatalities. (M. Bergen, Interviewer) · · 14	43
〈丑	Ⅱ-6〉캐나다의 중대재해처벌 법제1!	53
⟨丑	Ⅱ-7〉호주 각 주별 중대재해처벌 규정 현황19	97
⟨丑	Ⅱ-8〉호주의 중대재해처벌 법제20)1
〈丑	-1> 조사대상국의 중대재해처벌 법제 비교 ······	17

그림목차

[그림	-1]	영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십만인율 변화 추이(1998-2007)13
[그림	11-2]	Number of fatal injuries to workers by main industry group,
		2020/21p and annual average for 2016/17-2020/21p. ···· 17
[그림	11-3]	Rate of fatal injuries to workers by selected main industry
		group(rate per 100,000 workers), 2020/21p and annual average
		for 2016/17-2020/21p19
[그림	-4]	호주 중대재해 발생 추이190
[그림	II-5]	호주 연령별 중대재해 사망자 수(2020)190
[그림	II-6]	호주 작업유형별 사망자 수(2020)191
[그림	II-7]	호주 산업유형별 사망자 수(2020)191

Ⅰ. 서 론

I. 서론

1. 연구의 배경

한국사회는 이미 1990년대 후반에 기업사회(Corporate Society)로 진입하였다는 사회적 평가처럼,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수와 규모는 확장일로에 있다. 또한 기업의 자산규모와 사회적 활동내역을 보면 개인에 의한 그것보다사회적 파장이 커서 기업의 영향력의 사회적 파급은 비단 국내로 한정되지 않고 세계적으로도 중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의 경우 국가권력에 맞대응할 정도의 경제적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의 역할로 인하여 국가에 의한 통제가 현실적인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기업활동은 경제영역을 벗어나 다양한 사회적 파급력을 가지는 바, 그와 같은 기업에 의한 부정적 영향으로서 기업범죄는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다. 우리 사회는 이미 2014년 세월호 사건,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망사건,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기업에 의한 다중인명사상의사회적 참사 및 산업재해, 기업의 비윤리적 활동을 통한 이익창출 등 그 피해가 막대한 사건들을 겪어오면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미흡한 대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기업에 의한 인명사고 등을 예방하고 이를 처벌하기 위하여, 2020년 말까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중대재 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 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 등 5개 이상의 법률안이 중대재해에 대한 규제안으로 서 진통을 겪다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대안으로 국회를 통 과하여 2021년 1월 26일 공포되었고, 2022년 1월 27일 시행되어 현재 주요 사건들이 조사단계를 거쳐 기소에 이르렀다. 동법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인명사고가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보다 중요한 점은 예방과 교육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목전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건으로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시행한 지 얼마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i) 3명이 사망한 양주 채석장 붕괴사건, ii) 2명이 추락사한 성남 판교 신축건물 승강기 설치 사건, iii) 4명이 사망하고 4명이 상해를 입은 여수 공장 폭발사건, iv) 16명의 급성중독자가 발생한 창원 에어컨부품 제조업체 사건, v) 1명의 노동자가 추락사한 동해공장 사건, vi) 1명의굴착기 기사가 사망한 제주 소재 대학교 신축 공사장 사건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여부에 국민의 귀추가 쏠리는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시행된지 불과 한 달 사이에 42명의 노동자가 작업현장에서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적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첫 시행이라는 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과 사업주의 책임범위 등과 관련하여 특히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상황에서 노동 현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에의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의 입법례 와 적용례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 분석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우리 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이미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중대재해 예방과 처벌을 위한 법률들을 제정하여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들이 해당 법률의 시행전후 산재사망사고가 급격히 감소하였거나 또는 기업의 윤리적 책임의식이 고취되었는지 여부, 동법들의 적용결과 실제로 처벌의 수위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가 등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국가들의 중대재해 처벌 사례를 분석함은 우리 법제의 운용에도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2. 연구의 목표

이 연구는 중대재해처벌과 관련된 주요 국가의 법제 및 운영방식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제도 개선의 시사점 도출을 목적하고 있는바, 중대재해범죄와 관련한 선진 입법례를 발굴하고 이를 면밀한 비교·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주 요 내용으로 한다.

비교연구 대상국가는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등을 선정하여, 다양한 국가의 선진 입법례를 발굴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영미법계 국가들은 법인에 대하여 동일성이론을 취함으로써 법인처벌을 개인과 달리 평가하거나,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지 않음으로써 영국의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과 같이 독자적인 기업처벌법의 제정 및 적용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를 취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고, 다만 예외적으로행정형법 등을 통해 양벌규정을 둠으로써 법인에게 선임·감독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위반을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법인에 대한 특별한처벌 또는 규제의 가능성에 관하여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영미법계 국가들의 사례분석 및 적용법조의 분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한편 독일은 전형적인 대륙법계 법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우리 법제의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바, 독일에서의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방식 및 처벌례는 현행

법제하에서의 운용 방식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연구내용은 비교연구 대상국가의 중대재해처벌 관련 법제 및 운영방식에 대한 조사·분석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검토를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첫재, 중대재해처벌 법제의 구조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개별 법률 간의 관계 및 상호기능분담 구조의 분석이다. 둘째, 중대재해처벌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기준 - 중대재해처벌 법률의 적용대상, 의무내용 등 구성요건 분석 및 제재의 방식과 수준 조사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셋째, 해당국가의 고용현황 및 산업재해의 추이를 분석하고, 산업재해 규모에 비추어 중대재해의 처벌비율 및 해당 비율이 가지는 시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구체적 적용사례의 발굴 및 분석에 있다.

각 국별로 산업재해의 규모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를 처벌하는 수위나 규모 역시 상이하므로, 개별 사건별로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재판결과 및 양형의 고려사유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함으로써 사건별로 주요 사안들을 일관성있게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사실관계와 재판과정에 있어서 사실관계 중에서 특히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는 인과성 판단, 그리고 양형에 있어서 가중 또는 감경사유가 되는 요인들의 확인은 우리 법제의 운용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해외 주요 국가의 중대재해처벌 관련 선진 입법례와 적용례를 면밀히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실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중대재해 관련 선진 법제 도에서의 풍부한 적용사례를 발굴·분석하여 관련 법령과의 기능적 관계 및 상호역할 분담 등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기초하고 있으며, 각 국의 중대재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수집하고 선별하여 연구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특히 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되, 해당 국가의 최고법원의 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하급심 판결 중에서 특히 유의미한 판결들을 선별하고자 한다.

판결의 선정기준은 중대재해 관련 법제 적용의 표준적인 판례인 경우, 유죄 판결에 있어서 사실관계와 인과성 판단이 매우 명백히 드러나는 경우, 양형가 이드라인이나 양형기준이 있는 국가의 경우 해당 양형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형량의 가중 또는 감경한 사유들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 무죄판결에 있어서는 무죄를 선고하게 된 사실관계에서의 인과성 부인의 요소 및 법적 다툼의 쟁점 들이 제시된 경우 등을 우선하였다.

또한 통계분석 방법을 통하여 해당 국가에서 중대재해 발생 및 처벌의 현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통계들은 각 국가의 공식적인 산업보건안전청 및 법무부 발간 자료나 통계청이 발표한 공식통계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그 분석 역시 해당 국가 내에서의 설명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검토자의주관적 해석의 여지를 지양하고, 객관적으로 통계 자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가능한 경우 해당 국가에서 중대재해 관련 법제 및 적용에 대한 자국내 학제적 비판점이나 여론 등에 관하여 조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를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은 많은 진통 속에서 제정되었고, 시행 후에도 여전히 비판점이 남아 있다. 그리고 학계 및 산업현장 등에서 동법의 적용 결과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해당 국가들의 법 제정 및 시행에서도 대동소이한 면이 드러난다. 따라서 그와 같은 해당 국가 내에서의 평가 및 비판점들을 분석함은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Ⅱ.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비교법적 고찰

Ⅱ.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1. 영국

1) 개관

영국은 EU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은 근로자 사망률을 보임으로써, 산업재해 로부터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라고 평가된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 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을 제정하여 2008년 4월 6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기업이나 기타 조직의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적절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로써 법인도 사인과 마찬가지로 살인범죄를 성립시킴으로써, 전통적인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동일성이론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안전보건담당자나 경영진의 부주의와 범의가 범죄성립의 핵심요소였지만, 기업과실치사법으로는 기업의 과실만 증명되면 상한없는 벌금을 기업에 부과할 수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안전주의위반으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해당 법률의 제정으로 영국은 처벌의 이원화를 구축하여, 안전주의위반으로 인한 치사 또는 살인의 결과발생에 대하여, 개인의 처벌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반면 법인의 처벌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게 된다. 또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책임귀속을 위하여,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relevant duty of care)가 인정되어야 하는 바,

¹⁾ Venables Legal Resources, https://www.venables.co.uk/2021/04/07/the-uks-most-dangerous-industriesfor-accidents-in-the-workplace/ (방문일: 2022. 6. 3)

이는 위반행위가 일정한 상황 하에서 해당 조직에게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정도에 못미치는 정도일 것을 의미하며, 그 본질적 요소로서 조직내 경영진의 조직관리와 구성방식이 중대한 주의의무로 인정될 것을 요한다. 뿐만 아니라보건 및 안전의 전반적인 관리, 직원 선임 및 훈련, 작업 시스템의 구현 및 직원의 감독과 같은 광범위한 고려사항 등이 주의의무위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된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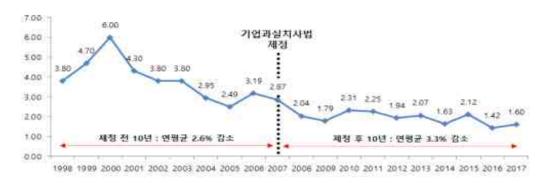
또한 양형위원회는 2016년 2월 1일부터 최종 선고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살인 및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였다. 동법이 시정명령(remedial orders),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publicity orders)을 제재 수단으로 하면서 기업에 대한 처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형벌로는 '상한 없는 벌금'을입법화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양형위원회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영국 양형위원회는 "건강 및 안전범죄, 기업과실치사 및 식품안전과 위생위반범죄 양형기준(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guidelines)"를 2014년 11월 12일에 제출하였고, 2015년 2월 18일까지 관련 상의를 종료한 이후에 2015년 11월에 최종 가이드라인을 출간하여, 2016년 2월 1일 이후에 선고된 모든기업과실치사법 위반범죄에 이를 적용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비해 산재 사망률이 1/30에 불과한 영국에서 이미 15년 전에 근로자 사망에 대하여 입법을 통해 강한 통제와 처벌의 의지를 표명하였 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 및 처벌에 있어서 그와 같은 입법의도가 명확히 반 영되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산재사망 사건 자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업에 대한 벌금부과로 인하여 파산하였거나 심각한 경영상의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²⁾ Corporate Manslaughter, Updated: 16 July 2018|Legal Guidance, Violent crime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corporate-manslaughter (방문일: 2022. 4. 13)

이와 관련하여 다음은 영국에서 매년 절대적 수치로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함과 동시에 인구10만명당 사망자가 3번째로 많은 직종인 건설산업 영역 의 기업과실치사법 적용 전후의 사고에 관한 통계이다.3)



[그림 II-1] 영국 건설산업 사고사망십만인율 변화 추이(1998-2007)

통계상으로는 동법 제정전 10년간의 연평균 감소율이 2.6%인 반면, 제정후에는 3.3%로 사망자 감소율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영국 보건안전청(HSE) 수석감독관은 산업재해 사고 대부분을 살인이 아닌산재의 영역으로 보고 실제로 기업살인법이 적용되는 비중은 전체의 5%도 채되지 않는다고 보면서, 만일 기업살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면 즉시 경찰의 수사권은 보건안전청으로 이관되고 산업보건안전법(HSWA)가 적용된다고 한바 있다.4》 또한 1974년 제정된 산업보건안전법에 의하여 어떠한 산업이든하도급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들은 안전의무의 주체로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도급에 의한 책임귀속의 모호성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구조이다.

나아가 위의 [그림 Ⅱ-1]에서 건설사업 사고사망에 대한 노동자 10만명당

³⁾ 최수영,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처벌법 향후 정책방향", 건설관리 제22권 제2호, 2021/4, 23면 인용.

⁴⁾ 시사저널, "영국 현지 취재: 기업살인법은 위혐의 외주화를 줄일 수 있다?... 팩트체크 5문5답", 시사저널 1580호, 2020/1/22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 View.html?idxno=194716 (방문일: 2022. 4. 16)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비율이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이전 10년간 연평균 2.6% 가 감소하였으나 제정 이후 10년 동안 연평균 3.3%로 약 0.7% 감소폭이 증가하였다는 점은 기업과실치사법의 제정에 의한 예방효과 또는 안전의무 이행 강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세에 있었던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또한 이하의 사례분석에서 살펴보겠지만, 제정 이후 10년간 대법원까지 상소가 된 사건은 전혀 없었으며, 대부분은 1심 사건이고 항소심도 많지 않다. 이는 제정 이후 2017년까지 10년간 기업과실치사법이 적용된 사건 자체가 25건에 불과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7년 이후 지난 5년간도 큰 변화 없이 대법원 상소사건은 찾아볼 수 없고, 대체로 1심에서 종결되고 있다.

이는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상반기 산업재해로 인한 치상이 58,670명으로 2020년 상반기보다 13.3%가 증가하고, 그 중에서 사고 재해자가 12.1%, 질병재해자가 19.6% 증가5)한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산업재해 수준 자체가 크게 차이가 있다. 또한 2021년 상반기만 노동자 10만명당 5.9명이 사망하였다는 점은, 영국이 노동자 10만명당 연간 0.5 즉, 상반기 약 0.25명 수준인 것을 감안한다면 산업재해사망이 영국의 23배에 이른다는 결과가 된다.

여기에서는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 적용사례와 관련하여 우선 제정 이후 10년간 적용된 사건들을 모두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내용과 함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후의 사건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최근의 사건들을 확인하고 양 자간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만 대법원 상소사건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1심이든 항소심이든 동법이 적용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영국 내학계 또는 사회적 판단이나 시각이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법제 또는 법원의 판결에 있어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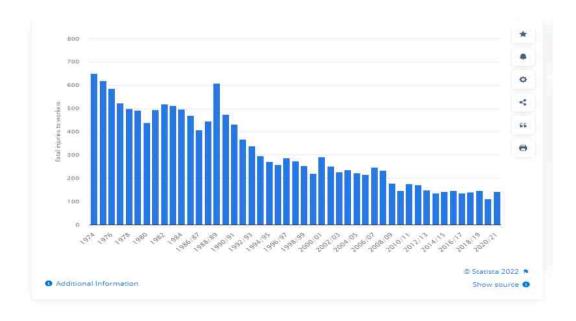
⁵⁾ 이와 같은 통계는 매일노동뉴스, "올해 상반기 산재사망 노동자 3.3% 늘었다", 2021/8/27,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638 (방문일: 2022. 4. 16)

2) 중대재해 발생 현황

(1) 최근 30년간 현황

2020/21년 영국에서 총 142명의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망하였으며, 이는 전년보다 31명 증가한 수치이다. 다만 2019/20년(111명)의 사망자 수는 다른 최근 해에 유의미하게 낮았다. 통계적 측면에서, 사망자 수는 최근 몇 년 동안 대략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6/17-2020/21년 5년 동안 직장에서 사망한 평균 연간 노동자 수는 136명이다.

1974년 이후 최근 30년간 중대재해(Fatal Injuries) 즉,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현황은 다소 감소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산업보건안전청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현황 통계이다. 6) 1974년부터 1985년까지는 연간 피해자 수를, 그 이후 86년도부터는 조사시점을 달리하여 86년도 하반기와 87년도 상반기를 한 구간으로 하여 피해자 수를 조사하여 왔다.



⁶⁾ 영국 통계청, Number of fatal injuries to workers in Great Britain from 1974 to 2021,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92272/fatal-injuries-at-work-great-brit ain-by-employment-y-on-y/ (방문일: 2022/6/2)

연간 피해규모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7)

년도	피해규모	년도	피해규모	년도	피해규모
1974	651	1990/91	433	2006/07	247
1975	620	1991/92	368	2007/08	233
1976	586	1992/93	339	2008/09	179
1977	524	1993/94	296	2009/10	147
1978	499	1994/95	272	2010/11	175
1979	492	1995/96	258	2011/12	171
1980	440	1996/97	287	2012/13	150
1981	495	1997/98	274	2013/14	136
1982	520	1998/99	253	2014/15	142
1983	513	1999/2000	220	2015/16	147
1984	498	2000/01	292	2016/17	135
1985	471	2001/02	251	2017/18	141
1986/87	407	2002/03	227	2018/19	147
1987/88	445	2003/04	236	2019/20	111
1988/89	609	2004/05	223	2020/21	142
1989/90	475	2005/06	217		

이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까지는 500명을 상회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나 그 이후 1991년 까지 항상적으로 400명 대를 유지하면서 1980년대 평균적으로 매년 486명 정도의 사망자를 내었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러서는 사망자 수가 200명대로 감소세를 유지하여, 1990년대에는 평균적으로 매년 285명 정도의 사망자를 냄으로써 평균 100명 정도의 사망자 감소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대에도 지속되었으며 2000/01년부터 2009/10년까지 10년간 매년 평균 약 2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함으로써 1990년대보다 매년 평균 60명 정도 사망자가 줄어들었다.

⁷⁾ 다음은 위 통계청의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그와 같은 추세는 2010년대는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2010년대 10년간 사망자는 200명을 넘어선 해가 없으며, 매년 평균 145명의 사망자가 발생함 으로써 2000년대 보다 평균적으로 다시 60명 정도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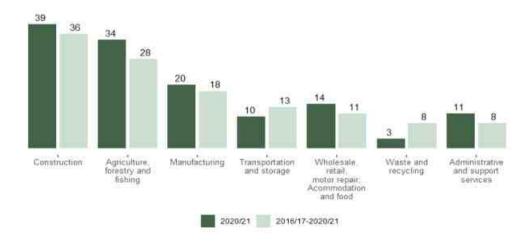
즉, 1970년대 500명이 넘는 산업재해 사망자수가 1980년대에는 480명 선을 유지하다가 2010년대에는 평균 145명 선으로, 지난 40여년간 1/3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주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2) 지난 5년간(2016/17-2020/21) 산업별 중대재해

가. 절대적 수치로서의 산업별 사망자수

2016/17년도부터 2020/21년도 5년동안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평균 연간 노동자 수는 136명이다.

사망률에 대하여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절대적인 수치를 살펴 보는 것으로, 다음은 5년간의 각 산업별 사망자수의 변화추이이다.8)



[그림 II-2] Number of fatal injuries to workers by main industry group, 2020/21p and annual average for 2016/17-2020/21p.

⁸⁾ 영국산업보건안전청, Workplace fatal injuries in Great Britain, 2021, 2021/12/16, 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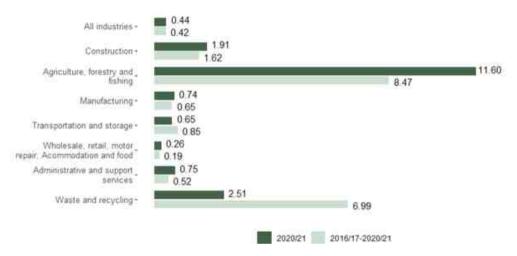
산업별로는 건설업과 농림수산업의 합계가 전체 사망자수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지난 5년간 평균 전체 사망자수의 26%에이르고 있다.

이를 2020/21년와 비교해보면, 2020/21년도 주요 산업부문의 사망자는 지난 5년간 평균보다 높다. 구체적으로 건설업에서는 39명으로 2019/20년 42명 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지난 5년간 평균인 36명보다는 3명 증가하였다. 농림수산업에서는 3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9/20년의 19명 사망자수보다 13명이 증가한 것이며, 지난 5년간 평균인 28명보다도 높은 수치이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20명의 사망자를 기록하였으며, 2019/20년의 총사망자 13명보다 17명이 증가한 것이며, 지난 5년간 평균 18명보다도 2명이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첫 번째 방법상 중요한 문제는 각 부문에 의해 고용된 노동력의 상대적 크기를 무시한다는 점에 있다.

나. 산업별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수

두 번째 방법은 고용된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각 부문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 두 번째 맥락에서 데이터를 볼 때, 산업의 규모가 고려 되고 연간 변동의 영향이 최소화되며 데이터가 더욱 안정되게 된다.



[그림 II-3] Rate of fatal injuries to workers by selected main industry group(rate per 100,000 workers), 2020/21p and annual average for 2016/17-2020/21p.

모든 영국 산업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9/20년 사망률은 근로자 10만 명당 0.34명이었고, 5년 평균 수치는 0.42명이었다.⁹⁾

농림수산업과 폐기물재활용 분야에서 근로자의 치명률은 모든 산업 평균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농림수산업은 약 20배, 폐기물재활용 등은 약 17배 높게 나타났다.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이동 중인 차량에 치이는 사고였으며, 이 분야의 전체 치명적 부상의 28%를 차지했다. 이 분야의 비치명적 부상의 경우, 2019/20년에 고용주가

⁹⁾ 영국 산업보건안전청, Fatal injuries reportable under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RIDDOR) 통계 참조.

RIDDOR에 보고한 832건의 부상이 있었으며, 미끄러짐, 넘어짐은 전체 비치명적 부상의 22%를 차지하였다. 10) 종종 간과되는 또 다른 사실은 가장 위험한 직업들 중 일부는 보수가 가장 낮은 직업들 중 일부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폐기물 수집가들은 영국에서 가장 높은 사망률(근로자 100,000명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20,000파운드를 조금 넘는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또 다른 산업인 농업, 임업, 어업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건설분야 치명률은 전체 산업 평균의 약 4배이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적 수치는 항상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다. 제조업과 운송 및 저장업종의 치명률은 전체 산업 평균의 약 1.5배와 2배 정도이다. 지난 5년간 도매, 소매, 자동차수리, 숙박 및 음시 서비스 부문의 치명률은 약 8%를 차지하지만, 비율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편에 속한다.

(3) 2020/21년도 중대재해 통계분석

가. 개관

영국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과 그 영향에 대한 정부 대응이 2020/21년 영국 노동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많은 사업체들이 운영을 중단하거나 그들의 근무 관행을 바꾼 반면, 정부의 개입은 노동자들의 감원을 허용했다. Coronavirus Job Retention Scheme(CJRS)의 추정치에 따르면 1년 동안 다양한 시기에 CJRS가 지원하는 일자리는 1,150만 개다. 이는 20202년에 현저한 감소를 보여주는 주간 총 실제 근로 시간의 통계에 반영된다. 따라서 2020/21년도의 근로자 사망자 수의 함의는 그 해석 자체가 매우 까다롭게된다.

¹⁰⁾ Venables Legal Resources, The UK's most dangerous industries for accidents in the workplace

https://www.venables.co.uk/2021/04/07/the-uks-most-dangerous-industries-for-accid ents-in-the-workplace/ (방문일: 2022/6/3)

보건안전청(HSE)의 2019/20년도 작업장 사망 및 업무 관련 부상 연례 검토에 따르면, '상해, 질병 및 위험 발생 보고 규정(RIDDOR)'에 따라 보고된 작업장 사망자는 111명이고, 치명적이지 않은 부상자는 65,427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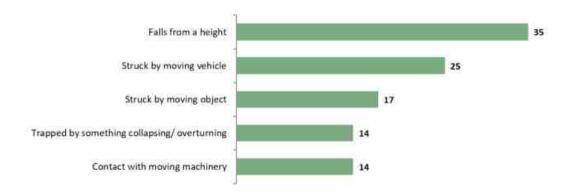
표면적으로는 111명의 사망자가 전년도 수치인 149명보다 유의미하게 감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COVID-19 제한이 업무상 사고 및 직장 사망자의 수감소에 주요 기여 요인이라고 한다.

전체 근로자 치명상 수치를 살펴보면,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추락사로 영국 전체 직장 사망자의 26%인 29명을 차지하였다.

나. 부문별 사망자 수

우선 주요 사망원인을 살펴보면 추락사가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차량에의 접촉사고가 25명이었다. 다음은 주요 사망원인 통계표이다. 2016/17-2020/21년 까지 최근 5년동안 전체 사망원인 중 77%가 다음 표의 5가지 사고유형으로 드러났다. 5년간 평균적으로 추락사가 가장 많았으며, 2020/21년에는 전체 사망자 중 약 25%에 이르는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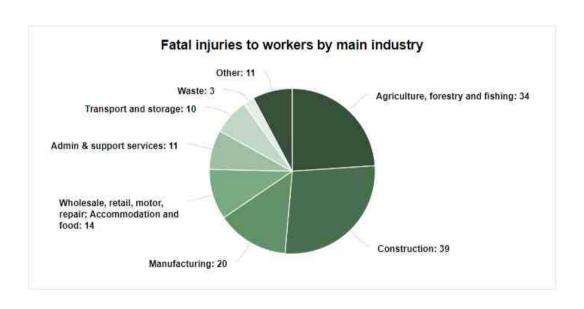
Main kinds of fatal accidents for workers (2020/21)



다음은 2020/21년도 산업분야별 사망자수이다.11)

5년 평균과 마찬가지로 절대적 수치에 있어서는 건설업이 가장 많은 39명에 이르러서, 전체 사망자의 약 2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림수산업이 34명으로 약 23.9%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지난 5년간의통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반면 근로자 인구 10만명당 치명률을 본다면, 1위가 농림수산업으로 5년간 평균 사망자수는 5.96으로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드러나고 있다.



연령대 별로는 16세에서 50세 이하가 97명으로 전체 사망자 수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고, 60세 이상이 41명으로 약 29%에 해당한다. 지난 2016/17-2020/21년 5년간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 분포는, 16-19세가 0.12로 가장 작았으며, 65세 이상이 1.7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60-64세가 0.91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세 번째로는 55-59세로 0.56명에 이른다. 이처럼 55세 이상의 고령의 근로자의 사망률이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¹¹⁾ 영국산업보건안전청 https://www.hse.gov.uk/statistics/fatals.htm (방문일: 2022/6/3)

(4) 사망률 높은 5대 산업부문의 재해 통계

근로자 10만명 당 가장 사망률이 높은 순서는 1. 농림수산업, 2. 폐기물 및 재활용, 3. 건설업, 4. 운송 및 보관업, 5. 제조업이다. 12)

첫째,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가 가장 많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전체 영국 근로자 총수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9/20년에는 사망자수가 20명, 2020/21년에는 34명으로 절대적 수치로도 2위에 해당한다. 근로자 10만명 당 사망자수는 5년 평균 5.96명에 이르며, 영국의 평균 사망률인 0.42의 14.19배에 이른다는 점에서 가장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다. 건설업이 2019/20년 및 2020/21년의 가장 많은 사망자수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위험으로는 건설업의 거의 4배에 이를 수치이다.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사망원인 중 가장 주요한 것은 이동하는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 사망으로, 전체 사망사고의 28%를 차지한다. 비치명적인 부상건수로는 832건이 RIDDOR에 보고되었으며, 미끄러지거나 넘어짐또는 낙상이 전체 부상의 22%로 가장 많은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근로자 10만명 당 사망자수가 두 번째로 많은 폐기물 및 재활용 부문의 인력은 전체 영국 근로자 수의 0.3% 밖에 되지 않는다. 2019/20년도 사망자수는 5명, 2021/21년도 사망자 수는 3명이지만, 2016/17-2020/21년도 5년간 평균 사망자는 9명이며, 근로자 10만명당 사망자수는 지난 5년 평균 4.57명에 이른다. 이는 평균 10만명 당 사망자수에 해당하는 0.42의 10.88배, 즉 거의 11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즉, 전체 노동시장의 0.3%에 불과한 산업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와 같은 높은 사망률의 원인은 움직이는 기계와 관련된 사고 및 움직이는 차량에의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으며, 각각 해당 원인들은 전체 사망의

¹²⁾ 이하의 내용은 Venables Legal Resources, The UK's most dangerous industries for accidents in the workplace, https://www.venables.co.uk/2021/04/07/the -uks-most-dangerous-industries-for-accidents-in-the-workplace/ 내용을 인용하였다. (방문일: 2022. 6. 3)

30%를 자치한다. 또한 해당 업종의 부상자는 2019/20년 RIDDOR 보고에 따르면 1,598건이며, 낙상이나 넘어짐 등이 농림수산업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부상원인이 되고 있다.

세 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업종은 건설업으로서, 영국 전체 인력에서 차지하는 근로자 비율은 약 7%에 해당한다. 연도별로는 2019/20년도에는 40명, 2020/21년도에는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5년간 평균 사망자수는 37명에 이른다. 한편 근로자 10만명 당 사망자수는 평균 1.64명으로, 전체 사망자 0.42에 비하여 3.9배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절대적 수치상으로는 2019/20년도 및 2020/21년도에서 건설부문은 가장 사망자수를 많이 내었으며, 전년대비 사망자수가 증가한 유일한 업종이기도 하다. 다만, 절대적수치가 아닌 비율로 본다면 전체 영국 노동력의 7%를 자치하는 건설업이 실제로는 농림수산업이나 폐기물산업보다 사망자 비율이 훨씬 적음을 알 수 있는 바, 안전성의 면에서는 농림수산업보다 4배, 폐기물 및 재활용업보다 3배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전체 사망자의 47%를 자치하는 건설업의 사망원인은 추락사였다. 부상 수치 역시 4,526명으로 모든 부문에서 수치상으로는 가장 위험한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건설산업보다 폐기물 및 재활용업이 24배나 작은 규모라는 점을 비교할 때에는 안전성의 면에서는 후자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그 외 4번째로 사망률이 높은 직업군은 운송 및 보관업으로, 영국 전체 근로자 대비 약 5%의 인력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9/20년에는 11명, 2020/21년에는 10명의 사망자를 내었으며, 지난 5년 평균 14명의 사망자가발생하였다. 근로자 10만명 당 5년 평균 사망자는 0.88명으로, 전체 평군보다 2.1배 높은 수치이다. 사망원인은 교통사고 또는 움직이는 차량에 치이는사고가 약 35%를 차지하였으며, 추락사가 22%, 떨어지는 물체에 부딪치는사고가 13%를 차지한다. 사망 이외에 부상자는 2019/20년도 RIDDOR에 8,864건이 보고되었으며, 그 중 77%는 7일을 초과하는 회복기간을 요하는부상정도에 해당하였다. 우편 및 택배 서비스 산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정도 부상의 원인의 29%가 리프팅 및 운반이 원인이 되었다.

통계상 다섯 번 째 위험한 직업군으로 분류된 제조업은 전체 근로자대비약 9%의 근로자가 종사하는 직업군으로 2019/20년에는 15명, 2020/21년도에는 2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근로자 10만명 당 5년 평균 사망자수는 0.71명에 해당하고, 전체 평균보다 약 1.7배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 근로자의 사망원인은 크게 낙상, 움직이는 기계에의 접촉, 떨어지는 물체에의 부딪힘 사고로 보고되었다. 부상은 2019/20년도 기준으로 11,245건으로, 그중 77%에 해당하는 8656건은 7일을 초과하는 부상정도에 이르렀으며, 사고원인은 운송부문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리프팅과 운반이었다.

3)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제

(1)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영국 법제의 차이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 즉, 우리나라는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제 몇조부터 제 몇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처벌의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그 처벌에 있어서는 독립된 것이 아니라 종업원 등 행위자의 처벌에 종속하여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영국은 동일성이론에 의하여 법인의 독자적인 범죄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기업과실치사법이라는 법인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즉, 개인의 과실치사죄가 보통법(Common Law)에 근거하는 것과 달리법인의 과실치사죄는 기업과실치사법이라는 독자적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법인의 범죄성립은 개인의 범죄에 종속하지 않고, 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의무위반이라는 독립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범죄성립은 인정된다.

그와 같은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달리 근로자 사망에 대하여 법인의 범죄성립을 독립된 범죄 형태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영국은 유죄인정(Guilty Plea)이라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감형을 받는 결과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고인인 기업이 유죄인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유무죄를 다투기 위하여 의무위반과 근로자 사망이라는 결과사이의 인과성을 판단함이 없이 피고인의 유죄인정으로 양형판단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즉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거의 이루어지지않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유무죄협상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사실관계로서 의무위반과 결과사이의 인과성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대부분의 사건이 1심(Crown Court)에서 종결되고 항소를 거의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지 않는다.

(2) 기업과실치사법 제정전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제정과정

가. Southall 철도사고와 Lyme Bay canoeing 재해

영국이 전체적으로 산업안전의식이 강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혁명으로 근대 자본주의 경제권을 주도하던 역사 이래 산업현장에서의 사고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었다. 예컨대 1990년 Herald of Free Enterprise호가 전복되어 192명이 사망하였지만, P&O Ferries(Dover)에 대한 기소에서, 배심원단은 해당 사고에 의한 사망이 Adomako테스트에서 요구하는 '범죄적인'의무위반으로 인한 결과라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하였다.

또한 1997년 9월의 Southall 철도사고 역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13) Southall 사고는 1997년 9월 GWT(Great Western Trains)가 유영하는 고 속 여객열차의 운전자가 시속 125마일의 속도로 주행하던 중 적색 신호를 무 시하고 간선을 횡단하는 화물열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하였으며, 사고결과로 7 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치상에 이르렀으며, 약 천만 파운드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동 사고에 대하여 여객 열차가 빨간색 신호를 통과했는지 아니면 녹색 신호가 잘못 표시되었는지에 대한 세 가지 조사가 시작되었고. 보건안전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앞 선로에 있는 화물열차의 두 신호 경고에 운전자가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운전원이 신 호를 놓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가 '졸았을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동 열차에는 두 가지 안전 시스템이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하고 사용했다면 사 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나, 기본 자동 경고 시스템(AWS)과 보다 발전된 자동 열차 보호(ATP)가 있었지만, 운전원이 사용법을 교육받지 않았 기 때문에 AWS가 고장 났고 ATP가 꺼졌을 뿐만 아니라 보조운전원조차 탑 승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운전원 개인의 독자적이거나 개별적인 과실이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의 시스템의 실패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중 과실치사라는 관습(형)법 위반에 기한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GWT 기소는. 그것을 회사의 경영진의 중과실로 입증할 만큼 회사를 지배하는 자들 (controlling minds)이 그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없어서 실패하였다.

이처럼 소규모 회사에서 발생한 기업 과실치사에 대한 유죄 판결 중 소수는 항상 건강 및 안전 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가 여부에 좌우되었다. 보다 큰 조직과 달리 소규모 조직의 경영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일상적인 기업운영에 보다 밀착 관여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회사의 관리자가 회사의 건강 및 안전 정책 준수에 대한 심각한 부정

¹³⁾ The Open University, 3.2 The history of corporate manslaughter prosecutions in the UK, https://www.open.edu/openlearn/money-business/corporate-responsi bility-industrial-incidents/content-section-3.2 (방문일: 2022. 4. 16)

행위에 대한 사전지식이 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동 사고보다 앞선 1994년 11월의 라임 베이 카누 재해(the Lyme Bay canoeing disaster) 역시 사회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카누 대여 회사인 OLL Ltd와 상무이사 Peter Kite는 1993년 3월 Dorset의 Lyme Regis에서 카누 여행 중 발생한 4명의 학생 사망사건에 대한 과실치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해당 여행에는 학교에서 교사와 카누에 대한 기본적인 숙련도만 보유하였던 두 명의 무자격 강사가 동행하였는데, 학생들이 탑승한 카누는 전복되었되어 바다로 휩쓸려나갔다. OLL Ltd가 운영하는 카누 센터는 조난 신호를 제공하지 못했고 해안 경비대에 원정대를 알리지 않았으며, 센터의 두 명의 강사는 열악한 안전 조건에 항의하여 1년 전에 사임한 상태였다.

회사에서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은 단 두 명뿐이어서 지배경영자를 식별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으며, 상무이사 카이트는 항소심에서 2년으로 감형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60,000 파운드의 벌금에 처해졌다.

나. 산업보건안전법상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제정배경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이전에는 위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974 년 산업보건안전법(the Health and Safty at Work Act 1974)에 의하거나 보통법(Common law)이 적용되었다. 산업보건안전법은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와같은 개인에게 제33조에 의하여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법인의 의무의 위반이 이사나 경영자 등의 동의나 묵인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해당 이사나 경영담당자(any 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other similar officer of the body corporate or a person who was purporting to act in any such capacity)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또한 보통법에 의하여 사업장과 관련한 사망사고에 개인 중과실치사죄 (manslaughter by gross negligence)를 적용할 수 있는데, Southall 철도

사고에서와 같이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보통법은 회사의 관련 의무와 경영진의 의무는 별개의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사와 같은 경영진의 관련 의무란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부과된 법적 의무로보고, 해당 의무위반에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는지를 심사하기 때문이다. 또한 중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나 이사와 같은 개인의 관련 의무의존재, 해당 의무위반, 의무위반과 치사상의 결과 사이의 상당한(substantial)원인관계 및 위반이 모든 정황 하에 범죄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과실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나아가 다수의 개인들이 존재할 경우각 개인마다 인과성이 입증되지 않지만, 모든 관여자의 의무위반 총합으로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바로 법인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앞선 Southall 사건¹⁴⁾에서도 GWT의 중과실치사죄 성립여부에 관하여, 기업의 유죄인정은 관련 의무가 회사를 지배하는 자('controlling minds')의 중과실이 인정되어야만 한다는 동일성이론에 입각하였기 때문에,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영국법상의 동일성이론은 기업구조의 이원화를 전제로 하위직 종업원은 단순한 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기업 자체라고 볼수는 없지만, 기업의 대표자는 회사의 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회사의 분신이기 때문에 이는 곧 기업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법원은 소위 'controlling minds'의 중과실이 입증되어야만 철도회사에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15)

이처럼 동일성 이론에 의하여 반드시 기업의 정신을 지배하는 자의 의무위 반을 확정하여야만 기업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사회적 비판을 받았다. 이에 노동당은 1997년 집권당으로서 관련 법의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2005 년 3월 행정부가 기업과실치사법을 공표하였으며, 2006년 7월 20일 하원에 법안이 상정되어 같은 달 26일 공포되었다.

¹⁴⁾ R. v. Great Western Trains Company Limited(1999년 7월 27일)

¹⁵⁾ 동일성이론에 관하여는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8/12, 50-55면 참조.

(3) 기업과실치사법상의 주요 내용

가. 행위주체로서 기업의 의미

동법의 적용대상인 단체(organisation)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이에 준하는 조직이나 경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를 모두 포괄한다.

동법 제1조는 그 기업의 활동이 경영자(senior management)에 의하여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위반에 있어서 상당한(substantial) 요소일 것으로 요구하며, 고위 관리직이란 "그 활동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관리되고 조직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 활동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실제 관리나 조직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 정의된다(동조 제4항(c)).

경영자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고위 관리직이 다수인 경우 개개인마다 그 기여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경영자들의 기여의 총합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기업이 안전보건의무를 경영자이 하위 직급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경영자가 면책대상이 되는가 역시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발간한 "기업과실치사법의 이해(Understanding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2007)"에 따르면 그와 같은 책임의 부적절한 위험도 경영자의 관리불이행에 위한 기업과실치사법의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16)

자회사와 모회사, 하도급업체와 같이 그룹구조이거나 다수의 회사가 관여하는 경우 검찰은 책임있는 회사가 기소되도록 책임분담을 식별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각 조직 내에서 개별적으로 사망에 기여한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그룹 내 둘 이상의 회사가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유사하게 주계약자와 하도급자가 관련된 건설프로젝트, 임대인이 소유하고 임차인이 점유하고 시설관리회사가 관리하는 건물, 사이트관리와 서비스제공

¹⁶⁾ Ministry of Justice, Understanding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2007, 2007, 3면 이하.

및 운영이 모두 별도의 회사에서 제공되는 공항 등도 이와 같이 평가된다.17)

나. 관련주의의무

관련주의의무는 법 Sec. 2(1)에 정의되어 있다. 해당 의무란 과실에 관한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고용주가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 건물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의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는 의무, 건설 또는 유지보수작업과 관련하여 지는 의무, 기타 상업 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지는 의무, 식물이나 차량 또는 기타 물건의 사용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지는 의무, 구금된 자, 안전한 숙소 또는 구금된 환자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무 등이다.

사망자 측에서 기여한 과실은 기소에 장애물이 될 수 없고, 사망자가 고의로 범죄행위를 저질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8] 작업장의 경우, 합리적 주의를 기울여야할 의무는 피고인(기업)이 시행한 안전장치가 사망자에 의하여 실제로 준수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포함할 수 있다. [19]

검사는 관련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gross breach)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1(4)(b)항은 '중대한 위반'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데, '조직의주의의무위반은 해당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되는 행위가 해당 상황에서조직에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낮은 경우'를 의미한다.

제8조는 배심원단이 중대한 의무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비완전적 인자들을 제시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보건 및 안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 만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지

¹⁷⁾ 검찰청 https://www.cps.gov.uk/legal-guidance/corporate-manslaughter (방문일: 2022. 4. 23)

¹⁸⁾ R v Wacker (2002) EWCA Crim 1944, R v Willoughby (2004) EWCA Crim 336

¹⁹⁾ Bux v Slough Metals (1974) 1 All ER 262.

- 준수하지 않음이 얼마나 많은 사망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 증거들이 제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나 정책
- 보유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조직 내에서 수용되는 시스템 또는 관행
- 그러한 결과를 조장했는지 여부
- 위반혐의와 관련된 모든 보건 및 안전 지침의 내용
- 치명적인 사고와 무관한 위반의 증거는 조직 내 보건과 안전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는 한 관련될 수 있다.

또한 심각하고 명백한 사망위험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기업 자체가 위험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위험이 조직내 개인에게 명백하였거나 분명했다는 증거는 배심원이 중대한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 특히 고위 경영진 차원에서 무모한 행동을 한 증거는 중대반 위반의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된다.20)

4) 중대재해 처벌 관련 사례

(1)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적용 규정

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면 기업과실치사법 기업과실치사죄를 적용하게 된다. 동법 제1조에 따라 기업은 활동이 관리또는 조직되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직이 사망자에 대하여책임져야 하는 관련 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면 상한없는 벌금형에처할 수 있다.

²⁰⁾ Involuntary Manslaughter (Law Com No. 237) at para 8.3; R v Misra & Srivastava (2005) 1 Cr App R 21 at para 56; R (Rowley) v DPP (2003) EWHC 693.

이 때의 관련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란 Sec. 2(1)의 규정내용이며, 이는 민법상 발생하는 의무로서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새로운 법적 의무를 생성한 것은 아니다. 동 규정은 기업에게만 적용되고 개인 경영진에게 적용할수 없다.

나.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

가) 기업에 적용되는 위반죄

Sec 2(1)은 모든 고용주(기업)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모든 피고용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매우 광범위하 고 넓은 보통법상의 안전주의의무위반으로서, 손해배상이 될 만한 것은 모두 동법상 감독관에 의한 조사 및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21)

Sec 3(1)은 고용주(기업)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신의 사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용된 근로자 이외의 사람들을 보호하기위하여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이외의 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서, 기업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사람들, 기업에의 구내 방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일반대중도 포함된다.22)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모두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라는 단어가 고용주의 의무를 규정하게 된다.

이 경우 사람이 실제로 위험에 처했을 필요는 없으며, 단순히 위험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기업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²³⁾ 기업은 계약자가 비직원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청을 주더라도 자신의 '영업활동(undertaking)'에 대한 책임을

²¹⁾ G. Janner, Compendium of Health and Safty Law, Random House Business Books, 1982, 12면 이하.

²²⁾ R v Tangerine Confectionery (2011) EWCA Crim 2015

²³⁾ R v Board of Trustees of the Science Museum (1993) 1 WLR 1171

여전히 지게 된다.24)

판례는 기업이 실무차원(operating level)에서 모든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5) 또한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이란 사고위험을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배치된 조치와 비교형량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바, 위험은 적지만 조치가 큰 경우에는 무죄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6)

그리고 Sec 33은 제2조에서 제7조까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나) 개인에 적용되는 위반죄

Sec 37은 "법인에 의하여 범해진 관련 법령 조항에 따른 범죄가 그 단체의이사,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유사한 임원, 또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 자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저질러졌거나 또는 그 책임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도 그 범죄로 유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예컨대, 이사 등이 필수 안전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기업은 제2조 또는 제3조 위반에 따른 제33조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사 등 개인은 제37조에 의하여 유죄가 성립한다.

다. 보통법(Common Law)상 중과실치사죄(gross negligence manslaughter) 보통법상 개인의 중과실치사죄는 개인의 부작위를 포함한 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범죄의 처벌로, 기업과실치사법이 '조직의 활동이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으로 인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행위로 인한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한다.

²⁴⁾ R v Associated Octel Co Ltd (1996) 1 WLR 1543

²⁵⁾ R v British Steel (1995) 1 WLR 1356

²⁶⁾ Austin Rover Group Ltd v HM Inspector of Factories (1990) 1 AC 619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진 등 개인에게는 산업보건안전법 제37조 위반죄와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이상의 영국의 중대재해처벌법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1〉 영국의 중대재해처벌 법제 요약

대상	분야	내용
법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본법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the Health and Safty at Work Act 1974)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여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중대재해처벌법 존재하는 경우 산안법과의 관계	- 기본적으로 기업처벌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고, 경영자 등 개인처벌은 산업보건안전법을 적용
법	처벌의 근거	- 기업과실치사법 제2조(의무) - 산업보건안전법 제2조, 제3조(의무규정) 및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으로서 제33조
	처벌규정 적용대상자	- 기업과실치사법 제1조 - 동법의 적용대상인 단체(organisation)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이에 준하는 조직이나 경찰, 노동조합 또는 사용 자단체를 모두 포괄
	중대재해(근로자 사망) 해당시 법정형	- 기업과실치사법: 상한 없는 벌금 - 산업보건안전법: 중대한 법령위반의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선택 또는 병과), 일부 위반은 징역형 없이 벌금 (영국은 위반행위 처벌을 개별 조문별로 하지 않고 별표3으 로 하고 있음)
	주의의무의 근거	- 기업과실치사법 제2조(의무)에 따른 모든 의무(고용주가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 건물점유 자로서 부담하는 의무, 상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지는 의무, 건설 또는 유지보수작업과 관련하여 지는 의무,

대상	분야	내용
		기타 상업 활동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는 의무, 식물이나 차량 또는 기타 물건의 사용 또는 유지와 관련하여 지는 의무, 구금된 자, 안전한 숙소 또는 구금된 환자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의무 등) - 주의의무위반 판단기준은 기업과실치사법 제8조(피고인이 보건 및 안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만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위반이 얼마나 심 각한지 여부, 준수하지 않음이 얼마나 많은 사망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증거들이 제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나 정책,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 내에서 수용되는 시스템 또는 관행, 그러한 결과를 조장했는지여부, 위반혐의와 관련된 모든 보건 및 안전 지침의 내용, 치명적인 사고와 무관한 위반의 증거는 조직내 보건과 안전에 대한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
	주의의무위반의 고의·과실여부	- 관련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gross breach)
	법원심리에서의 주된 쟁점	- 대부분의 사건은 기업의 유죄인정(Guilty Plea)에 의하여 양형판단에 집중
	양형	- 2015년 개정되어 2016년 2월 1일부터 최종 선고지침을 발표한 "건강 및 안전범죄, 기업과실치사 및 식품안전과 위생위반범죄 양형기준(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guidelines) 지침
	주요 양형인자	- 기업의 유죄인정(감경 요소) - 주의의무 위반 정도 - 안전보건기록 등 산업보건안전청 지침 준수 여부 - 산업안전보건청으로부터 주의, 경고 등을 받은 전력 -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보상 여부 -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의 지연 정도(가중 요소) - 벌금 부과로 인한 기업의 파산 가능성 -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기업에 의한 지역경제 및 고용 창출효과(감경 요소)

대상	분야	내용
	처벌의 근거	- 산업보건안전법 제37조(경영자 등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행해진 근로자 사망 처벌) - 보통법(Commin Law)상 중과실치사죄(gross negligence manslaughter)
	처벌규정 적용대상자	-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 - 기업의 유죄인정으로 면책되는 경우 있음.
TICHOL	중대재해(근로자 사망) 해당시 법정형	- 산업보건안전법: 중대한 법령위반의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선택 또는 병과), 일부 위반은 징역형 없이 벌금
자연인 (경영 책임자	주의의무의 근거	- 산업보건안전법 제37조 - 보통법상의 주의의무
등)	주의의무위반의 고의·과실	- 산업보건안전법: 고의의 동의 또는 묵인 - 보통법: 중과실
	법원심리에서의 주된 쟁점	- 경영자의 인식 또는 가담 정도 - 경영자의 이사자격 박탈여부 및 박탈기간
	양형	- 일반적으로 벌금형 선고(일수벌금제) - 다수 사망자 발생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 되며 예외적 실형선고
	주요 양형인자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 피해자 과실 등

(1)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이후 10년간 적용 사건

가. 최초 적용된 2011년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사건

가) 사실관계

지질학자인 피고용인 Wright는 2008년 9월 5일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혼자 일을 하다가 시험광구에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Wright는 참호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고, 현장 주변에는 두 사람이 있었으며 희미한 소음과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을 들었다. 그들 중 한 명은 긴급 구조대에 전화했고 다른

한 명은 Wright가 참호에 머리까지 묻힌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Wrighr가 숨을 쉴 수 있도록 흙을 제거했지만, 더 많은 흙이 참호에 떨어져 Wright를 완전히 덮었고 결과적으로 외상성 질식으로 사망하였다.²⁷⁾

검찰은 Costwold가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실천적 수준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보건과 안전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의무위반에 의한 기업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회사는 이미 그 이전에도 광구에서 일을 하여야 했던 근로자가 진정서를 제출하여 보건안전청으로부터 권고와 지침을 받은 바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사고를 일으킨 바 있었다.

검찰은 3.5M 깊이의 광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주와 같은 버팀목 공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중대한 관련 규정 의무 위반이라고 보았다. 반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가 그와 같은 광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고 혼자 들어갔기 때문에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검찰은 그것이 잘못된 회사의 관행이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회사는 단독이사가 매우 병이 위중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업과실치사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이미 제출된 단독이사의 상세한 진술들로 인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의무위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Wright는 위험한 참호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회사의 시스템이 그런 식으로 일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둘째, 회사는 1.2m 깊이 이상의 굴착에 대한 진입을 금지하는 잘 알려진 업계 지침을 무시한 점, 셋째, 회사는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2-3.5m 깊이의 지원되지 않는 시험 구덩이에 들어가 작업하도록 요구하였다는 점이다.

²⁷⁾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2011] EWCA Crim 1337; [2012] 1 Cr. App. R. (S.) 26.

나) 법원의 판단

회사는 기업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고, 동시에 피고용인의 보건과 안전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산업보건안전법 제2조제1항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입증에 있어서 혼란을 줄 것을 우려하여 산업보건안 전법 위반죄는 기소를 철회하고 기업과실치사죄로만 공판을 유지하였다.

재판결과 총 385,000파운드에 해당하는 벌금을 매년 38,500 파운드씩 10년간 내도록 부과받았고, 이는 총매출액의 약 116%라고 보고되었으나, 해당 사망사고 이후에 매출액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실제로는 총 매출액의 250%에 달하는 것이었다. 회사는 소규모였고, 단지 8명의 피고용인과 한 명의 이사가 있었다. 10년간의 분할 납무는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태인 회사가 파산에 이르는 것을 피해가 위함이었지만, 결국은 회사는 2014년 파산에 이르렀다. 회사는 항소하였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다만 회사의 경제적 곤란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부과되지 않았다.

회사의 단독이사인 Peter Eaton 역시 보통법상의 중과실치사죄와 산업보건안전법 제37조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그는 회사의 산업보건안전법 하의 법적 의무를 준수함에 실패하였다는 점 또는 그의 과실로 의무위반이 야기되었다는 점에 동의하였다. 다만 이사에 대한 기소는 그의 말기 암으로 인하여 중지되었다.

그 외에 공표명령은 해당 명령에 관한 조항이 시행되고 있는 중이었지만, 2010년 2월 15일 이전에 범한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표명령은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시정명령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보건안전청이 취한 조치를 고려할 때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판사는 이를 기각하였다.

다) 양형

동 사례는 기업과실치사죄의 벌금이 기업을 파산에 이르게 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 기업과실치사죄 유죄의 수용가능한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이전에도 산업안전청의 권고와 지침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1심 법원은 회사의 위반행위의 심 각성과 재정적 상황을 검토하였으며, 상당한 벌금은 회사를 파산시키고 근로 자의 직장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도 인지하였다. 또한 회사가 파산되면 이사 의 가족들에게도 여파가 있을 것임을 인지하였다.

법원은 연 매출액의 25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면서, 소규모의 회사에서 그와 같은 규모의 벌금이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사용자들에게 근로자의 근무장소에 대한 관련 의무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점을 경각시키는데 충분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회사를 파산으로 몰아가는 것을 피해기위해 열악한 재무상태를 감안하여 10년간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였다.

나. 제정 이후 2017년까지 10년간 적용사건

가) 개관

최초의 적용사건인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을 포함하여 25개 기업이 기업과실치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해당 판결중에서 시정명령(remedial order)나 배상명령(compensation order)는 단 한 건도 없었으며, 다만 일반적으로 언론의 이목을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공표명령과 관련하여서는 2017년 기준으로 24개 기업 중에서 약 1/3에 해당하는 7개 기업만이 공표명령이 판결되었다.

또한 총 25건의 유죄 판결 중에서 5건에서만 이사(director)의 자격이 박탈되었다.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국가 재난사건과 달리, 단일 사망사례와 관련되어 기업과실치사법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단 3건의 다수 범죄로 기소되었고 이중에서 사망자가 가장 많은 사건은 MNS광산사건이었으나 동사건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기업에 대한 기업과실치사법 적용과 달리 감독 또는 관리자가 형법상 중과 실치사죄로 동시에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확인된다.

Sherwood Rise 사건과 Bilston Skips 사건에서만 기업 이외에 이사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전체 사건 중에서 회사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사 가 과실치사로 유죄판결을 받는 건수는 1/10 미만에 해당된다. 그리고 25건의 유죄판결 중에서 18건은 기업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됨과 동시에 보건안전위반죄로도 기소되었다.

전체적으로 기업과실치사죄의 벌금형은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사건에서는 이례적으로 사건의 기업이 300,000파운드 정도에 이르는 매우 소규모 자본의 업체여서 기업이 파산에 이를 만한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실제로 2014년 파산되었지만, 그 외의 기업들에 대하여는 그와 유사한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었지만 자산 또는 매출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평가된다.

나) 2012년 JMW Farms Limited 사건²⁸⁾

(가) 사실관계

두 번째로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한 동 사건은 첫 번째 노스 아일랜드 사건이자 보건 및 안전의무위반과 관련하여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액수의 벌금이 과해진 사건이다. 2010년 11월에 동 기업의 직원인 Wilson은 지게차의 포크에 있는 커다란 금속 통의 내부를 세척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서 베일 압착기 위에 서 있었는데, 그 금속 통이 반대쪽으로 움직이면서 그는 쓰레기통 옆으로 뛰어내렸고, 쓰레기통이 그의 위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이는 지게차의 포크 위치가 쓰레기통의 슬리브 위치와 일치하지 않아서 쓰레기통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떨어진 것으로, 법원은 그러한 점들이 쓰레기통 주변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래적이고 예측가능한 위험("inherent and foreseeable danger")"을 의미한다는 점과 회사가 그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회사의 위험성평가보고서에는 그와 같은 위험성이

²⁸⁾ Health and Safety Executive Northern Ireland v JMW Farms Ltd Unreported May 8, 2012 (Crown Ct (Belfast))

이미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회사가 해당 위험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사가 그러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체 트럭의 포크와 쓰레기통의 슬리브 위치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나) 재판결과

검찰은 기업과실치사법으로 기소하였고, 피고회사는 유죄를 인정(Pleaded guilty)하였고 법원은 유죄판결을 하였다. 기업은 유죄인정을 한 점이 반영되어 총 벌금액의 25%를 감액받아 187,500 파운드의 벌금이 선고되었고 회사는 벌금과 기소비용 납부 기한으로 6개월이 허용되었다.

또한 추가적으로 소송비용 13,000 파운드 및 20%의 부가가치세가 산정되었다. 회사에는 벌금 이외에 공표명령이나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은 부과되지않았다. 그리고 기업의 이사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중과실 과실 치사죄가 고려되었지만 회사를 위하여 유죄의 인정(guilty plea)를 함에 따라 재판 전에 기각되었다.

(다) 양형고려요소

사고 당시 동 회사는 약 60여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고, 앞선 첫 번째 사건보다 매출액은 4배 많았지만 복잡한 관리 계층 구조가 없는 소규모 회사 였으며, 이사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 었다.

동 회사는 2011년 9월 30일 기준 과세후 당기순이익이 1,379,737.00파운 드에 달하고 배당금이 200,000파운드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액은 첫 번째 사건보다 훨씬 적었다. 법원은 해당 벌금액이 회사의 상업적인 생존 가능성,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첫 번째 사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벌금액 산정은, 양형기준과 관련하여서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을 대처하지 못한 것이 중대한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예견하였다는 점, 기업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기준에 매우 못

미쳤다는 점, 그와 같은 운영이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는 점이 회사의 전반적인 체계적 이탈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양형가중과 관련하여서도 경고나 충고 등과 같은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비용절감으로 안전을 위협하였다거나 기업 인가를 고의적으로 받았다는 것을입증할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다) 2012년 Lion Steel Equipment Ltd 사건²⁹⁾

(가) 사실관계

2008년 5월 29일에 동 기업 근로자 Berry가 산업 시설의 지붕에 올라갔다가 13 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지붕의 금속 및 섬유 유리 패널은 수시로 수리가 필요했으며, 작은 구멍을 통해 아래 작업물에 누출이 발생한 구멍이 테이프 조각으로 패치된 흔적이 있었고, 플래시가 수리를 필요로 했다는 증거도 있었다. 지붕에 대한 접근은, 어떤 목적으로든, 측면 A 아래로 이어지는 계곡을 따라 지붕 골짜기를 통해 이어지는 프레스 숍의 문을 통해 가능하지만, A 구간을 따라 흐르는 계곡 홈통은 280mm로, 공인 기준인 600mm에 못 미쳐 있었다. 또한 반대편 지붕(신설 구간)이 더 높은 층으로 가장자리 위로 돌출돼 홈통 유효 폭이 줄어든 점이 좁음을 더했다. 이와 같은 결함으로 인하여 지붕에의 출입 자체는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

라이온 철강회사에 대한 검찰의 증거는 기업의 내부문서의 미비 의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검찰은 Berry의 사망일로부터 6년 기간 동안 기업의 건강 및 안전문제를 자세히 설명한 보험사, 보험중개인 및 위험관리자, 안전 컨설턴트와의 교류서신에 의존하여 관련 규정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였다. 검찰에 따르면 지붕은 안전용 벨트나 통로선과 같은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는 올라갈 수 없는 위험한 상태로서, 근무를 위한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입금지 안내판이나 안내문구 등은 없었고, 기업의

²⁹⁾ R. v Lion Steel Equipment Ltd, July 20, 2012 (Crown Ct (Manchester))

이사는 근로자가 지붕에 업무를 위해 올라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동 회사의 보험중개사의 이사는 건강 및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에 주어지는 경고들이 기업이 확인된 문제에 보다 중점을 두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종종 '강조'되었음을 인정하였다. 즉, 해당 서신들에 기재된 내용들이 과장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기업과실치사법은 중대한 의무위반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시행 이후의 증거들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2008년 이전 6년간의 기록들은 증거로서 충분하지는 못하였다.

(나) 재판결과30)

우선 검찰은 기업과 이사들 모두를 기소하였다. 기업은 기업과실치사법위 반죄와 산업보건안전법 제2조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2005년의 작업장 고도규정(the Work at Height Regulation 2005) 위반죄의 혐의가 주장되었고 그결과 산업보건안전법 제33조 위반도 추가되었다. 기업과실치사법 혐의는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준비 청문회에서 다른 혐의 및 이사들에 대한 혐의와 분리되었다. 사망은 기업과실치사법이 도입된 직우 발생하였고, 동법은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 기업의 이사들 3명(Palliser, Williams, Coupe)은 Berry의 고용주로서 산업보건안전법 제37조 및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로 처음에는 기소되었다.

법원은 우선 Berry가 지붕수리에 필요한 훈련을 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지붕에서의 추락위험은 명백하며, 기업이 그와 같은 깨지기 쉬운 지붕에 대한 경고를 해야 한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사들에 대하여는 1명은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와 중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무죄를 인정하였고, 다른 한명은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는 기소되고

³⁰⁾ Judiciary of England and Wales, T 2011 7411, 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JCO/Documents/Judgments/hhj-gilbart-qc-sentence-remark sr-v-lion-steel.pdf

중과실치사죄는 무죄가 인정되었지만, 해당 기소된 부분 역시 이사와 검찰 간의 유죄협상제도를 통해 기업이 법인과실치사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이사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함으로써 문제가 되었던 모든 이사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이사들에 대한 무죄에 근거에 대하여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위험을 해결하기 위하여 보드, 장벽 하니스 또는 라인과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하기는 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AXA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안전 기준은 대체로 합리적이었지만, 하이드 작업에서는 체스터 작업보다 일반적으로 위험 평가 및 훈련 요건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특히 위반 책임에 대하여는 해당 이사에게 있다고 보았고 다른 이사들이 기업에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전혀 또는 거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결과 회사는 기업과실치사죄 유죄판결에 의하여 3년간 480,000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하며,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2년 이내에 84,000파운드를 지불하여야 한다. 법원은 재판준비에 소요된 시간이 과도하고 해당 지연이 일정정도 불필요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검찰이 주장한 140,000의 소송비용을 84,000파운드로 감액하였다.

그 외에 검찰은 공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청구하지 않았고, 배상명령은 민 사법원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판결하지 않았다.

(다) 양형고려요소

법원은 양형기준표를 적용하였고, 섹션 D를 고려하여 위반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도 고려하였다.

우선 제7항의 가중요소로는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위험의 명백성 및 예측가 능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였으나 충분치는 않았다는 점 등 재판에서 언급한 이외의 다른 가중요소가 없다고 보았다. 반대로 제8항의 감경요소로서 첫째, 기업이 합리적인 건강 및 안전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해

당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는 지붕 수리를 위해서 기업이 고용한 자체 근로자들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였다는 점, 그리고 이것들이 과거 위험중개인들의 위험성평가 부문으로부터 조언을 얻은 것을 고려하였다. 특히 Berry가 사망한후 4년이 지나도록 재판이 지연되었다는 점도 언급하였다. 12개월의 지연은당사자의 재판에서의 편의를 위해 발생할 수 있지만, 해당 사건에서의 지연은대부분 검찰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되었고, 그와 같은 재판지연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보았다.

기업의 규모는 기존의 2개 사건보다 큰 편이어서, 2008년부터 2011년 매출은 약 1000만 파운드 정도이고 약 140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유죄인정을 고려하였고, 그보다 많은 벌금이 해당 기업의 사업과 나머지 142명의 직원 고용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보다 적은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회사가 흑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많았고, 이사들이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주들이 3년 동안 배당금을 받지 못한 사실로부터 낭비하거나 사치를 하는 기업도 아니라는 점도 고려하여 원 벌금액의 20%를 감면하였고 그 결과 480,0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라) 2013년 J Murray & Son Ltd 사건

(가) 사실관계31)

동 회사는 동물사료 혼합 공장을 소유한 북아일랜드 회사로서, 근로자 Porter는 2012년 2월 28일 동물사료 혼합기에 빨려들어가서 사망하였다. 혼합기의 상단에는 아무 것도 없이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거된 패널이 작동 부품 위에 볼트로 고정되는 메시 스크린으로 구성된 피드 호퍼로 교체되어 재료가 그 높이와 함께 위에서 메시를 통해 기계로 안전하게 흐를 수 있도록이 기계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개조할 수 있었다. 또한 보호장비를 통해 상지

³¹⁾ Health and Safety Executive Northern Ireland v J Murray & Son Ltd 2013/10(Crown Ct(NI)) [2013] NICC 15

또는 하지에 의해 위험한 작업 부품이 도달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할 수 있었고, 이러한 개조 비용은 기계 제조업체가 수행했다면 £5,000 미만이었을 것이고, 현지 상인이 제작하고 장착했을 경우보다는 오히려 더 적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은 이를 하지 않았고, 사고 당시에는 목격자는 없었다.

(나) 재판결과

점찰의 조사 결과 해당 기업의 혼합기는 안전 장치 없이 3년간 작동되었음이 확인되었다. 32) 법원은 양형 등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시의적절한 유죄답변으로 인하여 총 벌금액의 1/3의 감액을 허용하고 다만 회사의 재정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연간 20,000 파운드의 벌금을 납부할 수 있었음을 고려하여 2013년 12월 1일, 2014, 2015, 2016, 2017년 각 연도의 동일한 날짜에 20,000파운드의 벌금은 연간 분납금으로 하여 최종 100,0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만기일에 할부 벌금액의 지급이 채무불이행되는 경우, 벌금의 나머지 잔액 전체가 즉시 납부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소송비용으로 2014년 6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10,450파운드의 비용을 회사가지불하도록 명령하였다.

벌금 이외에 공표명령이나 시정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사망에 대한 배상 명령은 민사법원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 밖에 회사의 이사이자 소유주인 James Murray에 대한 중과실치사의 기소 여부는 회사의 유죄를 인정하는 대가로 기소되지 않았다.

(다) 양형고려요소

법원은 중대한 위험이 매우 명백하였다는 점, 피고회사가 적용기준에 훨씬 못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였고, 또한 동 회사가 보건 및 안전요구사항에 대하

³²⁾ Neutral Citation No. [2013] NICC 15 https://www.judiciaryni.uk/sites/judiciary/files/decisions/Queen%20v%20J%20Murray%20&%20Sons%20Ltd.pdf

여 첫 번째 위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법원은 상부의 하중을 안전하게하기 위해 적절한 메쉬와 호퍼 배치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는 양형을 완화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감경요소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수용한 점, 검찰 조사에 대하여 고도의 협조를 제공한 점, 늦었지만 공정과정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후 보완작업을 수행하였 다는 점, 1967년 이후 회사가 명확한 보건 및 안전 기록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을 고려하였다.

또한 회사가 지난 4년동안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여 적자를 안고 있는 소기업이라는 점, 공인회계사의 증거에 따르면 회사가 상당한 단기 부채를 충족할수 없었고 총 자산은 33,000파운드로 추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였으며, 불과16명의 직원을 고용한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였다. 이에 따라 판사는 회사가소규모이고, 어려운 경제상황에 시골 지역에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강제로 폐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양형에 주의깊게 고려하였다.

판결내용에서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벌금도 징벌적이어야 하고, 회사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해야 한다"고 보면서, 해당 사건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고, "부과하는 벌금이 사업을 파산시키는 효과가 없기를 바라지만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그에 상응하는 상당한 벌금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마) 2013년 Prince's Sporting Limited 사건: 공표명령 부과 사례

(가) 사실관계

2010년 9월 프린스 스포츠 클럽에서 11살의 마리 시몬 크론제는 미들섹스의 보트 클럽에서 열린 생일 축하 행사에 참석했었다. 그녀는 뉴질랜드 출신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견인하던 보트에 치여

죽었다. 사고 경위는 경찰, 환경보건부, 해양사고조사부(MAIB)에 의해 조사되었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전히 불분명하였다. MAIB는 마리 시몬이 바나나 보트에서 떨어진 후 보트 운전사가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녀는 물에서는 구별하거나 인식하기 힘든 회색 헬멧을 쓰고 있었다.33) 재판 중에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물에 빠졌을 때, 몇몇 아이들과 부모가 이를 보고 운전기사에게 알리려고 하였지만, 운전기사는 인식하지 못하였다. 운전기사는 뉴질랜드에서 왔는데, 5년간 수상스키용 보트 운전사 경험이 있었지만 영국에서는 인정되는 어떤 자격증도 취득하지 못하였다.

해당 회사는 이후 영업을 중단하고 폐쇄되었다.

(나) 재판결과

재판과정에서 회사는 그녀의 죽음이 그러한 비극의 예측 가능한 위험을 초 래한 건강 및 안전 실패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였다. 특히 견인 쾌속정에 보호 자의 부재, 참가 어린이를 위한 발광 헬멧 미비, 불필요한 팽팽한 선회 등으로 비판을 받았다. 또한 회사의 자체 보건 및 안전 코디네이터가 이전에 제기한 우려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클럽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열악한 태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되었다.34)

회사는 형이 선고되기 전에 유죄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래 회사 이사에 대해 기소된 산업보건안전법 제27조 위반 혐의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벌금액수는 134,579 파운드 였는데, 엄밀하게는 벌금은 34,579 파운드이고 소송비용이 100,000파운드에 해당한다. 또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않는회사이므로 직접적으로 영업에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다른 수상스포츠 운영자에게 경고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표 명령을 하였다.

³³⁾ Morton Fraser, "Prince's Sporting Club corporate manslaughter", LEXOLOGY,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4d60ebc-40a5-4fef-b7a5-a 0807497b554 (방문일: 2022. 4. 17)

³⁴⁾ http://www.cps.gov.uk/news/latest_news/london_sports_club_sentenced_for_corp orate_manslaughter/ (방문일: 2022. 4. 17)

(다) 양형고려요소

Princes Sporting Club은 전체 자산 가치에 해당하는 134,579.69 파운 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법원은 회사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벌금을 부과하여 회사를 폐업시켰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결정을 주목할 만하게 만드는 사항은, 첫째는 안전사고가 충분히 심각한 경우 법원이 회사를 폐업시키는 벌금을 부과할 의향이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한 이해 공표명령을 결정한 첫 번째 사건이라는 점이다. 공표 명령의 유용성은 이전 사례에서도 의문시되었지만, 검찰은 이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공표명령을 구형하였다.35)

바) 2014년 Mobile Sweepers (Reading) Ltd 사건³⁶⁾

(가) 사실관계

Malcolm Hinton은 청소전문인 동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도로 청소 트럭 아래에서 수리 작업을 하다가 깔렸으며, 이로 인한 부상으로 사망하였다. 회사는 2012년 Riddings Farm에서 직원 Hinton의 사망과 관련하여 기업 과실치사로 기소되었다.

그 회사는 새로운 주택 개발에 도로 청소 서비스를 제공했고 4명의 청소부가 있었다. 사망하던 날 저녁, Hinton은 감독관으로부터 다음 날 작업 전에 14년 된 청소기의 고장 난 호퍼를 수리하라는 긴급 지시를 받았다. 그는 15년 동안 비공식적으로 국장을 위해 일했지만, 그는 훈련을 받지 않았고 수리를 할 자격도 없었다. 그는 도로 청소에서 나오는 쓰레기와 오물이 수거되는 높이로 올라간 호퍼 밑에서 작업하던 중, 오물 등으로 높이가 높아진 0.5톤

³⁵⁾ Sentence handed down following fifth corporate manslaughter conviction, 201 4/7/17, https://www.brownejacobson.com/training-and-resources/resources/leg al-updates/2014/01/sentence-handed-down-following-fifth-corporate-mansl aughter-conviction (방문일: 2022. 4. 17)

³⁶⁾ R. v Mobile Sweepers (Reading) Ltd Unreported February 26, 2014 (Crown Ct (Winchester))

호퍼가 자신에게 떨어지게 되자 유압 호스를 제거했다. 이후 햄프셔 경찰과 보건안전청의 조사에 따르면 호퍼가 상승 위치에 있을 때 차량의 상태가 좋지 않아 호퍼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받침대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호스가 제거돼 유압이 상실되자 호퍼가 차량 메인 샤시 쪽으로 뒤 로 넘어져 작업자가 찌그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 는 머리와 가슴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거의 즉사'하였다.37)

(나) 재판결과

재판과정에서 회사가 기계 정비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들은 건강과 안전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회사는 기업과실치사에 따라 유죄를 인정했고 8,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으며 윈체스터 크라운 법원은 4,000 파운드의 소송비용을 추가로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또한 공표명령도 부과하였으며, 회사의 유죄 판결과 유죄 판결에 대한 합의된설명을 언론에 공개하도록 요구하였다.

동 사건에서는 기업의 이사는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 제2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12개월 이내에 183,000파운드의 벌금과 8,000파운드의소송비용을 낼 것을 부과받았으며, 납부하지 않으면 교도소 수감될 것임을 판결받았다. 개인은 기업 과실치사법에 따라 기소될 수 없지만, 산업보건안전법위반으로 기소된 것이다. 또한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 및 작업장비 제공 및사용에 관한 규정(the Provision and Use of Work Equipment Regulations)은 유죄인정(guilty pleas)에 의하여 기소되지 않았다. 이사는또한 5년 동안 회사 이사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했다. 그는 이후도로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지만 규모는 더 작았다.

³⁷⁾ RSA, Director fined in £183,000 in corporate manslaughter case, https://www.rsabroker.com/news/director-fined-%C2%A3183000-corporate-manslaughter-case (방문일: 2022. 4. 18)

(다) 양형고려요소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모든 것이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키며, 이것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과 안전, 적절한 훈련과 기계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배려 와 같은 작은 고려를 희생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다"³⁸⁾고 판 시하였다.

벌금액수는 기업과실치사법 하에서 부과된 가장 낮은 금액이었지만, 사건 발생 직후 회사가 영업을 중단하였고 8,000파운드의 벌금은 총 자산은 12,000 파운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판사는 만약 피고 회 사가 크고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면 벌금이 50만에서 100만 파운드의 육박하였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법원이 들어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종류 의 사건 중 하나"39)라고 부연하였다.

사) 2014년 Cavendish Masonry Limited 사건

(가) 사실관계

David Evans(23세)는 2010년 옥스퍼드셔(Oxfordshire) Moulsford에 있는 Well Barn Estate에 벽을 세우다가 콘크리트 상인방에서 블록이 떨어져 사망하였다. HSE 감독관 Peter Snelgrove는 웨일즈 남부 Maesteg에 기반을 둔 Cavendish Masonry가 크레인으로 무거운 석회암을 옮길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했다고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 돌은 독자적으로 서 있을 때 잠재적으로 불안정하여 넘어질 수 있었지만, 이를 고정하게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었으며, 크레인에 부착된 리프팅 슬링을 제거하기 전에 충분하게 고정되었어야 했었다. 조사를 행한 보건안전청은 해당 사망이 "완전히 피할 수 있는" 사고였다고 진술하였다.40)

³⁸⁾ R. v Mobile Sweepers (Reading) Ltd Unreported February 26, 2014 (Crown Ct (Winchester))

³⁹⁾ R. v Mobile Sweepers (Reading) Ltd Unreported February 26, 2014 (Crown Ct (Winchester))

⁴⁰⁾ Cavendish Masonry fined for corporate manslaughter, Published 19 November

(나) 재판결과

검찰은 기업과실치사죄와 산업보건안전법 제2조제1항 보건 및 안전 위반죄로 기소하였고 Oxford Crown 법원은 2014년 5월 22일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다. 회사는 150,000 파운드의 벌금과 87,117파운드의 소송비용을 납부할 것을 판결받았다.41)

그리고 이사 개인에 대하여는 기소된 바 없다.

(다) 양형고려요소

법원은 5년 내에 150,000파운드의 벌금을 납부할 것을 판결하였지만, 벌금의 구체적인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인지 여부는 판결문에 명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다. 회사는 매우 소규모였고, 사실상 한명의 대표이사에게 운영이 위임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벌금액은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에서 더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았다.

아) 2014년 R. v PS & JE Ward Ltd 사건: 첫 번째 무죄판결 사례

(가) 사실관계

2010년 7월 회사의 한 직원 Pieton이 견인하던 금속 유압식 리프트 트레일러가 가공 전력선에 닿아 감전되어 사망하였다. 42) 회사는 5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소규모 기업이었다.

(나) 재판결과

회사는 기업과실치사죄와 산업보건안전법 제2조제1항 위반되로 기소되었다. 그러나 기업과실 치사죄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다만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

²⁰¹⁴ https://www.bbc.com/news/uk-england-oxfordshire-30114748 (방문일: 2022. 4. 21)

⁴¹⁾ http://2harecourt.newsweaver.com/regulatorycrimenewsletter/i89gsttc5ck (방문일: 2022. 4. 21)

⁴²⁾ R. v PS & JE Ward Ltd 2014년 6월 6일(Crown Ct(Norwich))

로 50,000파운드의 벌금과 47,932 파운드의 소송비용을 판결받았다.

동 사건은 기업과실치사법이 적용된 사건 중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첫 번째 사례이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이유에는 Norfolk 경찰과 HSE의 조사에서 사건 전날 회사 이사 중 한 명인 Peter Ward가 트레일러를 현장으로 가져가 동일 한 작업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고려되었다. 사망한 근로자인 Pieton이 Ward가 작업을 반복할 때 지시를 따랐다는 증거는 없었고, 해당 근로자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작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Pieton이 전력선에서 작업하도록 훈련을 받지 않았지만 재판 중에 그가 라이브 케이블에서 작업을 다루는 지게차 운전자를 위한 훈련 과정에 참석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기업에게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았다.

자) 2014년 R V MNS Mining Limited 사건

(가) 사실관계

2011년 9월에 Charles Breslin, Philip Hill, Garry Jenkins 및 David Powell이라는 4명의 근로자들은 폭발로 인해 650,000갤런의 물이 Swansea Valley 광산에 범람했을 때 Gleision 드리프트 광산에 갇혀 사망하였다. MNS Mining Limited는 이로 인하여 검찰에 기소되었다.⁴³⁾

동 사건은 보건안전청의 지원을 받은 사우스 웨일즈 경찰에 의하여 조사에 착수하였다. 경찰조사는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하였고, 검찰은 기소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유죄판결에 대한 현실적인 전망이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다.

(나) 재판결과

검찰은 광산의 관리자인 Malcolm Fyfield가 안전규정과 달리 낡고 이전에 침수되었던 이력이 있는 광산 채굴작업을 하게 함으로써 사망사고가 발생하

⁴³⁾ http://www.kennedyslaw.com/files/Uploads/Documents/Health%20and%20Safety /Kennedys%20-%20Defending%20corporate%20manslaughter.pdf

였다고 주장하였고, 그를 4명에 대한 중과실치사혐의로 기소하였다. 최고경영 진이 아닌 자의 행위가 기업과실치사 혐의의 근거가 된 첫 번째 사례로, 법원 은 동법에 따른 최고 경영진(senior management)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 법적으로 검토하였다.

회사는 Swansea Crown 법원에서 2014년 6월 19일, 3개월간의 재판 끝에 기업과실치사법에 따른 기업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다. 또한 광산 관리자인 말콤 파이필드의 보통법상의 중과실치사 혐의 역시 무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광산 관리자 말콤 파이필드가 석탄광 표면을 폭파하도록 명령하였을 때, 그 뒤에 있는 오래된 광산 작업장에 물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광산관리자는 해당 사고 전날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안전검사를 수행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말콤 파이필드는 홍수가 났을 때 광산 아래 있었으며, 작은 터널을 뚫고 나온 후 탈출하여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검찰은 말콤 파이필드가 필요한 안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하였다. 다만, 법원은 광산관리자가 고위 관리자이기 때문에 고위 경영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에 대하여는 별다른 답변을 내지 않았다.

차) 그 외에 2014년 기업과실치사법 적용 사건

(가) R. v Sterecycle (Rotherham) Ltd 사건

동 기업은 2011년 1월 폭발로 인하여 직원이 사망한 후 기업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동 회사는 직원 50명 정도의 소규모 회사로서, 보건과 안전에 대한 회사 체계의 실패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유죄판결을 기업과실치사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44)

⁴⁴⁾ R. v Sterecycle (Rotherham) Ltd, November 7, 2014 (Crown Ct (Sheffield))

경영진이 유죄를 인정하지 않아서 판결에 이르렀고, 500,0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양형의 정도는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서 권장하는 수준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벌금액수이다.

(나) Health and Safety Executive v A. Diamond & Son (Timber) Ltd 사건

동 회사는 2012년 9월 27일 제재소에서 발생한 직원의 사망과 관련하여 기업과실치사 혐의를 스스로 인정하였다. 동 회사는 50명의 직원과 가족이 운영하는 소규모 회사로, 2014년 12월 17일 유죄를 인정하였고, 5년동안 총 75,000 파운드의 벌금 및 소송 비용으로 15,832 파운드를 선고받았다. 45)

양형의 고려요소로는 회사의 최근 손익 수치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과 140만 파운드가 넘는 부채가 있다는 사실이 고려되었다.

카) 2015년 CAV Aerospace Ltd 사건: 자회사 부지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모회사 처벌사례

(가) 사실관계

2013년 1월 26일 47세의 Paul Bowers는 케임브리지 공항에 있는 그의 직장으로 배달된 금속 더미가 그의 위로 쓰러지면서 사망하였다. 조사결과 붕괴원인은 적재량 초과와 공간 부족에 따른 안전 높이 제한을 초과한 채 빌릿을 안전하지 않게 보관한 점이었다. 46)

CAV Aerospace는 더런 부 콘셋에 본사를 두고 있고, CAV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인 CAV 캠브리지가 운영하는 현장인 캠브리지 공항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 모회사인 CAV에어로스페이스는 자회사인 케임브리지 부지 임대등 자회사의 보증인 역할을 하였고, 자체 자금으로 부지의 기계를 구입하였다.

⁴⁵⁾ Health and Safety Executive v A. Diamond & Son (Timber) Ltd, February 3, 2015 (Crown Ct (NI))

⁴⁶⁾ R. v CAV Aerospace Ltd unreported 31 July 2015 (Central Crim Ct)

자회사는 어떤 주문을 받았는지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를 하지 않았다. CAV Cambridge의 유일한 이사(모회사 이사도 종종 CAV Cambridge의 총지배 인으로부터 온 이메일을 무시한다.)는 가끔 이메일을 무시하였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자재 구매, 배송, 보관 관련 모든 운영과 관련한 결정은 모회사가 행한 것이라고 하였다. 조사결과 케임브리지의 관리자들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하기 전 3년 동안 CAV 에어로스페이스의 고위 경영진들과 함께 자재 더미의 추락 위험에 대하여 지속적인 경고를 하였지만 이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보건 및 안전 이사는 MC Farlane에게 빌릿이 야기하는 위험에 대해 강력한 용어로 경고했다. 가장 명백한 해결책들 중 일부는 비용 문제로 거부되었고 CAV 에어로스페이스는 CAV 캠브리지의 직원들에 대한 배려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았다. HSE는 6개의 거의 모든 실수가 회사의 데이터 베이스에 기록되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나) 재판결과: 모회사 기소 이유

검찰은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를 기업과실치사죄와 산업보건안전법 Sec. 3(1) 및 Sec. 33(1)로 기소하였다. 산업보건안전법 Sec. 3(1)이 적용된 이유는 위험이 모회사 자신의 직원이 아닌 자회사의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47)

모회사인 CAV 에어로스페이스는 유죄인정을 하지 않았고, 유죄판결을 통해 28일이 이내에 동시에 지불해야 하는 벌금으로 기업과실치사죄로 인한 벌금 600,000 파운드와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400,000을 부과하였다. 또한 125,000 판운드의 소송비용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다.

본 판결에서 자회사가 아닌 모회사가 벌금을 부과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관리구조 면에서 과잉 재고의 문제는 CAV케임브리지에 의해 확인되었지만, CAV에어로스페이스의 참여 없이는 이 문제를 완화할 수 없었다. 구매주문,

⁴⁷⁾ http://www.cps.gov.uk/news/latest_news/cav_aerospace_ltd_convicted_of_corpor ate manslaughter/

납품 등의 사항은 모회사가 책임지는 경영구조였고, 결과적으로 자회사는 발 언권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자회사는 자체 재무부서가 없어서 회사의 재무운 영은 지배기업인 모회사가 맡았고, 자회사의 의사결정 독립성을 더욱 떨어뜨 리고 지배기업인 모회사와 종속기업인 자회사의 분리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둘째, 사건 이전에도 CAV에어로스페이스에 기록된 6건의 근접 누락보고가 있었고, 그 중 어떠한 것도 조치나 위험성평가가 취해지지 않았다. 검찰은 모회사인 CAV에어로스페이스가 "명백하고 명확하며 반복적인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듣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모회사를 기소하였다.

셋째, CAV 에어로스페이스는 임상시험에서 개선 기준이 적용 가능한 기준에 미달하고 심각한 부상이 예상된다고 인정하였다. 다만 경고와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이류를, 자신들이 CAV케임브리지 직원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그와 같은 안전의무는 자회사 책임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자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너무 단순한 견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모회사(지배기업)가 자회사(종속기업)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고려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다.48)

- 종속기업의 경영진과 종속기업의 운영상 또는 재무상 의사결정이 지배기 업으로부터 어느 정도까지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활동에 대하여 재무지배력을 포함하여 어느 정도의 지배력을 행사하는지 여부
- 지배기업이 종속적 수준에서 작업조건을 가시적으로 파악하거나 제어 조 치와 관련한 하자를 인식하고 있는지 여부

⁴⁸⁾ Burges Salmon, Parent company liable for safety breaches of its subsidiary, 2015/12, 1면 https://www.burges-salmon.com/-/media/files/publications/open-a ccess/parent company liable for safety breaches of its subsidiary.pdf

- 그와 같은 것들이 자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배기업이 보건과 안전 기능을 감독하고 있는지 여부
- 모회사가 자회사와 같은 업종인지 여부
- 모회사가 특정 산업의 보건 및 안전 관련하여 우수한지 여부
- 모회사 수준과 자회사 수준의 이사들 사이에 중첩이 있는지 여부
- 모회사가 그룹 단위로 적용하는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그것이다.

(다) 양형고려요소

판사는 궁극적으로 비용절감을 사고 악화 요인으로 고려하지는 않았다. 다만 가중요서로서 위험방치의 긴 기간, 안전의무위반의 수준 및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한편 감경(완화) 요소로서는 수사협조, 시정조치, 사망자 가족에 대한 보험금 이상의 손해배상 지불, 우수한 안전 관련 기록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많은 완화 요인이 고려되었는데, 구체적으로 회사가 새로운 근무 시스템을 위반한 직원들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가장 중징계는 해고)를 내렸다는 점과 근무 관행에 중대한 변화를 가하였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이행하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였고, 사망한 바우어스의 유족들에게 지원과 상담을 제공하고 사망자와 그의 가족이받을 수 있는 손해나 기타 지급에 추가하여 지불하였다. 그리고 회사가 그 이전에는 아무런 사전 기소나 강제 조치를 받은 바 없이 양호한 보건 및 안전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또한 관리자들이 현장에서 어떠한 변경도 할 수 있다는 점과 보건과 안전에 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받았으며, 고위 경영진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보건과 안전에 대한 태도가 전반적으로 좋았다는 점에 양형감경의 요소로 고려되었다.

다만 기업과실치사에 부과되는 양형위원회 지침에 따라 50만 파운드 미만이 될 수는 거의 없었고, 법원은 다만 회사의 규모가 큰 반면 당시로서 수익이 크지 못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그 외에 공표명령이나 시정명령은 부과되지 않았고,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타) 2016년 Monavon Construction Ltd 사건: 2015 양형기준 최초 적용 사례

(가) 사실관계

Monavon은 2013년 10월에 런던 유스턴 근처의 새로운 지하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부지에 보수 공사를 하고 있었다. 공사 기간동안 부지 주변에는 외곽 가장자리 보호울타리는 설치되었지만, 주위에 아직 금속 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다.

2013년 10월 19일 새벽, Gavin Brewer와 Stuart Meads는 그 둘중 한명이 다른 사람을 건축공사장 주위의 임시울타리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몸싸움을 했던 것이 행인들과 지역 CCTV에 의해서 목격되었다. 그리고 임시울타리가 무너져서 둘 모두 4M 앞부분이 드러나지 않은 우물 아래로 떨어졌다. 두사람 모두 머리와 목에 중상을 입었고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49)

(나) 재판결과

회사는 기업과실치사법에 따라 두 건의 기업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보건 및 안전 위반으로 한번도 유죄판결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소규모의 가 족 경영 건설회사인 피고인은 산업보건안전법 위반과 두 건의 기업과실치사 혐의에 대하여 유죄인정을 하였다.

회사는 기업과실치사죄 두 개에 대하여 각각 25만 파운드,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로 50,000 파운드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23,653 파운드의 기소비용 지불명령이 내려졌다. 법원은 공표명령도 부과하였다.50)

⁴⁹⁾ R. v Monavon Construction Ltd, 27 June 2016 (Central Crim Ct)

⁵⁰⁾ DAC BEACHCROFT, 2016/10/4. https://www.dacbeachcroft.com/es/gb/articles/2016/october/first-firm-to-be-s entenced-under-new-corporate-manslaughter-sentencing-guidelines-is-fined -550-000/

(다) 양형고려요소

동 판결은 2016년 6월 27일 선고됨으로써, 2016년부터 시행되는 2015 양형기준이 적용된 최초의 사례이다.

동 범죄는 카테고리 A범주의 중대범죄로 판단되었으며, 부과된 벌금 총 550,000파운드를 2년 내에 지불할 것을 명령하였다.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카테고리를 A범주로 한 이유는 경비가 허술한 조명 우물에 의하여 심각한 상해의 위험성이 예측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 달 이상 이것이 해결되지 않았고, 현장 부근에 행인들(footfall)이 상당하였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다만 감경요인으로서 회사의 안전관련 기록이 양호하고, 과거의 기소 전력이 없는 점, 사고후에 취한 구제조치 등을 고려하였다.

회사 재무상태 면에서는 매출이 2백만 파운드 미만인 소규모 기업이었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Worsley 판사는 CPS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회사 계정의 신뢰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판사는 의무 위반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따라 기업 과실치사 건당 50,000파운드의 신용을 회사에 부과하였다.

파) 2017년 Koseoglu Metal works Ltd 사건⁵¹⁾ : 하나의 사건으로 두 기업이 처벌된 사례

(가) 사실관계

Firat와 Ozgur Ozdil이 친구 Kadir Kose와 그의 회사 Koseoglu Metal Work를 고용하여 Ozdil Investments가 소유한 Ozdil House 창고의 지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산업보건안전청(HSE)와 Harlow District Council은 Ozdil Investments에게 수리 작업과 관련된 위험과 추락방지 그물망과 같은 안전 조치를 제공할 필요성에 대해 경고했지만 Firat와 Ozgur Ozdil은

⁵¹⁾ Health and Safety Executive v Koseoglu Metal works Ltd, 19 May 2017 (Crown Ct (Chelmsford))

Kose와 Koseoglu Metal Work에게 그러한 예방 조치없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5년 63세의 Nikolai Valko가 Ozdil 건물 지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변색된 채광창을 밟은 후에 땅에 떨어졌고, 심각한 머리부상을 입은 후 이송되었으나 병원에서 사망하였다.52) 당시 채광창이 있는 지붕은 흙과이끼로 덮여 있었고, 안전망이나 하네스, 안전모, 사다리 등도 없었다.

(나) 재판결과

Essex에 본사를 둔 부동산 회사인 Ozdil Investments Limited의 이사 Firat Ozdil과 Ozgur Ozdil과 건축 금속 세공 회사 Koseoglu Metal Work Limited의 단독 이사 Kadir Kose는 2015년 4월 Essex의 창고에서 Nikola Valkov가 사망한 후 산업보건안전법 Sec. 37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또한 회사 Ozdil은 기업과실치사죄와 산업보건안전법 Sec. 3(1) 위반죄로 기소되었고, 회사 Koseoglu는 기업과실치사죄와 산업보건안전법 Sec. 2(1)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2016년 9월 첼름스 포드 크라운 법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Koseoglu Metal Work는 유죄인정을 하였다. 동 회사의 이사 역시 유죄인정을 하였다. 반면 Ozdil Investments와 해당 이사는 범죄사실 인정을 거부하였다. 2017년 2월, 4주간의 재판 끝에 두 기업과 이사들은 모든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Ozdil Investments는 기업 과실 치사 범죄로 500,000 파운드, HSWA 위반에 대해 160,0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또한 55,115.34의 기소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Koseoglu Metal Work는 기업 과실치사혐의로 300,000 파운드, HSWA 위반으로 100,0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

⁵²⁾ HSE, Defendant details - Koseoglu Metal Work Limited, https://resources.hse.gov.uk/convictions-history/defendant/defendant_details.asp ?SF=DID&SV=4396286

았다. 또한 21,236의 기소비용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Ozdil Investments Limited의 이사 Firat Ozdil은 1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Ozgur Ozdil은 1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Koseoglu Metal Work의 단독 이사 Kadir Kose는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3명 모두 10년간 회사의 이사 자격을 박탈당하였다.

(다) 양형고려요소

법원은 철강계단 및 발코니와 같은 건축금속세공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Koseoglu 회사가 루핑 작업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점과 Kose가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수행하지 않은 점 및 고용한 직원을 교육 없이 현장에 보낸 점을 확인하였다.53)

두 회사 모두 기업규모는 양형기준 2단계상 기업규모는 영세기업(Micro organisation)에 해당하며, 위반범주 카테고리는 A에 해당하였으므로 450,000 파운드가 시작지점이었다. 따라서 카테고리 범위는 £270,000 - £800,000 내에 있었다. 그러나 Ozdi의 벌금은 시작지점보다 높았지만 카테고리 범주 안에 있어서 양형기준에 부합하였다. 법원은 회사와 이사들이 산업 안전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평가, 서류작업, 비계, 주행라인, 안전보드, 하네스 및 안전망을 제공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다. 또한 그들이 근로자 사망하였을 당시 반성하지 않은 점고 고려하였다.

⁵³⁾ British Safty Council, Safe Management, 2017/5/23, https://www.britsafe.org/publications/safety-management-magazine/safety-management-magazine/2017/three-directors-jailed-over-workers-roof-fall-d eath/ (방문일: 2022, 4, 27)

(3)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후 10년간 사건의 분석

가.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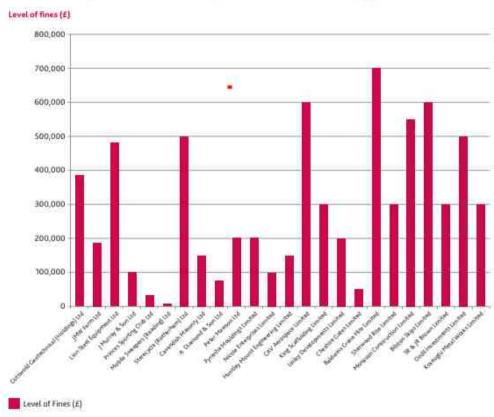
기업과실치사법이 최초 적용될 때에는 기업이윤의 250%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목이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후 두 건은 벌금을 선고할 당시이미 영업폐쇄를 하였으므로 벌금액이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없고, 벌금으로 인하여 실제로 영업파산에 이른 경우는 최초의 판결 한 개에 불과하다. 그런데 해당 판결은 아래의 표에서 비교하는 바와 같이 벌금액수 자체는 많지 않은 편이다. 다만 해당 기업 자체가 매우 소규모의 영세기업이었기 때문에 영업액을 초과하는 벌금액이 산정되었을 뿐, 근로자 사망이라는 결과를 두고 본다면 벌금액 자체가 과도한 것은 아니었다.

일부 판결에서 법원은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재해의 심각성을 경고하면서 벌금액이 예방의 효과를 가져야 함을 판시하였으나, 동법이 추구하였던 대형 사고에 대한 판결은 찾아볼 수 없다.

다음은 2008년 법시행 이후 2017년까지 10년간 기업과실치사죄로 기소된 사건의 벌금액수 비교표이다.54)

⁵⁴⁾ Pinsent Masons,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Ongoing prosecutions and verdicts, IOSH, 2017/5, 23면 인용.





나. 이사 처벌의 실태와 영국 내의 평가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이후 평균적으로 10개의 영국 사건 중 8개의 경우, 이사 개인은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 및 보통법(Common Law)상의 중과실 치사죄로 회사와 함께 기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비판하는 견해가 있다.55) 이에 따르면 동법 제정 전에는 과실치사죄를 범한 법인격을 찾기 위해서 법원은 동일성이론에 따라 회사의 "지휘하는 마음과 의지 (directing mind and will)"의 실체로서 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할 필요가 있

⁵⁵⁾ 이하의 내용은 Jocelyn Ledward, Corporate manslaughter: more and larger companies are due to pay the penalty, 1-2면 참조. https://www.qebholliswhiteman.co.uk/cms/document/nfdc_corporate_manslaughter. pdf

었지만, 동법 제정 이후에는 어떤 개인도 회사의 과실치사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10년간의 기업 주체에 대한 유죄판결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5개의 개인에 대한 중과실치사죄의 기소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과실치사죄에 대한 개인들의 유죄판결은 없었다.

또한 회사가 기업과실치사죄 유죄판결을 받았을 동안, 13명의 개인 이사가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로 기소되었지만 2명만이 유죄를 인정했고, 1명은 배심원단에 의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것은 집행유예였지만, 보건 안전 이사에게 직장 관련 사망에 따른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으로 즉시 9개월 형을 선고한 사례가 한 건 있었다.

핵심사항 중 하나는 이러한 무죄 판결 중 14건(4건의 중과실치사죄와 10건의 산업보건안전법위반죄)이 배심원들의 결정이 아니라 검찰이나 판사가 기소 후 기업의 유죄인정에 따라 개인에 대한 기소를 중단시켰다는 점이다.

개인에 대한 성공적인 기소 중 어느 것도 진정으로 고위 경영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사망에 이른 것은 아니다.50 예를 들어, Pyranha Moldings Limited(산업용 오븐 도어가 자동으로 닫힌 후 직원이사망한 경우)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은 기술 책임자였다. 책임자가 유죄판결을 받은 근거는 안전하지 않은 비준수 설계였다. 개인이 유죄를 인정한두 사건에서 이들은 아주 작은 회사의 단독 이사 또는 소유주였다. 판사들은 개인의 행위가 집단적인 기업 경영의 실패에 대한 광범위한 그림의 일부인 경우에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꺼려하는 듯 하다. 보건 및 안전의정책과 실천에 있어서도 경영자 또한 개인보다는 기업 주체의 기소를 선호한다. 실무적으로도 개인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는 증인으로 협조할 의향이나 그러한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기소 사건에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고 한다.

⁵⁶⁾ Jocelyn Ledward, 앞의 논문, 2면.

(4) 최근 사례 분석

가. 2017년 Grenfell Tower 화재사건: 대형참사임에도 기소를 못하고 있는 사례

가) 사실관계

최근에 영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2017년 Grenfell Tower 화재사건의 경우, 72명이 해당 사건으로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발생한지 5년이지난 2022년 현재까지도 형사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17년 9월 19일 런던의 23층짜리 그렌펠 타워는 화재로 전소하였고, 해당 화재를 조사하였던 경찰은 개인들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 뿐만 아니라 그렌펠 타워를 운영하던 조직에게 기업과실치사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하였다.57)

당시의 공개조사에 따르면 막을 수 없는 화재 확산의 핵심 원인은 당시 보수 공사 중에 타워의 외벽에 장착된 가연성 피복 시스템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당시 조사의 의장을 맡았던 Martin Moore-Bick 판사에 따르면, 청문 당시 증인으로는 보수공사의 주계약자인 개인 소유의 회사 Rydon Maintenance Ltd의 전·현직 직원들 및 피복재를 취급하는 하청업체인 Harley Facades Ltd, 해당 건물의 세입자들을 관리하던 Kensington and Chelsea Tenant Management Organisation (KCTMO) 등이었다. 증인들은 조사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진술한 그 어떤 것도 자신에 대한 기소를 촉진하는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약속을 요구하였다.58)

해당 건물은 켄싱턴 자치구와 첼시 자치구가 소유한 사회주택으로, 일부 생 존자들은 자신들이 인종차별을 받는 저소득층 공동체라는 점에서 공식적인

⁵⁷⁾ In Grenfell Inquiry, U.K. Weighs 2 Types of Manslaughter Charge https://www.nytimes.com/2017/09/19/world/europe/uk-grenfell-manslaughter.ht ml (방문일: 2022. 4. 24)

⁵⁸⁾ REUTERS, Witnesses seek protection from charges over London's deadly Grenfell fire, 2020/1/29, https://www.reuters.com/article/us-britain-fire-grenfell-idUSKBN1ZS1TS (방문일: 2022, 4, 24)

무관심이 비극에 일조하였으며, 건물에 화재위험이 있다는 주민들의 경고가 무시되었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조사 경과

2021년 12월 인터뷰에서도 경찰은 해당 타워 보수의 중심이 된 최대 36개 업체의 역할을 조사하고, 가연성 외장재와 단열재의 설치 등에 있어서 인과성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화재와 관련하여 범죄혐의를 고려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결론지어지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지만,59) 현재도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문과 조사는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그린펠 타워 조사팀은 2022년에도 매월 조사내용을 공식적으로 발간하고 있다.60) 해당 조사에 따르면 2021년 10월 21일 기준으로 1단계 조사에서 20,752건의 문서가 공개되었고, 2020년 시작된 2단계 조사에서 298,193개의 문서를 공개하여 총 318,945건의 문서가 생성되었다고 한다. 다음으로 2022년 4월 이후에는 화재 직후 지방 및 중앙 정부의 대응을 조사한다고 한다. 정부기관 역시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대상이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함의

다만 동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사건조사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그 동안 조사내용과 결과를 투명하게 매월 단위로 업로드 함으로써 사건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특히 조사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조사가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

⁵⁹⁾ BBC, Grenfell Tower survivors say criminal charges are taking too long, 2021/12/14

https://www.bbc.com/news/uk-england-london-59657356 (방문일: 2022. 4. 25) 60) Grenfell Tower Inquiry,

https://www.grenfelltowerinquiry.org.uk/news/march-2022-newsletter (방문일: 2022. 4. 25)

사에 경중이 없음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와 같은 조사방법과 정보공개는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의 운용에 있어서도 많은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대법원에서 사건이 확정될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할수록 시간의 지연으로 인한 사건의 중대성은 희석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건조사 홈페이지를 사건별로 운영하 고 해당 조사내용을 공개한다면,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인한 사법불신을 방 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 2021년 R v Wood Limited Treatment 사례⁶¹⁾: 항소심 무죄판결 사례

가) 사실관계

2015년 7월 17일 Dorothy Lorraine Bailey, Derek William Barks, Derek Moore, Jason Roy Shingler는 직장에서 폭발사고로 사망하였다. 작업장소는 Bosley Mill이고 WTL(Wood Treatment Ltd.)이 운영하는 작업장으로, Boden이 최고 경영자(Managing Director)이다. Mill은 목재를 분쇄하고 여러 등급의 목재가루와 먼지를 분쇄하는 작업을 하며, 원료는 다양한유형의 목재, 부스러기, 톱밥, 오프컷 등이며, 목재 먼지는 DSEAR로 알려진위험물질 및 폭발성 대기 규정 2002(the Dangerous Substances and Explosive Atmospheres Regulations 2002) 2(c)에 정의된 "위험물질 (Dangerous Substances)"에 해당한다. 목재먼지는 특정 조건에서 폭발할수 있는데, 폭발이 공기 중 나무먼지 구름의 점화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근로자들이 사망한 사건이었다. 공장 내에서는 1차 먼지폭발로 장비가 고장나고, 고전압 수배전반의 장비 고장이 발생하면서 공장 내 먼지구름을 방출하여 발화원으로 인한 폭발이 공장 내에서 이전에 정착된 먼지

^{61) [2021]} EWCA Crim 618 Case No: T20197350 https://www.bailii.org/ew/cases/EWCA/Crim/2021/618.html (방문일: 2022. 4. 22)

를 휘저으면서 보다 큰 2차 먼지 폭발로 이어졌다.62)

검찰이 증인으로 선정한 화재와 폭발에 대한 전문가인 Andrew Summerfield 에 따르면 폭발에 필요한 조건으로 "화재 삼각형(fire triangle)"이 있는바, 불을 피우거나 연소하기 위한 요소로서 (1) 연료, 목재 먼지, (2) 연료를 산화시키기 위해 산소를 제공하는 공기 및 (3)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점화원이며,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제한하고 손장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공장에서의 산업 공정의 설계 및 운영이 WTL과 Boden의 과실로 인해 폭발 위험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항소심 재판의 쟁점

항소심에서는 WTL과 Boden에 대하여 주장된 과실행위가 실제로 일어난 폭발을 일으키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1심에서 판결한 판사의 결론이 옳은지 여부이다. 1심에서 WTL은 기업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고 기업이 고위 경영진이 활동을 관리하거나 조직하는 방식과 그 활동이 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으로 인하여 관련 의무에 중대한 위반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였다고 기소하였다. 대표이사인 Boden 또한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핵심은 인과관계의 판단이었으며, 인과관계 문제는 (1) 과도한 먼지의 축적: 메인 밀의 밸브 주위의 깊은 곳, 파이프 작업, 선반 및 기계 상단의 몇 인치 정도의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쌓인 먼지, (2) 먼지의 위치(높은 수준인가, 바닥 수준인지, 정기적인 노출 지점, 공수, 전기 캐비닛 및 전기 모터등), (3) 먼지가 쌓이는 속도, (4) 폭발가능한 미세먼지인지 여부(먼지의 종류)의 판단이었다. 예컨대 (1) 과도한 먼지의 축적과 관련하여서는 공정 기계류에서 누출되었고 봉쇄가 실패되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i) 하수 유지보수

⁶²⁾ WOOD TREATMENT LTD & ANOR, R. V https://www.casemine.com/judgement/uk/60a205cf2c94e04a0f2c9e67 (방문일: 2022, 4, 22)

제체의 일환으로 비효율적이고 부적절한 수리가 있었는지, (ii)투자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 부품의 이용이 불가능하였는지, (iii) 낮은 품질의 원료를 도입하였는지, (iv) RJW 엔지니어링이 실시한 진동분석 및 APS의 고장에 대한 고소 자와 같이 적절한 자격을 갖춘 타사의 경고 및 조언에 응답하지 않았는지, (v) 전문 유지보수를 위하여 승인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회피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전문가 증인인 Summerfield와 Neil Ketchell은 재판 전에 이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보고서 내에서 충분한 양의 먼지가 있었고, 기계 고 장이 WTL 기업과 최고 경영진 Boden의 과실행위 또는 누락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였으나, 다량의 먼지가 축적되도록 허용한 과실이 폭발을 일으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폭발의 너무 강력하여 Mill의 대부분과 공장을 파괴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폭발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조사는 쉽지 않았다. 그리고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조사에 개입하였으마, 폭발이 일어난 메커니즘을 식별할 수 없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즉 목재먼지폭발이 있었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검찰은 보슬리 밀의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그리고 왜 시작되었으며, 이후 어떻게 Mill의 붕괴와 각 사망자의 죽음을 초래하였는지 그 인과성을 입증하지 못함을 인정하였다. 다만 검찰은 해당 인과성을 입증하지는 못하였지만, 폭발이 어떻게 시작되었을지라도 Boden과 회사의 중과실로 인하여, 공자내축적된 목재 먼지 형태의 연료가 없으면 치명적인 폭발을 초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가설적 인과성을 주장하였다.

다) 항소심 재판결과

1심은 2021년 4월 20일 목재분진폭발의 원인이 된 메커니즘에 대한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측의 중대한 과실과 사망의 원인이 되는 폭발 사이에 인과관계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에 2021년 4

⁶³⁾ 이는 특히 제출된 시나리오 3의 존재가 피고인들이 폭발의 가능한 원인을 배제할 수

월 27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고, 항소법원은 피고인이 답변할 사건이 없다는 메이 판사의 승인을 지지하여, 배심원단은 무죄평결을 내렸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WTL이나 Boden의 과실이나 태만에 대하여 진술할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았고, 시나리오 3이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점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시나리오 3이란 위험 수량에 방치된 먼지의 개입을 요구하지 않고, 시스템 내의 단일 고장난 기계로부터 매우 큰 단일의 누출로 필요한 양의 먼지가 폭발에 관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상이다. 폭발 가능한 혼합물은 공기 중에 생성될 것이고, 점화되면 폭발하여 최근에 공정체서 빠져나온 나머지 먼지들을 빨아들일 것이고, 만일 그 양의 먼지가충분히 크다면 이로 인하여 필요한 규모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본 것이다. 이 경우에는 많은 양의 먼지를 해당 작업장 주변에 방치한 것이시나리오 3의 가정 하에서는 폭발을 일으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기때문에, 그와 같은 많은 양의 목재 먼지를 방치한 과실이 결과발생과 인과성이 있다고 입증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 기업에 제기된 4개의 기업과실치사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경영진인 Boden은 2021년 6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8개월, 벌금 12,000 파운드를 선고 받았고 4년간 회사의 이사직이금지되었다. 그리고 WTL은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75,000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사건은 기업과실치사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인과성 판단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64)

없다는 것을 의미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https://beale-law.com/article/increased-penalties-for-health-and-safety-offences/ (방문일: 2022. 4. 22)

⁶⁴⁾ KINGSLEY NAPLY, Review of recent corporate manslaughter cases: Deco-Pak, Bosley Mill, Aster Healthcare, 2022/2/2, https://www.kingsleynapley.co.uk/in sights/blogs/criminal-law-blog/review-of-recent-corporate-manslaughter-c ases-deco-pak-bosley-mill-aster-healthcare (방문일: 2022. 4. 22)

다. 2021년 W H Malcolm Limited 사건⁶⁵⁾: 가장 고액의 벌금형 선고 사례

가) 사실관계

2017년 6월 Rugby 인근의 Daventry 국제철도 화물터미널(Daventry International Rail Freight Terminal) 운영업체인 WH Malcolm Limited 가 운영하는 현장에서 11세 소년 Harrison Ballantyne이 감전으로 사망하였다.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축구공을 회수하기 위하여 화물터미널 창고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정지되어 있는 화물차 위에 올라갔을 때, 머리 위의 케이블에서 치명적인 전기 충격을 받았다. 구급대들이 도착하여 구조를 하였지만, 그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철도 규제 기관인 철도 및 도로국(ORR)이 말콤 회사를 기소하였고, 2021년 7월 30일 노샘프턴 형사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나) 재판결과

회사는 기업과실치사법 및 산업보건안전법 제3조제1항 위반죄로 기소되었다. 검찰은 회사가 25,000 볼트의 전압이 통전되는 가공선 장비와 화물이동이 빈번한 장소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 및 회사가 통전되지 않는 장소가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일상적으로 화물칸을 전기선 아래에 배치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접근할수 없는 고압 케이블 근처에 쉽게 접근할수 있게 하였음을 진술하였다.

철도담당 수석검사인 Ian Prosser은 W H Malcolm이 무단 접근을 방지하지 못하고 완전히 피할 수 있는 결과를 위험관리미비로 인하여 초래된 점에 책임을 지는 것은 정당하며, 철도업계가 무단침입방지와 아동위험교육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을때 이와 같은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유죄판결

⁶⁵⁾ British Safety Council, Safety Managrment, https://www.britsafe.org/publica tions/safety-management-magazine/safety-management-magazine/2021/rail-co-fined-65m-after-boy-killed-by-overhead-power-line/ (방문일: 2022. 4. 24)

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66

회사는 기소된 기업과실치사죄와 산업보건안전법 3(1) 위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1999년 작업장 보건 및 안전관리규정 제3조 위반(피고용인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험에 적절하고 충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67)도 인정되었고, 6,500,000파운드의 벌금과 241,463.60 파운드의 기소비용 및 120 파운드의 범죄피해자배상금(surcharge)의 지불을 명령받았다.

다) 양형고려요소

해당 벌금액수는 해트필드 철도 추락사고 이후 밸푸어 비티 레일 인프라 서비스사에 부과된 두 회사의 각각 350만 파운드, 750만 파운드의 벌금⁶⁸⁾ 이래 최대 규모의 건강·안전 벌금으로 추정된다.

피고 물류회사는 연간 매출이 지속적으로 200,000,000 파운드를 초과하였다. 판사는 피고인의 책임이 높다고 판단하여 최종 양형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서, 피고인의 과책이 높음(the defendant's culpability was High), 피해범주 1(수준 A 해악의 높은 가능성)(Harm Category was 1 (a high likelihood of Level A harm))을 적용하고, 위험에 노출된 어린이의 수를염두에 두어 2단계에서 양형범주를 위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Whirlpool Appliances Ltd [2018] 1 Cr.App.R. (S.) 44. 사형선고의

⁶⁶⁾ ORR, Press release, 2021/7/30, https://www.orr.gov.uk/search-news/company-fined-after-death-11-year-old -boy-freight-terminal (방문일: 2022. 4. 23)

⁶⁷⁾ the Management of Health and Safety at Work Regulations 1999 (failing to undertake a suitable and sufficient assessment of the risks to the health and safety of persons not in their employment)

^{68) 2000}년 영국 Hatfield 지역에서 열차 충돌사고로 4명이 사망했다. 사고의 책임을 물어 네트워크 유지 및 보수회사인 Balfour Beatty의 경영진에 대하여 기업과실치사에 관한 혐의로 기소를 하였으나 임원 모두가 무죄판결 되었다. 검찰은 ① 기업에 대한 보통법상 과실치사죄, ② 최고 경영진의 보통법상 과실치사죄 ③ 임원의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로 기소하였지만 ①, ②에 대한 기소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③의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만 인정되어 관련 두 회사가 각각 350만 파운드와 750만 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영향을 고려하여, 벌금의 시작점을 400만 파운드로 이동시켰고 그 범위도 260만 마운드에서 1.000만 파운드로 이동시켰다.

판사는 동 회사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것 이상의 구조 작업을 수행하였음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가 죽기 몃 년 전에 확인된 수준을 수행하지 못한 설명할 수 없는 실패와 저조한 시행 이력, 그리고 피해자의 죽음이 현장에 있었던 적어도 세 명의 아동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도 650만 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고려하였다.69)

(5) 영국 내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평가

가. 주요 사건의 기업과실치사법 적용 결과 다음은 주요 사건의 기업과실치사법 적용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연번. 연도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1. 2011년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사건	근로자가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시험광구에 혼자 들어갔다가 추락하여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385,000 파운드 벌금을 10년간 38,500 파운드 분할 납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위반죄의 기소는 배심원들의 혼동을 우려하여 공소취소)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 및 산업보건안전법 제37조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말기암으로 인하여 소송중지	2007년 기업과실치사 법 최초 적용 사례
2. 2012년	JMW Farms Limited 사건	근로자가 지게차 금속통 내부를 세척하다가 추락하고, 그 위로 쓰레기통이 떨어져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피고회사의 유죄인정(guilty plea)으로 벌금액 25% 감액 187,500파운드 벌금을 6개월 유예납부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회사의 유죄인정에 의하여 재판전 기각	두 번째 적용 하급심 사례

⁶⁹⁾ six pump court, 2021/08/02, https://www.6pumpcourt.co.uk/news/6-5-million-fine-for-logistics-company-after-tragic-death-of-an-11-year-old-boy/ (방문일: 2022. 4. 25)

연번. 연도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3. 2021년	Lion Steel Equipment Ltd 사건	근로자가 산업시설 지붕에 올라갔다가 1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산업보건안전법 제37조 위반죄,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로 기소, 이사 1명은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와 중과실치사죄 무죄, 다른 한명은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 기소 부분은 법인과실치사죄 유죄인정 조건 취하	
4. 2013년	J Murray & Son Ltd 사건		plea)벌금액 1/3 감액하여 5년간	이사의 중과실치사죄 기소는 회사의 유죄인정으로 취하	
5. 2013년	Prince's Sporting Limited 사건	프린스 스포츠 클럽에서 학생이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견인하던 보트에 치여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유죄인정(guilty plea) 134,579.69 파운드 벌금		기업 전체 자산 가치에 해당하는 벌금액 부과. 기업은 판결전에 폐쇄됨. 예방효과를 위해 공표명령 부과
6. 2014년	Mobile Sweepers (Reading) Ltd 사건	근로자가 도로 청소 트럭 아래에서 수리작업을 하다가 깔려서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8,000 파운드 벌금	산업보건안전법 제2조 위반죄, 183,000 파운드의 벌금을 12개월이내 납부. 5년간 이사자격 박탈	
7. 2014년	PS & JE Ward Ltd 사건	근로자가 견인하던 금속 유압식 리프트 트레일러가 가공 전력선에 닿아 감전되어 사망	무죄		첫 번째 무죄판결 사례
8.	MNS Mining	광산이 폭발하여	무죄		다수 근로자

연번. 연도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2014년	Limited 사건	650,000갤런의 물이 범람한 결과 드리프트 광산에 갇혀 4명의 근로자가 사망			사망사례
9. 2015년	CAV Aerospace Ltd 사건	케임브리지 공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배달된 금속더미가 위로 쓰러지면서 밑에 깔려서 사망	모회사가 기업과실치사죄로 인한 벌금 600,000 파운드,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400,000 파운드 납부		자회사 부지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모회사를 처벌한 사례
10. 2016년	Monavon Construction Ltd 사건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부지의 보수공사 중 금속난간이 고정되지 않아서 다툼을 하던 두 명의 근로자가 무너진 임시울타리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	추락한 두명에 대한 두 건의 기업과실치사죄 및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 기업과실치사죄 각 25만 파운드씩 50만 파운드, 산업보건안전법위반죄 50,000파운드		2015년 개정되어 2016년 2월 시행된 양형기준이 최초 적용된 사례. 공표명령이 부과된 사례
11. 2017년	Koseoglu Metal works Ltd 사건	창고 지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추락방지 그물망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Ozdil Investments는 해당 건물 소유주, Koseoglu Metal Work는 건물수리업체	Ozdil Investments는 기업 과실 치사 범죄로 500,000 파운드, HSWA 위반에 대해 160,000 파운드의 벌금. Koseoglu Metal Work는 기업 과실치사죄 300,000 파운드, HSWA 위반으로 100,000 파운드의 벌금	Ozdil Investments Limited의 이사 Firat Ozdil는 12개월의 징역형, Ozgur Ozdil은 10개월의 징역형, Koseoglu Metal Work의 단독 이사 Kadir Kose는 8개월의 징역형. 3명 모두 10년간 회사의 이사 자격 박탈	하나의 사건으로 두 기업이 처벌된 사례

연번. 연도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12. 2017년	Grenfell Tower 화재사건	런던 시내 사회주택인 Grenfell Tower가 전소하여 72명 사망			5년이 된 2022년에도 형사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
13. 2021년	Wood Limited Treatment 사례	목재분쇄를 하는 작업장에서 화재폭발로 인하여 4명의 근로자가 사망		최고 경영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8개월, 벌금 12,000 파운드를 선고 받았고 4년간 회사의 이사직 금지	항소심 무죄판결 사례
14. 2021년	W H Malcolm Limited 사건	국제철도 화물터미널 운영업체인 피고회사에 11살 소년이 축구공을 회수하기 위하여 접근하였다가 머리 위 케이블 전기충격으로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산업보건안전법 제3조제1항 위반죄 6,500,000 파운드 벌금 및 120 파운드 피해자 과징금(surcharge)		기업과실치사 법 적용으로 가장 고액의 벌금을 판결한 사례

나. 기업과실치사법 적용 이후 사회적 비판

이하의 내용은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해죄(CMCHAct)에 따라 11번째 유죄판결에 이어 선고가 내려졌던 R. v Pyranha Mouldings Ltd Unreported January 12, 2015 (Crown Ct (Liverpool))에 대한 평론의 일부이다.70) 동 평론에서는 기업 살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동법이 제18조 No Individual Liability(면책규정)를 통해 고위 경영자와 이사에게 보장된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노동현장에서의 사망에 대한 기업의 면책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데 실패하였다고 평가한다. 해당 면제규정은 실제로 입법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던 기업의 동법 제정 반대를 잠잠하게

⁷⁰⁾ Steve Tombs, "Corporate Killing With Impunity", International Centre for Comparative Criminological Research, The Open University, 2015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이 일반적이다.

또한 기업과실치사법의 한가지 효과로서 기업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포기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실제로 2011년부터 기업과실치사법이 적용된 4건의 유죄판결 중에서 3건은 기업 과실치사 기소를 위한 결정이 중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개인 이사들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 근거라고 한다.

따라서 일부 법률 평론가들은 이미 기업 과실치사 혐의 인정에 대한 '미끼'로 개인 이사들에 대한 고발 위협을 새로운 추세로 언급하였고, 검찰이 개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회사로부터의 제의는, 교도소 수감의 위험에 직면한 이사들에게 더 매력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유죄 판결에 대한 추가 조사는 법의 두 가지 주요 결함을 드러낸다고 본다. 첫째,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기소된 모든 기업들은 과실치사라는 보통법에 따라 성공적으로 기소될 수 있었던 중소기업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과실치사법이 표면적으로 설계된, 거대하고 복잡한 기업들은 지금까지 그 범위를 벗어났다. 지금까지 확보된 모든 유죄 판결은 단일 사망자를 포함한 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과실치사법의 이면에 있는 주요 의도는 여러 개의 사망 사건을 비롯한 대형 사고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둘째, 판결선고 당시 부과된 벌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CMCHA법의 통과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법에 따른 성공적인 기소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적 지침을 2016년에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벌금이회사 이직률의 백분율 범위 내에서 계산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2007] 지침초안에서 '매우 중요한 후퇴'로 표시되었다. 확정된 지침은 벌금 수준을 정하는 주요 근거는 '범죄의 심각성'과 이에 기여하는 요소들과 함께 매출액과의연관성을 제거하였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벌금은 '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고 징벌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적절한 벌금은 대부분 50만 파

운드 이하로 되지 않으며 수백만 파운드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terecycle [Rotherham] Ltd 사건에서는 재판 시작 시점에 실제 관리 중인 회사에 50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 법에 따른 현행 양형 관행의 빈 곤에 대한 인식은 현재 검토 중인 새로운 일련의 지침 초안을 촉발시켰는데, 이 지침 초안은 비록 제안이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더 큰 규모의 회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벌금과 이직률 사이에 더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고 제안되었다.

영국에서는 매년 최대 5만 명의 노동자들이 치명적인 부상과 업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고용주들에 의한 법적 위반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 연간 총계는 영국에서 기록된 거의 모든 자연사 아닌 다른조기 사망 원인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영국 3개 관할권에서가장 최근에 기록된 600건이 조금 넘는 '관습적'살인 사건 수치들을 적게 보이게 할만 하다. 이러한 점에서 CMCHA법에 따른 유죄판결의 비율은 수사와기소면에서 극적인 실패처럼 보인다고 평가된다. CMCHA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하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려는 상징적 시도로서, 그러나 이는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기업들이 누리는면책특권을 거의 훼손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다. 사회적 비판의 핵심

요약컨대,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사례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가) 기업 기소로 인한 경영진 개인의 면책

동법이 제18조에 "No Individual Liability"를 통해 고위 경영자와 이사에 게 보장된 면제규정을 둠으로써 기업을 처벌할 경우 책임있는 개인이사 또는 경영자의 처벌이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다. 경영자는 대체로 최초에는 중 과실치사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으나, 기업이익을 위해 유죄인정을 함으로써(a guilty plea on behalf of the company) 실제로 재판 전에 기소가 철회

되고 있다.

즉, 기업과실치사법이 적용된 사례에서 거의 대부분 동법을 적용한 기업의 기소와 산업보건안전법 제37조위반을 적용한 이사의 기소가 처음에는 동시에 시작되었지만, 기업의 유죄인정(company's guilty plea)에 비추어 개인인 이사의 기소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기업 기소가 오히려 책임 있는 개인(이사)의 면책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나) 대형 사건에의 적용상 문제점

동법이 대형 산재나 다수인명피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함을 제정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들은 매우 소규모이거나 중소기업에서 의 단일 사망사건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Grenfell Tower사건과 같이 다중사망의 대형 사고에 대하여 기업 과실치사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다 못해서 5년 여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1인 사망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은 건수이지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비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다) 저조한 적용 사례

동법이 현재까지 적용된 건수나 처벌의 양만 본다면 실패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기업과실치사법은 위험형법과 유사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면책특권을 거의 훼손하지 못한다고 본다.

다음은 검찰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동법이 도입된 이후 2008년부터 2019 년까지 기소건수이다.⁷¹⁾

⁷¹⁾ CPS,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Request, Figures regarding prosecutions of Corporate Manslaughter since Feb 2019, 2020/3/5, 2면.

년도	건수	년도	건수
2008	0	2014	6
2009	1	2015	5
2010	0	2016	5
2011	1	2017	1
2012	1	2018	2
2013	5	2019	0

라) 현저히 낮은 벌금액

동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액을 '상한 없는 벌금'이라고 하였으나, 순이익이나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하지 않는 현저하게 적은 벌금액이 부과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응보나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다. 즉, 상한 없는 벌금의의미를 최초의 사건처럼 기업과실치사로 인하여 범죄를 범한 기업이 파산할정도에 이르는 정도라고 해석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한 정도이다.

다만 W H Malcolm Limited 사건에서 6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외에는 매출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벌금액이 부과되었으며, Malcolm Limited 사건 또한 벌금액 자체는 규모가 크지만 실 매출액이 2억 파운드 이상임을 고려할 때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한 없는 벌금의의미가 무색해 진다.

아래의 표는 영국 검찰에 의하여 보고된 각 사건별 벌금액수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양형, 형사재판 절차, 사법부와 관련된 공식통계는 법무부에 의해서 관리되지만, 검찰의 경우 CPS관리 하에 IT시스템 및 수기 기록을통해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기업과실치사법에 따른 기업처벌과 개인 경영진에 의한 보통법상의 중과실치사죄 및기업과 경영진의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가 동시에 기소될 수 있다.

각 기소된 사건들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범죄들에 관하여 기업은 기업과실

치사법, 기업과 개인은 모두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 및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규정 등 관련 규칙, 보통법상의 중과실치사죄가 검찰이 제출한 정식 공소장의 기재 위반범죄가 될 수 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기업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기업들에 대한 정보로서, 해당 기업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혐의와 관련하여 부과된 벌금 총계를 나타내는 표이다.72) 동 표에서는 기업과실치사죄 이외의 범죄로서 H&S는 산업보건안전법을, GNM은 보통법(commin law)상의 중과실치사죄를 의미한다.

기업 이름	기업 H&S 기소 여부	개인 경영진 H&S 및 GNM 기소 여부	판결내용 및 판결 년도	총 벌금 액수 (소송비용 제외) (환산:2022년 기준)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Υ	GNM and H&S.	유죄(Guilty)-2011	£385,000 (약 6억 1490만원)
Lion Steel Equipment Ltd	N	GNM and H&S.	유죄인정(Guilty Plea)- 2012	£480,000 (약 7억 7461만원)
Princes Sporting Club Ltd	Υ	H&S	유죄인정(Guilty Plea)- 2013	£134,579.79 (약 2억 1494만원)
Mobile Sweepers (Reading) Ltd	Υ	GNM and H&S.	유죄인정(Guilty Plea)- 2014	£183,000 (약 2억 9227만원)
PS & JE Ward	Υ		무죄(Not Guilty)- 2014	
MNS Mining Ltd (Fyfields)	N	GNM	무죄- 2014	
Sterecycle (Rotheram) Ltd	N	H&S	유죄- 2014	£500,000 (약 7억 9857만원)
Cavendish Masonry Ltd	Υ		유죄- 2014	£150,000 (약 2억 3957만원)
Peter Mawson Ltd	Υ	GNM and H&S	유죄인정(Guilty Plea) - 2015	£220,000 (약 3억 5137만원)

⁷²⁾ 검찰청, 앞의 보고서, 3-4면 및 2021년 판결을 추가한 것이다. https://www.cps.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2020-foi-disc losure-13.pdf

기업 이름	기업 H&S 기소 여부	개인 경영진 H&S 및 GNM 기소 여부	판결내용 및 판결 년도	총 벌금 액수 (소송비용 제외) (환산:2022년 기준)
Pyranha Mouldings	Υ	H&S	유죄 - 2015	£200,000 (약 3억 1942만원)
Huntley Mount Engineering Ltd	Υ	GNM	유죄인정(Guilty Plea) - 2015	£150,000 (약 2억 3957만원)
CAV Aerospace Ltd	Υ		유죄 - 2015	£600,000 (약 9억 5828만원)
Linley Developments Ltd	Υ	GNM and H&S	유죄인정(Guilty Plea) - 2015	£200,000 (약 3억 1942만원)
Kings Scaffolding Ltd	N		유죄 - 2015	£300,000 (약 4억 7914만원)
Baldwin's Crane Hire Ltd	Υ		유죄 - 2015	£700,000 (약 11억 8000만원)
Cheshire Gate and Automation Ltd	N	GNM	유죄인정(Guilty Plea) - 2015	£50,000 (약 7985만원)
Maidstone and Tunbridge Wells NHS Trust	N	GNM	판사가 무죄선고 - 2016	
Sherwood Rise	Υ	GNM and H&S	유죄 - 2016	£300,000 (약 4억 7914만원)
Bilston Skips Ltd	N	GNM and H&S	유죄인정(Guilty Plea) - 2016	600,000 (약 9억 5828만원)
Monavan Construction Ltd	Υ	H&S	유죄인정(Guilty Plea) - 2016	£550,120 (약 8억 7862만원)
Ozdil Investments	Υ	H&S	유죄 - 2017	Ozdil £660,000 (약 10억 5411만원) Koseoglu £400,000 (약 6억 3885만원)
SR and RJ Brown	Υ	GNM and H&S	유죄 - 2017	£300,000 (약 4억 7914만원)
JTF Wholesale	Υ	H&S	유죄인정(Guilty Plea) - 2017	£1,000,000 (약 15억 9714만원)

기업 이름	기업 H&S 기소 여부	개인 경영진 H&S 및 GNM 기소 여부	판결내용 및 판결 년도	총 벌금 액수 (소송비용 제외) (환산:2022년 기준)
Master Construction Products Ltd	Υ	H&S	유죄인정(Guilty Plea) - 2017	£225,000 (약 3억 5935만원)
Martinisation Ltd	Υ	H&S	유죄 - 2017	£1,200,000 (약 19억 1657만원)
Roofing Consultants Ltd	Υ	H&S	무죄 - 2020	H&S 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000 (약 1억 5971만원)
Ace Waste Haulage Ltd	Υ	H&S	무죄 - 2020	H&S위반으로 인한 벌금 £240,000 (약 3억 8331만원)
Wood Limited Treatment	Υ	GNM and H&S	무죄(항소심) - 2021	
W H Malcolm Limited	Υ	GNM and H&S	유죄 - 2021	£6,500,000 (약 103억 8143만원)

라. 법원의 양형재량에 관한 평가

어떠한 기업이든 벌금의 가장 중대한 결과는 파산일 것이다. 2015년 양형 기준에서는 사업의 중단이 "허용되는 결과(acceptable consequence)"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은 벌금 납부 시간의 유예를 허용하거나 분할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73)에서 법원은 "회사가 청산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판단에 따르면 이는 심각한 의무위반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일(the fact that the company would be put into liquidation would be unfortunate, but in [their] judgment, this was unavoidable and inevitable given the serious breach of duty committed)" 이라고 판결하였다.

⁷³⁾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2011] EWCA Crim 1337; [2012] 1 Cr. App. R. (S.) 26

실제로 법원이 기업과실치사죄를 유죄로 판결할 때에는 이미 의무위반을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그와 같은 파산에 이르게 하는 벌금액을 부과할 것인가는 아무 죄 없는 노동자들의 잠재적인 피해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몇 년간의 벌금 납부를 선고하는 이유가 된다.

양형재량과 관련하여 벌금의 분할납부는 다수의 판결에서 회사의 청산(폐업) 여부를 고려하여 판결되어 왔다. 예컨대, 2013년의 Murray &son Ltd 사건⁷⁴⁾에서도 Weir 판사는 "제출된 계정과 공인회계사의 증거 모두 회사가 번창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주로 이와 같은 농촌 지역에서 고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모든 벌금은 징벌적이어야 하고 회사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해야 한다"⁷⁵⁾고 판시하였다. 이 때문에 징벌적인 벌금액을 부과하되, 분할납부를 통해 회사의 폐업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동 판결에서도 매년 2만 파운드의 벌금을 5년간 분할납부할 것을 선고하였다. 분할 납부의 선고시 회사 직원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는 장래 죄 없는 직원의 해고될 가능성을 벌금 산정에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이로 인한 기업의 도산과 근로자의 직업상실을 벌금액 산정에 상당한 수준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망사건이라 하더라도 인명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아니라는 점은, 동일한 인명사고라 하더라도 벌금액이 다르며, 해당 벌금액 산정시에 기업규모와 재정상태가 핵심요소였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⁷⁴⁾ R. v J Murray & Son Ltd [2013] NICC 15.

^{75) &}quot;careful account of the fact that the accounts presented and the evidence of the Chartered Accountant both indicate that the company is not flourishing and I have no wish to see it forced out of business, principally because it is providing employment in a rural area in these difficult times. Nonetheless the guidelines require that any fine must be punitive and sufficient to have an impact on the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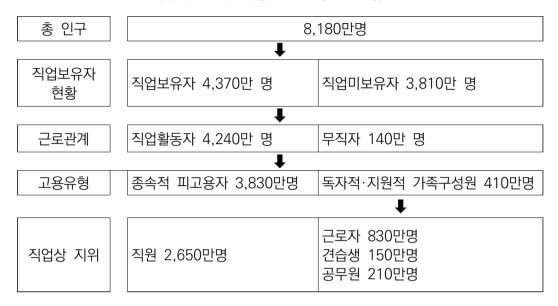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기소하는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던 보통법상 기업과실치사죄가 약 15,000 파운드에서 90,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기업과실치사법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벌금액이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독일

- 1) 개관
- 2) 중대재해 발생 현황
- (1) 독일의 직업활동 인구수

독일의 중대재해 실태를 조망하기 위한 전제로서 독일에서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인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2019년 독일의 전체 인구수는 약 8,180만 명인데, 이 중에서 4,240만 명이 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직업활동을 하는 4,240만명의 90% 이상은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다.

〈독일의 직업활동 인구수(2019년)〉76)



(2) 연령대별 직업활동자 수

독일의 전체 인구 중에서 직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연령그룹이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이러한 연령대에 속한 사람들의 수가 77%에 달한다. 그리고 직업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대는 45세 이상 49세 이하인데, 이들이 전체 45세 이상 49세 이하 연령대의 약 88%에 달한다. 그리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연령대에 속하는 노령층의 직업활동 인구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의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인구 중에서 직업활동을 영위한 사람들은 62%에 달했다.

⁷⁶⁾ 출처: Bundesanstalt fü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Arbeitswelt im Wandel. Zahlen-Daten-Faakten. 2021. 10쪽.

연령	직업활동자 비율	직업활동자수	해당 연령 인구수
60-64	62%	340만명	560만명
55-59	82%	550만명	670만명
50-54	87%	590만명	680만명
45-49	88%	480만명	540만명
40-44	87%	440만명	500만명
35-39	86%	450만명	530만명
30-34	84%	450만명	540만명
25-29	81%	400만명	490만명
20-24	67%	300만명	440만명
15-19	28%	110만명	400만명

〈표 II-2〉 독일의 연령그룹별 직업활동 인구수(2019년)⁷⁷⁾

(3)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건수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까지 독일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와 중대재해(사망사고)78)의 통계를 보면 2019년을 제외하고는 해를 거듭할수록 산재사고와 중대재해 발생건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1년의 경우에는 산재사고가 총 1,007,864건, 중대재해가 664건이 발생하였음에 반해, 2020년에는 산재사고가 총 822,558건, 중대재해가 508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⁷⁷⁾ 출처: Bundesanstalt fü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Arbeitswelt im Wandel, Zahlen-Daten-Faakten, 2021, 11쪽.

⁷⁸⁾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상해사고(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나 직업성 질병(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도 중대재해로 보지만(같은 법 제2조제2호), 독일의 통계에서는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해나 직업성 질병에 상응하는 통계자료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망사고만을 중대재해로 간주하여 통계를 인용하기로 한다.

〈표 II-3〉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건수(2011~2020)⁷⁹⁾

년도	신고의무있는 산재사고	신규 산재상병연금	중대재해(사망사고)
2011	1,007,864	17,636	664
2012	969,860	17,403	677
2013	959,143	16,775	606
2014	955,919	16,331	639
2015	944,744	16,113	605
2016	959,266	15,673	557
2017	954,627	15,152	564
2018	949.309	15,054	541
2019	937,456	14,829	626
2020	822,558	14,560	508

3) 중대재해 관련 법제

(1)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과 독일 법제의 차이

우리나라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률은 형법(업무상 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크게 3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흡수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행법의 적용상 의미있는 법률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안전조치나 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1항은, 같은 법 제4조(사업주와

⁷⁹⁾ 출처: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Berichtsjahr 2020. 186쪽 및 187쪽.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 (즉,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 사망이라는 결과에 주목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와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그 적용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그 수범자 내지 적용대상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이 경우 경영책임자등이란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 중대산업재해야기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처벌되던 규범상황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같은 경영책임자등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정책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물론 근로자가사망한 사건에서 언제나 경영책임자등이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형법적 귀속(Zurechnung)의 관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의 경우 그에 대하여 특별하게 적용되는 법률은 없고단지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뿐이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몇몇의 형사처벌규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 사망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은 없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독립적인 법률도 없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형법상 과실치사죄를 포섭·적용하는 길 뿐이다.

이상과 같이 보면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과 독일의법제는 외형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근로자의 산재사망 사고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제가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한 경영책임자등을 처벌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그적용대상자로 명시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독일에서는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하여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지만, 이 경우 독일 형법은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를 통하여 경영책임자등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을열어두고 있고, 실제 법적용 실무에서도 경영책임자등에게 형법상 과실치사죄를 묻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 법에 따른 법적용 과정과 독일의 법제(특히 형법)에 따라 법적용 과정이 모두 '기업의 배후에 있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책임귀속'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수렴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단행 법률에서 중대산업재해의경우 형사책임귀속의 주체가 경영책임자등임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 총칙분야(제14조)에서 기업이 사업주가 되는 모든 사건에서 그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영책임자등이 형사책임을 진다고 일반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우리나라의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 한하여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에 반해, 독일에서는 형법 제14조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 등 일반적인 범죄에서도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독일에서 산재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독일 형법상 과실치사죄(제222조)나 과실치상죄(제229조)가 적용된다. 즉,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독일 산업안전보건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즉,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사 사망이나 상해 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형법상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뿐이다. 이 경우 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며,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다. 그렇지만 독일 형법상 과실치사죄와 과실치상죄는 사업주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결과만을 고려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이다. 이러한 근로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바로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조치의무 내지 보호의무이다.

독일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은 '근로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의 개선을 위한 근로보호 조치의 실행에 관한 법률'80)이다. 이 법률의 약칭이 바로 근로보호법(Arbeitsschutzgesetz)이다.81)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맥락에 상응하게 독일 근로보호법을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번역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보호의 조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건강을 확보하고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제1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은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제2장 (제3조~제14조)에 속하는 조문과 그 조문제목을 보면, 사업주의 기본의무(제3조), 일반원칙(제4조), 근로조건의 평가(제5조), 기록작성(제6조), 사업주의 업무지시(제7조), 다수 사업주의 협력(제8조), 특별한 위험(제9조), 최초의 지원 및 그 밖의 긴급조치(제10조), 노동의학적 지원(제11조), 지도(제12조), 책임지는 자(제13조), 공공기관 근로자에 대한 통지 및 청문(제14조) 등이다.

⁸⁰⁾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7. August 1996, BGBl. I S. 1246

⁸¹⁾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은, 전형배·정영훈·김기선, 외국의 산업안 전보건법 위반 사례 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워 보고서, 2019, 104-121쪽 참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될 1996년 당시 입법자가 중시했던 정책목표는 바로 위험성 평가(Gefährdungsbeurteilung)였다(독일 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위험성 평가란 근로조건의 평가이지 근로자의 평가가 아니다. 즉, 위험성 평가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영향과 같은 전통적인 위험인자들 이외에 근로의 과정과 근로로 인한 작업의 완성과정 및 그 공동작용, 이러한 근로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자격과 근로자에 대한 불충분한 지시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위험성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013년 독일 산업안전보건법개정시에는 근로자의 심리적 부담도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같은법제5조제3항제6호).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는 근로조건의 위험성평가에서 도출되는 예방적조치의 실효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 입법자는 독일 산업안 전보건법의 초점을 개별적인 근로자가 아니라 근로조건에 맞춤으로써 위험원을 제거하는데 일차적인 목표를 설정하였고 개별적인 보호조치(즉 근로자 개인을 위한 보호조치)는 이차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4조).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취할 안전조치 등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제7조(사업주의 업무지시)와 제9조(특별한 위험)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지시할 때 각각의 업무의 유형별로 근로자가 그 임무를 이행함에 안전과 보건보호에 관한 규정과 조치를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제7조).

또한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는 특별한 위험의 경우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하게 위험한 업무영역으로서 사전에 적절한 지시를 받고 그 업무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를 취해야 한다(제9조제1항). 사업주는 직접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처해있거나 처해질 수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그러한 위험과취해졌거나 취해져야 할 보호조치를 통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9조제2항). 또한 사업주는 직접적인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들로 하여금 즉시 작업장을 떠나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제9조제3항).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2호a목에 기재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82),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1호83) 또는 제2호a목에 규정된 고의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3) 독일 형법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경영책임자등을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독일 형법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한 전제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귀속 구조를 개관할 필요가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형사처벌의 대상을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경우 사업주에는 개인사업주와 법인사업주가 있다. 개인사업주는 그 자신이행위주체이기 때문에 행사책임의 대상을 정할 때 어려움이 없다. 이에 반해법인사업주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의 대상, 즉 자연인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되어 법인이 형사책임의 주체로 등장할 수 없고, 그 대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일정한 자연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자연인인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책임자가 처벌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현장소장의 입장에서는 비록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구역에서 산재사망사고가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사처벌의 주체로 사업주만을 규정

⁸²⁾ 사업주 또는 책임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집행가능한 명령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⁸³⁾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에 따른 법규명령을 위반하였고, 이 법규명 령이 특정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의 적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원래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나 상해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책임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현장소장이나 안전보건책임자 등이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양벌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현장소장이나 안전보건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84) 즉,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이들에 대한 가벌성을 창설하고 있어, 위헌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경영책임자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타당한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법인의 배후에 있는 자연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형법(총칙)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에 명시해두고 있다. 참고로 독일 형법 제14조를 번역하여 옮기면 다음과 같다.

⁸⁴⁾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1호,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68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70조제1호, 제31조제1항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등 참조.

독일 형법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행위한 경우, 특별한 인적 성질, 관계 또는 상황(특별한 인적 요소)이 가벌성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은 그와 같은 요소가 대리인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1. 법인의 대표기관 또는 그 기관의 구성원
- 2.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사원
- 3. 타인의 법정대리인
- ② 사업주 또는 기타 사업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을 받고 그 위임에 근거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인적 요소가 가벌성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은 그와 같은 요소가 수임자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수임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1. 사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영에 관한 위임
- 2. 사업주의 책임에 속한 임무를 자기 책임으로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명시적 위임

기업은 제1문에 의한 사업소로 본다. 위와 같은 위임에 근거하여 공공행정의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제1문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대리권 또는 위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준용된다.

독일 형법 제14조는 법인의 기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기관으로서 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그 위임에 기초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적 요소를 근거로 형벌을 과하는 법률은 그 인적 요소가 실제 행위자에게 존재하지 않고 법인 또는 위임자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실제 행위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점에서 독일 형법 제14조에 따른 자연인의 책임의 성격을 기관책임 또는 대리인책임이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도 양벌규정의 역적용 방식이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음을 전제로 독일형법 제14조와 같은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독일형법 제14조는 어느 형벌법규가 일정한 인적 요소를 범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적 요소가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조문으로서, 이러한 사정 하에서 발생하는 형사처벌의 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인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법인이나 사업주에 의하여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인정하고

있다.85) 특히 법인과 관련있는 독일 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달리 표현 해보면, 당해 범죄구성요건에 법인이 신분자(예: 사업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신분이 법인의 대표기관이나 그 기관의 구성원 등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인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대표기관이나 그 기관의 구성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86)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국한시켜서 보면,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처 벌법에서만 처벌의 대상인 경영책임자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형 법 제14조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한 경영책임자등이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 을 명시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독일의 산업안전보건법 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4〉독일의 중대재해처벌 법제

대상	분야	내용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본법	근로보호법(Arbeitsschutzgesetz)
법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여부	없음
	중대재해처벌법 존재하는 경우 산안법과의 관계	없음
	처벌의 근거	-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질서위반법을 통하여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처벌
뷰이	처벌규정 적용대상자	_
법인	중대재해(근로자 사망) 해당시 법정형	_

⁸⁵⁾ 신동운, 회사의 대표기관 등에 대한 형사책임과 배임죄(대법원 1984.10.10. 선고, 82 도2529 전원합의체판결) (공 1984,1816.), 상사판례연구 제1권, 박영사, 1996, 528쪽.

⁸⁶⁾ 이진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마련에 관한 연구, 산업안 전보건연구원 보고서, 2018, 87쪽.

대상	분야	내용
	주의의무의 근거	_
	법원심리에서의 주된 쟁점	_
	양형	_
	주요 양형인자	_
	처벌의 근거	- 형법 제222조(업무상 과실치사죄) - 근로자 사망시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되 고, 별도의 가중처벌 법규 및 규정 없음
	처벌규정 적용대상자	-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비신분범이므로 범행주체에 제한 없음 - 법인의 기관(이사, 대표 등)은 형법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를 통하여 행위주체성 인정
	중대재해(근로자 사망) 해당시 법정형 주의의무의 근거	-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벌금형(형법 제222조)
		-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의무 및 민법 등 계약상 주의 의무
자연인 (경영 책임자 등)	법원심리에서의 주된 쟁점	- 사업주의 조치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 여부 - 사업주의 조치의무 또는 보호의무와 근로자 사망간 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주의의무위반관련성(합법적 대체행위) 인정에 기초 한 과실배제 여부
	양형	- 일반적으로 벌금형 선고(일수벌금제) - 다수 사망자 발생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가 선고되며 예외적 실형선고
	주요 양형인자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 피해자의 과실 - 발생결과의 중대성 - 피고인의 전과 유무 - 당해 사건의 형사절차의 장기화 - 피고인의 자백

4) 중대재해 처벌 관련 사례

(1) 기계조작과 근로자 사망(2009년87))88)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판유리 연마·가공 사업장에서의 견습생(19세) 사망사건에 관한 것이다. Osnabrück 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기업의 경영진이 불량품이 더 적게 생산되도록 하기 위해 기계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안전설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견습생이 사망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정확하게는 Y.-Glas GmbH & Co. KG.) 는 건물과 선박 건축에 사용되는 판유리를 연마·가공하는 업체였다. 판유리의 연마·가공 과정은 완전하게 컴퓨터로 조종되는 판유리연마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이 판유리연마기계는 일반적으로 누군가 위험 범위에 들어오면 기계의 움직임을 차단하는 광전자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긴급차단으로 인하여 항상 작업 중이던 제품이 사용불가로 되어 버리고, 따라서 불량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비용문제로 인하여 판유리연마기계는 이미 2006년부터 회사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이 판유리연마기계의 원제조사가 지시한 안전설비 없이 가동해왔다. 그 결과 2010년 7월 22일 19세의 견습생의 머리와 어깨가 이 판유리연마기계에 압착되어 그 피해로 사망에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 총 6명의 피고인이 기소되었다. 그 중에 3명은 경영책임자, 1명은 공장장, 1명은 작업장정리책임자, 1명은 이 공장이 소재한 Emden시 영업감독청 공무원이었다. 6명의 피고인들 중에서 법리상 의미있는 내용들은 모두 과실치사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2명의 경영책임자들에 관한 것이다. 이 2명의 경영책임자는 형제지간이며, 모두 사고 기업체를 형식적으로나 실질

⁸⁷⁾ 년도 표시는 판결이 선고된 년도를 의미한다(상급심에서 확정된 경우 상급심 판결이 선고된 년도를 의미함).

⁸⁸⁾ LG Osnabrück, Urteil vom 20. 09. 2013-10 KLs 16/13

적으로 지배·경영하고 있었다.

특히 이 사건은 산업안전보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근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책임소재가 기업의 대리권을 가진 기관뿐만 아니라 경영의 과정에서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관철한 기관에게도 있다 고 판시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 판결요지89)

이 사건에 대한 Osnabrück 지방법원의 판결 중 2명의 경영책임자에 대한 판결에 집중하여 소개한다. 편의상 1명의 경영책임자를 피고인 1이라 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2라 부른다.

가) 피고인 1의 과실치사 책임의 근거

우선 Osnabrück 지방법원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인식있는 과실의 형식에 의한 형법 제222조에 따른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이 피고인 1에게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1에게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사업주는 자신의 작업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를 가능한 한 보건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진다. 피고인 1은 회사 내부적으로 기계설비들을 관할하는 경영책임자 (Geschäftsführer)로서 의도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계의 원제조사가 안전보건상의 이유로 명시적으로 기재해둔 판유리연마기계에 설치되어야할 광전자센서를 떼 내어 판유리연마기계를 조작함으로써 사업주로서의 보호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가능한 한 건강을 침해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사업장규칙' (Arbeitsstättenverordnung) 제3a조제1항에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대한 아무런 위험이

⁸⁹⁾ 이 사건에 대한 판결문 원문은 https://www.rechtsprechung.niedersachsen.de/jportal/portal/page/bsndprod.psml?doc.id=KORE208262014&st=null&showdoccase=1 참조(최종방문일: 2022.5.21.)

없도록 사업장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특히 기숨의 발전상태를 고려해야 한다. 사업주는 사업장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서 사업장을 정돈해두어야 하며 확인된 하자나 흠결이 지체없이 제거되 도록 유의해야 한다. 직접적인 중대한 위험과 결부되어 있는 하자나 흠결이 즉시 제거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단시켜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보호 법'(ArbSchG) 제3조제1항제1문에 따라서 작업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영 향을 미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면서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보호법 제3조제1항제2문에 따라서 안전보건조치 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안전보건조치를 변화된 현재 의 사정에 조응시킬 의무도 부담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보호법 제3조제 1항제3문에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보호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 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보호법 제4조에 의거하여 안전보건조치를 취함에 있 어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험을 가능한 한 피하고. 위험을 그 워천부터 제거하 고 안전보건조치를 취할 때 기술의 발전상태를 고려하여 잔존하는 위험을 가 능한 한 적게 유지되도록 작업이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견 지해야 한다.

근로보호법에 따른 안전보건의무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사업 주 이외에 특히 근로보호법 제13조제1항제2호900에 따른 대리권을 가진 법인의 기관도 포함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Y.-Glas GmbH & Co. KG와 같은합자회사의 경영책임자도 책임을 지는 사람에 속한다. 피고인 1은 Y.-Glas

⁹⁰⁾ 근로보호법 제13조(책임지는 사람) (1) 이 장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은 사업주 이외에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사업주의 법정대리인

^{2.} 대리권을 가진 법인의 기관

^{3.} 대리권을 가진 인적 상사회사의 사원

^{4.} 기업이나 회사의 경영을 위탁받아 그 위탁받은 권한과 임무를 행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본조 제2항, 이 법에 따라서 공포된 법규명령 또는 사고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으로서 그 권한과 임무를 행사하는 사람

⁽²⁾ 사업주는 신뢰할 수 있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 법에 따라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기책임하에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GmbH & Co. KG(합자회사)의 경영책임자로서 이 회사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 1은 안전보건의 관점에서 도출되는 앞에서 언급한 조항들에 적극적으로 반하게 행위하였다.

피고인 1과 같은 경영책임자가 움직이는 상판장치를 갖추고 있는 판유리연마기계의 경우 광전자센서를 떼어 내기로 하는 결정은 판유리연마기계를 사용할 때 끼거나 압착되어 중대하고 특히 사망에 이르는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도 예견가능했다. 사고의 예견가능성은 일반적인 것으로 충분하다. 모든 구체적인 개별적인 것들이 예견가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이 사건에서 본 것처럼-안전보건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것만으로 예견가능성의 정황적 의미를 가진다(Fischer, Strafgesetzbuch, 59. Aufl. 2012, §222, Rdnr. 26 참조). 심지어 피해자로 하여금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분야에 일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을 보아도 예견가능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기계작업분야에서 현재 기계가 작동되고 있는 경우 수동적으로 업무를 실행하는 것이 Y.-Glas GmbH & Co. KG 회사의 영업상의 관례였기 때문이다. 판유리기술자 견습생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행위를 처음부터 가르쳤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1은 기계가 작동되는 동안에 모두 수동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자신의 형인 피고인 2와 함께-광전자센서를 떼어내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1이 자신의 형인 피고인 2와 함께 광전자센서 없이 기계를 작동시키기로 한 결정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해자의 압착에 대하여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광전자센서 설비 없이 판유리연마기계를 작동하라는 피고인 1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광전자센서 설비로 인하여 피해자가 기계에 압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기계조작 지시로 인하여 만들어진 보건과 생명에 대한 위험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압착으로 실현되었다.

행위자의 행위가 없었더라면 구체적인 형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인과관계 문제는 항상 구체적인 결과(konkreter Erfolg)와 실제 사건(wirkliche Geschehen)

간에 인과적 연결고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의무위반관련성의 판단에서 만약 광전자센서설비가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설치되어 있는 광전자센서 위로 의도적으로 몸을 구부린 경우에도 압착의 위험에 처해졌을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이 사건의 경우 범행과 관련된 압착의결과를 초래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특히 기계머리 부분으로부터 몸을 피하기 위하여 기계작업부분으로 깊게 구부려서 오른손으로 공구상자를 잡아 직접 기계작업부분의 상판에 접근하는 행위는 광전자센서의 미작동으로 인하여어떤 경우에도 급작스러운 기계작동정지로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경우 합법적 대체행위를 이유로 의무위반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1은 유리제품분야에서 전문적인 사업가이고 전문적인 경영책임자이며, 곧바로 주어진 주의의무를 인식하고 준수하며 광전자센서 없는 상황에서 경영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한 기계를 때우기로 지시하는 자신의 결정이 생명에 대하여 미치는 위험한 효과를 알 수 있었다.

나) 피고인 2의 과실치사 책임의 근거

한편, Osnabrück 지방법원은 피고인 2에 대해서도 인식있는 과실의 형식에 의한 형법 제222조에 따른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이 피고인 2에게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2도 인식있는 과실의 형식으로 형법 제222조에 따른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진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과 전자광센서를 떼어내기로 하는 공동의 결의를 하고 이러한 조작을 최소한 용인하면서 실행하여 앞서 피고인 1의 책 임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과 같은 책임을 진다.

또한 피고인 2는 피해자의 부모와 피해자의 교육에 관한 계약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지도를 받는 견습생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었다. 청소년근로보호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서 청소년을 사고위험과 관련되어 있는 근로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된다. 이 규정은 청소년이 안전의식이 결여되거나 충분한 경험이 없어 사고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피할 수 없

다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나아가 연방교육법 제14조제1항제5문은 성년인 피교육생에게도 적용되는데, 이에 의하면 교육자는 피교육생의 특성을 촉진시키고 도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위험에 처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8년 8월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성년자였던 피해자가판유리기술자로서의 교육을 시작했을 때 피고인 2는 판유리연마기계가 조작된 상태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2의 보호의무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실제로 피해자는 자신의 지도관인 피고인 2의 인식과 의사로 Y.-Glas GmbH & Co. KG 회사의 제품생산에투입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피고인 2는 Y.-Glas 공장에 있는 판유리연마기계의 경우 광전자센서안전기능이 고장나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이미 견습생인 피해자를 고용할 당시부터 피고인 2는 Y.-Glas 공장안에서의 기계조작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안전보건조치가 되어있지 아니한 조작된 Y.-Glas 공장에 있는 판유리연마기계에 견습생인 피해자를 투입하는 것을 용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는 자신의 견습생을 보호할 의무를 명백하게 위반하였다.

지도관이 회사의 제품을 생산할 때 그곳에서 유리기계가 광전자센서 없이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견습생의 투입을 용인한 것이 중대하고, 심지 어 견습생을 생명에 위태로운 산재사고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은 객관적으로도 예견가능하다.

피고인 2가 Y.-Glas 제품 생산시 견습생인 피해자의 투입을 용인한 것은 피해자의 산재사망에 대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피해자가 피고인 1의 조작결정이 없었고 자신의 지도관인 피고인 2의 용인이 없었더라면 Y.-Glas 제품생산에 투입되지 않았고, 따라서 사고기계에 투입되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피고인 2는 주관적으로도 비난가능한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2는 H.-Glas 그룹의 창립자임과 동시에 오랜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판유리분야에서 지도관의 용인하에 Y.-Glas 공장 투입된 피해자와 같은 판유리기술자가 되고자

하는 훈련생이 판유리연마기계에 대해서도 교육받고 안전보건조치가 되어 있어야 할 광전자센서설비가 흠결된 판유리연마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견습생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알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

다. 양형

이 사건에서 3명의 경영책임자 중 2명은 모두 과실치사죄로 자유형 6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집행유예의 부담사항으로서 각 10,000유로를 부과받았고, 경영책임자 1명은 감독의무위반을 이유로 10,000유로의 질서위반금을 선고받았다. 공장장은 과실치사죄로 90일(일일정액 40유로)의 벌금형에대한 선고유예를 받았다. 공장장이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습생 혼자 유리연마기계에서 작업하도록 했다는 것이 유죄의 이유였다. 작업장정리책임자는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유리연마기계의 안전설비를 해체시켰다는 점을 이유로 10,000유로의 질서위반금에 처해졌다. 영업감독청 공무원은 경찰에 대한 허위진술로 인한 증거인멸죄의 미수범으로 90일(일일정액 100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2) 다수의 기업이 참여한 건축시공 이후의 건물붕괴와 근로자 사망(2008년)91)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2004. 8. 13. Mecklenburg-Vorpommern주 Goldberg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고층 부속건물 수리작업 과정에서 부속건물 1층을 지탱하고 있던 벽이 붕괴되어 그곳에서 일하던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5명의 근로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Goldberg시가 추진한 건축계획의 대상은 시립학교를 보수하는 것이었다. 특히 시립학교의 남동쪽 부속건물의 1층에서 지금까지 분리되어 있던 123호와 124호를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하여 대규모 음악공간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

⁹¹⁾ BGH, Urteil vom 13.11.2008-4 StR 252/08

에 따라 일반공모를 거쳐 건축회사로서 개인기업을 운영하는 피고인 1이 건축회사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1은 부속건물 벽을 허무는 작업과 새로운 콘크리트 작업을 A회사에 하도급하였고, 구체적인 건축시공업무는 Goldberg시에 있는 A회사 지점장인 피고인 2와 피고인 2의 근로자로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피고인 3이 담당하였다.

그런데 부속건물 공사를 하던 중 벽을 지탱하던 받침대를 촘촘하게 설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되었다. 피고인 1은 사고 당일에도 구조역학전문가가 진단한 철거할 벽을 지탱하던 받침대의 1/3만 설치되어 있다는 점, 받침대간의 간격도 구조역학전문가가 지시한 지침을 현저히 벗어나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건물하부가 하중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면서도 벽해체 작업을 계속하게 하였다. 그 결과 벽이 붕괴되어 사망사고와 상해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남동쪽 부속건물이 붕괴된 원인은 건물의 1층에 있던 벽이 무너질 당시 벽을 받치고 있던 받침대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 1, 2, 3을 모두 과실치사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하였다.

나. 판결요지

이 사건에서 원심과 연방법원은 건축주인 피고인 1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원심과 연방법원이 판시한 주요 내용을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요약할 수 있다.

가) 사고에 대한 일차적 책임: 건축주

이 사건에서 원심과 연방법원은 피해자의 사망과 상해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을 건축주(Bauherr)라고 판시하였다. 즉, 일차적인 책임은 항상 건축주가 부담하는데, 이 경우 건축주란 자신의 책임으로 건축설비를 준비하거나 시행하거나 준비 또는 시행하도록 한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건축주가 책임을 져야하는 이유는 건축주가 자신이 위탁을 준 건축계획으로

인하여 위험원을 창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험원은 건축주에게 제3자(행인,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에게 위험이 야기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것을 다할 의무를 부과한다. 형법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형사책임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 건축주로 등장하는 사건에서 누가 개인적으로 특정한 과정에서 그 자체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와 질서위반법 제9조(타인을 위한 행위)를 적용해야 한다. 기업 자체에 대한 제재는 오로지 질서위반법제30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실무를 보면 모든 건축주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거래상의 안전에 관한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고자 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현장소장을 임명하는 등의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 경우 건축주가 현장소장, 건축가, 건설기업 등전문가를 선임할 때 그 선임 절차에 귀책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의무에위반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건축주는 일반적으로 자기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자 하고, 그러한 전문가의 선임도 합리적인 기준을 통하여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건축주의 형사책임을 배제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다. 건축계획에서 도출되는 모든 의무를 전문적인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건축주와 제3자간의 계약의 의미와 목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건축주가 건축시행의 과정에서 스스로 또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도 의무를 위반한다는 사정을 알고 있거나 건축주가 자체적으로 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스스로 안전보건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주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건축주의 경우 거래안전의무 위반에서 도출되는 핵심형법적 위험 이외에-과태료 부과와 관련되는-각 주의 건축법령상의 책임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의 구성요건에 위반한 경우에는 50만 유로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나) 건축시행사의 책임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집중적 관심을 받은 대상은 건축시행사였다. 건축시행사가 부담하는 의무범위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게 된다. 그러나 건축시행사가 묵시적으로 수용한 의무도 있을 수 있다. 건축주는 - 건축하도급과 관련하여 - 일반적으로 자신에게 일차적으로 부과된 의무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기 때문에 건설회사들과 각종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의무범위의 이러한 전가로 인하여 실무에서 매우 큰 제재법적인 위험을 안게 된다. 건설현장에서 자기책임하에 건설업을 하는 제3자를 통하거나 타 건설회사에 의무를 전가하는 방식을 통해서만(하도급) 이러한 의무를 좁힐 수 있다.

건설업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건축계획 자체에서 도출되는 임무와 그 이행, 특히 안전보건의무의 이행이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는 가장 중요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 베를린주에서는 주안전보건청(Landesamt für Arbeitsschutz, Gesundheitsschutz und technische Sicherheit: LAGetSi)이 통제를 담당하면서 안전보건 법규 위반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제재법적 위험은 형사제재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전보건법에 관한 수많은 규정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제재를 찾아볼 수 있다. 자기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기업 내지 사업주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자신의 개인적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면책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건축현장에서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정기적으로 관련규정에 관하여 교육시켜야 한다.

다) 제3자에 대한 거래안전의무의 위임

결과적으로 건축현장소장의 경우에도 달라질 것은 없다. 건축현장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래안전의무의 중요한 부분들이 위탁된다. 건축현장소장 등이 책임져야 할 위험원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재해는 형법 제13조(부작위범)에 따른 보증임책임을 근거지울 수 있다.

따라서 건축현장소장 등은 구체적인 위험 내지 잘못된 행위방식을 인식한 이후에야 비로소 적극적으로 움직여서는 안된다. 제3자인 건축현장소장등도 그들의 임무영역에 대하여 예방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다. 양형

Schwerin 지방법원은 이러한 사고에 대하여 건축업자인 피고인 1에 대하여 고의의 건축위험야기로 인한 과실치사죄와 과실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여 자유형 1년을 선고하였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과실치사죄와 과실치상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원심인 Schwerin 지방법원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적인 이유와 사실적인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사망한 피해자들의 아버지들이 부대공소의 방식으로 연방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연방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벽을 지탱하는 받침대간의 거리가 구조역학전문가가 제시한 지침에서 현저히 벗어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였다. 원심은, 공사시행표상 벽을 받치는 받침대 작업이 피고인 2와 피고인 3의 업무가 아닌 것은 맞지만 일차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건축회사(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1) 이외에 건물의 안전에 대하여 공동의 책임을 부담한다고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건물의 안전과 관한 이차적 의무는 일정한 한계를가지고 있으므로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구조역학전문가를 개입시켜 해체작업을 계속 진행시키는 일을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이 점은, 받침대간의 설치 간격이 넓어짐으로 인하여 건물의 안전을 해치게될 위험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이 지금까지 벽해체작업을 수행해 온 경험을고려하는 경우에도 분명하지 않고, 특히 현장소장과 안전감독자도 안전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뒤머호수(Dümmersee) 아세틸렌 폭발사건(2004년)⁹²⁾

가. 사실관계

피고인(경영책임자)은 Trollenhagen 비행장에서의 작업과 관련하여 뒤머호수에서 건설공사장 작업을 하고 있었다. 교량설치를 위하여 자동가스용접기를 활용하게 되었는데, 이 자동가스용접기에는 각각 80키로에 달하는 수소산통과 아세틸렌통이 부착되어 있었다. 피고인의 근로자들은 이 자동가스용접기를 수소산통과 아세틸렌통을 둘 충분한 높이가 확보되지 않고 환기도 되지 않은 공간에 두었는데, 장소적 상황이 그러다 보니 자동가스용접기를 비스듬하게 세워둘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들은 수소산통과 아세킬렌통을 그 좁은 공간에 둔 채 고무관만 길게 빼내어 가스용접기에 연결하여사용하였다.

피고인은 1999.9.30. 자신의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현장에서의 법규위반을 문서로 남기고 연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와 같은 방식의 작업이 위험 하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경고하였다. 물론 작업현장에는 구명조끼가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으나 근로자들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하지 않았다. 관할 노동청은 1999.10.14. 작업현장을 방문하여 경고까지 하였다.

1999.10.25. 근로자 1명이 가스용접기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작업을 마친후 수소산통과 아세틸렌통의 밸브를 잠그지 않은 채 가스용접기에 있는 가스공급만 차단시켰다. 그 결과 아세틸렌통과 그 통이 보관된 좁은 공간에 있는고무관 사이의 누수로 인하여 그 좁은 공간이 폭발성있는 아세틸렌과 가스혼합물로 꽉 채워졌다. 이 시점에서 다른 근로자가 가스용접기를 사용하자 그일대가 폭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그 근로자는 중상을 입은 채 익사하였고,나머지 2명의 근로자는 경상을 입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 후 노동청은사고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히 근로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⁹²⁾ LG Neubrandenburg, Urteil v. 16.6.2003 - 9 Ns 53/01(항고심); OLG Rostock, Urteil v. 10.9.2004 - 1 Ss 80/04 I 72/04(상고심)

않은 채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리에서는 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도구를 배치하였다는 점, ② 보호장비의 이용에 대한 통제가 없었다는 점, ③ 안전 관련규정을 준수하는 작업방식에 대한 통제가 없었다는 점, ④ 의무를 위임한 이후의 근로자의 활동에 대한 통제가 없었다는 점 등 크게 4가지 쟁점이 문제로 되었다.

나. 판결요지

가) 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유무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안전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방지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을 인정하였다. 형법 제13조의 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결과 즉 사고에 대한 통찰, 즉 법적인 행위의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Rostock 주최고법원은 피고인의 보증인지위에 대하여"…특별한 산업안전보건규정을 통하여 구체화되는 노무청구권자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18조93) 제1항으로부터 피고인의 보증인지위가도출된다."고 판시하였다.

나) 피고인의 의무위반

법원은 피고인에게 의무위반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다만 이 경우 의무위반은 근로자들이 작업할 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지 않았

⁹³⁾ 독일 민법 제618조 (안전배려의무) ① 노무청구권자는, 그가 노무의 실행을 위해 제공해야 할 장소, 장비나 기구를 설치 및 유지하고 자신의 지시 또는 지휘하에 행해지는 노무제공을 규율함에 있어서, 노무제공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노무제공자의생명 및 건강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무제공의무자가 노무청구권자와 가정 공동체 내에 있는 경우에, 노무청구권자는 거실과 침실, 식사, 근로시간 및 휴식기간에 관련하여 노무제공자의 건강, 풍습 및 종교를 고려할 때 이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노무청구권자가 노무제공의무자의 생명 및 건강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노무청구권자의 손해배상 의무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제842조 내지 제84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다는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가스용접기를 사용할 때 안전기준을 준수했는지 일반적으로 감독·실행하지 않은 점에 있다고 보았다.

우선 이 사건의 제2심인 Neubrandenburg 지방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감독하지 않은 행위가 작업현장에서 안전기준의 준수를 감독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안전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의무위반의 경우 이른바 의무위반관련성이 흠결되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폭발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경우에도 근로자의 사망과 상해의결과 발생을 배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한상고심인 Rostock 주최고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Rostock 주최고법원은 근로자의 가스용접기 사용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자신의 작업공간에서 정규적인 감독조치와 시행조치를 통하여-특히 자동가스용접기 및 그 부속된 수소산통과 아세틸렌통의 구체적인 배치 및 이용과 관련한 - 안전보건규정의 준수를 부작위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물론 피고인이 자신의 근로자에 대하여 법규위반의 사실을 경고한 행위는 적절한 감독으로 볼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러한 경고조치에만 머물렀을 뿐이고 가스용접기관련 설비들의 배치 등과 관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Rostock 주최고법원은 "피고인은 자신의 근로자가 자신의 지시에 반하게 가스용접기를 좁은 공간에 배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이후 법규에 합치되게 가스용접기 배치 여부를 더 이상 감독하지 않았고, 그 대신 피고인이 위임한 감독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만연히 신뢰한 결과 사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 의무의 위임과 감독에 대한 귀책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래 자신이 신뢰하였던 근로자에게 자신의 감독의무를 위임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임무를 위임받은 근로자가 감독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별개로 그 근로자에 대한 피고인의 감독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법원은 "사업주가 지신의 감독의무를원칙적으로 신뢰관계인(수탁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그 신뢰관계인의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사업주는 그 신뢰관계인을 감독해야 하고 자신의 임무를 신뢰관계인에게 위임하였다 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다. 양형

Neubrandenburg 단독판사법원(AG)은 2001.1.16. 피고인에게 과실치사와 과실치상죄로 50일수의 벌금형(1일정액 80마르크)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Neubrandenburg 지방법원은 2003.6.16. 30일수의 벌금형(1일정액 30유로)으로 감형하였다. 상고심인 Rostock 주최고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면서 원심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에 대한 양형에서 특이한 것은 범행이후의 피고인의 태도가 법원의 양형에서 고려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의 2심인 Neubrandenburg 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여전이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도록 내버려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요소를 가중적 양형요소로 고려한다고 판시하였다.

(4) 코헬 기차역(Banhof Kochen) 굴삭기 사고(2014년)⁹⁴⁾

가. 사실관계

2013.8.10. Oberbayern시에 소재한 코헬 기차역에서 두 개의 회사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기차역에서 선로보수공사를 하던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인 소속의 회사였고, 나머지 하나는 기차역 승강장에서 작업을 하다가사고를 당한 피해자 소속의 회사였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그날 14시경이었다.

피고인은 현장소장으로부터 굴삭작업을 마친 후에 그 굴삭기를 이용하여 공사현장 뒷 부분에 있는 물을 펌프로 퍼내기 위한 펌프를 가져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한편 피해자는 그 공사현장 뒤 선로쪽에서 자신의 동료가 파야 할 구 덩이의 깊이를 측량할 때 돕고 있었다. 그 순간 피고인이 중량 18톤의 대형 굴삭기를 운전하여 선로쪽으로 후진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굴삭기의 모터 부분이 높은 관계로 굴삭기 뒷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시야가 가려졌다. 이에 피고인은 굴삭기를 후진하다가 그 현장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역과하였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그 당시 까지만 하더라도 굴삭기에 후진시 자동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피고인은 이를 설치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도 선로 작업을 할 때 다른 회사 소속인 피고인과 굴삭기 운전 등에 관하여 협의를 하지 않았다. 작업현장에서의 굴삭기와 관련한 안전규정에 의하면, 위험영역에 체류하는 사람은 굴삭기 운전자와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당시 현장소장은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인에게 안전보건규칙을 고지하였으나, 그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안전보건규칙을 준수하지 않았다.

⁹⁴⁾ Thomas Wilrich, Arbeitsschutz-Strafrecht, Erich Schmidt Verlag, 2020, 172-173쪽에서 인용.

나. 판결요지

가) 의무위반

법적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만 형법적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굴삭기 운전자인 피고인은 굴삭기를 후진할 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 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험을 회피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의무위반 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은 굴삭기 운전자로서 굴삭 기를 후진할 경우에는 후방카메라와 모니터를 작동시켜서 차량의 운행과정에 장애물, 특히 사람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면 이러한 법적의무는 어디에서 도출되는 것인가?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차는 도로교통법 제9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도로 이외의 부분으로 차를 틀거나 후진할 때 다른 교통참여자가 위험에 처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신호로 지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교통법상의 규정내용은 일반적인 거래안전의무 내지 교통안전의무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모든 기업과 개인사업주는 - 판례가 말하는 일반적인 공식으로 표현해보면-구체적인 상황에서 손해를 피하기 위한 모든 가능하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교통안전의무는 일반적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구체화되는데, 이러한 경험칙은 법률적 서열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의 척도로서 원용할 수 있다. 굴삭기 의 후진시 그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굴삭기의 안전조치와 관련된 규범들 은 모두 굴삭기에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정확하게 굴삭기에 후방카메라를 갖추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법원은 유의해야 할 주의의무들이 특히 안전보건관련규정에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다.95)

⁹⁵⁾ BGH, Urteil v. 13.2.2011 - VI ZR 176/10

나) 피고인의 과실책임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민법은 과실을 '거래에 요구되는 주의의 경시'(민법 제276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추상적인 규범만으로는 무엇이 과실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형법에서는 '개인적인 비난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념은 객관적 척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주관적 가능성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과실에서 결정적인 것은 인식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다. 즉, 피해(또는 인과과정)을 예견하고 기대가능한 회피 내지 방지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제1심 법원인 Wofratshausen 단독판사법원은 피고인인 굴삭기 운전자에 대하여, "거래에서 요구되고 기대할 수 있는 주의를 적용해보면 선로에서 작업하는 피해자가 자신의 굴삭기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는 점을 알수 있었고 또한 알았어야 했다"고 판시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이 굴삭기 운전과 관련된 제반 규칙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 양형

피고인은 과실치사죄로 120일의 벌금형(1일정액 30유로)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사망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보았다. 즉,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로 진입 전에 피고인과 아무런 협의도 하지않은 것은 피해자의 과실이라고 보면서, 이러한 피해자의 태도를 피고인의 형 감경의 사유로 보았다.

(5) Ingbert시 우레탄폼(건축마감재) 폭발사건(2012년)⁹⁶⁾

가. 사실관계

Saarbrück 지방법원은 2021. 11. 2명의 경영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질을 활용하는 작업시 위험판단 미이행, 안전조치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재판을 하였다.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매트리스를 세탁하는 유한회사(GmbH)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이 중 피고인 1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전에 수공업을 영위한 경력은 있으나 매트리스 세탁업을 한 경험은 없다. 피고인 2는 월 400유로의 월급을 받고 고용된 대표로서 전자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전자업에 종사한 것은 몇 년 되지 않고 사건 발생 당시 자신의 아버지를 위한고령자요양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1과 피고인 2는 2006년부터 피부미용 등이 이용되는 소금동굴을 만들었다. 소금동굴을 시공하는 과정은 철망에 우레탄폼을 사용하고 접착제를 붙인 다음 진짜 소금을 동굴외벽에 붙이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회사는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그 대신 폴란드에서 파견 온 근로자들을 작업현장에 투입하였다. 그런데 폴란드 근로자들은 피고인 2의 처가 폴란드에서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이었다. 2009년 초 동굴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이 어지러움과 두통등을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인1과 피고인 2는 그들의 회사가 우레탄폼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우레탄폼 제조사에 대하여 그 원인 등을 문의하였다. 이에 우레탄폼 제조사는 피고인들에게 분무할 때 나오는 거품은 이산화질소의 효능만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우레탄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건강상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작업에 임하도록하였다.

⁹⁶⁾ LG Bad Kreuznach, Urteil v. 31.5.2012-1024 Js 6294/10 Ns

그러나 건축마감재로서 우레탄폼을 처리할 때 가스와 증기가 방출되어, 그 것이 발화되면 폭발될 위험이 있었다. 즉 화재와 폭발의 위험이 있었던 것이 다. 기존에 준비되어 있던 진공청소기는 이러한 폭발의 위험이 대응하기 적절 하지 않은 것이었다.

2009년 말 St. Ingbert시에서 의료적 발시술과 미용시술 시설을 운영하는 K가 피고인 1과 피고인 2의 회사로 하여금 자신의 집 지하에 소금동굴을 설치할 것을 의뢰하였다. 2009.11.30. 피고인 2는 St. Ingbert시에서 일하던 인부 4명을 폴란드로 돌려보냈다. 그 후 피고인 2는 그 공사현장을 떠나면서 소금동굴 설치작업을 인부들 중 한 명인 V에게 맡겼다. 이 과정에서 우레탄 폼으로 소금동굴을 설치할 때 약 130통을 분사하였다. 어느 날 오후 K와 인부 1명이 K의 집에서 불쾌한 냄새를 맡고 지하실에 안개가 끼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때 인부 중의 한 명인 V가 짐차에서 진공청소기를 가져왔고, 그 인부가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 순간 가스와 공기의 혼합물이 발화되어 K의 집지하실이 폭발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부 V와 또 다른 인부 1명이 사망하였고, 인부 1명과 K는 중화상을 입었다.

나. 판결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업주로서의 책임

이 사건에서 사망한 근로자들은 물론 피고인 2의 처가 운영하는 회사에 고용된 사람들이었으므로 피고인 2의 처가 운영하는 회사는 안전보건법상의 규정들을 준수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Saarbrücken 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의 회사가 사실상의 사업주였고 다른 회사의 개입은 다른 목적-즉, 최저임금을 회피하기 위한 폴란드 근로자의 고용-을 위하여 외견상으로만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근로자는 오로지 피고인 2의 처일뿐이고 피고인 2의 처가 운영하는 회사는 다른 업무는 보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들의 회사가 위탁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을 채용하는 일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 2의 처가 채용한 폴란드 근로자들은 가족

관계나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채용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회사와 피고인들의 회사와 피고인들은 하 부 기업(피고인 2의 처가 운영하는 회사)의 개입을 통하여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Saarbrücken 지방법원은, "...또한 언급할만 한 것으로는, 피고인 2가 근로자들과 직접 만났고 이들에게 특히 우레탄폼, 진공청소기 및 방화복 등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스스로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주의를 다하였고 이에 상응하게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2의 처도 자신의 남편의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교육과 사건 해결에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례를 간단하게 보면 피고인들이 '가끔식' 스스로 사업주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사업주는 피고인들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말은 결과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근로보호법 제13조제1항제2호는 '책임지는 사람'중의 하나로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기관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권이 있는 기관이란 일반적으로 대표이사를 말한다.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는 자신의 직위에 기초하여 원칙적으로 당해 회사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관할한다.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이사의 전(全)권능성에 상응하게회사의 업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이 점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피해자들의 사망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법원이 사업주의 책임으로부터 형법 제13조제1항(부작위범)에 따른 피고인들의 보증인지위를 도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피고인들에게 이와 같은 보증인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한 안전보건조치의 부작위에 대한 형사책임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들의 의무위반

Saarbrücken 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다양한 의무위반을 범했다고 판시하였다. 법원이 문제로 삼은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을 보면, ① 위험성평가를 실

시하지 않은 점, ②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했던 점, ③ 근로 자들에게 작업도구의 사용방법과 지시를 하지 아니한 점, ④ 통제조치를 취하 지 아니한 점, ⑤ 외부 전문가를 개입시키지 아니한 점 등이다. 각각의 쟁점 별로 법원이 어떠한 법리를 전개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피고인들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들은 작업장소가 K의 지하실이라는 특수성과 결부된 위험성을 간과하였다. 이것은 지하실의 열악한 환기상황과 통풍을 취할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었다는 점으로부터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우레탄폼 스프레이를 가지고 하는 작업은 그것을 분사할 때 나오는 가스와 증기로 인하여 그것이 건강에 손상을 가할 수 있는지 화재와 폭발성은 없는지 등 그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

둘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불충분했던 점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은 우선 근로자들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말하였고, 단순한 보호복, 특히 안순한 호흡보호마스크를 제공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보호장비를 구매하라고 돈을 주는 것에 국한된 업무만 보았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법규에 의하면 폭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험한폭발성있는 기압의 형성을 방지하거나 저감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법령에 정해진 위험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단순한구두의 경고발언과 보호장비를 제공하는데 거쳤다.

셋째,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게 작업도구의 사용방법을 설명하지 않거나 업무지시를 하지 아니한 점과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이 우레탄폼 스프레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들의 문제제기가 있자 그 스프레이 제작업체가 만든 주의사항을 활용하였고, 피고인 2는 이를 구두의 폴란드어로 번역하였으며, 중요내용을 폴란드어로 노트한 다음 이를 폴란드 근로자들에게 교부해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법령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볼 수 없다. 모든 폴란드 근로자들에 대하여 법령상의 안전보건

의무를 폴란드 언어로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들이 근로자들에 대하여 우레탄폼 스프레이를 사용할 때, 특히 대량으로 사용할 때 그와 관련된 위험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넷째, 피고인들이 통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법원은 간략하게 "피고인들은 안전보건의무의 준수를 통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무에 위배되게 이를 부작위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섯째, 외부 전문가를 개입시키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위험성 판단을 스스로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 었고, 다른 통상적인 사업주와 같이 특별한 지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 에 외부 전문가들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했어야 했다."고 판시하였다.

다) 피고인들의 과실

모든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한다. 책임은 개인적인 비난가능성이다. 그리고 당해 사고가 예견가능하고 회피가능했을 경우에 한하여 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엄청나게 놀랐다는 진술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본 건 사고는 절대로 개연성 밖에 있다거나 생활경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피고인들은 우레탄폼 스프레이 제조사가 피고인들의 회사가 그 스프레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들의 회사에 대하여 환기만 잘 해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기조치를 게을리하였다"고 판시하여 외부전문가의 지적을 신뢰하지 않은 점을 비난하였다. 이 점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고의 예견가능성을 근거로 하는 인식없는 과실을 인정하였다.

다. 양형

Saarbrücken 지방법원은 피고인들에게 각각 과실치사죄(형법 제222조), 과실치상죄(형법 제229조) 및 과실폭발야기죄(형법 제308조)로 유죄를 인정

하면서 자유형 2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하면 간략하게 "피고인들은 안전보건관련법상의 규정에 상응하게 St. Ingbert시의 건설현장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며, 근로자들의 위험을 인식하고 안전조치의 준수를 통제할 의무를 부담했다. 피 고인들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부작위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6) 아헨(Aachen)시 콘크리트벽 붕괴사건(2010년)⁹⁷⁾

가. 사실관계

X회사는 2008년 12월 독일 아헨시 Borngasse에 있는 아헨-뭰헨 보험사 (Aachen-Münchner Versicherung)의 새로운 본부건물을 콘크리트 건축방식으로 건축해 줄 것을 위탁받았다. 그 당시 건축방식은 가운데는 텅 비어있고 외부 벽만 콘크리트로 채운 두 개의 콘크리트벽을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이 콘크리트벽은 이미 바닥에 고정되어 있는 보강철근에 지탱하면서 나중에 콘크리트로 채우는 방식이었다. 채워진 콘크리트가 굳은 이후에는 필요한 안정성에 도달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측면의 지탱없이도 자유롭게 서 있을 수있게 되어 있었다.

2008.12.9. 경험이 많은 건축현장소장 C가 건축회사 소속직원 D 및 Y에 제 청소작업을 지시하였다. 그런데 이 청소작업의 과정에서 D와 Y가 콘크리트 외벽의 꼭대기를 지탱하던 지지대를 풀은 그 지지대를 제거하였다. 그 후 Y가 다른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D는 외벽에 있는 모든 지지대를 제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내부영역에서 아직 콘크리트 타설이 되지 않은 텅빈 공간에 있는 지지대로 제거하였다. 그런데 텅빈 공간에 있는 마지막 가로버팀목을 제거할 때 텅빈 공간이 안정을 잃고 넘어져 D를 덮쳤고, 이로 인하여 D

⁹⁷⁾ Thomas Wilrich, Arbeitsschutz-Strafrecht, Erich Schmidt Verlag, 2020, 225-229쪽에서 인용.

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검찰의 수사결과에 의하면-이미 사고가 발생하기 전인 2008.12.2. 안전보건전문가들은 Y와 D에게 현재까지 의 지지대만으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주의 할 것을 지시하였다.

검찰은 X건축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1을 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하였다. 피고인 1이 사업주로서 자신의 근로자들에 대한 완전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한 검찰은 사업주의 의무를 위임받았으나 사고발생 당시 A회사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책임을 물어 현장소장 C도 과실치사죄로 공소제기하였다. 검찰은 현장소장 C가 감독책임자로서 이미 외벽의 지지대 제거를 막아야 했고, 내부벽면을 지탱하던 지지대의 철거도 막아야 했음에도 이를 막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아헨 단독판사법원(Amtsgericht)은 X건축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과 현장소장인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판결요지

가) 대표이사의 지도소홀?

법원은 X건축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피고인 1의 하위 직원들에 대한 지도가 완전했기 때문에 의무위반을 찾아볼 수없고, 지도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1의 의무위반이 사고의 원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우선 법원은 전문가를 증인으로 신문하여 피고인 1이 콘크리트 외벽 등의 처리와 관련한 안전지도를 완전하게 이행했음을 확인하였다. 법원의 심리에 서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 지도하는 사람들, 지도의 내용 및 지도의 일시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이러한 지도 한 자료들을 보관해두었다. 다음으로 법원은 보충적으로 피고인 1이 지도를 부실하게 한 경우라고 가정해도 피고인 1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피고인 1이 부실하게 지도를 했다 하더라도 아직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텅빈 내벽이 붕괴되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사진을 제시하면서 내부 벽면의 고정이 불완전했다는 것이 명백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법원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 봐도 콘크리트 외벽에서 지지대를 제거하면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법적으로 보면 인과관계에 관한 것이다. 의무위반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사망한 피해자가 학습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 1의 지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발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사고의 원인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현장소장의 감독소홀?

법원은 또한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2는 사고가 발생하기 약 1시간 전에 피해자 D를 봤다고 변소하였다. 당심은 피고인 2의 이러한 변소를 번복할 수 없다. 특히 지지대를 제거하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2는 전문가인 피해자를 1시간 넘게 아무런 감독없이도 일하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당심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가 고도의 통제나 감독이 필요하지않은 청소업무만 담당했던 경우에는 더 그렇다."

결론지우면, 법원은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전문가로서 짧은 시간 동안 단순한 업무(청소)를 홀로 처리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감독의무위반 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 양형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모두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무죄로 선고받았으므로 양형에 관하여 언급할 것은 없다.

(7) 호흡기보호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건(1996년)98)

가. 사실관계

피고인은 가스설비공임과 동시에 지하건설공사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나 아직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X회사의 대표였다. 1993.2.15. 피고인과 지하건설업자는 피고인이 1993.2.16.부로 X회사 대표에서 물러나고 N을 새로운 대표에 앉히기로 결의하였다. 1993.2.16. 피고인은 별다른 말없이 그다음 날 이후의 건축계획을 적어둔 작업메모지를 N에게 건네주었을 뿐 그 밖의 지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은 회사에 호흡기보호마스크가단 한 개만 있다는 것도 지적하지 않았다.

1993.2.17. 주택 부속시설을 건축할 때 각 작업조당 2~3명의 인부로 구성된 2~3개 작업조가 일을 하고 있었으나 모든 인부를 위한 충분한 호흡기보호마스크는 없었다. 가스관 작업을 할 때는 가스관에서 독성이 짙은 가스가 누수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호흡기보호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었다. 새로운 대표로 된 A가 호흡기보호마스크를 휴대하고 다니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B는 호흡기보호마스크를 휴대하지 않은 채 가스관 설치 작업을 시작하였다. 근로자 B는 호흡기보호마스크를 휴대하지 않은 채 가스관 설치 작업을 시작하였다. 근로자 B는 호흡기보호마스크를 휴대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스크 휴대가 불필요하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로자 B가 작업을 거의 마칠 무렵 새어나온 가스에 의하여 유발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기절하였다. B의 동료인 C가이 장면을 보고 B를 구조하기 위하여 공사장 구덩이로 내려왔으나, C도 일산화탄소에 중독되고 말았다. 결국 근로자 B와 C는 그 공사현장에서 사망하고

⁹⁸⁾ LG Magdeburg, Urteil v. 24.10.1995 - 26 Ns 53/95(항소심); OLG Naumburg, Urteil v. 25.3.1996 - 2 Ss 27/96(상고심)

말았다.

건설회사의 새로운 대표인 N은 이미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다. 여기서 문제로 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상 죄책과 그 근거이다.

나. 판결요지

가) 피고인의 부작위

이 사건의 상고심인 Naumburg 주최고법원은 피고인이 호흡기보호마스크를 충분하게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에게 부작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이 새 대표이사 N을 통하여 문제있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전달해주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메모를 작성했다는 사실은 큰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작업메모의 전달이라는 적극적 작위는 호흡기보호마스크의 충분한 확보가 불가능함으로 인한 경우에만 그 작업메모를 받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과 관련될 수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형사책임

부작위는 형법 제1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형법 제13조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자는 법적으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고 그 부작위가작위에 의한 법적 구성요건의 실현과 동일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형법적 결과'란 근로자의사망이다. 또한 '보증해야 할'이란 행위자에게 보증인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행위자가 '법적으로' 보증해야 하는지의 여부가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X회사에 고용된 피해자의 가스관 작업과 결부된

위험에서 발생하는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의 일반적인 의무는 피해자와 X회사간에 체결된 고용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는 민법 제618조제1항에서 도출된다. 민법 제618조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노무청구권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X회사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하건설회사의 공동대표로서 지하건설회사와 행한합의에 기초하여민법 제618조제1항으로부터 X회사의 의무이행을실제로 수용하였다. 이것만으로원칙적으로민법 제618조제1항에서 도출되는일반적인보증인지위를근거지우기에충분하다."고설시하면서, "피고인과 X회사간에 피고인이그 회사에서관매설작업,건축준비,인부에대한지시나투입및감독,안전보건확보등의분야를전적으로담당하였음에반해,공동대표는지하건설분야만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X회사의근로자들을보호감독하였고,특히호흡기보호마스크의사용의무및기술적활용방법에 관하여고지하였다."라고판시하였다.

다만 Naumburg 주최고법원은 아직 설립초기 단계에 있는 회사를 형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독자적인 법인으로 취급하여, 유한회사의 기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법인에 대해서도 형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형법 제14조에 의하면 산업 안전보건 분야에서 사업주의 책임은 처벌되지 아니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그대표권을 가진 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한편, 법원은 "형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피고인의 보증인의무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시점에 실제로 그 회사에서 물러났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다. 보증인의무의 존재에 대하여 결정적인 것은 행위자가 행위를 했어야 할 시점 인 것이지 결과가 발생한 시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새로운 회사 대 표 N에게 업무를 인계할 당시 호흡기보호마스크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 였다면 피고인의 보증인지위가 부정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심리한 내용에 의하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그밖에 피고인의 보증인지위는 위무 에 위반되고 위험한 선행행위에 의한 부작위의 관점에서도 인정된다."고 판 시하였다.

다) 근로자의 독자적인 책임하에서 초래된 자기위태화?

Naumburg 주최고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을 사망으로 이끌었던 사정은 그 피해자 B의 경우 자신의 행위자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호흡기보호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가스관 연결작업을 위하여 구덩이로 내려갔음에 반해, 피해자 C의 경우 가스에 중독되어 기절한 피해자 B를 구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구덩이로 내려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특징지울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 B와 C가 자기책임하에 피해를 야기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이 배제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대하여 주최고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여기서는 근로자)이 의 식적으로 생명과 신체의 위험에 처해지는데 기여한 사람(여기서는 피고인)은 워칙적으로 그 타인의 자기위태화로 인하여 야기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의 자기책임을 야기한 사 람이 우월적인 지식으로 인하여 타인 보다 위험의 크기를 더 잘 알거나 적어 도 더 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평가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법적인 관계에 비추어볼 때 민법 제618조제1항에서 도 출되는 사업주의 보호의무와 관련되는 한 신체적 온전성에 대한 근로자의 자기 책임을 이와 같이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야만 사업주에 종속적으 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 다."고 판시하였다. 주최고법원의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사업주가 민법 제 618조제1항에서 도출되는 자신의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경우에만 자신의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형사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자신의 작업활동과 관련한 위험 및 이러한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고지하였으나 근로자로 하여금 아무런 제한 없는 보호조치의 준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으로 요구된 모든 단계를 이행하 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위험성 고지를 받고 자신의 작업활동

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근로자가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킨 경우에도 사업주는 근로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라) 의무위반

Naumburg 주최고법원에 따르면 피고인은 보증인지위에서 도출되는 근로자 B와 C에 대한 작위의무를 위반하였다. 그 이유에 대하여 주최고법원은, "사업주의 사망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보호의무의 범위는 자신의 보증의무의 범위와 동일하다. 이것은 근로자 C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동일하다. 근로자 B의 기절이 근로자 C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구출행위를 야기하였으나 자신이 구조행위를 할 때 사고현장에서 호흡기보호마스크가 없었던 관계로 그 현장에 누수된 가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고 판시하였다.

이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구체적인 의무위반은, 피고인이 호흡기보호 마스크를 충분하게 준비해두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마) 인과관계

사고가 문제되는 원인된 행위와 연결되어 있어야 그러한 원인된 행위를 한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Naumburg 주최고법원은 원심인 Magdeburg 지방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원심은 피해자 B가 실제로 자신이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만약 현장에 호흡기보호마스크가 있었더라면 그러한 마스크를 착용했을 개연성이 있었는지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더 보다 상세하게 다루어 보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만약 피해자 B가 현장에 마스크가 있었음에도 그러한 마스크를 착용하지않았다는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피고인을 처벌할 수없게되기 때문이다.

사고발생 당일인 1993.2.17. 사고 현장에 있었던 새로운 대표이사 N이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993.2.16. 피고인의 후임으로 그 회사에 들어온 N이 사업장에 호흡기보호마스크가 충분하게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직접 챙기지않았다는 사정을 통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한 N의독자적인 의무위반은 피고인의 의무위반과는 별개로 피해자의 사망에 기여한것이다. 그러나 N이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여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다. 즉, 피고인과 N은각각 독자적인 행위기여를 통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다.

다. 양형

이 사건의 경우 항소심 법원인 Madeburg 지방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고, 그 대신 형사소송법 제153a조제2항에 따라 절차중단의 처분을 결정하였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절차를 중단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수사절차에서 행하는 절차중단은 우리나라형사소송법상 기소유예에 상응하는 것이다. 공소제기 이후에는 법원이 절차를중단시킬 수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책임이 경미하다는 점을 근거로 6,000유로에 달하는 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이 사건은 3심을 모두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다는 사실과 3심을 거치는 동안피고인에 대한 형사절차가 장기화되었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8) Dillingen시 구조물 붕괴 사건(2015년)⁹⁹⁾

가. 사실관계

도나우 강변에 있는 Dillingen시 단독판사법원은 45년 동안 건설회사에서 근무하는 미장공에게 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하였다.

⁹⁹⁾ Thomas Wilrich, Arbeitsschutz-Strafrecht, Erich Schmidt Verlag, 2020, 240-241쪽에서 인용.

피고인(미장공)은 원래 다른 건설현장에 투입되었으나 사고발생 당일 사고 현장에서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건설회사 직원으로부터 크레인을 이용하여 무거운 건설자재들이 적재되어 있는 파레트를 구조물로 옮겨줄 것을 요청받았다. 그런데 또 다른 직원이 그 당시 36도로 너무 더운 관계로 파레트들을 건물 위로 올리지 않기 위하여 두 개의 구조물 지지대를 제거하였다. 피고인은 첫 번째 파레트를 기준에 맞게 내려놓았으나 두 번째 파레트를 옮길 때 그 파레트가 근로자에게 맞아 현장에서 즉사하였다.

나. 판결요지

가) 피고인의 형사책임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의무에 위반하여 과 실로 사고를 야기했어야 한다.

법원은, "사업장안전규칙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대한 협력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그 당시적용되었던 2014년'작업도구 이용시 산업안전보건기준'(Verordnung über Sicherheit und Gesundheitsschutz bei der Verwendung von Arbeitsmitteln)에서 뿐만 아니라 2015년 '작업도구 이용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도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다. '작업도구 이용시 산업안전보건기준' 제4조제5항 제2문도 사업주는 직원을 통하여 감독의무의 실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수범자는 사업주로 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법원은 "결정적인 것은 피고인 미장공이 사실상 감독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미장공으로서의 오랜 동안의 활동과 경험에 기초하여 다른 건설인부들에게 지시를 하였고 사고 발생 당일에도 근로자들의 작업을 통제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실제 사건 심리에서 출석한 증인도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증언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은 작업반장으로서 특별하게 구조물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피고인은 물론 근로계약에 기초한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작업반장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히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피고인의 의무위반

과실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원은 사실상 작업반장이었던 피고인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신 이 부담하는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구조물 지지대들이 제거된 사정을 악용하 여 크레인으로 파레트를 구조물에 이동시켰다.... 원칙적으로 구조물제조자만 구조물에 변경을 가할 수 있을 뿐이다."고 판시하여 피고인의 의무위반을 인 정하였다.

다) 인과관계

법원은 형법 제222조의 과실치사죄에서 말하는 인과관계에 관하여 간단하게 설시하였다. 즉, 피고인의 안전조치 미이행이 피해자의 사망과정에 인과적이었으며, 두 개의 구조물 지지대를 제거한 것은 적어도 사망한 근로자의 추락에 공동하여 인과적이었다고 보았다.

라) 과실

모든 형벌은 책임을 전제로 하고, 책임은 개인적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과실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가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어야 한다.

법원은 회피가능성에 관하여, 구조물의 지지대를 기준대로 설치했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또한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구조물이 붕괴될 시점에서는 피고인이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으나 상황의 위험성을 일반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구조물이 붕괴될 시점에서 피고인이 그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예견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형법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

마) 사망한 근로자의 공동책임

사망한 근로자는 사망시점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88%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점에서 법원은 사망한 근로자에게도 일정 부분 공동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사망한 근로자가 인식하면서 고의로 구조물로부터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양형

이 사건의 경우 Dillingen시 단독판사법원은 피고인에게 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형 60일(1일정액 60유로), 총벌금액 3,600유로를 선고하였다.

(9) Alsdorf시 학교에서의 용해제 폭발 사건(1998년)100)

가. 사실관계

학년말에 교실 청소를 위하여 교사는 학생에게 학교관리실에서 청소도구를 가져오도록 시켰다. 그러나 교사가 가져오라는 청소도구들은 다른 학급에서 이미 모두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그 학생은 에탄올 등 용해제가 들어있는 양철 통을 가져왔다. 용해제가 든 이 양철통은 다른 학급에서도 종종 사용하곤 했었다. 이 양철통 상표 부분에는 그 당시까지 적용되었던 화학물질취급지침에 따라 '쉽게 불붙음', '용기를 꽉 닫을 것', '화재원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것' 등과 같은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학생은 선반에 있던 통을 조심스럽게 기울여서 용해제를 떼 내었는데, 그용해제가 일부 청소에 사용된 종이수건에 떨어졌다. 또한 1997.6.23. 많은 양의 용해제가 흘러나왔다. 청소에 사용된 에탄올에서 증발과 흘러나온 에탄올로 인하여 폭발성있는 에탄올과 공기의 혼합물이 형성되었다.

¹⁰⁰⁾ LG Aachen, Urteil v. 2.11.1998-67 KLs 42 Js 591/97

에탄올이 든 양철동 주변에 있던 학생이 성난불을 켜자 발화되었다. 이로 인해 갑자기 솟구치는 긴 화염이 발생하였고 그 주변에 있던 종이, 옷가지 등 가연성 물질들에도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그 양철통이 뜨거워져 압력이 상 승되어 용기가 파열되었고, 방출된 에탄올로 인해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 1명의 여학생이 사망하였고, 8명의 학생들이 중상을 입었으며, 화재 와 폭발로 중재한 물적 손해도 발생하게 되었다.

나. 판결요지

가) 교사의 형사책임

모든 교사는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사고보험회사의 담당자는 "교사는 수업시간 뿐만 아니라 비교과 과정에서도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로부터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교사의 감독의무에 상응하게 학생들의 건강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청은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내용적으로 조화되는 것이다.

한편 위험물질처리규칙(Gefahrenstoffverordnung)도 제2조제7항제1호에서 특히 학생들을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위험물질처리규칙도 적용할 수 있다.

나) 교사의 (주의)의무위반

교사(피고인)에게 주의의무위반이 있는지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학급에서 청소를 하기 위하여 학생에게 20리터짜리 통에 들어 있는 용해제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사가 당시 상황과 자신의 개인적인 인식 및 능력에 따라했어야 했고 또한 할 수 있었던 교사의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 학생에게 관리사무실에 있는 청소도구를 가져오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용해제가들어있는 양철통을 가까이서 보았어야 했다. 만약 교사가 그 양철통을 발견하였다면 그 양철통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 경고표시를 보고 자신의 학생들에게

그와 같이 고도로 위험한 용해제를 주지않았을 것이다."고 판시하면소 교사의 의무위반을 인정하였다.

다) 과실

교사에게 과실(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필요한 주의를 다하고 양철통 겉면에 붙어있는 경고표시를 인식할수 있었더라면 학생이 청소를 하기 위하여 용해제를 사용할 때 화재가 발생할수 있다는 점도 인식했을 것이다. 이 경우 피고인이 실제로 발생한 에탄올-공기혼합물의 발화의 정확한 결과와 그 규모를 개별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과실비난을 할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어린학생이 성냥을 사용하여 폭발성있는 가스혼합물의 발화를 야기하게 하였다는점이다. 12세부터 15세까지의 학생들이 교과연습 시간에 성냥을 가지고 노는것이 아주 이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결국 피고인에게는 결과에 대한예견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라) 인과관계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은 그 밖의 사건경과 에도 인과적으로 작용하였다. 즉,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가스-혼 합물 발화가 되었고, 이는 한 학생이 사망하고 8명의 학생이 중상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시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판시하였다.

다. 양형

이 사건에서 Aachen 지방법원은 교사에게 과실치사죄와 과실치상죄 및 폭발야기죄(제311조)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면서 벌금형 180일(1일정액 150마르크)의 선고유예를 결정하였다.

우선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에 대하여, "양형을 할 때 교사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례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많은 학생들과 그 가족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1명의 학생이 화재피해를 입은 지 2주가 지난 후 사망하였고, 8명의 학생들이 중상을 입었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도 설시하였다. 즉, 법원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지금까지 전과가 없다는 점, 범행을 모 두 자백하였고 이로 인하여 범죄를 규명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단 점 등을 인정하였다.

(10) Heidelberg시 건축마감재 폭발 사건(2011년)¹⁰¹⁾

가. 사실관계

Heidelberg시 단독판사법원은 2011. 1. 건축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의 건축회사는 건물지하층의 배수 및 밀폐작업을 위탁받아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건물지하층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 중 3명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배수를 해야 할 지하벽 뒤에 큰 구멍이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내시경으로 본 결과 지하벽 뒤에 큰 구멍이 있음을 확신하고 비용절 감을 위하여 원래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그 구멍을 비싼 젤로만 충전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일차적으로 가격이 싼 마감재로 구멍을 메우고 그 후에 밀폐하기 위하여 젤로 채우도록 하였다. 그러나 가격이 싼 마감재가 폭발하여 3명의 근로자와 1명의 일반인이 중상을 입었고 중대한 물적 손해도 야기하게 되었다.

¹⁰¹⁾ Thomas Wilrich, Arbeitsschutz-Strafrecht, Erich Schmidt Verlag, 2020, 199-204쪽에서 인용.

나. 판결요지

가) 대표이사의 형사책임

법원은 이 사건 대표이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대표이사' 및 '사업주로서의 대표이사의 의무'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사건의 경우 사업주는 법인(이 사건에서는 유한회사)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사업주로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현은 결과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제2호는 '책임지는 사람'을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기관', 즉 대표이사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한회사의 대표는 자신의 공식적인 직위에 근거하여 회사의모든 사건을 관할한다. 즉 법률상 명시된 대표이사 또는 최고경영자의 전권능성 내지 전관할성에 상응하게 회사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책임을 부담한다.

나) 대표이사의 의무위반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나타난 피고인의 의무위반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피고인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위험성평가를 충분하게 실시하지 않았으며 건축마감재의 안전에 관한 정보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현재는 화재 및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작업을 한 경우 그 위험성평가의 요건이 '위험물질보호규칙(Verordnung zum Schutz vor Gefahrstoffen)'에 규정되어 있다.

둘째, 피고인이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보충적으로 피고인의 두 번째 의무위반을 언급하였다. 즉, 피고인이 사용한 가격이 저렴한 마감재에 화해위험이나 위험경고표시 등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 과실

법원은 피고인에게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분명하게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은 2009.3.9. 행해진 작업의 과정에서 가격이 싼 마감재에 함유되어 있는 화재발생의 위험이 높은 요소들로 인하여 지하실에서 발화가 가능한 공기가스혼합물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혼합물이 발화의 원인이 되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고 피할 수도 있었다."고 판시하였다.

라) 인과관계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법원은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예견가능하고 회피해가능한 폭발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 양형

이 사건에서 Heidelberg 단독판사법원은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120일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3. 캐나다

1) 개관

연방국가인 캐나다는 미국 및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연방국가와는 달리 연방이 배타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한다. 캐나다 형법에서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인(person)'의 개념에는 단체나 조직 및 기업도 포함되지만, 이들의 형사책임은 영국에서 발전한 '동일성 원칙(identification doctrine)'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102) 캐나다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동일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¹⁰²⁾ Donaldson/Watters, Corporate Culture as a Basis for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Allens Arthur Robinson, 2008, p. 24.

이에 따라 미국과 달리 관리자 책임(respondeat superior) 원칙 하에서 조직이나 기업의 형사책임이 결정되지 않고, 조직이나 기업 그 자체보다는 위반행위에 참여한 개인이나 고용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매우 좁은 범위에서만 조직이나 기업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많은 경우 조직이나 기업 내 행위자, 즉 자연인인 고용인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된다. 103) 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고용인 등의 위반행위가 조직이나 기업의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104)

캐나다의 조직이나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1992년 5월 발생하여 26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건'으로 큰전환점을 맞게 된다. 1997년 발표된 캐나다 정부의 공개조사 보고서에서는부실한 작업장 관리가 위험한 작업환경의 원인이었고,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조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105) 이후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2004년 3월 31일 'Westray Bill'이라 불리우는 'Bill C-45'를통하여 개정된 형법 제21조, 제22.1조, 제22.2조, 제217.1조가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004년 캐나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Westray Bill' 제정 이후 10여년 간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5개의 기업과 12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10건 정도에 불과하다. 2020년 Norm Keith 및 안드레아 퍼트의 분석에 따르면 'Westray Bill'에 근거한 검사의 기소가 적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106)

¹⁰³⁾ Caylor/Shaheen, Canadia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Program on Corporate Compliance and Enforement(https://wp.nyu.edu/compliance_enforcement/2019/03/07/canadian-corporate-criminal-liability/?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LinkedIn-integration, 2022.07.15. 검색).

¹⁰⁴⁾ Donaldson/Watters, Corporate Culture as a Basis for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Allens Arthur Robinson, 2008, p. 24.

¹⁰⁵⁾ Donaldson/Watters, Corporate Culture as a Basis for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Allens Arthur Robinson, 2008, p. 25.

¹⁰⁶⁾ 정책비교/노동, 캐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웨스트레이 법" 제정 2004년 이후 10년간 평가, 2020.12.13.; https://futureplan.tistory.com/entry (2022.08.01. 검색).

첫째, 캐나다경찰과 검찰 내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을 위한 전문적인 수사 팀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캐나다경찰과 검찰이 'Westray Bill'의 존재 여부 를 잘 모르고 있으며 기업 내 상위 책임자와 의사결정과정을 규명하는 게 중 요한 수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수사능력을 구비한 경찰이나 검사 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보건과 안전 감독관, 경찰, 연방정부 검사 간의 협력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경찰, 연방검찰, 주의 안전보건 감독관들은 산재 사망과 중대재해의 후과와 형사처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산재 사망과 중대재해는 주의 규제에 관한 문제이지 형법적 제재의 영역이 아니라는 믿음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이다. 즉 경찰이 송치해도 검사 측이 중대재해 기업처벌을 규정한 'Westray Bill'의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산업안 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HSA)'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Westray Bill'의 적용에 대한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즉 정부와 사용자들은 심각한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과실범죄를 기업이 책임지게 만드는 방법과 바램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2) 중대재해 발생 현황

(1)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건수

신설된 형법 제217.1조는 조직 내의 개인들에게 그들의 작업환경에 있는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시켰다. 이 목표는 새로운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과 함께 캐나다에서 산업재해사망의 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야 했었다. 캐나다 노동자 보상 위원회의 협회 통계에 따르면, 2004년 법안이 통과된 이후 캐나다에서 산업재해사망이 전체적으로 2% 증가했으며,

14년 동안 평균 증가율은 4%였다(See Appendix A for details) (Bill C-45, 2004) (Jemal, 2019). 2004-2010년에 7년 중 4년 동안 1,000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있었고, 2010-2017년에는 1,000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연도가 없기 때문에, 이는 이러한 숫자에 대한 연간 통계분석을 대표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지난 10년 동안 캐나다 전역에서 보고된 산업재해 사망 건수는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수치로 누군가는 법안 c-45가 2004년 이후 산업재해 사망 건수에 조금은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 사망의 감소가 법안 C-45의 시행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주(州) 직업위생법 시행과 같은 다른 가능한 변수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말하는 것은 어렵다.

후술하는 Hoyeck가 처음 기소되었을 때, 노바스코샤주에서 법안 C-45를 사용한 최초의 기소라는 것을 알리는 수십 개의 뉴스가 나왔다. 노바스코샤주에서 발생한 웨스트레이 광산 비극을 고려했을 때, 캐나다의 모든 주 중에서 노바스코샤 주민과 주정부는 형법의 이러한 중요한 변화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Hoyeck가 기소되고 법원의 판결로 많은 뉴스 기사들이 이 정보를 마치 노바스코샤 시민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다루었는데,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몰랐기 때문일 것이다. 형법의 이 중요한 개정안은그것이 캐나다 법이 된 2004년에만 잘 알려졌었다. 법안 C-45 내의 조항에기반하여 발생한 기소와 유죄판결의 부족으로 인해 미디어가 법안 C-45를 논의하여 직업 건강법 원칙의 범죄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이유는 거의 없었다.

C-45 시행 이후 캐나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수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II-5) A-NWISP 보고서: 캐나다의 산업재해 사망, Jemal, J.(2019, March 29). Lost Time Claims and Fatalities. (M. Bergen, Interviewer)107)

년	사망자 수	전년도 대비 변화율	2004년도 대비 변화율
2004	928	-4%	N/A
2005	1,098	18%	18%
2006	976	-11%	5%
2007	1,055	8%	14%
2008	1,035	-2%	12%
2009	939	-9%	1%
2010	1,014	8%	9%
2011	313	-9%	-1%
2012	977	6%	5%
2013	902	-8%	-3%
2014	919	2%	-1%
2015	852	-7%	-8%
2016	904	6%	-3%
2017	951	5%	2%

¹⁰⁷⁾ Madison K. Bergen, HAS THE APPLICATION OF SECTION 217.1 OF THE CRIMINAL CODE SUCCEEDED IN REMEDYING THE DEFICIENCIES IN CANADIAN CRIMINAL LAW AT THE TIME OF THE WESTRAY DISASTER?, Acadia University April, 2020, p81.

3)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제

(1)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캐나다 법제의 비교

캐나다의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1992년 5월 발생하여 26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건'으로 큰 전환점을 맞게된다. 1997년 발표된 캐나다 정부의 공개조사 보고서에서는 부실한 작업장 관리가 위험한 작업환경의 원인이었고,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조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108)이후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2004년 3월 31일 'Westray Bill'이라 불리우는 'Bill C-45'를 통하여 개정된형법 제21조, 제22.1조, 제22.2조, 제217.1조가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제1항은, 같은 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또는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즉,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산업 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는 그 수범자 내지 적용대상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한정시키고 있다. 이 경우 경영책임자등이란 ①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을 말한다(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9호). 중대산업재해 야기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종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만 처벌되던 상

¹⁰⁸⁾ Donaldson/Watters, Corporate Culture as a Basis for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Allens Arthur Robinson, 2008, p. 25.

황에서 탈피하여 기업의 최고책임자와 같은 경영책임자등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정책적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것처럼 캐나다의 경우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특별하게 적용되는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독립된 법률은 없기 때문에 오로지 형법상 다양한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고 있다. 즉 신설된 캐나다 형법 제217.1조, 작업자 등에 대한 생명·신체보호의무 부과 조항으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작업자가 사상되는 경우에 의거하여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제219조, 제220조, 제221조, 제222조)가 적용될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캐나다 형법 제217.1조는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조직에 대한 형사책임을 설정하기 위한 조문이며, '다른 사람의 작업을 지시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자와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다. 나아가 이 조항은 법원이 조직에 형을 선고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는 조항이며, 조직에 부과할 수 있는 선택적 보호관찰 조건을 제공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한편 이 조항은 기존의 연방, 지방또는 준주의 산업안전보건법(OHSA)의 규정을 침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조항에 따라 동시에 기소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캐나다의 법적용 과정도 기업의 배후에 있는 경영책임자 등에 대한 책임귀속이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독립된 단행법률로 형사책임귀속의 주체를 규정하고 있음에 대하여, 캐나다의 경우에는 신설된 형법조문 제 217.1조를 통하여 형사책임주체를 명시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캐나다의 경우에는 형법의 일부로서 중대재해처벌규정을 포섭하고 있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2) 캐나다 'Bill C-45'의 주요 내용

캐나다 'Westray Bill' 즉 법안 C-45는 2002년 6월에 표결된 정의와 인권에 관한 하원 상임위원회의 열다섯 번째 보고서에 대한 2002년 11월 정부의대응에서 정부가 약속한 입법 개혁을 반영한다. 2002년 11월 법무부가 설명한 바와 같이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 및 기타 조직의 형사 책임은 더 이상 정책 결정 권한 (즉, 조직의 "지 시하는 마음")을 가진 조직의 고위 구성원이 범죄를 저지른 것에 의존하지 않 는다.

기업 및 기타 조직에 기인하는 형사 범죄의 신체적, 정신적 요소는 더 이상 동일한 개인으로부터 파생될 필요가 없다.

행위 또는 누락이 기업 또는 기타 조직에 귀속되는 범죄 (actus reus)의 물리적 요소를 제공 할 수 있는 인력의 등급은 모든 직원, 대리인 및 계약자를 포함하도록 확장되었다.

과실에 근거한 범죄의 경우, 범죄의 정신적 요소 (mens rea)는 조직의 "고 위 임원진"(운영 및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경영진을 포함)의 총체적 결함을 통해 기업 및 기타 조직에 귀속된다.

의도적 또는 무모한 범죄의 경우, 범죄 의도는 고위 임원이 범죄의 당사자이거나 고위 임원이 조직의 다른 구성원에 의한 범죄위원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의 위임을 방지하거나 중단하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회사 또는 기타 조직에 기인한다.

기업이나 조직 범죄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양형원칙이 채택되고, 기업 임원에 대한 형사책임의 특별 규칙은 거부된다. 다른 사람의 업무를 지시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시적 법적 의무가 부과되며, 그러한 개인은 그러한 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체적 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부과된다.

법안 C-45 제1조제1항은 관련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능력을 가진다양한 공공 및 민간단체에 대한 현재 규정 대신 "모든 사람"과 "사람" 등의정의를 "조직"으로 변경하여 형법 제2조를 개정하고 있다. 즉 조항 1 (2)은정의를 추가하여 형사책임의 범위를 관련 개인의 집단 활동과 이익을 구성하고 구현하는 광범위한 단체로 확대한다.

정의의 첫 번째 부분은 "조직"이 공공기관, 단체 기업, 사회, 회사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모든 사람" 등의 현행규정의 정의에 포함됨)뿐만 아니라 회사, 파트너십 또는 노동조합 (현행규정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조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109)

(3) 캐나다 형법 규정 등

가. 캐나다 형법 제22.1조

'Bill C-45'의 개정을 통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캐나다 형법 제22.1조와 제22.2조는 책임귀속의 주체를 '조직(organisation)'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person'이나 'corporation' 보다 포괄적 용어로 모든 비정형적 단체를 포함한다.¹¹⁰⁾

제22.1조에서 조직은 일정한 경우 범죄행위의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의 당사자란 제21조에서 i) 범죄행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자, ii)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자, iii)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자로 정의된다. 즉, 캐나다 형법의 '범죄행위의 당사자(Parties to Offences)'란 우리 형법상 실행정범, 방조범 및 교사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¹⁰⁹⁾ United Nurses of Alberta v. Alberta (Attorney General) (1992), [1992] 1 S.C.R. 901, 71 C.C.C. (3d) 225, 89 D.L.R. (4th) 609.

¹¹⁰⁾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A Plain Language Guide to Bill C-45, p. 4.

제22.1조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조직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a)호에서는 조직의 종업원이 범죄행위의 당사자 일 것을, (b)호에서는 조직의 고위 임원이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a)호에서의 행위자는 '대표자(representative)'로 규정되어 있고,이는 사실상 해당 조직을 위하여 일하거나, 연계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예컨대 기업의 이사, 동업자, 대리인 및 종업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111) 종업원의 행위가 그의 권한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이 범죄행위의 당사자이거나,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종업원이 과실행위에 연과되어 범죄행위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과실행위에서 고위 임원(senior officer)의 감독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한다. 과실행위와 감독의무 해태가 존재한다면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캐나다 형법 제22.1조

22.1 과실을 입증하는 기소가 필요한 범죄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경우 단체는 범죄의 당사자이다.

- (a) 행위가 그의 권한범위 내에서 있는 경우
 - (i) 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 한 명이 범행의 당사자 이거나,
 - (ii) 단체를 대표하는 자 중 2명 이상이 작위 또는 부작위로, 만약 오직 한 명의 대표의 실행이었다면, 바로 그 대표가 범죄의 행위자이었을 실행에 참여한 경우
- (b)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활동의 측면에서 책임있는 고위 임원이 -또는 고위임원들 집단적으로 단체의 대표가 범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예상될 수 있는 주의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나. 캐나다 형법 제22.2조

제22.2조는 과실책임이 아닌 행위자가 고의로 행위한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¹¹²⁾ 이때에 행위자는 '고위 임원(senior officer)'이며.

¹¹¹⁾ Goetz, BILL C-45: AN ACT TO AMEND TE CRIMINAL CODE, Library of Parliament, 2003, p. 10.

¹¹²⁾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A Plain Language Guide to Bill C-45, p. 7.

적어도 부수적으로라도 조직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고위 임원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조직의 이익을 위한 의사로 범죄의 당사자가 된경우 기업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고위 임원이 조직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다른 종업원을 지시한 경우에도 기업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 경우 지시에 따른 종업원에게 조직의이익을 위한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¹¹³⁾ 마지막으로 고위 임원이 종업원의행위로 인하여 범죄행위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에게 형사책임이인정될 수 있다.

캐나다 형법 제22.2조

22.2 과실이 아닌 고의를 입증하는 기소가 필요한 범죄와 관련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라 도 단체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단체는 범죄의 당사자이다.

- (a) 고위임원 중 하나의 권한 내에서의 행위하는 경우 범죄의 당사자인 경우
- (b) 범죄의 당사자에게 요구되는 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그의 권한 내에서 행위하고, 단체의 다른 대표의 사무를 지시하여 그들이 그것을 행하거나, 혹은 범죄에서 특별히 부작위하는 경우
- (c) 단체의 대표가 범죄의 당사자라는 것, 혹은 범죄의 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범죄의 당사자가 되는 것으로부터 그들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다. 캐나다 형법 제217.1조

작업자 등에 대한 생명·신체보호의무 부과 조항으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작업자가 사상되는 경우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제219조, 제222조)에 해당할 수 있다.

제217.1조의 '자(사람)'에는 공공기관, 비정부조직, 법인, 기업, 민간기업,

¹¹³⁾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A Plain Language Guide to Bill C-45, p. 7.

자선단체, 사회, 파트너십,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협회가 포함된다. 즉 이 조항은 기업의 형사책임을 모든 조직으로 확대한 것으로 캐나다 전역에 서 타인의 업무를 지시하는 모든 조직 및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또한 이 조항은 대표자의 행위에 대해 조직에 대한 형사책임을 설정하기 위한 조문이며, '다른 사람의 작업을 지시하는' 모든 사람이 근로자와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한 조항이다. 나아가 이 조항은 법원이 조직에 형을 선고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를 설명하는 조항이며, 조직에 부과할 수 있는 선택적 보호관찰 조건을 제공하는 조항이기도 하다.

한편 이 조항은 기존의 연방, 지방 또는 준주의 산업안전보건법(OHSA)의 규정을 침해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 따라서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조항에 따라 동시에 기소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은 형법 조항은 파산기업의 경우나 모기업 및 승계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114)

캐나다 형법 제217.1조

다른 사람이 작업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지시할 권한을 가진 자는 작업자 및 작업 또는 업무로 발생하는 신체적 위해를 예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제재수단

산안법위반행위인 산안법상의 개별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최대 100,000달러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유형이 나아가 기업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¹¹⁴⁾ David J. Roberts, "Westray Response Flawed Legislation," The Chronicle-Herald [Halifax], 24 June 2003, p. B2.

즉 행위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자유형이나, 2,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 기업에 대하여 100,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기한 범죄보다 중한 범죄인 경우에는 상한 없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115)

한편 형법 제217.1조에 근거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개인행위자의 경우 상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유형이 부과되고(캐나다 형법 제221조상해를 입힌 형사과실¹¹⁶⁾, 사망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을 부과할수 있으며(캐나다 형법 제220조 사망에 이르게 한 형사과실, 캐나다형법 제222조(5)(a)항 불법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형사과실) 무한의 벌금형과 15%이하의 피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행위자가 조직인 경우에는 전과기록에 등록하고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으며 무한의 벌금형과 15%이하의 피해배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나아가 조직이나 기업에 대한 특별선고원칙으로서 양형법원은 조직이나 기업에게 부과할 벌금형을 결정할 때 형법 제718.21조제15항에 규정된 다음의 요소를 양형인자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¹¹⁷⁾

첫째, "도덕적 책임" 관련 요소 :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득의 규모, 관련된 계획의 정도와 기간 및 범죄의 복잡성 등을 고려한다.

둘째, "공익" 관련 요소 : 조직이나 기업을 계속 운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 야 할 필요성에 대한 형의 영향, 범죄의 수사 및 기소 비용, 범죄에 대해 조직이나 기업에 부과되는 형법과 구별되는 모든 규제의 처벌 조항 등을 고려한다.

¹¹⁵⁾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A Plain Language Guide to Bill C-45, p. 7.

¹¹⁶⁾ 범죄에 총기가 사용된 경우에는 최소 4년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¹¹⁷⁾ Canadian centre for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Westray Bill(Bill C-45) -Overview.; https://ccohs.ca/oshanswers/legisl/billc45.html (2022.08.18. 검색)

셋째, "재활의 전망" 관련 요소 : 범죄에 대한 조직이나 기업의 역할에 대해 관리자와 직원에게 부과된 형벌, 과거의 유죄판결 또는 규제 위반 등을 고려 한다.

넷째, "피해회복" 관련 요소 : 조직이나 기업이 피해배상 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정도, 피해과징금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조직이 재산을 은 닉하거나 전환하려는 모든 시도, 추가 범죄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직이나 기업에 대한 특별수습조건으로서 보호관찰명령은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직이나 기업의 향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에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캐나다형법상 대부분의 표준집행유에조건은 실제로 조직이나 기업에 적합하지 않거나 조직에 적용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추가 선택적 보호관찰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형법 제732.1조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은 양형인자를 양형법원이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18)

첫째. "손해배상"

둘째, 후속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표준 및 절차 수립(그러나 양 형법원은 먼저 다른 규제 기관이 그러한 정책, 표준 및 절차의 개발 또는 구 현을 감독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함)

셋째, 이러한 정책, 표준 및 절차를 대리인에게 전달 넷째, 이러한 정책, 표준 및 절차의 이행에 대해 양형법원에 보고 다섯째, 이러한 정책, 표준 및 절차를 준수할 책임이 있는 고위 임원을 식별 여섯째, 법원이 정한 방식으로 다음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

¹¹⁸⁾ David Goetz, BILL C-45: AN ACT TO AMEND THE CRIMINAL CODE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https://lop.parl.ca/sites/PublicWebsite/default/en_CA/ResearchPublications/LegislativeSummaries/372LS457E (2022.08.01. 검색)

일곱째, 조직이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부과된 선고, 조직이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

여덟째, 조직에 의한 후속 범죄를 방지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양형법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기타 합리적인 조건을 준수하는 것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만 처벌의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캐나다의 경우에는 전술한 형법 제22.1조, 제22.2조 및 제217.1조에서 포괄적으로 대표자, 고위 임원, 모든 조직, 개인 등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캐나다의 산업안전보건법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6〉 캐나다의 중대재해처벌 법제

대상	분야	내용
법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본법	직장안전과 보건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여부	2004년 'Westray Bill'을 통한 형법 제22.1조 등 및 제217.1조의 신설을 통한 입법
	중대재해처벌법 존재하는 경우 산안법과의 관계	직장안전과 보건법 및 형법 제217.1조에 따라 동시에 기소될 수 있으며 또한 개별 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
법인	처벌의 근거	 형법 제22.1조 : 과실범죄에 대해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 형법 제22.2조 : 고의범죄에 대해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 형법 제217.1조 : 타인의 업무수행방법을 지시하거나 지시할 권한을 갖는 자가 업무로부터 발생하는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새로운 법적 의무를 신설

대상	분야	내용
	처벌규정 적용대상자	형법 제217.1조의 '자(사람)'에는 공공기관, 비정부조 직, 법인, 기업, 민간기업, 자선단체, 사회, 파트너십, 노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협회가 포함되어 기업 의 형사책임을 모든 조직으로 확대
	중대재해(근로자 사망) 해당시 법정형	- 직장안전과 보건법 : 상한없는 벌금 - 형법 : 전과기록에 등록, 보호관찰 명령, 상한없는 벌금, 15% 이하의 피해배상금
	주의의무의 근거	형법 제22.1조(주의의무) 제22.2조(예방조치의무) 제 217.1조(합리적인 예방조치 의무)
	주의의무위반의 고의·과실여부	형법 제22.1조: 과실에 의한 주의의무 위반 형법 제22.2조 : 고의에 의한 조치의무 위반 형법 제217.1조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조치의무 위반
	법원심리에서의 주된 쟁점	대부분의 사건은 양형판단에 집중
	양형	- 벌금형 결정 시 : 형법 제718.21조제15항 - 보호관찰 명령 시 : 형법 제732.1조
	주요 양형인자	- 벌금형 결정 시 : ①도덕적 책임관련 요소(범죄로 획득한 경제적 이득의 규모, 범죄의 복잡성 등), ②공익관련 요소(조직이나 기업을 계속 운영하고 고용을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형의 영향, 범죄의 수사및 기소 비용, 범죄에 대해 조직이나 기업에 부과되는형법과 구별되는 모든 규제의 처벌 조항 등), ③재활의 전망요소(범죄에 대한 조직이나 기업의 역할에대해관리자와 직원에게 부과된형벌, 과거의 유죄판결 또는 규제 위반등), ④피해회복관련 요소(조직이나기업이 피해배상등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정도, 피해과징금 납부를 피하기 위하여 조직이재산을 은닉하거나 전환하려는 모든 시도, 추가 범죄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 등) - 보호관찰 명령 시 : ①손해배상, ②후속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표준 및 절차 수립, ③조직이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 부과된 선고, 조직이 추가

대상	분야	내용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취한 조치, ④조 직에 의한 후속 범죄를 방지하거나 범죄로 인한 피해 를 구제하기 위해 양형법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 는 기타 합리적인 조건을 준수하는 것 등
자연인 (경영 책임자 등)	처벌의 근거	 형법 제22.1조(주의의무 위반), 제22.2조(고의로 조치의무 위반), 제217.1조(고의 및 과실로 합리적인 조치의무 위반) 위 의무위반에 따른 결과로서 형법 제220조(업무상 과실치사), 제221조(업무상 과실치상), 제222조 (5)(a)항(불법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형사과실)
	처벌규정 적용대상자	-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비신분범이므로 범행주체에 제한 없음 - 법인의 기관(이사, 대표 등)은 형법 제22.1조, 제22.2조 및 제217.1조(타인을 위한 행위)를 통하여행위주체성 인정
	중대재해(근로자 사망) 해당시 법정형	무기징역형, 상한없는 벌금형, 15% 이하의 피해배상금
	주의의무의 근거	- 직장안전과 보건법상 행위의무 - 형법 제22.1조의 주의의무, 제217.1조의 조치의무
	법원심리에서의 주된 쟁점	- 사업주의 조치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 여부 - 사업주의 조치의무 또는 보호의무와 근로자 사망간 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주의의무위반관련성(합법적 대체행위) 인정에 기초 한 과실배제 여부
	양형	- 일반적으로 벌금형 선고 - 다수 사망자 발생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 가 선고되며 예외적 실형선고
	주요 양형인자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 피해자의 과실 - 발생결과의 중대성 - 피고인의 전과 유무 - 피고인의 자백

4) 중대재해 처벌 관련 사례

캐나다에서는 C-45 법안의 통과 이후, 형법 제217.1조 등이 인용되거나 적용된 법원의 판례는 모두 39건이다(Criminal Code, SC 2003. c, 21, s.3). 2004년 개정 후 매년 평균 1건이 Bill C-45 규정에 따라 기소되었고, 5명이유죄 협상을 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9) 대다수의 판례는제217.1조를 가볍게 언급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또한 모든 판결문이 보고된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어떤 이유로 기소를 취하하거나, 결말이 난 판례(형사소추에서 "정상참작"이라 불리며)의 기소는 보고된 판결이 없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법원이 제271.1조를 어떻게 적용했고 해석했는지 분석하기 위해 이들 판례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판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20)

가장 관련있는 주요 판례로는 R. c. Scrocrca사건(R. c. Scrocrca, 2010) 2010. 9. 27. 판결), R. v. Kazenelson사건(R. v. Kazenelson, 2015) (2013. 2. 1. 판결), R v. Hoyeck사건(R. v Hoyeck, 2019) (2019. 1. 11. 판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판례들은 각각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 제 217.1조에 의거하여 과실치사의 성립여부를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1) Scrocrca사건(R. C. Scrocrca, 2010 QCCQ 8218)

가. 사건의 개요

2006년 6월, Pasquale Scrocrca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포크레인 (굴착용 기계)으로 언덕을 주행 중 그의 직원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그는 형법 제220(b)조(과실치사)의 혐의를 적용받았다.

¹¹⁹⁾ Raven News, 10 Years of Bill C-45 In Action, Raven Rescue(https://ravenrescue.com/newsletter/detail/raven-news-top-5-nfpa-facts/419, : 2022.07.13. 검색).

¹²⁰⁾ Madison K. Bergen, HAS THE APPLICATION OF SECTION 217.1 OF THE CRIMINAL CODE SUCCEEDED IN REMEDYING THE DEFICIENCIES IN CANADIAN CRIMINAL LAW AT THE TIME OF THE WESTRAY DISASTER?, Acadia University April, 2020, pp45.

피고는 포크레인의 유일한 소유자였고 운전자이었으며, 포크레인은 정확히 30년 전인 1976년에 구매되었다. 30년 동안 Scrocrca는 여름에는 단지 몇 번만 프크레인을 사용했고, 대부분 눈을 파내기 위해 겨울에 사용했다. 겨울에는 눈이 쌓여 바퀴를 멈추게 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포크레인은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아도 운전을 멈출 수 있었다. Scrocrca는 상습적으로 포크레인을 중립에 놓고 삽을 내리거나 기계를 멈추기 위해 변속 페달을 밟았다. 포크레인은 사건 일주일 전에도 같은 일을 완수했었다. 법원은 사고가 일어나기 전 일주일 동안 피고가 40번의 비슷한 행동을 했다고 추정했다. 사고가 일어날 때, 기계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Scrocrca가 두 번째 조치로 비상 브레이크를 당겼을 때, 그것 또한 고장이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포크레인을 더 조사한 결과, 한 감정인은 기계에 대략 16가지의 결함이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보다 관련성 있는 기계적 문제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 1. 경적이 작동하지 않았다. (고인은 그가 포크레인에 치였을 때 그것이 다가 가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를 알지 못한 것에 대한 잠재적 이유였다.)
- 2. 핸들이 안전한 양보다 5인치 더 풀어져 있었다.
- 3. 공기압력계가 고장났다. (그것은 항상 압력이 정상이라고 보여준다.)
- 4. 매우 낮은 속력에도 비상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 5. 마스터 실린더의 브레이크 오일 탱크가 예전부터 비어있었다, 그리고 뚜껑이 고장 났었다.
- 6. 앞 브레이크가 고장났다.

그리고 전문가는 "그 차량은 안전하지 못하며, 그것의 보수유지가 방치되었었다:"라고 진술했다. 전문가는 계속해서 안전 문제들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시각적 단서들을 확인했다. 그의 조사 중 여러 가지 면에서 그는 육안으로 "똑똑히 볼 수 있다"고 느낀 기계적 문제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반대신문에서 사고 전에 "[전문가는] 피고가 기계적 결함을 알아차리지 못했을 가능

성을 배제시킬 수 없다"라고 인정했다. 법이 포크레인 같은 "대형 기계"에 대해 일정한 정도의 기계 검사를 완료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인정 또한 중요하다.

피고는 그의 직원을 친 행위에서 피고의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포크레인 자체와 여러 가지 기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논쟁에서 주요 화제는 Scrocrca가 합리적인 사람으로 행동하면서, 정기적 으로 포크레인을 보수 유지하거나 적어도 그것의 기계적 결함에 관해 확인할 수 있었어야 했는지에 관한 여부이다.

그가 기계의 정기적 정비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피고는 즉각적인 주의가 필요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지 않는 한 기계에 대해 어떠한 정비도 하지 않 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기계가 전문적인 정비공에 의해 정비되는 일이 매우 적거나 혹은 없었다. 모든 오일 교체와 작은 유지 항목들은 공인된 정비 공이 아닌 피고 자신에 의해 실행되었다. Scrocrca는 5년 이상 동안 브레이크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고, 그것은 아마 5년 보다 더 길었을 것이다. 그는 오일 수준과 브레이크 오일 수준에 대한 연례 점검을 수행했다. 하지만 이 사고 전에 그는 만족스럽게 브레이크 오일 수준을 점검하지 못했다. 피고가 실린더를 열러 갔을 때, 그는 열지 못하도록 뚜껑이 고장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Scrocrca는 짧은 육안 검사를 실행했고, 그는 눈에 보이는 누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오일 수준이 괜찮을 거로 추정했다. 전문가가 실린더를 살펴보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녹을 포함하고 있었을 때, 그는 Scrocrca의 추정을 틀렸음을 입증하며 실린더가 얼마 동안 비어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위에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기계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주장했다.

Scrocrca의 주요 주장은 자신이 포크레인의 기계적 결함에 무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왕립 법원은 그가 포크레인의 기계적 상태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판사 Lavergne는 Scrocrca가 Aniello Boccanfuso의 죽음을 야기했고 과실치사의 죄를 지었다고 판결했다. 판사 Lavergne가 피고의 *범죄행위*를 입증한 세 가지 논거는, 1. 重차량(포크레인)의 소유자와 사용자로서, 피고는 그것의 안전한 작동을 보장하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설명과 결함의 본질은 수년에 걸친 의무의 위반을 보여준다. 3. 차량의 유지를 방치함으로써, 피고는 그 자신을 차량 마모의 영향과 결과적으로 그 마모에 기인한 위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위치에 놓았다는 점이다.

범행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검찰 측은 피고의 행위가 합리적인 사람이 같은 상황에서 하는 행동으로부터 현저하게 벗어난 것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다. 판사 Lavergne는 30년 동안 회사의 기계를 완전히 검사하지 않은 것은 표준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또한 기계의 실제 결함에 대한 무지의 항변이 30년 이상 방치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나. 판례의 분석

이 판례는 제217.1조 적용에 있어 획기적인 판례로 평가되고 있다 (Criminal Code, SC 2003, c. 21, s. 3). 제217.1조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노동자에게 지시하는 상황에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기업 내 개인에게 묻는 것을 주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

Pasquale Scrocrca는 조경회사를 소유하고 있었고 따라서 모든 직원에게 일하는 방식을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 권한과 함께 직원들 각각을 보호할 의무도 생겼다. 이 판례는 형법 제219조와 제220조와 같은 조에 따른 범죄의 *범행의도*를 규명하기에 충분한 과실의 정도에 관한 문제를 명확하게 했다.

이 판례에서 직원의 죽음에는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 반대로, Pasquale Scrocrca는 평소처럼 사업을 계속하려고 시도하다가 30년간의 부주의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Scrocrca는 무모한 작업환경을 용인했고, 그것이 불가피하게 그의 직원 한 명을 사망하게 만들었다. 이 판례는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

리는데 법을 사용한 비교적 단도직입적인 상황이었다. 판사는 심지어 판결문 말미에 제217.1조가 전적으로 관련되어 있지만, 법원은 제217.1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아도 Scrocrca에게 유죄를 선고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판례는 법 해석에 무엇을 추가하고 무엇을 제거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Scrocrca는 형법 제217.1조를 적용한 개인에 대한 성공적인 기소로 보고된 최초의 판례이다(Criminal Code, SC 2003, c. 21, s. 3)(R c. Scrocca, 2010). 따라서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판례는 중요하며 이는 제217.1조에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밝힌 최초의 판례였기 때문에, 고용주가 그들의 직원들에게 가지고 있는 의무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 판결은 업무 현장에서 행동과 태만에 심각한 결과가 따를 수 있음을 사회에 경고하고 가르쳐 준 중요한 사건으로 역할을 한다. 2011년에 발표된 보도는 R c. Scrocrca가 미래에 법률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Criminal Negligence Driving Offence, 2019):

"고용주들은 OHS의무 태만이 기업에게 무제한적 벌금과 개인에게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조직은 업무 현장의 위험성을 평가 하고 관리하는 데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불행하게도, 조직과 고위 임원들은 이 조항에 따른 그들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법원의 지시를 계속 기다려야 할 것이다."

다. 형량의 문제점

Pasquale Scrocrca는 "2년 징역형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조건을 존중하라"라는 선고를 받았다(Criminal Negligence Driving Offence, 2019). 그는 2년간의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지만, 연방 교도소에서 2년 동안 복역하는 선고는 받지 않게 되었다.

이 형량의 주요 문제점은 형벌이 범죄에 정말 적합한지와 형벌이 다른 사

람이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가혹한지이다. 이것 을 분석하는 데 있어. 의문의 여지는 판결이 제217.1조의 집행을 성공적으로 하였는지가 아니라 형법 제217.1조 위반의 중요성을 사회가 이해하도록 적절 한 형량이 부과되었는지 여부이다. Scrocrca는 집행유예 조건을 위반하지 않 는 한 징역형이 전혀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형량은 훨씬 가볍다. Scrocrca사 건에서 피고의 과실은 그의 기계에 합리적 수준의 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직원이 자주 사용하는 기계의 정비 부족에 대해 고의로 몰랐던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과실로 직원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었다. 이는 처음으로 형법 제 217.1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내리는 데 따른 어려움과 복잡성을 다시 제기한 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는 양형기준이 부족하며, 이는 형법 제217.1조를 사용 한 캐나다에서 최초의 과실치사 사건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 하여 캐나다법의 관습법 부분을 새로운 영역으로 옮겼다. 비록 다른 사람의 삶을 끝낸 죄로 유죄가 인정된 사람이 감옥에서 하루를 보낼 필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 힘들지라도, 이것은 그 처벌이 그 범죄에 적합한지를 결정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이 판례가 사람들이 형법 제217.1조를 위반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억제할수 있을지에 대해 강한 주장은 하기 어렵다. 이 판례는 유죄판결을 내리기 위해 제217.1조를 사용한 최초의 재판이며, 이 법이 부과하는 부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 한 남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그에게 어떤 징역도 선고하지 않았다. 이것은 또한 법원이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다뤄야 할 것 같은 상당한 도덕적,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 판결은 비난과 억지라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과 사회복귀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논의했듯이, 심하지 않은 형벌도 지역사회에 강한 뿌리를 둔 누군가에게는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Scrocrca는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 지방 직업 보건 법령 및 규정과 형법을 꼼꼼히 읽고

준수할 것이다. 그에게 부과된 법을 지키고 대가를 치르는 것은 그가 완전히 사회에 복귀하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는 것을 보장할 확률이 크다. 다만 징역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고 최소한의 결과만 감수하면 모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상황에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 형벌은 아마도 공공의 보호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다. Scrocrca가 저지른 범죄는 비록 무모하지만, 그가 특별히 어떤 개인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시작한 범죄는 아니었다. 비록 그가 태만하고 직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했지만, 그 재판과 형벌은 Scrocrca가 향후 사업 관행을 수행할 때 더 신중할 수있는 충분한 깨달음이었다. 비록 이 형벌이 다른 사람들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지를 저울질할 때는 불충분한 억지력이지만, Scrocrca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것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억지력이다.

Scrocrca가 가석방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위협도 공공의 보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상과 책임에 관해서, 이 형벌은 두 가지 의무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 피고가 피해자 가족에게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배상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에서 그것은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앞으로 2년 동안 Scrocrca에 제한을 두는 것은 유사한 행동의 반복을 지연시킨다. 치명적인 사건을 다룰 때는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

요약하자면, 이 형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 같지 않다. 그러나, 그것은 겉보기에는 도덕적인 시민이 재범하는 것을 단념시키는데 필요한 형벌의 적절한 길이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이 형벌은 재판의 판결로서 반드시 형법 제217.1조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존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특히 초기 판결에서 제217.1조와 관련된 범죄의 형벌의 길이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 요소는 억지이다. 사회가 제217.1조에 의해 부과된 부담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조항의 위반이 엄격한 법적 처벌과 함께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 Kazenelson사건(R. v. Kazenelson, 2015 ONSC 36): 기업이 아닌 관리자 개인에게 적용된 최초의 사례¹²¹⁾

가. 사건의 개요

Joel Swartz는 Metron 건설의 과반수지분주주이자 회장이었다. 그는 피고 Vadim Kazenelson를 그의 건설회사의 프로젝트 관리자로 고용했고, Vadim Kazenelson는 Kipling Project라고 언급되는 특정한 프로젝트의 현장 감독관으로 Fayzullo Fazilov를 고용했다. 그 프로젝트는 연말이 마감이었고, 사고 발생일 회사는 프로젝트를 기한 내에 완료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모든 직원들은 프로젝트를 제시간에 완료하면 높은 상여금을 받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Kazenelson가 이 상여금에 대해 알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았다.

2009년 12월 24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날 아침에, Swartz, Kazenelson 그리고 Fazilov는 Swartz가 그들에게 제시간에 일을 끝내라고 재촉한 건설 현장에서 만났다. 그날의 계획은 6명의 건설 노동자들을 그들이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도록 13층에 올려줄 'swing stage(공사현장에 임시로설치한 승강기)'에 탑승시키는 것이었다. 건설 노동자들이 승강기에 탑승할때 그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산업 관행이었고 법이었다.

Kazenelson은 이를 알고 있었고, 직원 중 한 명은 심지어 법정에서 그것이 일반적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만약 Kazenelson가 낙하 안전장치(생명줄이라 불리는)가 없는 것을 목격했다면, 직원들은 해고될 것이다. 하지만 Metron 건설이 이 일을 끝내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평범한 상황이아니었다.

¹²¹⁾ 이 사건과 관련하여 후술하는 (5), (9), (10)의 사건도 사건의 개요는 동일한 같은 사건이다. 다만 (2)의 사건은 Metron건설회사 프로젝트 관리자인 개인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제1심 판결이고, 후술하는 (5)의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건설회사인 기업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건이며, (9)의 사건은 사고가 발생한 건설회사의 사장이자 단독이사인 경영자의 형사책임을 판단한 사건이고, (10)의 사건은 (2)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판결이다. 따라서 같은 사건으로 건설회사(기업), 경영자(사장), 관리자의 형사책임을 각자 판단한 판결들이기에 각기 판결을 분리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Kazenelson은 두 시간 동안 작업 현장을 떠나 그의 상사와의 회의를 진행한 후 돌아왔고 그의 부하들과 일을 했다. 그가 승강기에 탔을 때, 그는 승강기에는 여섯 명의 노동자에 의해 공유되어야 하는 오직 두 개의 생명줄(노동자용은 2개이나 Kazenelson이 사용한 1개가 있으므로 총 3개)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Kazenelson은 현장감독관인 Fazilov에게 이 안전 위반을 언급했지만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대답을 들었다, 그리고 Kazenelson은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을 끝냈고, 모든 직원은 승강기에 다시 타고 내려가기 시작했다. 오직 한 직원만이 자신을 생명줄에 묶었고 Kazenelson은 다른 하나를 붙잡고 나머지 4명의 직원에게는 하나의 생명줄이 남겨졌지만 아무도 생명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다음 승강기가 붕괴되었고, 생명줄을 묶지 않은 4명의 직원은 100피트 이상 떨어져 죽었다. 생명줄을 묶은 직원은 가벼운 상해를 입었고,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던 Kazenelson 또한 가벼운 상해를 입었고, 생명줄을 붙잡고 있었던 Kazenelson 또한 가벼운 부상으로 탈출할 수 있었다.

이 사건의 결과로, Vadim Kazenelson는 4건의 과실치사와 1건의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다. 형법 제221조에 따라, 그의 직원 5명의 죽음과 부상에 대해 최고 종신형이 구형되었다(Criminal Code, RSC 1985, c. C-46, s. 221).

검사는 피고가 그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요구된 수많은 안전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 변호인은 Kazenelson이 그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그에게 필요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충족해야 할 적절한 기준이 산업계에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예심 재판관, MacDonnell 판사는(예심은 배심원 없이 한 명의 판사에 의해 심리되었다) Kazenelson이 5건의 과실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결했다. 판사 MacDonnell는 산업 내 과거에 확립된 책임의 부족, 생명줄 착용을 선택하지 않는 직원의 과실 기여, 승강기의 불량제작 같은 많은 문제에 대해 피고 측 변호인과 의견을 일치했다.

하지만 판사 MacDonnell는 Kazenelson가 그의 직원들에게 반드시 생명줄을 착용하고 직원을 안전한 승강기에 탑승시킴으로써 그의 직원을 보호할의무를 부과하는 형법 제217.1조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렸다. 비록 어떤 직원도 추가적인 생명줄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판사는 과실 기여와 관련하여 "범죄 혐의에 영향이 없음"이라고 지적했다. 판사 MacDonnell은 다음과 같이선고하였다.

"피고 측 진술의 전제는 노동자들은 온전히 그들의 안전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 전제는 형법 제271.1조와 d ss. 27(1)(a) and (c) of OHSA에 반한다. 전자의 조항은 Kazenelson과 같은 사람에게 노동자의 신체상해를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이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후자의 조항은 그러한 사람들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상황에서 모든 합리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더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법]과 규정에서 요구하는 보호 장치, 조치 및 절차 그리고 방식에 따라 일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Kazenelson사건에서, 검사는 형사책임보다는 직장건강법(occupational health legislation)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추궁하여, 검사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접근을 뒤집고 과실 행위의 증거로서 규정 위반을 판단했다.

판결은 Ontario 항소 법원으로 항소 되었지만, 항소는 기각되었다. 항소 법원은 형의 선고를 포함한 모든 면에서 판사 MacDonnell의 판결을 확정했다.

나. 판례의 분석

이 판례 또한 법안 C-45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다(Bill C-45, 2004). 검찰은 다음 사항들을 증명하기 시작하였다.

"(a) Kazenelson이 Metron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작업을 수행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대해 지시할 권한이 있었다는 점, (b) 그가 노동자들이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실패했다는 점 그리고, (c)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그들의 안전이나 생명에 대한 방자한 또는 무모한 무시를 보여주었다는 점."

이 사항들을 증명함으로써, 검찰은 *범죄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Kazenelson이 사건 당시 작업 현장에서 직원에게 지시할 적절한 권한을 가졌다는 것은 이 판례에서 증거로서 의심 없이 받아들여진다. 이것이 Kazenelson에게 그의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유발한다. 판사 MacDonnell은 Kazenelson은 제217.1조에 따라 그에게 부과된 의무를 확실히 위반했다고 언급했다. 이 법률은 이 유죄판결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역할을 했다. 이 조항의 적용이 없었다면, 왕립 법원은 훨씬 형량이 약한 판례를 가졌을 것이다.

피고 측은 직원들이 생명줄 사용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과실에 기여를 했고, 장비의 결점에 대해 승강기의 제조사가 책임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피고는 의견서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Mr. Kazenelson의 행동/태만과 승강기의 붕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 두 개의 중간 사건이 있었다. 즉 (1) 승강기가 부적절하게 제조되었다. (2) 생명줄 없이 승강기에 탑승한 5명의 Metron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의도적 행위들."

그러나 중간 행동들이 중요하다고 입증되어 Mr. Hoyeck의 법적 의무를 완화한 후술하는 *Hoyeck*사건과는 달리, 판사 MacDonnell은 이러한 중간 행위들이 Kazenelson에게 부과된 의무를 완화할 정도로 충분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 이 판례는 후에 수 많은 판례에 인용되면서, 제217.1조 적용에 대한 주요한 선례가 되었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법 해석에 무엇을 추가하고 무엇을 제거하였는가? 즉,

제217.1조에 대한 두 가지 주요 판례 중 하나인 이 판결은 법원이 성공적으로 제217.1조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판결과 후술하는 Hoyeck사건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은 경영진이 안전을 위해올바른 선택을 했을지라도 직원들에게 적절한 장비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이것은 직원들이 스스로 떠맡고 있는 위험을 알고 승강기에 타는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승강기에 6개의 생명줄이 없었다는 사실은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다. 형량의 문제점

Kazenelson이 열렬한 규칙 추종자였던 것이 분명해 보였고, 이날, 그는 단지 일을 끝내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고, 이것이 그의 직원들의 죽음을 초래한 실수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것은 법을 준수하는 그의 삶에서 이상한 방법이었다. 그는 재판에서 그의 성격과 사회에서 잘 알려진 그의 능력에 대해 진술하는 수많은 성격 증인들을 불러들였다.

결과적으로, 공공의 보호는 판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이 재판에서 공정한 형벌을 결정하는데 주요한 요인은 비난이다.

개념적으로, Kazenelson에게 더 긴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감옥에 가게될 것으로 거의 예상되는 상습범과 비교하여, 그가 감옥 이후에 법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복귀하는데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것이다. 징역 6년과 3년의 차이는 소수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소화된다. Kazenelson 같은 가족을 가진 사람에게 3년 더해진 감옥살이는 큰 차이를 만든다. 어떤 형벌이라도 그가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단념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Mr. Kazenelson에 대한 형벌을 선택할 때, 캐나다가 아직 형법 제217.1조의 시행의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법원은 향후 모든 판결의 기초를 만드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이 형벌에 있어무엇을 결정하든 간에 그것은 향후 재판에서 참고가 되고 살펴지게 될 것이다. Mr. Kazenalson의 책임 정도는 그가 얼마나 긴 형량을 받아야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법원은 건설노동자 각자가 생명줄이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생명줄이 없이 승강기에 자신의 의지로 탑승한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Kazenelson이 생명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이이미 내려진 뒤인 이날 오후까지 노동자들이 생명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제기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Mr. Kazenelson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한 또 다른 항목은 승강기의 형편 없는 제작이었다. 애초에 그것을 만든 회사는 Metron건설에 승강기를 보내지 말았어야 했다. 그 승강기는 모든 승강기에 필요한 중요한 요구 조건인 무게 제한을 표시하지도 않았다.

형벌의 길이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해야 하는 동시에 범죄 자체의 심각성에 비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4명이 목숨을 잃었고, 5번째 사람이 심각한 위험에 놓였다, 이러한 범죄의 중대성은 최소화될 수 없다. Kazenelson이 생명줄의 부족을 언급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본인은 생명줄을 붙잡아 안전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사실은 형벌의 길이에 대한 악재로 작용한다. 왕립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의 투옥 기간이 각 사망에 대해 4년에서 5년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피고가 12개월 형을 복역할 것을 제안했다. 법원은 제안된 형량이 너무 짧다고 판단했고 대신 모든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다. 판사는 피고의 성격에 반하는 범죄의 중대성을 정확히 따졌고, 기업 내 개인들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형벌을 결정했다.

이 형벌은 형벌의 배상 목표와 책임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 변호인단의 제안에서, 그들은 Kazenelson이 연방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사회봉사를 해야한다고 말했고, 거기서 그는 대중들에게 작업환경 안전에 대해 교육하는 강의시리즈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범죄자들이 그들의 범죄에 책임을 지는 것을 향한 움직임이다. Kazenelson에게 더 개인적인 의미에서, 죽음들각각에 대해 3년 반의 징역형을 사는 것은 피해자들의 가족들에게 그들의 죽음에 대해 그가 보상하도록 하는 시스템의 방법이었다. 그는 또한 개인들에게법원이 의무로 지운 작업환경 안전에 대해 교육하는 강의 시리즈를 통해 지역사회에 보답했다.

결론적으로 이 형벌은 형법 제217.1조의 성공에 전반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Mr. Kazenelson이 출소하고 효과적으로 범죄를 단념하고 희망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것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의 감옥에서의 시간이 그가 2009년 12월 24일 이전에 규정된 법을 잘 지키는 시민이 아니라고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것이다. 범죄에 걸맞은 형벌에 대해 말하자면, 직원의 사망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은 복역하기에 합리적인 기간인 것 같다. 이러한 이유로, 이 판례는 유죄판결과 형벌의 길이 둘 다에 있어 분명히 성공적이다. 이 판례는 향후 제217.1조의 유죄판결에서 캐나다 법률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강력한 보통법 기초를 제공한다 할 것이다.

(3) Hoeyeck사건(R. v. Hoeyeck, 2019 NSSC 7):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가. 사건의 개요

Peter Kempton은 Mr. Hoyeck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정비소의 정비공으로서 Ellie Hoyeck의 밑에서 일했다. 운명적인 사건의 날, Kempton과 그의동료 Joseph Spence는 감정인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녹슨 U-Haul 트레일러에 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차를 들어올렸고, Mr. Hoyeck는 두 직원이 작업하는 것을 도왔었다. Kempton이 탱크를 제거하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폭발을 일으켜 그를 불태워버렸다. Peter Kempton가 아세틸렌등 (acetylene torch)으로 연료 탱크를 제거하려 시도했을 때 그의 몸은 90%화상을 입었다.

아세틸렌등으로 연료 탱크를 제거하는 것은 Kempton의 동료 Joseph Spence에 따르면 Hoyeck가 많이 하는 것을 Kempton이 본 방법이다. 정확히 무엇이 폭발을 초래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스탱크에 등(torch)으로 인해 생긴 불의 근본 원인일 수도 있는 구멍이 하나 있었다. Kempton이 불에 붙었을 때, Joseph Spence는 즉시 Hoyeck에게 911을 부르라고 말했다. 그리고 Spence는 직접 911에 전화하기 위해 옆에 있는 염가 판매점으로 달려

갔다. Hoyeck는 도움을 주기 전에 Kempton이 차 아래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사진 찍기 위해 멈췄다. Spence와 Hoyeck는 불을 끄려고 노력했으나, 적어도 3개의 소화기를 사용해보고 그들은 곧 그것들 모두 고장이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Kempton이 아직 불타고 있어 그들이 Kempton을 구조하려고할 때 Hoyeck는 다른 사진을 찍었다. 응급요원이 작업장에 도착했고, 그들을 Kempton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는 병원에서 부상이 심해 사망하였다.

결과적으로 Ellie Phillip Hoyeck는 최소 형량과 최고 종신형을 규정하지 않은 제217.1조와 형법 제220(b)조에 따라 Peter Kempton의 죽음에 대한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사는 Hoyeck가 그의 직원들에게 극도로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장을 설치하고 그들에게 더욱 안전하지 않은 관행에 종사하도록 지시했으며, 따라서 제 217.1조에 반하는 행위를 했고 과실치사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Spence에 의해 시사되었듯이, Kempton은 초기에 연료 탱크를 절단함으로써 그것을 제거하려 시도했지만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한 전문가는 등(torch)으로 연료 탱크를 제거하는 것은 그것을 절단하는 것보다 빠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따라서 Kempton은 이 위험한 방법을 사용할동기가 없었다. 법원은 그가 이 방법이 그들의 가게에서는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믿었거나 Hoyeck에 의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라고 지시받았음이 틀림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증인석에 처음 오른 목격자 Joseph Spence는 Hoyeck가 Kempton에게 등을 사용해 탱크를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122) 전문가는 그 상황에서 등은 "절대"사용되지 않았어야 한다고 말했다. 작업장 자체는 "매우 혼잡한 작업장...이해하기 쉽게 만약 어떤 일이 생긴다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

¹²²⁾ Joseph Spence가 이전에 경찰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공공 피해와 불법적인 물질 사용 및 소지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다"라고 전문가가 증언하는 등 개탄스러운 상황이었다. 작업장 주위에는 쏟아진 오일, 형편없는 조명, 넘어질 만한 위험 요소, 불안전하게 놓인 산소 탱크, 안전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상황을 포함한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었다.

어느 직원이나 노바스코샤 주의 도급업자와 마찬가지로, 정비공들은 '직장 안전건강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과 규정에 따라 작업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그 권리는 Kempton에 의해 그날 행사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적절한 교육, 필요한 장비를 받지 못했거나 그의 일을 어떻게 안전하게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검사는 Hoyeck가 안 전하지 않게 작업을 완료하도록 지시했다는 입장을 취했다.

또 다른 쟁점은 작업장에서 개인보호장비의 이용 가능성이었다. 정비공들이 작업할 때 언제나 개인보호장비(PPE)를 착용하는 것은 표준 절차이다. 그러나 Peter Kempton은 폭발 당시에 어느 것도 착용하지 않았다. Joseph Spence는 Hoyeck가 그들에게 작업하는 동안 사용할 어느 개인보호장비도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피고 측은 Hoyeck가 부주의했을지라도 그것이 Kempton의 죽음의 원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사실적 이슈에 근거한다. 즉 1) Hoyeck가 분명히 Kempton에게 연료 탱크를 제거하기 위해 등을 사용하라고 말했는가?, 2) 그는 Kempton이 연료 탱크를 제거하기 위해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가? 이다.

피고 측은 두 질문에 대하여 모두 "아니요"라고 진술했다. 그들은 Kempton 이 연료 탱크를 제거하기 위해 스스로 행동했고, 정비공에게 가게 관리자로서, Hoyeck는 작업을 올바르게 하는데 적절한 장비를 제공해 줬으면 그의 직원들이 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판결에서, 판사 Chipman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고 Hoyeck가 Kempton

에게 등을 이용해 탱크를 제거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동의하였다. 감정인은 Hoyeck가 그에게 등을 사용하라고 확실하게 지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료 탱크를 제거하는 것은 관리자로부터 지시가 없어도 완성될 수 있어야 하는 표준적인 정비 절차라는 것에 주목하였다. 정비소에는 연료 탱크를 제거하는데 안전한 방식으로써 사용될 수 있는 수많은 다른 장비들이 있었다.

판사 Chipman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중요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Hoyeck가 무죄라고 선고하였다. 판사 Chipman은 법원 또한 Mr. Hoyeck가 믿을 만한 증언을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증언에서 그는 죽음에 대해 안 좋게 말하고 Kempton을 화재에서 구출한 그의 역할을 미화시켰다. 하지만 Hoyeck가 Kempton에게 등을 사용하라고 확실히 말했다는 증거는 충분치 않았다. Hoyeck는 심문하는 동안 그는 결단코 이 방법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여러 번반복하여 주장했고, 이 주장에 반대되는 증거는 오직 Joseph Spence뿐이었다.

판사 Chipman은 또한 Spence가 첫 번째 심문을 받았을 때 이미 경찰에게 거짓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본인 대신 Hoyeck가사건의 원인이라는 것을 시사할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Spence는 Hoyeck가 Kempton에게 등을 사용하라고 지시했다고 경찰에게 말했을 때 Spence가민을 만한 증인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판사는 또한 Kempton이 먼저 안전한방식으로 탱크를 제거하려 시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에 주목했다, 따라서 그가 등을 사용하라고 지시를 받았는 안 받았는 그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더 안전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설령 차량이 적합하게 잭으로 들어 올려졌으면 Kempton이 살았을 거라는 전문적인 증거나 소화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Kempton이 살아 있었을 거라는 전문적인 증거도 없다. 판사는 정비소의 상태가 Hoyeck의 직원들의 목숨을 무시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Kempton의 죽음의 실제 원인이라는 것이 추론되지는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Hoyeck는 공식적인 정비공이 아니었지만, Kempton은 공식적인 정비공이었다, 따라서 Kempton이 더 잘 알았어야 했다.

나. 판례의 분석

웨스트레이 재난이 발생했던 바로 그 주에서, 이 판례는 형법 제217.1조를 적용한 관리자 또는 감독관에 대한 첫 번째 기소였다. 게다가, 이 판결 자체 는 법안 C-45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판사 Chipman은 정비소의 개탄스러운 상태는 Hoyeck 직원의 삶에 대한 노골적인 무례와 조심성의 부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Kempton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닐 수도 있으므로, 정비소가 '직장안 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legislation)'과 규정을 위반하여 운영되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Hoyeck는 "무죄"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직원들은 매주 안전 회의를 하지 않았고, Hoyeck는 자신이 과거 이런 상황에서 등으로 연료 탱크를 제거했다고 인정했다.

만약 제217.1조가 범죄 그 자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었다면 Hoyeck를 상대로 한 판례는 더 강력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은 누군가를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누군가가 죽거나 과실로 인해 심하게 다치는 것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판사 Chipman이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한 주된 이유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Kempton의 죽음은 PPE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탈출로가 뚜렷하지 않았거나, 지면에 기름이 있었거나, 조명이 부적절했다거나, 소화기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과실이 '없었다면' Kempton이 살아남았을 거라는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명백한 태만 행위를 용서하는 것은 직장 건강 안전에 대해 단독으로 범죄화하는 것과 비교해 형법적 의무를 만드는 것의 한계를 보여주는 예이다.

제217.1조는 다른 사람에게 작업을 수행하거나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지시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해당 작업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규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Hoyeck는 분명히 Kempton과 Spence에게 어떻게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는지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Hoyeck는 그의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는 것을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다. Hoyeck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다. Kempton이 그날 정비소에서 죽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그 정비소에서 심하게 다쳤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감정인은 그런 용납할 수 없는 환경의 정비소는 본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정비소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행위에 대해수많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그러한 환경의 정비소에서는 절대 일하지 않을 거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이 판례가 법 해석에 무엇을 추가하고 무엇을 제거하였는가? 즉,

이 판례는 노바스코샤 주에서 잘 알려져 있다. 그 주된 이유는 Ellie Hoyeck가 형법 제217.1조에 근거해 기소된 첫 번째 노바스코샤 주 사람이기 때문이다. 주 정부 검찰관 Alex Keaveny는 재판이 끝난 후 판결이 법안 C-45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Keaveny는 "나는 이것이 고용주에게 부과된 의무를 더 잘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나는 이것이 누구든지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매우 명확했다. (판사는) 판결을 바꾸거나 가볍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Mr. Kempton은 Mr. Hoyeck가 책임질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데 있어 사실적인 결정이었다. 온타리오와 퀘벡에는 유죄판결이 있었다. 나는 판례법이 더 명확해질수록 이러한 유죄판결을 더 자주보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판사 Chipman은 Hoyeck가 그의 직원들과 그들의 안전을 무시했다는 검사의 의견에 동의했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판사 Chipman은 전술한 Kazenelson사건에서는 직원들이 안전 장비를 구할 수 없었지만, Hoyeck사건에서는 정비소에 안전 장비가 있었지만 사용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R. v. Kazenelson 사건과는 차이를 두었다. 안전한 선택지가 있지만, 직원들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이 직원들에 의해 입증된 과실 기여는 판사의 판결에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므로이는 미래의 재판을 위한 법을 명확히 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Hoyeck사건에서 고려된 형법 조항은 제217.1조, 제219조, 그리고 제220조이었다. 판결은 또한 법적 과실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요소(범행 의도), 법률과 실제 인과관계의 차이, 과실 기여123), 개입 행위 주의124), "없었다면"가정(가설적 제거절차)125), 그리고 사건의 "합리적 예측 가능성"을 고려했다.

실제 인과관계와 법률의 차이는 형법 제217.1조를 적용하는 모든 재판에서 중요하다. 죽음에 대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피고가 피해자의 죽음에 기여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사실적 인과관계를 확립한다. 법적 인과관계는 피고가 사망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 범죄의 "없었으면"을 입증하고자 한다는 면에서 다르다. 예를 들어, Hoyeck사건에서 Hoyeck가실제로 Kempton의 죽음을 야기했다고 하더라도 Hoyeck의 행위가 "없었어도" Kempton이 죽었을 거라는 점이 입증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Hoyeck는 법적으로가 아닌, 실제로 Kempton의 죽음을 야기했을 뿐이고 이는 그가 무죄로 판결되기에 충분하다. R v. Hoyeck 사건에서 Hoyeck는 법적으로도실제로도 Kempton의 죽음을 야기하지 않았다고 선고되었다.

Hoyeck사건에서, 복잡한 관리구조가 기소를 어렵게 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복잡하게 만든 것은 수많은 안전 문제다. Hoyeck와 같은 몇몇 사건에서 행위가 "없었다면"이라는 가정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방식이어서 개인에게 법적

¹²³⁾ 왕립 법원은 재판의 선고 부분까지 과실 기여를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¹²⁴⁾ 피고가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인지 아니면 개입한 사건이 피고가 무죄라고 판단하기 에 충분한 책임이 있는지와 함께 고려된다.

¹²⁵⁾ 이 죽음이 피고의 행위가 "없었다면" 일어났을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Hoyeck가 유죄로 판결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위반들이 서로 동시에 일어나서 Kempton의 죽음을 야기했어야 했다.

예를 들어, "없었다면"가정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진술을 만족할 수 없었다. "Mr. Hoyeck가 소화기를 수리하는 것에 태만하지 않았다면, Kempton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문장 대신 "Hoyeck가 그의 직원이 잭으로 U-Haul 트레일러를 사용하도록 격려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작업환경을 용인하지 않았더라면, Kempton은 죽지 않았을 것이다"에 더 가까워질 필요가 있다. 이 판례가 제217.1조의 적용에 있어 판례법에 영향을 끼친 것을 단순화하면 직원의 과실 기여가 제217.1조가 만든 의무를 직원이 무효화 할 수 있고 유죄판결을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 형량의 문제점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217.1조의 성공적인 인용과 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그것이 그 자체로 별도의 단독 형사 범죄를 만들지 않고 단순히 형사 과실과 같은 범죄의 형사고발에만 사용될 수 있는 형법의 의무라는 사실이다. 단독 형사 범죄가 아니므로, 노동자를 직접 지휘하는 개인 및 기업은 그들의 지시 하에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상황에서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는 한 제217.1조에 따라 기소될 수 없다.

이러한 심각한 한계는 *Hoyeck*사건에서 증명되었다. 수 많은 감정인들은 Hoyeck가 그렇게 개탄스러운 상황에서 작업장을 운영함으로써 그의 직원들을 노골적으로 무시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Hoyeck는 그의 가게에서 예견된 사고였음이 분명하지만, Chipman 판사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 217.1조에 반하는 행동은 범죄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캐나다의 입법자들은 제217.1조의 별도 형사범죄화에 대한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온타리오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고, 다른 주들에도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조항이 있으며, 이들 법령은 제217.1조와도 유사하다(Criminal Code, SC 2003, c. 21, s. 3)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1990). 주요 차이점은 이러한 지방 규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벌금형만 받을 수 있고 온타리오주의 경우 12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 과실에 대한 구속력 없이, 제217.1조는 그것의 족쇄에서 벗어나 의도된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작업환경에서 지시받는 사람들을 보호해야한다는 의무에 태만한 개인(또는 기업)을 처벌하는 것. 제217.1조가 그 자체로 범죄가 되도록 하는 것은 웨스트레이에서 사망한 26명의 광부 가족이나 Peter Kempton 가족과 같은 개인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의를 찾을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고용주들이 그들의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형사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캐나다의 산업재해 사망률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4) Transpavé사건(R. v. Transpavé, 2008 QCCQ 1598) : 퀘백주에서 형법 제217.1조 및 제22.1조를 근거로 기업을 처벌한 판례

Transpavé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벽돌을 생산하는 회사였다. 설비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하였다. 사고발생시 안전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나 경영진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Transpavé의 유죄를 인정하고 110,000달러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110,000달러의 벌금을 고려한 이유로 법원은 동 회사가 이전에 산업보건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없는 가족회사라는 점,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반성하고있다는 점, 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750,000달러 이상을 투자하였다는 점등을 고려하였다.

또한 110,000달러의 벌금은 회사의 계속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약 100개이상의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도 양형 이유로 밝혔다. 126)

(5) Metron 건설회사사건(R. v. Metron Construction, 2013 ONCA 541) : 건설회사(기업)을 처벌한 판례

Metron Construction은 건설회사로, 이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2009년 크리스마스 전날에 고층빌딩에 설치된 콘크리트 발코니 수리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외벽 쪽에 승강기를 이용하였다. 14층 외벽 작업 중 5명의 근로자와 감독관은 승강기의 붕괴로 추락하였다. 승강기 작업 시 설치된 2개의 구명줄 중 하나가 연결되어 있어 1명의 근로자는 안전하게 구조되었고, 4명이 숨지고 1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조사결과 승강기가 규정에 맞게 설치되지 않았고, 규정을 초과하는 인원이 승강기로 이동을 하였다는 점이 밝혀졌고, Metron Construction의 현장책임자가 미흡한 안전조치에 과실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127)

동 회사는 1심에서 200,000 달러의 벌금에, 30,000 달러의 피해자배상금 (Victim Surcharge)이 선고되었다. 128) 이어진 항소심에서 벌금은 750,000 달러로 증액되었다. 법원은 본 판결에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과실치사 사건이 단순한 의무규정 위반 사건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형법상의 범죄행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명이 심각하게 부상당한 점, 피해자가 젊고, 가정을 가지고 있으며 몇몇은 자녀를 두고 있다는 점, 가해 회사가 결함 있는 장비를 2개월 이상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100,000 달러의 벌금은 근로자의 사망에 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129)

¹²⁶⁾ Perreault·Lemelin, The Transpavé Inc. Case: a Quebec Company Pays for its Negligence, Labour and Employment, 2008.05, p.2; https://www.lavery.ca/DATA/PUBLICATION/965_en~v~the-transpave-inc-case-a-quebec-company-pays-for-its-negligence.pdf.

¹²⁷⁾ 현장책임자는 2인용 승강기에 6명을 탑승시키고 심지어 대마초를 흡연한 직원 의 프로젝트 참가도 허용하였다.

¹²⁸⁾ 검사는 회사가 파산할 수 있는 100만 달러의 벌금을 구형하였다.

¹²⁹⁾ https://www.ccohs.ca/oshanswers/billc45.html 참조(2022.06.22. 검색).

(6) R. v. Stave Lake Quarries Inc., 2016 BCJ No.2583 : 형법 제217.1조를 근거로 기업을 처벌한 사례

채석작업장에서 무면허로 암석운반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 여성이 에어 브 레이크 차량을 경사면 상단 근처에 주차하였고 차량이 경사면 아래로 진행하 자 운전실 안으로 들어가 막고자 하였으나 전복되어 사망한 사건이다. 근로자 여성은 사건 당일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받기 전에 간단한 운반작업을 수 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상사는 다른 기계의 교체부품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녀는 암석운반차량을 즉시 주차하지 않고 나중에 작업을 멈추고 주차브 레이크를 걸거나 굴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이어 아래에 돌을 궤지 않고 경사면 상단 근처에 차량을 주차하였다. 결국 에어 브레이크는 압력을 잃었고 운반차량은 경사면으로 굴러가기 시작하였다. 그녀는 운전실 안으로 들어가 이를 막으려 했으나 운반차량이 경사로를 계속 내려가면서 조수석 쪽이 벼랑으로 올라가 차량이 왼쪽으로 전복되어 사망하였다.

Stave Lake Quarries Inc.(SLQ)는 한 명 이상의 고위 임원을 통하여 회사가 직원의 생명에 대해 무자비하거나 무모한 무시를 보였다는 사실을 합의된 진술에서 인정하면서 사망을 초래한 형사과실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다. SLQ의 유죄는 SLQ가 다음과 같은 엄격한 시스템을 결여한 결합된 효과에 근거한다. 즉 (1) 고용, (2) 훈련, (3) 채석장 감독이 그것이다. 예컨대, (1) 그녀는 자신이 업무에 적격하거나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소유자 가족의 친구라는 이유로 고용되었고, (2) 그녀는 에어 브레이크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었지만 사망한 날 운전을 해야 했으며, 숙련된 작업자에게 교육을 받았지만 사망 전 하루만 교육을 받았고(즉 기계 사용에 대한서적이나 서면 자료를 제공받지 않았으며 기본 안전 절차에 대한 교육을 받은적이 없음), (3) 현장의 경험 많은 운영자 중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암석운반차량을 안전하게 주차했는지 확인하는데 신경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에 대하여 양형판사는 다음과 같이 설시하면서 SLQ에 \$100,000의 벌금과 \$15,000의 피해자배상금을 부과하였다. 즉 SLQ가 사망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실현했다는 증거가 없고, 위반은 누락의 결과였으며, 계획의 정도도 없었다. 범죄관련 행위의 결과로 규제 처벌이 부과되었고, SLQ는 작업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SLQ는 안전하지 않은 작업장에 대한 안전 또는 징계 위반 기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 범죄기록도 없다. 피해자가 읽을 안전매뉴얼을 받지 못하였고 암석운반차량 작동법을 가르친 강사가 주차 브레이크 실행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선고 당시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소이었다. 암석운반차량은 타이어 충격이 없기에 전도될 가능성이 더욱 크며 피해자는 대형 트럭을 운전한 경험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과 피해자배상금을 부과한 것이다.130)

(7) R. v. Fournier, 2016 QCCS 5456 :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고용주는 지하 하수도와 수도본선을 교체하는 건설 현장에서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었다. 굴착된 흙이 굴착 현장에 너무 가깝게 적재되었기 때문에 굴착한 벽은 퀘벡주 안전규정에서 요구하는 데로 적절하게 지지되지 않았다. 굴착된 벽이 무너지고 작업자가 굴착된 구멍으로 떨어진 콘크리트 슬래브에 짓눌려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는 불법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형사과실 혐의 (캐나다형법 제217.1조 및 제222조(5)(a)항)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같은 상황에 처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신체적 상해의 위험을 예측하였을 것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작업을 계속하는 것은 동일한 상황에 처한 합리적인 사람이 발생하도록 허용했을 안전관리의 표준에서 현저하게 이탈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Fournier판결은 불법행위가 범죄행위일 필요는 없지만

¹³⁰⁾ https://www.justice.gc.ca/eng/rp_pr/other_autre/westray/p2.html; https://www.cbc.ca/news/canada/british-columbia/stave-lake-quarries-charg ed-with-criminal-negligence-in-death-of-kelsey-anne-kristian-1.3037878 (2022.08.30. 검색)

불법적이고 객관적으로 위험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하고 있다. 131)

(8) R. v. Hritchuk, 2012 QCCS 4525 : 서비스 관리자인 개인을 처벌한 사례

피고인 서비스 관리자는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음)으로 차량에서 휘발유를 제거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직원에게 영구적인 부상을 입힌 후 불법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캐나다형법 제217.1조 및 제222조 (5)(a)항)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132)

대리점에는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있었지만 작동되지 않았다. 서비스 관리자는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피해자인 직원이 가스를 비우기 위해 안전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서비스 관리자는 올바른 장치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데 안전한 작업환경을 보장할 책임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신체적 상해에 대한 객관적인 예측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였다.

(9) R. v. Swartz, 2012 ONCJ 505 : 사례 (5)의 Metron건설회사 사장이자 단독이사에 대한 경영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례 5의 Metron 건설회사 사장이자 단독이사인 Swartz에 대한 경영자책임을 인정한 사건으로 법원은 Swartz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영자책임을 인정하여 \$90,000의 벌금형과 \$22,500의 피해자배상금을 부과하였다.

즉 Metron의 이사로서 회사가 개정된 산업 보건 및 안전법 (OHSA)의 32 (a) 항에 반하여 개정 된 온타리오 규정 213/91의 섹션 26.2 (1)을 준수하도록

¹³¹⁾ https://www.justice.gc.ca/eng/rp_pr/other_autre/westray/p2.html (2022.08.31. 검색)

¹³²⁾ https://rubinthomlinson.com/10th-anniversary-bill-c-45-reflecting-decade -ohs-liability-criminal-code/(2022.09.10. 검색)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 이 규정의 26.2 (1) 조항은 고용주가 낙상 보호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근로자가 사용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고 유능한 사람이 적절한 구두 및 서면 지침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Joel Swartz는 감독으로서의 자격으로 영어를 읽을 수 없는 모든 근로자가 모국어로 적절한 서면 지침을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Metron의 이사로서 회사가 OHSA의 32 (a) 항에 반하여 개정된 온타리오 규정 213 / 91의 섹션 26.2 (3)을 준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 규정 제 26.2 조 (3)항은 낙상 보호시스템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이름과 교육 및 지시가 발생한 날짜를 포함하여 각 근로자에 대한 서면 교육 및 지시 기록을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Joel Swartz는 감독으로서의 자격으로 훈련을 제공한 사람이 유지 관리하는 훈련 및 지시 기록에 근로자의 이름과 훈련 및 지시가 일어난 날짜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Metron의 이사로서 회사가 개정된 OHSA의 32 (a) 항에 반하여 개정 된 온타리오 규정 213 / 91의 섹션 93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 규정 93조는 결함이 있거나 위험한 동안에는 어떠한 장비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Joel Swartz는 감독으로서의 자격으로 붕괴된 정지 된 작업 플랫폼 (스윙 스테이지)이 결함이 있거나 위험한 동안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Metron의 이사로서 회사가 개정된 OHSA의 32 (a) 항에 반하여 개정된 온타리오 규정 213 / 91의 섹션 134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범죄를 저질렀다. 규정의 섹션 134는 비계 플랫폼 또는 기타 작업 플랫폼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 및 건설된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Joel Swartz는 이사로서의 자격으로 2009년 12월 24일에 근로자가 사용하는 비계 플랫폼이 플랫폼이 설계되고 건설된 하중을 초과하여 적재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이다.133)

(10) R. v. Vadim Kazenelson, 2016 ONSC 25 : 사례 (5)의 항소심 판결

사례 5의 Metron 건설회사 프로젝트 관리자인 Vadim Kazenelson에게 사망을 초래한 형사과실 4건 및 상해를 초래한 형사과실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여 3년6월의 자유형을 선고하였다. 134) Kazenelson은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135)

즉 4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고 한 명은 그들이 일하던 스윙 스테이지가 무너졌을 때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피고인 프로젝트 매니저는 근로자가 법률 및 산업 관행에 따라 생명선이 없지만 프로젝트 완료 마감 기한에 가까워 위험을 감수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망을 초래한 형사 과실의 4건과 위반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를 초래하는 형사 과실 1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들이 일하던 스윙 스테이지가 공중에서 100피트 이상 무너져 다섯 명의 노동자가 생명줄에 착용하지 않아 지상으로 추락했다. 네 명의 건설 노동자가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었다. 생명줄을 착용하였던 유일한 노동자는 공중에서 처음 정지된 후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발코니로 나올 수 있었다. 스윙스테이지는 제대로 설계되지 않았고 무능하게 제조되어 실패 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스윙 스테이지에 그 능력을 나타내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어야 했다. 피고인인 프로젝트 매니저는 그 경우 피해자들이 법률 및 업계 관행에서 요구하는 생명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프로젝트 완료기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생명줄에 관한 법과 관행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안전 규칙에 관한 두 과목을 수강했다. 피고인은 범죄 기록이 없었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건설 회사의 사장과 스윙

¹³³⁾ https://www.canlii.org/en/on/oncj/doc/2012/2012oncj505/2012oncj505.html (2022.09.05. 검색)

¹³⁴⁾ https://www.canlii.org/en/on/onsc/doc/2016/2016onsc25/2016onsc25.html (2022.09.05. 검색)

¹³⁵⁾ https://www.canlii.org/en/on/onca/doc/2018/2018onca77/2018onca77.html (2022.09.05. 검색)

스테이지를 제조 한 회사의 사장은 산업 보건 및 안전법, R.S.O. 1990, c. O.1 ("OHSA")에 따라 범죄에 유죄를 인정하고 비구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중요한 양형 고려 사항은 비난과 일반적인 억지력이다. 생명줄없이 일하는 것의 위험과 명백한 강압의 부족에 대한 희생자의 인식은 완화 요인이아니었다. 이러한 요인들이 피고인의 의무위반을 완화시켰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근로자가 위험한 노동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항상 진정한 자발적인선택은 아니라는 현실을 무시하고, 또한 작업장 안전과 관련하여 경영에 법적의무를 부과하는 형법 제217.1조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목적을 훼손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피고인이 위험에 대해 광고하고, 기회를 잡기로 결정하고,이 명백하게 위험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사실은 심각하게 악화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의 행동의 끔찍한 결과를 반영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작업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심각한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징역형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제안한 양형 범위(12개월에서 2년)는 억지력과 비난이라는 가장 중요한 목표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5) 중대재해 처벌관련 사례의 적용결과

이상과 같은 중대재해 처벌관련 사례의 적용결과를 표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번. 연도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1. 2010년	Scrocrca사건 (R. C. Scrocrca, 2010 QCCQ 8218)	2006년 6월, Pasquale Scrocrca는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는 포크레인(굴착용 기계)으로 언덕을		30년 동안 회사의 기계를 완전히 검사하지 않은 것은 표준에서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했다. 판사는 또한 기계의 실제	Scrocrca사 건에서 피고의 과실은 그의 기계에 합리적 수준의

연번. 연도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주행 중 그의 직원과 충돌하여 사망		결함에 대한 무지의 항변이 30년 이상 방치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결론 "2년 징역형 대신 비용을 지불하고 특정 조건을 존중" 선고	관리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다만 사망에 대하여 어떠한 징역형도 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한 능량에 대한 논박이 있음.
2. 2015년	Kazenelson 사건(R. v. Kazenelson, 2015 ONSC 36)	2009년 12월 24일, 건설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승강기 탑승시 낙하안전장치가 모자란 상황임에도 현장감독관이 이를 알면서도 근로자들을 탑승시켜서 안전장치가 없었던 4명의 직원이 100피트 이상 추락하여 사망. 안전장치 있던 근로자는 가벼운 상해		왕립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의 투옥 기간이 각 사망에 대해 4년에서 5년 정도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피고가 12개월 형을 복역할 것을 제안. 법원은 제안된 형량이 너무 짧다고 판단했고 대신 각 범죄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로 연장.	기업이 아닌 관리자 개인에게 적용된 최초의 사례, 형법 및 직장안전과 보건법 위반으로 기소
3. 2019년	Hoeyeck사건 (R. v. Hoeyeck, 2019 NSSC 7)	정비소의 정비공인 근로자들은 감정인이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녹슨 트레일러에 잭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차를 들어올렸고, 근로자 1인이 탱크를 제거하기 시작하였을 때 폭발이 일어나서		판사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중요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Hoyeck가 무죄라고 선고. 판사는 사망자가 먼저 안전한 방식으로 탱크를 제거하려 시도했다는 것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

연번. 연도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90%의 화상을 입고 사망.		보여주는 증거에 주목. 따라서 그가 등을 사용하라고 지시를 받았든 안 받았든 그는 작업을 완료하는 데 더 안전한 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 정비소의 상태가 Hoyeck의 직원들의 목숨을 무시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사망자의 죽음의 실제 원인이라는 것이 추론되지는 않는다고 결론.	
4. 2008년	Transpavé사 건(R. v. Transpavé, 2008 QCCQ 1598)	Transpavé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벽돌을 생산하는 회사로, 설비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청소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사망	Transpavé의 유죄를 인정하고 100,000달러의 벌금을 선고		기업을 처벌한 판례
5. 2013년	Metron 건설회사사건(R. v. Metron Construction , 2013 ONCA 541)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고층빌딩에 설치된 콘크리트 발코니 수리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외벽 쪽에 승강기를 이용 중에, 14층 외벽 작업 중 5명의 근로자와 감독관이 승강기의 붕괴로 추락하여 1명 구조, 4명 사망, 1명 중상	1심에서 200,000 달러의 벌금에, 30,000 달러의 피해자배상금(Victim Surcharge) 선고. 항소심에서 벌금은 750,000 달러로 증액		기업을 처벌한 판례, 가해 회사가 결함 있는 장비를 2개월 이상 작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100,000 달러의 벌금은 근로자의 사망에 비하여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

연번. 연도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6. 2016년	R. v. Stave Lake Quarries Inc., 2016 BCJ No.2583사건	채석작업장에서 무면허로 암석운반차량을 운전하던 근로자가 에어 브레이크 차량을 경사면 상단 근처에 주차하였으나 차량이 경사면 아래로 진행하자 운전실 안으로 들어가 막고자 하였으나 전복되어 사망한 사건	Stave Lake Quarries Inc.(SLQ)에 사망을 초래한 형사과실 한 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 \$100,000의 벌금과 \$15,000의 피해자배상금을 부과		형법 제217.1조를 근거로 기업을 처벌한 판례
7. 2016년	R. v. Fournier, 2016 QCCS 5456사건	지하 하수도와 수도본선을 교체하는 건설현장에서 고용주와 직원들이 작업 중 굴착한 벽이 무너지면서 떨어진 콘크리트 슬래브에 짓눌려 사망한 사건		고용주에게 불법행위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형사과실 혐의(캐나다형법 제217.1조 및 제222조(5)(a)항) 로 유죄판결을 선고.	고용주의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 Fournier 판결은 불법행위가 범죄행위일 필요는 없지만 불법적이고 객관적으로 위험한 행위이어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
8. 2012년	R. v. Hritchuk, 2012 QCCS 4525사건	작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도구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음)으로 차량에서 휘발유를 제거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사건		피고인 서비스 관리자는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차량에서 휘발유를 제거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여 직원에게 영구적인 부상을 입힌 후 불법적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힌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	서비스 관리자인 개인을 처벌한 사례

연번. 연도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9. 2012년	R. v. Swartz, 2012 ONCJ 505사건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고층빌딩에 설치된 콘크리트 발코니 수리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외벽 쪽에 승강기를 이용 중에, 14층 외벽 작업 중 5명의 근로자와 감독관이 승강기의 붕괴로 추락하여 1명 구조, 4명 사망, 1명 중상		법원은 Swartz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영자책임을 인정하여 \$90,000의 벌금형과 \$22,500의 피해자배상금을 부과. 즉 Metron의 이사로서 회사가 개정된 직장안전 및 보건법 (OHSA)의 32 (a) 항에 반하여 개정 된 온타리오 규정 213/91의 섹션 26.2 (1)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모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범죄를 인정	사례 5의 Metron 건설회사 사장이자 단독이사인 Swartz에 대한 경영자책임을 인정한 사건
10. 2016년	R. v. Vadim Kazenelson, 2016 ONSC 25사건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고층빌딩의 콘크리트 발코니 수리작업의 일환으로 14층 외벽 작업 중 안전난간의 붕괴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		사례 5의 Metron 건설회사 프로젝트 관리자인 Vadim Kazenelson에게 사망을 초래한 형사과실 4건 및 상해를 초래한 형사과실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여 3년6월의 자유형을 선고하였다. Kazenelson은 온타리오주 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	사례 5의 Metron 건설회사 프로젝트 관리자인 Vadim Kazenelson 에게 사망을 초래한 형사과실 4건 및 상해를 호사과실 1건으로 여기 사망을 호사과실 1건으로 하소심사건

4. 호주

1) 개관

호주는 최근들어 각 주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하여 '작업장 과실치사 죄'를 도입하고 있다. 이미 대부분의 주는 작업장 과실치사죄를 입법화 하였고, 몇몇의 주에서는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입법동향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건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고, 또한 연방 전체의 통일적 규율을 마련하고자 하는 호주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입법이 최근 성립되었고, 정착초기에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한점이 존재한다. 물론 호주의 법체계가 영미법계 전통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이를 평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에 대한 예방적·진압적 조치로 강력한 형벌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이에관한 판례들이 생산되기 시작되었기 때문에 호주의 입법 및 판례 동향을 살펴보는 것이 나름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아래에서는 호주에서의중대재해 발생 및 법적 조치 현황, 중대재해 처벌 법제 및 법원의 판결례를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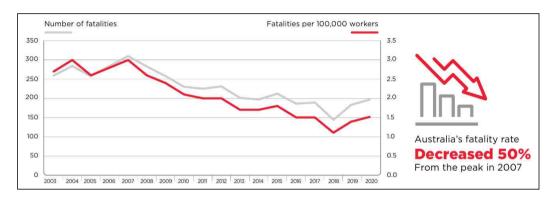
2) 중대재해 발생 현황

(1) 발생현황136)

호주의 '산업안전청(safe work austrailia)'은 2020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

¹³⁶⁾ 이하는 호주 '산업안전청(safe work australia)'에서 2021년도에 발간한 「Key wo rk health and safety statistics Australia 2021」의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됨. sa fe work australia 홈페이지: 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resources-and-publications/statistical-reports/key-work-health-and-safety-statistics-australia-2021. 더 자세한 산업재해 현황은 safe work australia, Compara tive Perfomance Monitoring Report 23, Work Health and Safety Compliance and Enforcement, 2021.11.29. 참조(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comparative-performance-monitoring-report-23rd-edition).

망자를 총 194명으로 보고하였다. 2007년부터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계속하여 감소추이를 보이다가, 2018년부터 다시 소폭 상승하고 있다. 발생 건수 뿐 아니라 노동자 100,000명 당 사망자 비율 역시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II-4] 호주 중대재해 발생 추이

2020년에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 194명중 여성이 8명, 남성이 186명으로 나타났고, 100,000명 당 사망자 비율은 여성에서 0.1%, 남성에서 2.8%로 나타났다. 발생건수 및 발생비율에서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라 볼수 있다.

중대재해 사망자는 55-64세 사이의 노동자 중 55명이 발생하여 가장 많았고, 반대로 25세 미만의 노동자 중 8명이 발생하여 가장 적었다.

Age group (years)	Number of fatalities	Fatality rate (fatalities per 100,000 workers)
Under 25	8	0.4
25-34	30	1.0
35-44	34	1.2
45-54	36	1.4
55-64	55	2.9
65 and over	31	5.3
Total	194	1.5

[그림 Ⅱ-5] 호주 연령별 중대재해 사망자 수(2020)

총 사망자 194명 중 작업유형에 따른 사망자 수는 기계 및 자동차 운전자가 총 6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반 노무자가 41명, 작업관리자가 3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Occupation	Number of fatalities	Fatality rate (fatalities per 100,000 workers)
Machinery operators and drivers	67	8,4
Labourers	41	3.5
Managers	35	2.2
Technicians and trades workers	26	1.5
Community and personal service workers	11	0.8
Professionals	11	0.3
Sales workers	2	0.2
Clerical and administrative workers	1	0.1
Total	194	1.5

[그림 Ⅱ-6] 호주 작업유형별 사망자 수(2020)

소속 직군에 따라 사망자 수를 분류하면 2020년 총 194명의 사망자 중 물류산업에서 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업·임업·어업에서 46명, 건설에서 36명, 생산공장에서 1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ndustry of employer	Number of fatalities	Fatality rate (fatalities per 100,000 workers)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46	13.1
Transport, postal and warehousing	49	7.8
Construction	36	3.1
Manufacturing	19	2.2
Mining	5	2.1
Electricity, gas, water and waste services	3	2.0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s	6	1.4
Public administration and safety	10	1.1
Rental, hiring and real estate services	2	0.9
Other services	3	0.7
Wholesale trade	2	0.5
Arts and recreation services	1	0.5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5	0.4
Accommodation and food services	2	0.3
Education and training	2	0.2
Retail trade	2	0.2
Health care and social assistance	1	0.1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0	0
Information media and telecommunications	0	0
Total	194	1.5

[그림 II-7] 호주 산업유형별 사망자 수(2020)

(2) 법적조치 현황137)

2020년 호주 전체에서 산업안전재해 관련 소송은 모두 283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249건이 유죄, 명령 또는 화해 등의 유형으로 종결되었다. 2020년 산업재해 관련 소송을 통해 부과된 벌금은 총 23,700,000호주달러138)이다.

Activity	Financial vear	NSW	Vic	Qld	WA	SA	Tas	NT	ACT	Aus Gov	Seacare	Total Aus a	NZ
Number of legal proceedings finalised	2015-16	61 k	105	48	18	23	6	3	7	31	0	274	96 m
	2016-17	34 k	103	69	14	16	5	1	6	21	0	250	65 m
	2017-18	61 ^k	127	65	11	16	4	3	2	01	0	289	71 ^m
	2018-19	60 k	154	64	10	9	2	4	2	21	0	307	82 m
	2019-20	97 k	116	45	4	5	5	7	2	21	0	283	75 m
Number of legal proceedings resulting in	2015-16	55 k	98	42	17 n	19	2	Ħ	4	31	0	241	°88
a conviction, order or agreement	2016-17	33 k	93	64	13 n	12	1	2	1	21	0	221	° 58
	2017-18	59 k	116	56	11 n	15	4	3	2	01	0	266	· 49
	2018-19	59 k	130	53	9 n	5	2	3	2	1.1	0	264	°69
	2019-20	95 k	90	42	4 n	5	5	4	2	21	0	249	°59
otal amount of fines ordered by the courts	2015-16	\$4,063	\$4,451	\$1,104	\$640	\$778	\$75	\$152	\$238	\$460	\$0	\$11,961	\$3,521
\$'000)	2016-17	\$4,464	\$3,460	\$2,594	\$415	\$721	\$225	\$27	\$140	\$908	\$0	\$12,954	\$1,823
	2017-18	\$4,112	\$9,467	\$2,569	\$788	\$1,395	\$335	\$196	\$61	\$0	\$0	\$18,922	\$4,348
	2018-19	\$3,570	\$6,894	\$6,043	\$382	\$996	\$135	\$366	\$32	\$200	\$0	\$18,618	n/a
	2019-20	\$8,970	\$7,664	\$5,501	\$257	\$234	\$321	\$229	\$180	\$375	\$0	\$23,731	\$5,609

3) 중대재해 처벌 관련 법제

(1) 우리나라 중대재해처벌법과 호주 법제의 차이

호주 역시 영국법제와 유사하게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 반면 우리나라 법제는 행정형법상 양벌규정을 두어 처벌의 근거규정이 있을 경우에만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그 처벌도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종업원 등행위자의 처벌에 종속하여서,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¹³⁷⁾ 이하는 2021년 호주 '산업안전청(safe work australia)에서 발행한 「: 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comparative-performance-monitoring-report-23rd-edition(최종방문일: 2022.05.18.).

^{138) 21.368.157.000}원(2022.10.18. 매매기준율 기준).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법인의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반면 호주 또한 동일성이론에 의하여 법인의 독자적인 범죄능력을 인정함에 따라 기업과실치사법이라는 법인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즉, 개인의 과실치사죄가 보통법(Common Law)에 근거하는 것과 달리 법인의 과실치사죄는 작업장 과실치사죄라는 독자적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법인의 범죄성립은 개인의 범죄에 종속하지 않고,법인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의 의무위반이라는 독립된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범죄성립은 인정된다.

그와 같은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달리 근로자 사망에 대하여 법인의 범죄성립을 독립된 범죄 형태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호주는 유죄인정(Guilty Plea)이라는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이 유죄를 인정하게 되면 감형을 받는 결과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고인인 기업이 유죄인정을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는 유무죄협상제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사실관계로서 의무위반과 결과사이의 인과성 판단을 하지 않을 수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작업장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단체 또는 개인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실행위가 사망의 결과의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되면 족하다고 본다는 점에서, 인과성 판단이 우리나라보다 넓게 인정될 여지가 있다.

(2) '작업장 과실치사' 처벌 규정의 도입

호주는 최근의 '작업장 과실치사' 규정 도입 전에도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 해를 개별법률을 통하여 규율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는 주 형법에서, 퀸즈랜드 주(Queensland, QLD), 빅토리아 주(Vicoria, VIC), 노뎐 준주(Northern Territory, NT)는 산업안 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 [139] 그러나 각 주 간 작업장 과실치사죄의 존재여부, 법형식 및 법내용의 차이 등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최근 각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장 과실치사죄를 개정 또는 신설하는 작업이 이루어졌고, 일부 주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호주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각 주정부의 소관 사항으로 아래에서는 각 주별 입법현황을 간단히 설명한다.

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

수도 준주(ACT)는 2004년 형법 제49C조(산업 과실치사-사업주 위반)와 제49D조(산업 과실치사-고위임원 위반)를 도입하였다. 산업 과실치사죄는 법인 또는 경영진이 i) 심각한 부주의로, ii) 고용된 노동자의 사망을 야기하고, 부주의한 행위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인정될 수 있다. 형벌은 최고 287,500호주달러¹⁴⁰⁾ 또는 20년 이하의 자유형이며, 병과될 수있었다. 2021년 수도 준주(ACT)는 형법상 산업 과실치사죄를 작업안전범죄로 통일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해당 구성요건을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제34A조로 신설하여 규정하였다. 141) 동조는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person conducting a business or undertaking, PCBU) 또는 고위임원이 보건·안전의무를 위반하고, 이를 통하여 노동자의 사망이 초래된 경우, 개인에 대하여 20년의 자유형, 기업에 대하여 16.500,000호주달러¹⁴²⁾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¹³⁹⁾ 전형배, 경영책임자의 산업재해예방의무 강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21, 97면.

^{140) 261,970,000}원(2022.10.18. 매매기준율 기준).

¹⁴¹⁾ Allens Linklaters, Industrial manslaughter laws around Australia, 31.01.2022 : https://www.allens.com.au/insights-news/insights/2022/01/Industrial-mansla ughter-laws-around-Australia/(최종방문일 : 2022.06.25.).

^{142) 14,876,565,000}원(2022.10.18. 매매기준율 기준).

나.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뉴사우스웨일즈주는 2021년 11월 작업장 과실치사죄 신설을 위하여 개정 법안을 통과시키고 현재 뉴사우스웨일즈 국회에 계류 중이다. 동 개정법률에 따르면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또는 고위임원의 중과실로 인하여 노 동자에게 위험을 야기하고, 노동자가 작업장에서 사망하거나 또는 부상 후 사 망한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최대 25년의 자유형, 기업에 대하여는 최대 10,295,000호주달러¹⁴³⁾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다. 노던 테리토리(Northern Territory)

노던 테리토리주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NATIONAL UNIFORM LEGISLATION) ACT 2011)」상의 작업장 과실치 사죄는 최근 새롭게 신설되어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노던 테리토리주 산업안전보건법 제34b조는 경영진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보건·안전의무를 위반하여 노동자를 사망케한 경우 개인에 대하여 최대 무기징역, 회사에 대하여는 최대 10,530,000호주달러144)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라. 퀸즈랜드(Queensland)

퀸즈랜드의 작업장 과실치사죄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2017년 10월 23일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제34C조 및 제34D조에 규정되어 시행되었다. 동조는 작업장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개인에 대하여 20년의 자유형, 기업에 대하여 14,375,000호주달러¹⁴⁵⁾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143) 9,282,074,950}원(2022.10.18. 매매기준율 기준).

^{144) 9.501.324.000}원(2022.10.18. 매매기준율 기준).

^{145) 12.966.573.500}원(2022.10.18. 매매기준율 기준).

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South Australia)

2020년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는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자와 고위 임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도입하는 것을 시도하였고, 해당 법률에 관한 찬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법안은 현재 아직 주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146)

바. 태즈매니아(Tasmania)

태즈매니아주에서는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법제화 되지 않았고, 법안 제출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사. 빅토리아(Victoria)

빅토리아주는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개정을 통하여 작업장 과실치사죄를 제39G조에 신설하였다. 동 규정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인에 대하여 25년의 자유형, 기업에 대하여 18,170,000호주달러¹⁴⁷⁾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아.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Western Australia)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는 2020년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개정하여 제30A조에 작업장 과실치사죄를 규정하였고, 2022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조에 따르면 작업장 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개인에게는 20년의 자유형 또는 5,000,000호주달러¹⁴⁸⁾, 기업에 대하여는 10,000,000호주달러¹⁴⁹⁾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다.

¹⁴⁶⁾ Dylan Steel, Proposed Industrial Manslaughter law reform for South Australia, 2022.3.13. : https://www.molawyers.com.au/news-events/news/proposed-in dustrial-manslaughter-law-reform-for-south-australia,(최종방문일: 2022.06.05.).

^{147) 16,371,351,700}원(2022.10.18. 매매기준율 기준).

^{148) 4,505,050,000}원(2022.10.18. 매매기준율 기준).

^{149) 9,010,100,000}원(2022.10.18. 매매기준율 기준).

최근 각 주별 '작업장 과실치사' 규정 도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표 Ⅱ-7〉호주 각 주별 중대재해처벌 규정 현황

구분	처벌
빅토리아 주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2004 section 39G	개인 : 25년 이하의 자유형 법인 : 18,170,000호주달러 벌금
퀸즈랜드 주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section 34A - section 34D	개인 : 20년 이하의 자유형 법인 : 14,375,000호주달러 벌금
노던 준주 Work Health and Safety (National Uniform Legislation) Act 2011 section 34B	개인 : 최대 무기징역의 자유형 법인 : 10,530,000호주달러 벌금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Work Health and Safety (Industrial Manslaughter) Amendment Bill 2020	의회 계류 중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Workplace and Safety Bill 2019	개인 : 20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5,000,000호주달러 벌금 법인 : 10,000,000호주달러 벌금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section 제34A	개인 : 20년 이하의 자유형 법인 : 16,500,000호주달러 벌금
뉴사우스웨일즈 규정없음	의회 계류 중
타즈메니아 규정없음	규정 없음

(자료 : FCW Lawyer¹⁵⁰⁾)

¹⁵⁰⁾ Workplace Manslaughter in Australia and New Zealland 추가 수정·보완 하였음 (https://3q3i0t2d07tqif2g61ayaaf1-wpengine.netdna-ssl.com/wp-content/uploads/2021/06/20210701-Industrial-Manslaughter-across-Australian-jurisdictions.pdf, 최종방문일: 2022.05.18.).

(3) 호주 '작업장 과실치사' 죄의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가) 조직 또는 자영업자

호주의 작업장 과실치사죄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작업장 과실치사죄에 의하여 단체(Organisation)나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가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자가 포함된다.

- 법인 (예를 들어, 등록된 회사)
- 사단법인
- 법정 기관
- 신탁의 수탁자
- 비법인 단체 및 비법인 조합
- 동업자
- 정부 기관

나) 고위 책임자

등록된 회사와 같은 법인, 비법인 단체 및 비법인 조합 및 동업회사 등의고위 임원은 작업장 과실치사죄를 이유로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다. 이때 고위 임원이란 작업장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권한과 자원을 갖는 자로 단체등의 고위직에 있는 자를 의미하고 다음과 같은 자를 포함한다.

- 기업의 임원 또는 부서장
- 개인으로서 사업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거 나 또는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
- 그 조직의 재정 상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사람
- 기업의 임원들이 관례적으로 따르는 지시 또는 바램을 표시하는 자
- 동업관계의 파트너

• 비법인 조합의 고위 책임자

다) 피고용인 및 자원봉사자

작업장 과실치사죄는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이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작업장 과실치사죄의 전제가 되는 의무위반은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된 의무에 한정되고, 작업장 과실치사죄 규정에 대한 별도의 의무를 창설하고 있지는 않다.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주요 의무규정은 아래와 같다.

-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위해 안전하고 건강상의 위험이 없는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할 의무
- 고용주가 피고용인의 건강과 근무 조건을 점검할 의무
- 고용주가 피고용인이 아닌 사람들 (방문자, 공무원 및 다른 근로자 포함)이 해당 사업체의 업무 수행으로 인해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
- 자영업자가 자신의 업무 수행에서 오는 작업장의 위험에 다른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
- 직장의 관리직이나 통솔직에 있는 사람이 그 직장 및 직장 출입 수단이 안전하도록 보장할 의무
- 설계자가 직장으로 사용되는 공장 및 건물, 구조물이 안전하게 설계되도 록 보장할 의무
- 제조자와 공급자가 상품이나 물질이 안전하게 제조되고 사용되도록 보장 할 의무
- 개인이 직장에서 다른 사람을 심각한 부상에 처하게 할 행동에 함부로 참여하지 않을 의무

다. 과실행위

안전보건 등에 관한 의무담지자는 과실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켜 야 한다. 이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취했을 의무이행 수준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행위나 사망, 중상해 또는 중질환을 야기할 위험이 상당한 행위를 포함한다. 또한 감독의무로서 피고용인을 작업장의 위해로부터 적절히 관리, 통솔 또는 감독하지 않는 행위, 예방의무로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그 결과 사망, 중상해 또는 중질환의 위험을 야기한 행위가 포함된다.

라. 인과관계

단체 또는 개인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한다. 다만 해당 과실행위가 사망의 결과의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시적인 수준에서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되면 족하다. 인과관계의 인정에 있어 후발 결과 역시 고려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고용주가 부주의하게 피고용인을 석면에 노출시키고 수 년 후 해당 피고용인에게 석면을 원인으로 한질병이 유발된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

마. 처벌

각 주의 처벌정도는 상이하나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인정되는 경우 자연인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 대체적으로 20년 이상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인에 대하여 벌금을 규정하고 있는 주도 있다. 법인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상이하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의 경우 최소 금액으로 10,000,000호주달러(약 90억원)을 규정하고 있고, 빅토리아주의 경우 최고 금액으로 18,170,000호주달러(약 160억원)를 규정하고 있다.

상기한 호주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제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Ⅱ-8〉 호주의 중대재해처벌 법제

대상	분야	내용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본법	• 각 주의 산업안전보건법
법제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여부	• 각 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장 과실치사죄' 규정을 두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존재하는 경우 산안법과의 관계	• 각 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특별법적 관계로 우선 적용됨
	처벌의 근거	• '작업장 과실치사죄'에서 법인을 처벌 대상으로 함
	처벌규정 적용대상자	• 조직(Organisation)에 적용되고, 이에는 법인, 회사, 법정기관, 비법인 단체 및 비법인 조합, 정부기관 등이 포함됨
	중대재해(근로자 사망) 해당시 법정형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 부과 각 주별로 상이하나, 최고 1천8백만 호주달러(빅토리아주), 최저 1천만 호주달러(웨스턴오스트리아) 등으로 규정
	주의의무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안전의무
법인	주의의무위반의 고의·과실여부	• 행위자의 과실(negligent) 요구
	법원심리에서의 주된 쟁점	•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위반 여부와 정도
	양형	• 객관적으로 나타난 법익침해의 중대성, 형벌에 의한 일반적·개별적 범죄억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주요 양형인자	 사전유죄인정 여부 법인의 과거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범죄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범행 후 피해자 또는 유족 등에 대한 배려 법인의 안전시스템 개선 여부

대상	분야	내용
	처벌의 근거	• 각 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장 과실치사죄' 규정
	처벌규정 적용대상자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PCBU) 단체의 고위직에 있는 자로 기업의 임원 또는 부서장, 개인으로서 비지니스 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결정에 참여하는 사람 등 포함
	중대재해(근로자 사망) 해당시 법정형	 각 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상이함 최대 무기징역(노던준주), 25년(빅토리아주) 또는 20년의 자유형(퀸즈랜드 주 등)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는 5백만 호주달러의 벌금형도 규정하고 있음
	주의의무의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안전의무
자연인 (경영책임	주의의무위반의 고의·과실여부	• 행위자의 과실(negligent) 요구됨
자 등)	법원심리에서의 주된 쟁점	•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위반 여부와 정도
	· ල්	 객관적으로 나타난 법익침해의 중대성, 형벌에 의한 일반적·개별적 범죄억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작업장과실치사죄로 개인이 의율된 사례는 두 건으로, 첫 번째 사례에서는 최소 18개월 복역을 조건으로 하는 5년의 실형, 두 번째 사례에서는 10개월의 자유형에 20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음
	주요 양형인자	 사전유죄인정 여부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범죄규명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 범행 후 피해자 또는 유족 등에 대한 배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환경 등

(4) 조사 및 법적 절차

호주 각 주의 산업안전보건청이 작업장 과실치사죄를 수사한다. 증거의 확보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청은 각 주 경찰과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작업장 과실치사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약식재판절차로 다루어지지 않는다.

4) 중대재해 처벌 관련 사례

(1) 지게차 하역 사망사건(2022)

가. 사실관계

피고인 Mr. Owen은 퀸즈랜드 주 Gympie에서 전자제품 및 발전기를 수리·관리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2019년 7월 3일 피고인의 사업장에 발전기를 실은 화물차가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화물차에 실려온 발전기를 하역하기 위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였다. 지게차를 이용하여 발전기를 하역하던 중 발전기가 낙하하였고, 피고인을 돕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동 사건은 2017년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퀸즈랜드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된 후 처음으로 개인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된 사건이다. 피고인에 대하여 최소 18개월을 복역을 조건으로 하는 5년의 징역이 선고되었다. 현재 피고인의 항소로 동 사건은 항소법원에 계류중이다.151)

나.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작업장 과실치사죄를 규정한 퀸즈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34c조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¹⁵¹⁾ 사실관계는 퀸즈랜드 산업안전청 홈페이지 참조: First conviction of an individual for industrial manslaughter in Queensland(https://www.owhsp.qld.gov.au/court-report/first-conviction-individual-industrial-manslaughter-queensland, 최종방문일: 2022.09.01.).

제34C조 작업장과실치사 -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1)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경우 범죄를 범한 것이다.
- (a) 근로자가
 - (i) 사업 또는 사업체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 또는
 - (ii) 사업 또는 사업체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고 후에 사망한 경우, 그리고
- (b) 사업 또는 사업체의 운영이 근로자의 사망을 야기하고, 그리고
- (c)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에 의한 근로자의 사망의 야기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최대 형벌

- (a) 개인 20년의 징역, 또는
- (b) 회사 14.375,000호주달러¹⁵²⁾

검사는 피고인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주의하게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인이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었다는 점
- 피고인이 특히 지게차를 이용한 무거운 설비의 하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작업장 안전 절차를 문서화하지 않았다는 점
- 발전기가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기에 적당한 무게를 초과하였다는 점
- 발전기가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 작업에 형태상 적합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의 발전기의 하역구역에 보행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이 발전기의 하역에 있어서 타인의 안전거리 확보에 대하여 적절 한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를 감독하지도 않았으며, 적절한 교육 및 훈련 을 하지 않았다는 점

¹⁵²⁾ 법문에는 '100,000 penalty units'으로 규정되어 있고, 2022년 퀸즈랜드에서 1 페널 티 유닛은 143.75호주달러이다. penalty units의 액수는 각주에서, 그리고 매년 다르므로 본 연구에서는 페널티 유닛으로 규정된 벌금액을 해당 주와 연도의 산정액을 기반으로 모두 호주달러로 환산하여 표기한다.

- 지게차를 이용한 하역이 적절치 않다는 점을 하역 중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지게차에 근접한 동안 작업을 계속 수행했다는 점
- 사고를 야기한 작업이 비교적 적은 비용소모를 통하여 안전한 대체적 작업으로 대신될 수 있었다는 점

배심원단은 위의 기소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위로 발전기가 낙하하였고. 이를 통하여 피해자의 사망이 야기됐음을 인정하였다.153)

다. 양형

법원은 이러한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난 법익침해의 중대성, 형벌에 의한 일반적·개별적 범죄억제기능, 범죄자의 전력, 양심의 가책 및 기타 개인적 사정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구사이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친구를 돕기 위하여 작업을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점이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154)

(2) 자동차 재활용 사업장 지게차 충돌 사망사건(2020)155)

가. 사실관계¹⁵⁶⁾

¹⁵³⁾ 퀸즈랜드 산업안전청 홈페이지 참조: First conviction of an individual for ind ustrial manslaughter in Queensland(https://www.owhsp.qld.gov.au/court-report/fir st-conviction-individual-industrial-manslaughter-queensland, 최종방문일 : 2022.09.01.).

¹⁵⁴⁾ 퀸즈랜드 산업안전청 홈페이지 참조: First conviction of an individual for ind ustrial manslaughter in Queensland(https://www.owhsp.qld.gov.au/court-report/fir st-conviction-individual-industrial-manslaughter-queensland, 최종방문일 : 2022.09.01.).

¹⁵⁵⁾ R v Brisbane Auto Recycling Pty Ltd & Ors [2020] QDC 113.

¹⁵⁶⁾ 이하 사실관계는 본 사건의 판결문인 R v Brisbane Auto Recycling Pty Ltd & Ors [2020] QDC 113, p. 4 이하를 요약·정리한 것임. 해당 판결문은 퀸즈랜드 대법원 홈페이지 참조: https://www.sclqld.org.au/caselaw/QDC/2020/113(최종 방문일: 2022.06.01.).

본 판결의 대상이 된 사건은 2019년 5월 17일 퀸즈랜드(Queensland)주 로클리아(Rocklea)에 위치한 '브리즈번 자동차 재활용 회사(Brisbane Auto Recycling Ptv Ltd, 이하 브리즈번 회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하였다. 브리즈 번 회사에 고용되어 작업 중이던 피해자 Barry Willis는 또 다른 노동자에 의 해 후진하던 지게차에 충돌하여 부상당한 후 2019년 5월 25일 사망하였다. 사건 전후의 장면이 작업장에 설치된 4대의 cctv에 의하여 녹화되었고, 피해 자 Barry Willis가 후진 하던 지게차에 끼어 매우 괴로워하는 모습이 포착되 었다. 브리즈번 회사는 재판매, 재활용 및 부품으로의 사용을 위하여 중고차 를 매입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동 회사는 2016년 3월 등기되었고, 아프카 니스탄 국적에 호주 영주권을 소유한 Mr. Hussaini와 Mr. Karimi가 지분을 양분하고 있었고, 이사로 등기되었다. 두 이사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작업을 감독하였다. 피해자는 동 회사에서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인수받아 사업장까지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브리즈번 회사에 계약직으로 고용 되어 근무하였다. 작업 중 피해자는 브리즈번 회사 소유의 견인차(single cab Hino tilt tray truck)를 이용하였다. 피해자는 사고당일 오전 8시 14분 위의 견인차를 이용하여 자동차를 수거하기 위해 사업장 외부에서 작업 중이었고, 9시 19분 피해자는 수거한 힌색 밴 차량을 견인차에 결박한 채로 사업장으로 복귀한 후, 차량 보관창고 근처로 접근하였고, 앞서 도착한 가스실린더 배달 트럭 옆에 주차하였다. 피해자는 하차 한 후 견인차에 결박된 밴 차량의 고정 장치를 해제하기 시작하였다. 9시 31분에서 9시 32분 사이 견인차의 운전석 과 조수석 측을 오가며 작업하던 피해자는 그를 인지하지 못하고 근처에서 직 장 동료가 운전하여 후진 중이던 지게차에 충돌되었고, 지게차와 견인차 사이 에 압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사고 후 Mr. Hussaini의 신고로 신속히 병원 으로 후송되었으나, 부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8일 후인 5월 23일 사망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브리즈번 회사와 동회사의 이사인 Mr. Hussaini와 Mr. Karimi가 기소되었다. 먼저 브리즈번 회사는 퀸즈랜드「산업안전보건법

(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WHSA 2011)」157) 제34c조에 따른 작업장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다. 검사는 동 회사가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동 사업을 위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브리즈번 회사의 사업활동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것이며, 이에 회사의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158) 동조의 최고 형량은 작업장 과실치사죄를 규정한 퀸즈랜드 산업안전보건법 제34c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4C조 작업장과실치사 -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 (1)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경우 범죄를 범한 것이다.
- (a) 근로자가
 - (i) 사업 또는 사업체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사망한 경우, 또는
 - (ii) 사업 또는 사업체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고 후에 사망한 경우, 그리고
- (b) 사업 또는 사업체의 운영이 근로자의 사망을 야기하고, 그리고
- (c)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에 의한 근로자의 사망의 야기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

최대 형벌

- (a) 개인 20년의 징역, 또는
- (b) 회사 14.375.000호주달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의 위법성과 도덕적 책임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브리즈번 회사가 i) 작업장에서 작업자와 이동 중인 기계장치의 상호 간섭을 통제하지 못하였고, ii) 작업자 보행구역과 이동 기계설비의 경로를 효과적으로 분리하는데 실패하였으며, iii) 이동 기계설비와 작업자 사이에서의 작업활동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데 실패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의무위반이 피해자의 사망을 야기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동 회사의 이사인 Mr. Hussaini와 Mr. Karimi는 작업자와 작업장에 접근하는 일반인에 대한 위험 야기와 관련하여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다. 그들은 회사가 위와 같은

¹⁵⁷⁾ 해당 법률은 퀸즈랜드 주정부 홈페이지 참조: https://www.worksafe.qld.gov.au/laws-and-compliance/work-health-and-safety-laws(최종 방문일: 2022.06.05.). 158) R v Brisbane Auto Recycling Pty Ltd & Ors [2020] QDC 113, p. 3.

위험방지 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인정되었다. 159)

다. 양형

법원은 브리즈번 회사에 대하여 3,000,000 호주달리¹⁶⁰⁾의 벌금을 선고하였고, 동 회사의 이사인 Mr. Hussaini와 Mr. Karimi에 대하여는 10개월의 자유형과, 20개월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형을 양정함에 있어 법원은 몇가지 참작사항을 제시하였다. 먼저 브리즈번 회사에 대하여 최고 벌금액의 1/3에 해당하는 액수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보다 적은 벌금액은 브리즈번 회사의 책임에 상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충분한 범죄억제효과의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벌금을 부과함에 있어 피고인의 재정적 상황과 피고인의 납부 부담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양형조사에 따르면 브리즈번 회사의 자산상태가 위의 벌금형을 이행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점이 적절한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161)

법원은 동 회사의 이사인 Mr. Hussaini와 Mr. Karimi가 피해자의 딸인 Willis에게 사고 지게차 운전자의 신분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는 점, cctv 영상이 본 사건을 규명하는데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였다는 점, 또한 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장면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들이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시도하였다고 인정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사망으로 충격에 빠져 있는 유족에 대한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질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서투른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점, 이른 시기에 유죄를 인정(pleas of guilty)하였다는점, 피고인들의 진술을통하여 사고 지게차 운전자의 신분을 규명할 수 있었다는점을 참작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의 자녀가 아프카니스탄에서 양육되고 있는 등의 개인적인 상황, 추방

¹⁵⁹⁾ R v Brisbane Auto Recycling Pty Ltd & Ors [2020] QDC 113, p. 24.

^{160) 2,698,590,0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¹⁶¹⁾ R v Brisbane Auto Recycling Pty Ltd & Ors [2020] QDC 113, p. 24.

가능성 및 사고 전 피고인들의 건전한 생활태도 등을 고려하여 10개월의 자유 형을 선고하고, 이를 20개월 동안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162)

(3) 건설현장 크레인 전복 사망사건(2021)163)

가. 사실관계¹⁶⁴⁾

사건은 2016년 8월 4일 캔버라 대학병원 건설현장에서 발생하였다. 주시 공업체는 Multiplex Constructions Pty Ltd(이하, Multiplex)였고, Mutipliex는 공사현장에서의 크레인(crane) 장비의 제공을 목적으로 RAR Cranes(이하, RAR)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RAR는 공사현장에 작업범위를 10톤에서 25톤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크레인을 제공하였다. 작업자는 크레인 후면에 있는 두 번째 평형추를 설치하여 작업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 고, 이는 개별 작업의 성질에 따라 결정될 수 있었다. RAR은 사고 당일 크레 인의 작업자에게 크레인의 안전한 작동 방법과 작업용량 증가 방법 및 평형추 의 안전한 설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작업자는 이러한 상태에 서 사건 당일 크레인의 평형추를 적절하게 설치하지 못하였다. 2016년 8월 4 일 Multiplex는 공사현장에 있는 총중량 10.3톤으로 기재된 발전기의 위치 를 옮기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통상적인 작동방법에서 제공된 크레인의 작업 용량을 초과하는 것이었다. RAR은 200톤 용량의 크레인 또는 경사 적재함 트럭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였으나, Multiplex는 이 장비를 사용하는데 소모 되는 비용과 운송비를 이유로 이러한 제안을 거절하였다. RAR 크레인 작동 자는 크레인의 작업용량이 초과되어 과부하가 발생하였다는 알람이 울렸음에도 작업을 계속하였다. 작업자는 새로이 설치한 평형추가 본래 크레인에 등록된

¹⁶²⁾ R v Brisbane Auto Recycling Pty Ltd & Ors [2020] QDC 113, p. 25.

¹⁶³⁾ Bradley Cummins v Multiplex Constructions Pty Ltd [2021] ACTIC 1(12 November 2021).

¹⁶⁴⁾ 이하 사실관계는 본 사건의 판결문인 Bradley Cummins v Multiplex Constructions Pty Ltd [2021] ACTIC 1, p. 2 이하를 요약·정리한 것임. 해당 판결문은 수도준주 치안판사법원 홈페이지 참조: https://courts.act.gov.au/__data/assets/pdf_file/0007/1899106/Multiplex-Constructions-Sentence.pdf(최종방문일: 2022.07.01.).

장치가 아니어서 알람이 울리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크레인에 과부하가 발생하였고 작업 중인 크레인이 전복되었고, 근처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 Mr. Herman Holtz를 덮쳤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동사건으로 Multiplex와 RAR는 수도준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의무위반으로, 크레인을 운전했던 Mr. Watts는 형법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조기에 유죄를 인정하였다. 결과적으로 Mr. Watts에게는 20월의 징역형에서 감형되어 12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이는 모두 집행유예되었다. 165) 법인인 Multiplex는 150,000호주달러166), RAR는 300,000167)호주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168)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Multiplex가 사망이 야기된 공사와 관련한 주 시공계약자로서 현장 관리자라는 점, RAR은 크레인과 크레인 작업자를 제공하는 특정분야의 하도 급업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RAR은 크레인 작업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작업장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준비하고 시행하였다. 안전관리계획은 개별적인 크레인 작업에 앞서 '작업장에 특유한 위험성평가(site-specific risk assessment, 'SSRA')'를 완료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RAR의 '안전작업방법설명서(safe work method statement, 'SWMS')'에서는 크레인의 설치 전에 크레인이 적당한 장소 및 컨디션에서 설치될 것을 확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또한 작업자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받았다는 점, 요구조건을 이해한다는 점, 그들이 작업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고, SWMS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 작업자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에 필요한 숙련도를 갖추지 못한 경우 그들의 감독자에게 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서명해야 했다. 그러나 사고를 야기한 시점에 작업현장에

¹⁶⁵⁾ R v Watts [2020] ACTSC 91.

^{166) 134,970,0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167) 269,940,0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¹⁶⁸⁾ Bradley Cummins v Multiplex Constructions Pty Ltd [2021] ACTIC 1.

현장감독자가 부재하였고, 피고인들은 이것이 단지 '실수'였다고 해명하였다. 법원은 모든 구체적인 현장작업에 고유한 위험이 존재하고, SSRA는 모든 높은 수준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앞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법원은 사건 현장에서 이미 두 건의 SSRA가 진행되었지만 이는 일반적인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Multiplex의 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의 모든 인과적 관련성이 추측에 근거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검사는 이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범죄가 의무위반에 의하여 창출된 위험과 관련되었다는 인정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라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이와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법원은 피고인인 Multiplex와 RAR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다. 양형

법원은 형의 양정에 있어서 해당 사건이 작업자의 일시적인 실수로 발생하였고, 피고 회사들이 해당 공사현장에서 일반적으로 잘 정비된 안전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었으므로, 과실이 덜 중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시스템 자체의 결여가 존재하는 시스템의 미준수보다는 의무위반정도가 반드시 중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위반의 중함은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적절한 안전시스템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는 중대한 위법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본 사건에서 작업자의 단순한 실수가 안전시스템의 명백한 위반보다는 덜 중한 것이라 판단되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어렵지 않게 안전시스템을 준수할 수 있었고, SSRA의 요구에 대하여 충분한 권한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해당 사건의 의무위반이 하위직직원이 아닌 중위직 직원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역시 언급하였다.

법원은 기업의 벌금을 산정함에 있어 충분한 자산을 소유한 기업에 더 높은 수준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자산을 가진 기업에 벌금을 과 함에 지불능력이 부족한 소기업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벌금의 감경 고려가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감이 충분한 자력이 있는 기업에 대하여는 충분한 범죄억제력을 담보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4) 태양광 발전시설 압사사건(2021)169)

가. 사실관계170)

2018년 2월 피해자인 Mark Fitzgerald가 유압더미드라이버를 이용해 지 면에 말뚝을 박던 중, 기계 고장이 발생하였고, 고장난 기계를 고치기 위하여 이를 조사하던 중 기계의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노동자를 덮쳐 압사하였다. 피 해자는 당시 제1피고인인 Lightforce Asset Ptv Ltd(이하 Lightforce)에 고 용된 노동자였고, 제2피고인인 Civil and Allied Technical Construction Pty Ltd (이하 Catcon)의 감독하에 'Bungala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작업을 수행 중이었다. Lightforce와 주시공사인 Catcon 사이에는 Lightforce가 장 비와 설비의 작동을 제공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피 해자인 Mr. Fitzgelald는 Lightforce의 매우 숙련된 노동자였고, 그는 유압더 미드라이버를 이용해 도로변에 안전구조물을 설치하는 작업을 주로 담당하였 으나, 본 사건에서의 태양광 패널 설치작업은 그의 숙련분야가 아니었다. 작업 장에서는 유압더미드라이버 2대가 필요했고, 작업의 성격상 장비의 가동범위 를 2.7m에서 최대가동 범위인 4.0m로 연장하는 개조가 요구되었으며, Lightforce는 2대 중 1대의 장비를 조정하였다. Mr. Fitzgelald는 숙련된 장 비 작동자로서 최초 조정되지 않은 장비로 작업장에서 작업을 시작하였다. 작업장에서 Mr. Fitzgelald는 유일한 Lightforce의 직원이었고, Lightforce의 어떠한 직원도 작업장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작업장 및 작업유형에 대한 안 전분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작업절차지침 등도 준비되지 않았다. Mr. Fitzgelald는 Catcon에 소속된 직원의 보조를 받

¹⁶⁹⁾ Martyn Campbell v Lightforce Asset Pty Ltd (ACN 128327373) trading as Erections (WA) and Civil and Allied Technical Construction Pty Ltd (ACN 077924120) [2021] SAET 9.

¹⁷⁰⁾ 이하 사실관계는 본 사건의 판결문인 Martyn Campbell v Lightforce Asset Pty Ltd (ACN 128327373) trading as Erections (WA) and Civil and Allied Technical Construction Pty Ltd (ACN 077924120) [2021] SAET 9, p. 3 이하를 요약·정리한 것임. 해당 판결문은 South Australian 노동 법원 홈페이지 참조: http://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cases/sa/SAET/2021/9.html(최종방문일: 2022.06.01.).

으며 독립적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작업가동 범위가 수정된 두 번째 장비가 2018년 2월 12일 작업장에 도착하였고, 2018년 2월 17일 Mr. Fitzgelald는 동 장비를 작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 수정된 장비에서 작업하기에는 교각의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Mr. Fitzgelald와 작업보조자는 다시장비를 수정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결정은 일부분 감독자의 입회하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후행 수정에 의하여 장비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장비를 다시작동시키기 위하여 조사하던 중 장비의 고정장치가 풀리면서 Mr. Fitzgelald를 덮쳤고,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Lightforce와 Catcon이 기소되었다. 적용된 법조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2」171) 제32조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2조 보건 및 안전의무 준수 위반 - 카테고리 2

다음의 경우 카테고리 2 위반행위가 인정된다.

- (a) 보건 및 안전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 (b) 그 의무를 위반하여;
- (c) 위반 행위가 개인에 대하여 사망의 위험, 상해의 위험 및 질병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최대 형벌:
- (a) 개인에 의하여 범해진 위반의 경우(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또는 사업 또는 사업체 운영하는 사람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은 제외) 150.000호주 달러¹⁷²⁾
- (b)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또는 사업 또는 사업체 운영하는 사람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에 의하여 범해진 위반의 경우 - 300,000호주달러¹⁷³⁾
- (c) 기업에 의하여 범해진 경우 1.500.000호주달러¹⁷⁴⁾

¹⁷¹⁾ 해당 법률은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legislation.sa.gov.au/lz?path=%2Fc%2Fa%2Fwork%20health%20and%20safety%20act%202012(최종방문일 : 2022.06.05.).

^{172) 134,967,0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173) 269,940,0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174) 1,349,670,0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i) 그들의 사업 영위로부터 발생한 위험이 그 자체로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ii) 그러한 위험이 예견불가능하였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모두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2」 제32조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175) 동법 제32조는 행 위자가 보건·안전의무를 가지고, 이를 위반하여 작업자를 위험에 노출시킬 것 을 요하고 있다. 대상사건에서 문제가 된 보건·안전의무는 동법 제19조제1항 에 규정된 '일차적 주의의무(Primary duty of care)'이다. 사우스 오스트레 일리아 노동법원은 Catcon이 동법 제19조제1항 (b)호에 규정된 보건·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인 Mr. Fitzgelald를 위험에 노출시킨 것으로 판단하 였다. 이에 따르면 i) Catcon이 피해자가 운용하던 장비의 수용범위를 넘는 더 긴 파이프를 사용할 것을 지시하여 장비의 수정을 야기하였고, ii) 문제가 된 장비의 수정이 Catcon에 소속된 감독자의 인식 아래에서 행해졌으며, iii) 이와 같은 장비의 설정변경으로 인하여 안전운전 한계치를 벗어난 작동을 야 기하였고, 이를 통하여 고장의 위험이 증가하였으며, 파이프를 박기 위해 상단 에 위치한 해머가 낙하여 작업자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이 증대되었다고 보았다. 결국 피해자는 장비의 고장상황에서 장애요소를 제거하 기 위한 작업 중 사망한 것은 위의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Lightforce 역시 피해자의 사망에 있어 동법 제19조제1항 (a)호의 보건·안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다. 176) 특히 Lightforce는 새로운 작업장에서의 작업 전에 '작업안전분석(job safety analysis, JAS)'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 안전작업절차에 관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¹⁷⁵⁾ Martyn Campbell v Lightforce Asset Pty Ltd (ACN 128327373) trading as Erections (WA) and Civil and Allied Technical Construction Pty Ltd (ACN 077924120) [2021] SAET 9, p. 11.

¹⁷⁶⁾ Martyn Campbell v Lightforce Asset Pty Ltd (ACN 128327373) trading as Erections (WA) and Civil and Allied Technical Construction Pty Ltd (ACN 077924120) [2021] SAET 9, p. 11.

다. 양형

대상사례의 피고인인 Lightforce와 Catcon은 모두 법인 기업체로 「산업 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2」제32조에 따라 피해자의 사망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500,000 호주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최종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 노동법원은 사전에 유죄를 인정 한 Lightforce에 300,000 호주달러, Catcon에 450,000 호주달러의 벌금액 을 부과하였다. 동 법원은 형의 양정에 있어 i) 적절한 벌금형의 산정, ii) 고려할만한 경감사유의 존재, iii) 피해자에 대한 보상의 문제 등 고려하였 다. 177) 먼저 Lightforce와 관련하여 법원은 i) 동회사가 가족이 함께 기거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아들과 딸의 비행기 비용을 지불한 점, ii) 피해자의 부 인인 Mrs. Fitzgerald의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하여 법적 조언을 위한 비용을 지원한 점, iii) 구직 중인 피해자의 사위에게 일자리 제공을 제시한 점, iv) 동회사가 경험이 부족한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에 다시 복귀하지 않고, 동회사 의 전문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기로 한 점, v) 법적 고용주로서 동회사가 「노 동자 배상 및 상해관리법(Workers Compensation and Injury Management Act 1981)」에 따라 보험사를 통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하였 다.178) 제2피고인인 Catcom과 관련해서는 i) 동회사가 유족에게 일정한 배 상금(30,000 호주달러)을 지급한 점, ii) 안전시스템을 준수하고, 장비의 임 의적 수리 및 개조를 금지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등 시정조치를 위하여 노력 한 점 등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동회사가 유죄인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감 독자'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듯한 진술을 했다는 점은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였 다.179) 동법원은 선례와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최초 Lightforce에 대하여

¹⁷⁷⁾ Martyn Campbell v Lightforce Asset Pty Ltd (ACN 128327373) trading as Erections (WA) and Civil and Allied Technical Construction Pty Ltd (ACN 077924120) [2021] SAET 9, p. 9.

¹⁷⁸⁾ Martyn Campbell v Lightforce Asset Pty Ltd (ACN 128327373) trading as Erections (WA) and Civil and Allied Technical Construction Pty Ltd (ACN 077924120) [2021] SAET 9, p. 14.

¹⁷⁹⁾ Martyn Campbell v Lightforce Asset Pty Ltd (ACN 128327373) trading as Erections (WA) and Civil and Allied Technical Construction Pty Ltd (ACN 077924120) [2021] SAET 9, p. 14.

500,000 호주달러, Catcon에 750,000 호주달러의 벌금액을 산정하고, 사전 유죄인정의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각각 40% 감경하였다.

(5) 도로공사장 그레이더(grader) 충돌 사망 사건(2016)180)

가. 사실관계¹⁸¹⁾

피해자 Wayne Vickery는 2001년 11월부터 피고인인 Canberra Contractors Ptv Ltd(이하 C. Contractors)에 소속된 경험이 풍부한 노동자였다. 피해자 는 사건 당시인 2011년 12월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이하 ACT)에 위치한 West Belconnen에서 피고인이 시행하는 토목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었다. 당시 피해자는 위의 회사에 정규 근로계약 을 통하여 장비 운용자로 고용된 상태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사품질심사 및 장비 운용 등이 포함된 중요 작업 임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그는 노동조합 및 작업장 보건·안전 대표자의 직위를 가지고 있었다. 동 사업장에서 피해자는 작업 중 후진하던 그레이더(grader)에 충돌되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후 사 망하였다. 그레이더는 도로 공사를 위하여 작업현장에서 토양을 고르는 작업 을 수행하였다. 그레이더 운전자는 작업지점에서 그레이더를 이용하여 토양 을 고른 후, 후진 한 후 다시 전진하여 다른 작업지점으로 옮겨가기를 반복하 였다. 피해자는 작업 중 공사 중인 도로에 따라 간격을 두고 설치된 측량말뚝 에서 토양 레벨을 측정하고 표시하는 업무를 수행했고, 이러한 작업에서 피해 자는 쭈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고 측량말뚝에서 측량기를 보면서 토양 레벨에 따라 토양 정리를 손으로 지시하였다. 작업을 하던 중 그레이터가 토양 수준 을 측량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있는 작업자를 향하여 후진하였고, 피해자는 그레이더 후진 경고음과 주위에서 동료작업자가 위험을 알리는 목소리를 듣

¹⁸⁰⁾ R v Canberra Contractors Pty Ltd [2016] ACTSC 13.

¹⁸¹⁾ 이하 사실관계는 본 사건의 판결문인 R v Canberra Contractors Pty Ltd [2016] ACTSC 13에서 요약·정리한 것임. 해당 판결문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대법원 (ACT Supreme Court) 홈페이지 참조: https://courts.act.gov.au/supreme/judgments/r-v-canberra-contractors-pty(최종방문일: 2022.06.01.).

지 못한 채, 후진 하는 그레이더에 충돌되었다.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로인해 사망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피고인인 C. Contractors은 법인으로 위의 사고와 관련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ACT) 「작업안전법(Work Safety Act 2008)」¹⁸²⁾ 제31조제1항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은 유죄를 인정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ACT) 대법원은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피해자는 그레이더와의 충돌시 작업하지 말아야할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레이더의 운전자는 피해자가 예상 했던 직선방향으로 후진하지 않았고, 방향을 전환하여 피해자가 위치한 장소로 후진하였다. 그레이더의 기동 전에 피해자와 운전자는 장비의 기동 전에 명확한 눈맞춤을 하지 않은 채 기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은 작업장 안전과 안전한 작업시스템을 제공하고 유지하는 것에 실패했음을 인정하였다. 피고 회사의 대표인 Paul Macor는 일어나지 말았어야할 사고가 발생했음을 인정하였다. 그에 따르면 만약 적절한 감독이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졌고, 법령과 적절한 안전수칙이 준수되었다면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작업현장에 대한 안전감독과 안전한 작업시스템을 제공하고 유지하는데 부주의했음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이러한 부주의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하였다.183)

다. 양형

법원은 형을 양정함에 있어 피고 회사가 32년 동안 단 한번도 산업안전보건 법규 위반으로 기소된 적이 없음을 고려하였다. 이는 동 회사가 산업현장에서의 보건·안전의무를 중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¹⁸²⁾ 수도준주(ACT) 「작업안전법(Work Safety Act 2008)」은 이후 2011년 폐지되었고,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183) R v Canberra Contractors Pty Ltd [2016] ACTSC 13.

또한 동 회사가 산업현장에서의 보건·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안전수칙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이를 고려하여 법원은 최초 110,000호주달러¹⁸⁴⁾의 벌금액을 산정하였고, 사전유죄인정을 이유로 이를 25%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82,500호주달러¹⁸⁵⁾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¹⁸⁶⁾

(6) 전력선 근접 작업 중 감전사 사건(2015)187)

가. 사실관계188)

2021년 3월 트럭운전자인 피해자는 민간건설현장에서 머리 위를 지나는 전선케이블의 아킹범위 내로 차를 몰고온 후 사망하였다. 피고 회사인 Kenoss Contractors Pty Ltd(이하 K. Ltd)는 수도 준주(ACT)의 Turner 지역의 재개발 계획의 일환으로 굴착과 도로건설 작업을 진행중이었다. 사고현장의 자재보관시설 중 하나가 머리 위로 지나는 전선케이블 아래에 위치하고 있었다. 해당 자재보관시설은 펜스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출입구가 보안되지는 않았었다. 해당 지역의 일부가 자재저장시설의 대용으로 사용되었다. 전기공급기관과의 사이에서 전력공급중지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력선에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 중인지 아닌지가 어떠한 수단으로도 표시되지 않았다. 본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이미 많은 건설자재들이 해당 지역에 배송되고, 보관되었다.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자갈더미를 운송 중이었다. 피해자는 부자재창고시설에서 자갈을 하역하기 위하여 적재함을 비스듬히 들어올렸을 때 전력선과 트럭의 적재함이 전기아크를 형성할 정도로 충분히 접근하였다. 피해자가 트럭에서 하차하였을 때 감전되었고, 4일 뒤 사망하였다.

^{184) 99,015,4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185) 74,261,55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¹⁸⁶⁾ R v Canberra Contractors Ptv Ltd [2016] ACTSC 13.

¹⁸⁷⁾ Brett McKie v Kenoss Contractors Pty Ltd (in liquidation) (19 August 2015), CC 40210 of 2014

¹⁸⁸⁾ 이하 사실관계는 본 사건의 판결문인 Brett McKie v Kenoss Contractors Pty Ltd (in liquidation) (19 August 2015), CC 40210 of 2014에서 요약·정리한 것임.

나.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인 K. Ltd는 위의 사건과 관련하여 수도 준주(ACT)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제32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동 사건은 수도 준주(ACT)의 치안판사 관할 사건으로 재판되었다. 치안판사는 작업장에 근접해 있는 전력선의 위험은 잘 알려진 것으로 이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가 이를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사건이 발생하기 수 년전에 이미 전력선 주변에서의 작업의 위험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금지하는 처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고 회사가작업장 안전과 관련하여 열악한 기업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비난하였다.

다. 양형

치안판사는 피고 회사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해당 회사에 1,100,000 호주달러¹⁸⁹⁾의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선고 당시 피고 회사인 K. Ltd는 청산절차에 있었으나, 치안판사는 벌금형 집행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회사의 재정사정에 비추어 매우 곤란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회사가 청산절차에 있다는 사정이 위의 벌금액을 선고하는데 장애요소가 아니라고 파시하였다.¹⁹⁰⁾

(7) 지붕 태양광 판넬 설치 중 추락사건(2016)191)

가. 사실관계192)

^{189) 990,154,0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¹⁹⁰⁾ Brett McKie v Kenoss Contractors Pty Ltd (in liquidation) (19 August 2015), CC 40210 of 2014.

¹⁹¹⁾ 이하의 사실관계는 본 사건의 판결문인 B & J Finnigan Pty Ltd v Worksafe ACT [2016] ACTSC 158 (6 July 2016).

¹⁹²⁾ 이하의 사실관계는 본 사건의 판결문인 B & J Finnigan Pty Ltd v Worksafe ACT [2016] ACTSC 158 (6 July 2016)에서 요약·정리한 것임. 해당 판결문은 오스트레

2013년 8월 19살의 견습 노동자인 Mr. Thomas McCoy이가 약 3미터의 지붕에서 작업 중 미끄러져 추락하였다. 이 사고로 Mr. McCoy는 왼쪽 손목과 오른쪽 팔에 골정상을 입었고, 오른쪽 다리에는 심한 열상을 입었다. 당시사업주는 6명의 전기 견습생 노동자와 주택의 층계진 지붕에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수행중이었다. 작업 중 사업주는 작업장을 떠났고, 사고발생시에 작업장에는 숙련된 노동자가 한 명도 작업을 감독하지 않았다. Mr. McCoy는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위쪽 지붕에서 작업을 하였고, 그가 아래쪽 지붕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사다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는 아래쪽 지붕으로 이동하는 중 그의 안전벨트를 해제했으나, 그것을 다시 체결하지 않았다. 그가 다음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할 때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사다리가 미끄러져 넘어졌고, Mr. McCoy는 지붕에서 지상으로 추락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본 사건은 본래 2015년 11월 2일의 치안판사법원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사건이다. 위의 사건에서 사업주는 수도준주 산업안전보건법의 제32조 위반 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보건·안전의무 위반 - 카테고리 2

다음과 같은 사람은 카테고리 2 위반행위를 범한 것이다.

- (a) 보건·안전의무를 갖는 자가, 그리고
- (b) 그 의무를 위반하고. 그리고
- (c) 위반이 개인을 사망, 심각한 부상 또는 질병의 위험에 노출시킨 경우 최대 형벌
 - (a) 위반이 개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또는 그 고위임원 제외) 150.000호주달러¹⁹³⁾
 - (b)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또는 그 고위임원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300.000¹⁹⁴⁾호주달러
 - (c) 기업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1,500,000호주달러¹⁹⁵⁾

일리아 수도 준주 대법원(ACT Supreme Court) 홈페이지 참조: https://courts.act.gov.au/supreme/judgments/b-j-finnigan-pty(최종방문일: 2022.08.01.) 134.967,0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원심에서 피고법인인 B & J Finnigan Pty Ltd는 조기에 유죄를 인정하였고, 유무죄의 여부가 아니라 과도한 벌금을 이유로 항소를제기하였다. 원심에서 피고법인에 140,000호주달러196)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수도 준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르면 법인에 대하여 최대 1,500,000호주달러의 벌금이선고될 수 있다. 치안판사법원은 양정에 있어 i) 피고 회사가 조기에 유죄를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ii) 회사의 대표와 그 부인이피해자의 병원을 방문하고, 6주~8주 후 피해자의 퇴원시 직접 회사에 데리고왔다는 점, iii) 회사의 대표가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충분한 고려를 하였고,작업장에서의 안전조치를 개선하였다는 점, iv) 회사가 총 12명의 직원으로구성된 비교적 소규모였고, 지역사회에서 직장을 원하는 청년들에서 일자리를제공하였다는 점, 그러나 젊은 견습생들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로서 특히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했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항소법원은 항소인의 주장을 결론적으로 기각하였다. 재판장은 먼저 명백하게 과도한 벌금액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아주 간단히 그 명백함을 확인할 수 있는 적정한 범위의 벌금액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항소법원은 본 사건에서 항소인의 변호인이 이러한 범위제시가 불가능하다고하여 본 사건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벌금 산정범위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고려 되어야할 피고법인의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상세한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기각의 이유로 제시하였다.

결국 항소법원은 양형 부당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치안판사법원의 140,000 호주달러의 벌금액을 확정하였고, 수도준주 산업안전보건법 제236조에 따라 항소인이 캔버라 타임즈(Canberra Times)와 호주방송국(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에 유죄판결의 확정과 부과된 형벌에 대하여 7일 이내에 공시할 것을 명령하였다.

^{194) 269,940,0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195) 1,349,670,0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196) 126.019.6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8) 건설현장 추락으로 인한 중상해 사건(2015)197)

가. 사실관계198)

2022년 10월 21세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건축판넬의 관통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5m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 회사는 수도 준주(ACT)의 Acton에서 건물을 신축하던 중 소위 '스피드 판넬'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해자는 판넬의 설치작업 중에어컨 설치를 위한 타공작업을 수행하였다. 피해자는 해당 작업을 사고가 있기 몇 주 전부터 수행하고 있었고, 사고 당일 아침 프로젝트 엔지니어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엔지니어는 작업을 혼자서 수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고 현장에는 충분치 않은 조명이 있었고, 반대편 측면에는 5.4m 구멍이 뚫려 있었지만, 어떠한 보호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작업 중 피해자가 추락하였고, 피해자의 폐에 천공이 발생하였고, 갈비뼈 5개가 부려졌으며, 척추가골절되었다.

나.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는 수도 준주(ACT) 「산업안전보건법(Work Health and Safety Act 2011)」 제32조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치안판사는 피고 회사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치안판사는 대상 사건이 현장경험이 없는 서류행정이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로 평가하였다. 치안판사는 사고당일 피해자가 작업에 있어 왜 도움을 요청했는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분명 보조자의 도움 없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자재로 사용된 패널의 무게, 완성되지 않아 위험이 존재하는 건물 내 위치, 절단이 요구되는 패널의 위치와 관련된 작업의 곤란성을 고려할 때 작업자에 대한 위험이 명백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러한

¹⁹⁷⁾ Joseph Bartlett v Corporate Ventures (Aust) Pty Ltd (3 June 2015), CC 41162 of 2014.

¹⁹⁸⁾ 이하 사실관계는 본 사건의 판결문인 Joseph Bartlett v Corporate Ventures (Aust) Ptv Ltd (3 June 2015), CC 41162 of 2014에서 요약·정리한 것임.

사정에서 해당 작업에서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도 준주의 산업안전 청의 가이드라인상의 지침이 준수되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부상당한 노동자의 연령과 작업능력의 미숙함을 고려했을 때 숙련 노동자에 비하여 보 다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다. 양형

치안판사는 형의 양정에서 피고 회사에 의한 주의의무가 중간정도의 심각성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나타난 법익침해의 중대성과 형벌에 의한 일반적인 범죄억제기능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적용 법조에 따를 때 최대 피고 회사에 1,500,000 호주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었으나, 치안판사는 피고 회사에 270,000 호주달러199)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9) 컨베어벨트 압착으로 인한 중상해 사건(2007)200)

가. 사실관계201)

본 사건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ACT) 대법원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된 사건이다. 상고인은 Rocla Pty Limited(이하 Rocla)이다. Rocla는 수도 준주(ACT)에서 콘크리트와 관련된 다양한 건설자재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업체로, 민간공사현장 등에 이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해자인 Mr. Olssen은 동 회사에 고용된 자로 2005년 5월 24일 동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콘크리트 제품 생산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사고당일 피해자

^{199) 243.037.8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²⁰⁰⁾ Rocla Pty Limited v Inspector Timothy John Cody [2007] ACTSC 9 (15 February 2007).

²⁰¹⁾ 이하 사실관계는 본 사건의 판결문인 Rocla Pty Limited v Inspector Timothy John Cody [2007] ACTSC 9 (15 February 2007)에서 요약·정리한 것임. 해당 판결문은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 대법원(ACT Supreme Court) 홈페이지 참조: https://courts.act.gov.au/supreme/judgments/rocla-pty-limited-v-inspector (최종방문일: 2022.06.01.)

Mr. Olssen은 진동판 위에 설치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쏟아붓는 작업을 담당하였다. 작업 중 피해자의 왼쪽 장갑이 컨베어벨트 롤러에 끼었고, 이어 손가락과 왼쪽 팔이 롤러에 끌려들어 갔다. 왼쪽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정지 스위치까지 피해자의 손이 닿지 않아 기계를 정지시키지 못하였다. 곧 근처에서 작업하던 동료가 뛰어와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켜 기계를 정지시켰다. 피해자를 즉시 구조할 수 없었고, 동료들이 컨베어벨트의 일부를 분해한 후 피해자의 부상당한 팔을 빼낼 수 있었다. 피해자는 이후 약 2주 간의 입원 치료후 물리치료 등으로 재활하였다. 이후 2005년 8월 비교적 가벼운 업무로 회사에 복귀하였고, 2006년 2월 부터는 정규 사무직으로 회사에 근무하였다.

나. 법원의 판단

Rocla는 최초 수도 준주(ACT) 「작업장 보건안전법(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1989)」 제49조 위반을 이유로 치안판사법원(Magistrate's Court)에 기소되었다. Rocla는 치안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하였고, 치안판사는 2006년 8월 7일 Rocla에 200,000 호주달러²⁰²⁾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Rocla는 벌금액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Rocla의 상고이유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²⁰³⁾

- 벌금액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점
- 치안판사가 양정에 있어 일반적인 범죄억제력을 과도하게 강조한 점
- 치안판사가 위반행위의 상대적 심각성을 적절하게 평가하지 못한 점
- 치안판사가 상고인의 반성,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고발생후 회사에 의해 취해진 개선조치, 사고 수습 과정에서의 WorkCover와 협력 및 비교적 이른 시기의 유죄를 인정한 사정이 적절히 평가받지 못한 점

^{202) 180,028,0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²⁰³⁾ Rocla Pty Limited v Inspector Timothy John Cody [2007] ACTSC 9 (15 February 2007).

- 치안판사가 당해 사건 전 퀸즈랜드에서 발생한 2건의 작업장 사고 사건 에 과도하게 중요성을 부여한 점
- 치안판사가 선고한 벌금형의 정도가 기타 비교 가능한 다른 판결에 비하 여 과도하게 중하다는 점

수도 준주(ACT)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200,000호주달러의 벌금액을 100,000호주달러²⁰⁴⁾로 경감하였다.

다. 양형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액을 50% 감경함으로써, 치안법원의 양정이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이미 2004년에 안전시스템 개선에 관한권고가 있었고, 이것이 사건 발생시까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Rocla의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Rocla가 70년 동안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며 단 2건의 안전의무위반 기록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Rocla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자의 상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점을 Rocla가 매우 이른 시기에 유죄를 인정하였다는 점, 즉각적으로 결함있는 안전시스템을 개선하는조치를 단행한 점, 그리고 피해자의 지원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인정하였다.특히 대법원은 Rocla가 작업장 안전시스템을 검토 및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양형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205)

(10) 철도건설 현장 폭발사고로 인한 중상해 사건(2021)206)

가. 사실관계207)

^{204) 90,014,0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²⁰⁵⁾ Rocla Pty Limited v Inspector Timothy John Cody [2007] ACTSC 9 (15 February 2007).

²⁰⁶⁾ WorkSafe Western Australia, Charge Number: PE26518/2021(https://prosec utions.commerce.wa.gov.au/prosecutions/view/1514, 최종방문일: 2022.08.02.).

²⁰⁷⁾ 사실관계는 WorkSafe Western Australia 홈페이지에서 요약·정리 : https://pro

피고인 Salini Australia Pty Ltd는 2018년 7월 7일 펄스(Perth) 동부 교외 지역에 새로운 철로를 건설하는 공사현장에서 승강장 부근의 지하 1터널에서 파이프라인 설치 작업을 위하여 작업자 3명을 투입하였다. 사고현장인작업장은 진입로가 협소하여 엎드려 기어들어갈 수 있었다. 작업영역은 콘크리트 벽 사이의 비좁은 공간이었다. 파이프라인에는 지상으로부터 공급되는고압으로 압축된 공기가 들어있었다. 작업 중 큰 폭발이 발생하였고, 폭발로인해 강관으로부터 분리된 유연한 고무호스로 압축된 공기가 배출되기 시작했고, 고무호스가 비좁은 작업현장을 휘젓기 시작했다. 작업자 3명 중 1명은재빨리 사고현장을 빠져 나왔으나, 한 명은 고무호스에 맞아 경상을 입업고,다른 1명은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부상자를 구조하기 위한 작업이 1시간 정도 진행되었고, 중상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중상자는 다발상 타박상과 기억 상실을 포함하는 외상성 뇌 손상을 입었다.

본 사건으로 Salini Australia Pty Ltd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산업안전법 제19(1) 및 19A(2)에 따라 기소되었고, 피고는 조기에 유죄를 인정하였으며 200,000호주달러²⁰⁸⁾의 벌금이 선고되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고압가스가 들어있는 플랙시블 호스가 갑작스러운 에너지 방출로 심하게 휘청거려 주변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피고 회사가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피고 회사의 '안전작업방법설명서 (Safe Work Method Statement, SWMS)' 0551에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호스 구속 및 채찍장비 장치 등 안전체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즉 호스가 적절하게 고정되어 있는지를 검사해야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다. 법원은 피고회사가 안전작업방법설명서에 규정된 위험통제조치를 실행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secutions.commerce.wa.gov.au/prosecutions/view/1514(최종방문일: 2022.08.02.). 208) 180.028.0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회사의 안전의무위반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른시기에 유죄를 인정하였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를 겨우 최고 400,000호주달러²⁰⁹⁾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200,000호주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5) 호주 중대재해 사례 처벌 사례 정리

상기한 호주에서의 중대재해 처벌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연번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1	지게차 하역 사망사건	사업주가 화물차에 실려온 발전기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하역하던 중, 지게차가 낙하하여 피해자를 사망시킨 사건	_	사업주인 피고인에게 퀸즈랜드 주 산안법상 작업장과실치사죄 를 적용하여 최소 18개월 복역을 조건으로 하는 5년의 자유형 선고. 현재 피고인의 항소로 항소법원 계류 중.	호주에서 작업장과실치 사죄로 개인에게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건. 사전유죄 불인정.
2	자동차 재활용 사업장 지게차 충돌 사망사건 (2020)	화물차 주위에서 실려온 중고차 하역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이를 보지 못하고 후진 중이던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	회사에 대하여 퀸즈랜드주 산안법상 작업장과실치사죄를 적용하여 3,000,000호주달러의 벌금 선고	회사의 2명의 이사에 대하여 컨즈랜드주 산안법상 보건·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 벌칙을 적용하여 10개월의 자유형에 20개월의 집행유예 선고	호주 컨즈랜드주에서 작업장과실치 사죄가 처음으로 적용된 사건. 사전유죄 인정.

^{209) 360,056,000}원(2022.10.19. 매매기준율 기준).

연번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3	건설현장 크레인 전복 사망사건 (2021)	호주 캐버라 대학병원 건설현장에서 크레인의 작업용량을 증가시키는 수정작업 후 작업 중, 평형추의 오설치로 인하여 크레인이 전복되어 근로자를 사망케한 사건	도급 관계에 있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산안법상 보건·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칙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150,000호주달러, 300,000호주달러의 벌금을 선고	크레인의 작업용량을 증가시키고, 운전을 담당했던 운전자에 대하여 형법상 과실치사죄로 기소	사전유죄 인정.
4	태양광 발전시설 압사사건 (2021)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현장에서 유압더미드라이버 를 이용하여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설비의 고장을 수리하던 중 고정장치가 풀린 해머에 맞아 사망한 사건	산안법상 보건·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벌칙이 적용되어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 대하여 300,000호주달러,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작업하던 현장을 관리하던 회사에 대하여 450,000호주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됨	_	사전유죄 인정.
5	도로공사장 그레이더 (grader) 충돌 사망사건 (2016)	도로공장에서 토양정리를 위하여 토양의 수준레벨을 측정하고 있던 근로자가 이를 보지 못하고 후진하던 그레이더(grader) 에 충돌하여 사망한 사건	근로자의 회사에 대하여 산압법상 보건·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어 82,500호주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됨	-	사전유죄 인정.
6	전력선 근접 작업중 감전사 사건(2015)	트럭운전자인 피해자가 전력케이블의 아킹범위 내로 차를 몰고 온 후 하차하던 중 감전사한 사건	피해자의 회사에 대하여 산안법상 보건·안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1,100,000호주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됨	-	사전유죄 인정.

연번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7	지붕 태양광 판넬 설치 중 추락사건 (2016)	2013년 지붕 위에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던 견습생이 추락하여 큰 부상을 입은 사건	견습노동자의 회사는 산안법상 보건·안전의무 위반으로 140,000호주달러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으나 항소법원은 위의 벌금형을 확정함	-	사전유죄 인정.
8	건설현장 추락으로 인한 중상해 사건(2015)	건설현장에서 건축판넬의 관통부를 절단하던 근로자가 5m 이상의 높이에서 추락하여 부상당한 사건	산안법상의 보건·안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회사에 270,000호주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됨	_	사전유죄 인정.
9	컨베어벨트 압착으로 인한 중상해 사건(2007)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산업현장에서 컨베어벨트 롤러에 왼쪽 팔이 끌려들어가 부상당한 사건	피고 회사에 산안법상의 보건·안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100,000호주달러의 벌금형 선고됨	-	사전유죄 인정.
10	철도건설 현장 폭발사고로 인한 중상해 사건(2021)	철도건설현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폭발사고로 인해 고정장치에서 분리된 고압가스에 타격당해 부상을 입은 사건	피고 회사에 산안법상의 보건·안전의무 위반을 이유로 200,000호주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됨	_	사전유죄 인정.

Ⅲ. 각국의 중대재해 처벌 사례 비교 및 시사점

Ⅲ. 각국의 중대재해 처벌 사례 비교 및 시사점

1. 각국의 처벌 방식에 관한 개괄적 비교

우선 영국은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제정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대법원판결은 없다. 영국의 형사사법체계상 1심 Crown Court에서 유죄인정 (Guilty Plea)를 하게 되면, 유죄인정협상에 따라서 유무죄 판단 없이 양형만고려하게 되므로 항소 자체가 거의 없다.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1심 및 항소심에서 무죄판결 또는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는 매우드물게 있어서, 항소심 자체도 거의 없고, 1심 판결이 거의 95% 이상이라고파악된다.

또한 양형위원회는 2016년 2월 1일부터 최종 선고지침을 발표하여 기업살인 및 과실치사에 대한 양형기준을 정비하였다. 동법이 시정명령(remedial orders),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명령(publicity orders)을 제재 수단으로 하면서 기업에 대한 처벌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형벌로는 '상한 없는 벌금'을입법화하였기 때문에, 실제 이를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양형위원회 역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비해 산재 사망률이 1/30에 불과한 영국에서 이미 15 년 전에 근로자 사망에 대하여 입법을 통해 강한 통제와 처벌의 의지를 표명 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적용 및 처벌에 있어서 그와 같은 입법의도가 명확 히 반영되는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산재사망 사건 자체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업에 대한 벌금부과로 인하여 파산하였거나 심각한 경영상 의 불이익을 받았는지 여부 역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 독일의 경우 전형적인 대륙법계 국가로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인의 처벌은 개인의 처벌과 동일한 형법적용이 이루어지

지 않고,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 법에 따른 법적용 과정과 독일의 법제(특히 형법)에 따라 법적용 과정이 모두 '기업의 배후에 있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책임귀속'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수렴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단행 법률에서 중대산업재해의 경우형사책임귀속의 주체가 경영책임자등임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 총칙분야(제14조)에서 기업이 사업주가 되는 모든 사건에서 그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영책임자등이 형사책임을 진다고일반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 한하여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에 반해, 독일에서는 형법 제14조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 뿐만아니라 배임, 횡령 등 일반적인 범죄에서도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와 호주는 전형적인 영미법계 법제를 기초로 하면서, 영국과 동일하게 동일성 이론을 취하면서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한다. 따라서 법인처벌의 법률제정 또는 개정에 이론적 제약은 없다. 다만, 캐나다는 연방국가이지만, 오스트레일리아나 미국과 달리 연방이 배타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한다. 기업은 캐나다 형법에서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인(person)'의 개념에 포함되지만, 기업의 형사책임은 영국에서 발전한 '동일성 원칙(identification doctrine)'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1) 캐나다 사법부는 전통적으로 '동일성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과 달리 관리자 책임 원칙 하에서 기업의 형사책임이 결정되지 않고, 기업 그 자체보다는 위반행위에 참여한 개인이나 고용인에게 책임이 귀속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매우 좁은 범위에서만 기업의 형사책임이 인정되고, 많은 경우 기업 내 행위자, 즉 자연인인고용인의 형사책임으로 귀결된다.2〉실질적으로 캐나다에서 고용인 등의 위반

¹⁾ Donaldson/Watters, Corporate Culture as a Basis for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Allens Arthur Robinson, 2008, p. 24.

²⁾ Caylor/Shaheen, Canadia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Program on Corporate Compliance and Enforement(https://wp.nyu.edu/compliance_enforcement/2019

행위가 기업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3)

캐나다의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1992년 5월 발생하여 26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건'으로 큰 전환점을 맞게된다. 1997년 발표된 캐나다 정부의 공개조사 보고서에서는 부실한 작업장 관리가 위험한 작업환경의 원인이었고, 기업 경영진의 책임을 조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4)이후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고, 그 결과 2004년 3월 31일 'Westray Bill'이라 불리우는 'Bill C-45'를 통하여 개정된형법 제21조, 제22.1조, 제22.2조가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호주의 경우에는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를 개별법률을 통하여 몇몇의 주에서 특별히 규율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CT)는 주 형법에서, 퀀즐랜드 주(Queensland, QLD), 빅토리아 주(Vicoria, VIC), 노던 준주(Northern Territory, NT)는 산업안 전보건법에서 중대재해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었다.5) 그러나 최근 들어 기존의 작업장 과실치사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신설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각주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장 과실치사죄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동향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건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고, 또한 연방 전체의 통일적 규율을 마련하고자 하는 호주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처럼 각국별로 기본적인 법제가 다르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강화 또는 처벌의 의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입법 자체는 매우 적극적으로 제·개정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도 또한 높은 편이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사례에 적용하는 빈도는 중대

^{/03/07/}canadian-corporate-criminal-liability/?utm_source=Mondaq&utm_medium = syndication&utm campaign=LinkedIn-integration, 최종방문일 : 2022.04.18.).

³⁾ Donaldson/Watters, Corporate Culture as a Basis for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Allens Arthur Robinson, 2008, p. 24.

⁴⁾ Donaldson/Watters, Corporate Culture as a Basis for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Allens Arthur Robinson, 2008, p. 25.

⁵⁾ 전형배, 경영책임자의 산업재해예방의무 강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21, 97면.

재해 발생현황과 비교하여 저조한 편이며, 처벌의 수위 또한 입법례에 비추어 높지 않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2.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입법례 비교

1) 영국

영국은 중대재해의 발생시 기업과 개인의 처벌을 구분하며, 기업과 개인에 적용되는 근거법률 및 적용법조 또한 서로 다르다. 우선 기업에 대하여는 기업과실치사법 제1조에 해당하는 단체(organisation)가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관련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즉, 동법 제1조에 따라 기업은 활동이 관리 또는 조직되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직이 사망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는 관련 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면 상한 없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 때의 관련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이란 Sec. 2(1)의 규정내용이며, 이는 민법상 발생하는 의무로서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이 새로운 법적 의무를 생성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동법의 적용대상인 단체(organisation)은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이에 준하는 조직이나 경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를 모두 포괄한다. 동법 제1조는 그 기업의 활동이 경영자(senior management)에 의하여관리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위반에 있어서 상당한(substantial) 요소일 것으로 요구하며, 경영자란 "그 활동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관리되고 조직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 활동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의 실제 관리나조직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 정의된다(동조 제4항(c)).

경영자의 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경영자가 다수인 경우 개개인마다 그 기여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 경영자들의 기여의 총합 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기업이 안전보건의무를 고위 관리직이 하위 직급자에게 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경영자는 면책대상이 되는가 역시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가 발간한 "기업과실치사법의 이해(Understanding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2007)"에 따르면 그와 같은 책임의 부적절한 위임도 경영자의 관리불이행에 위한 기업과실치사법의 위반이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6)

이와 별개로 기업은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가 성립한다. 산업보건 안전법 제2조제1항은 모든 고용주(기업)는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한도 내에서 모든 고용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는 매우 광범위하고 넓은 보통법상의 안전주의의무위반으로서, 손해배상이 될 만한 것은 모두 동법상 감독관에 의한 조사 및 형사소추의 대상이 될 수 있다.7) 제3(1)조는 고용주(기업)는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 자신의 사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고용된 근로자 이외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 이외의 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어서, 기업에서 일하는 하청업체 사람들, 기업에의 구내 방문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나 일반대중도 포함된다.8)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모두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서(so far as is reasonably practicable)"라는 단어가 고용주의 의무를 규정하게 된다.

기업은 계약자가 비직원을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청을 주더라도 자신의 '인수(undertaking)'에 대한 책임을 여전히 지게 된다.9)

⁶⁾ Ministry of Justice, Understanding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2007, 2007, 3면 이하.

⁷⁾ G. Janner, Compendium of Health and Safty Law, Random House Business Books, 1982, 12면 이하.

⁸⁾ R v Tangerine Confectionery (2011) EWCA Crim 2015

⁹⁾ R v Associated Octel Co Ltd (1996) 1 WLR 1543

기업처벌과 별개로 개인은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 제37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동 조는 "조직법인에 의하여 범해진 관련 법령 조항에 따른 범죄가 그단체의 이사, 관리자, 비서 또는 기타 유사한 임원, 또는 그러한 자격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한 자의 동의 또는 묵인 하에 저질러졌거나 또는 그 책임에 기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해당 개인도 그 범죄로 유죄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이사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또한 보통법(Common Law)상 중과실치사죄(gross negligence manslaughter)가 성립할 수 있는 바, 이는 개인의 부작위를 포함한 행위와 사망사이의 인과관계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다만 기업이 유죄인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 대한 형벌감면의 혜택을 부과할뿐만 아니라, 개인인 이사에 대한 기소를 철회하거나 기소자체를 하지 않는 경향이 매우 두드러진다.

2) 독일

독일의 경우에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의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의경우 그에 대하여 특별하게 적용되는 법률은 없고 단지 형법상 과실치사죄가적용될 뿐이다.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몇몇의 형사처벌규정을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로자 사망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은 없다. 또한 형식적인 면에서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은 독립적인 법률도 없다. 독일의 경우 근로자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는 오로지 형법상 과실치사죄를 포섭·적용하는 길 뿐이다.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 법에 따른 법적용 과정과 독일의법제(특히 형법)에 따른 법적용 과정이 모두 '기업의 배후에 있는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책임귀속'이라는 점에서 하나로 수렴된다.

다만, 우리나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단행 법률에서 중대산업재해의 경 우 형사책임귀속의 주체가 경영책임자등임을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독일의 경우에는 형법 총칙분야(제14조)에서 기업이 사업주가 되는 모든 사건에서 그 기업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경영책임자등이 형사책임을 진다고 일반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대산업재해의 경우에 한하여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에 반해, 독일에서는 형법 제14조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 분야 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 등 일반적인 범죄에서도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독일에서 산재로 인하여 사망이나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독일 형법상 과실치사죄(제222조)나 과실치상죄(제229조)가 적용된다. 즉,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 즉,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사 사망이나 상해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 형법상 과실치사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뿐이다. 이 경우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며, 과실치상죄의법정형은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이다. 그렇지만 독일 형법상 과실치사죄와 과실치상죄는 사업주의 부주의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결과만을 고려하여 행위자를 처벌하는 구성요건이다. 이러한 근로자의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가 바로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조치의무 내지 보호의무이다.

독일에서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은 '근로시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의 개선을 위한 근로보호 조치의 실행에 관한 법률' 10)이다. 이 법률의 약칭이 바로 근로보호법(Arbeitsschutzgesetz)이다. 11)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될 1996년 당시 입법자가 중시했던 정책목표는 바로 위험성 평가(Gefährdungsbeurteilung)였다(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¹⁰⁾ Gesetz über die Durchführung von Maßnahmen des Arbeitsschutzes zur Verbesserung der Sicherheit und des Gesundheitsschutzes der Beschäftigten bei der Arbeit, 7. August 1996, BGBl. I S. 1246

¹¹⁾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은, 전형배·정영훈·김기선, 외국의 산업안 전보건법 위반 사례 분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워 보고서, 2019, 104-121쪽 참조,

위험성 평가란 근로조건의 평가이지 근로자의 평가가 아니다. 즉, 위험성 평가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영향과 같은 전통적인 위험인자들 이외에 근로의 과정과 근로로 인한 작업의 완성과정 및 그 공동작용, 이러한 근로과정에서의 불충분한 자격과 근로자에 대한 불충분한 지시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위험성도 평가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2013년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시에는 근로자의 심리적 부담도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켰다(같은 법 제5조제3항제6호).

독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가 취할 안전조치 등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제7조(사업주의 업무지시)와 제9조(특별한 위험)이다.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지시할 때 각각의 업무의 유형별로 근로자가 그 임무를 이행함에 안전과 보건보호에 관한 규정과 조치를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제7조).

또한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는 특별한 위험의 경우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특별하게 위험한 업무영역으로서 사전에 적절한 지시를 받고 그 업무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조치를 취해야 한다(제9조제1항). 사업주는 직접적으로 중대한 위험에 처해있거나 처해질 수 있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그러한 위험과 취해졌거나 취해져야 할 보호조치를 통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9조제2항). 또한 사업주는 직접적인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들로 하여금 즉시 작업장을 떠나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제9조제3항)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2호a목에기재된 행위를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12),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제1항제1호13) 또는 제2호a목에 규정된 고의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생명

¹²⁾ 사업주 또는 책임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집행가능한 명령을 의도적으로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¹³⁾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19조에 따른 법규명령을 위반하였고, 이 법규명

이나 건강에 위험을 야기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형사처벌의 대상을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다. 이경우 사업주에는 개인사업주와 법인사업주가 있다. 개인사업주는 그 자신이행위주체이기 때문에 행사책임의 대상을 정할 때 어려움이 없다. 이에 반해법인사업주의 경우에는 형사책임의 대상, 즉 자연인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제에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이 부정되어 법인이 형사책임의 주체로 등장할 수 없고, 그 대신 그 법인의 배후에 있는 일정한 자연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을 대신하여 자연인인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책임자가 처벌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현장소장의 입장에서는 비록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구역에서 산재사망사고가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 형사처벌의 주체로 사업주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보일 수 있기때문이다.

원래 발생한 산재사망사고나 상해사고에 대하여 현장소장 등 안전보건책임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들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현장소 장이나 안전보건책임자 등이 처벌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양벌 규정에 대한 해석을 통하여 현장소장이나 안전보건책임자의 형사책임을 인정 하고 있다. 14) 즉, 대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벌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이

령이 특정한 구성요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 규정의 적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¹⁴⁾ 대법원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제1호, 제13조제1항, 같은 법 제68조제1호, 제43조제1항, 제70조제1호, 제31조제1항에 각각 정하여진 벌칙 규정의 적용대상은 사업자임이 규정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나, 한편 같은 법 제71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관리감독자를 포함한다),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내지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양벌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의 취지는 각 본조의 위반 행위를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이 직

들에 대한 가벌성을 창설하고 있어, 위헌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 점에 주목해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의 대상으로 경영책임자등을 명시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타당한 것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에서는 법인의 배후에 있는 자연인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형법(총칙)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에 명시해두고 있다.15) 독일형법 제14조는 어느 형벌법규가 일정한 인적 요소를 범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인적 요소가 법인 또는 사업주에게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마련된 조문으로서, 이러한 사정 하에서 발생하는 형사처벌의 불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인적 요소를 갖추고 있지 아니한 법인이나 사업주에 의하여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에게 형사처벌을 인정하고 있다.16) 특히 법인과 관련있는 독일 형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달리 표현해보면, 당해 범죄

접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나 사업자 쌍방을 모두 처벌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자에 대한 각 본조의 벌칙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도230 판결 등 참조.

¹⁵⁾ 독일 형법 제14조(타인을 위한 행위)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행위한 경우, 특별한 인적 성질, 관계 또는 상황(특별한 인적 요소)이 가벌성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은 그와 같은 요소가 대리인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본인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법인의 대표기관 또는 그 기관의 구성원

^{2.}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사원

^{3.} 타인의 법정대리인

② 사업주 또는 기타 사업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을 받고 그 위임에 근거하여 행위한 경우에는 특별한 인적 요소가 가벌성의 기초를 이루는 법률은 그와 같은 요소가 수임자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업주에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수임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사업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경영에 관한 위임

^{2.} 사업주의 책임에 속한 임무를 자기 책임으로 임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명시적 위임

기업은 제1문에 의한 사업소로 본다. 위와 같은 위임에 근거하여 공공행정의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제1문을 준용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대리권 또는 위임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준용된다.

¹⁶⁾ 신동운, 회사의 대표기관 등에 대한 형사책임과 배임죄(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 2529 전원합의체판결) (공 1984,1816.), 상사판례연구 제1권, 박영사, 1996, 528쪽.

구성요건에 법인이 신분자(예: 사업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신분이 법인의 대표기관이나 그 기관의 구성원 등에게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법인에 게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 대표기관이나 그 기관의 구성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7)

3) 캐나다

연방국가인 캐나다는 연방이 배타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한다. 캐나다 형법에서 범죄를 범할 수 있는 '인(person)'의 개념에는 단체나 조직 및 기업도 포함되지만, 이들의 형사책임은 영국에서 발전한 '동일성 원칙(identification doctrine)'에 따라 인정되고 있다.

캐나다의 조직이나 기업의 형사책임에 대한 소극적 자세는 1992년 5월 발생하여 26명의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간 '웨스트레이 광산 폭발 사건'으로 큰전환점을 맞게 되어 2004년 3월 31일 'Westray Bill'이라 불리우는 'Bill C-45'를 통하여 개정된 형법 제21조, 제22.1조, 제22.2조, 제217.1조가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캐나다 산업보건안전법상으로는 산안법위반행위인 산안법상의 개별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벌금 최대 100,000달러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안전보건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과실치사의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유형이 나아가 기업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벌금형이부과된다. 행위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자유형이나, 2,000 달러 이하의 벌금형이부과되는 경우, 기업에 대하여 100,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상기한 범죄보다 중한 범죄인 경우에는 상한 없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18)

¹⁷⁾ 이진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마련에 관한 연구, 산업안 전보건연구원 보고서, 2018, 87쪽.

¹⁸⁾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A Plain Language Guide to Bill C-45, p. 7.

중대재해처벌과 관련하여, 기업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캐나다 형법 제22.1조와 제22.2조는 책임귀속의 주체를 '조직(organisation)'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person'이나 'corporation' 보다 포괄적 용어로 모든 비정형적 단체를 포함한다.19) 제22.1조에서 조직은 일정한 경우 범죄행위의 당사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의 당사자란 제21조에서 i) 범죄행위를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자, ii) 범죄행위를 실행하는 자를 도와주기 위한 목적 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는 자, iii)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자 로 정의된다. 즉, 캐나다 형법의 '범죄행위의 당사자(Parties to Offences)' 란 우리 형법상 실행정범, 방조범 및 교사범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22.1조는 과실행위로 인하여 조직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a)호에서는 조직의 종업원이 범죄행위의 당사자 일 것을, (b)호에 서는 조직의 고위 임원이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a)호에서의 행위자는 '대표자(representative)'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사실상 해당 조직을 위하여 일하거나, 연계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예컨대 기업의 이사, 동업자, 대리인 및 종업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20) 종업원의 행 위가 그의 권한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이 범죄행위의 당사자이거 나, 두 명 또는 그 이상의 종업원이 과실행위에 연관되어 범죄행위의 당사자 가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러한 과실행위에서 고위 임원(senior officer)의 감독의무 위반이 입증되어야 한다. 과실행위와 감독의무 해태가 존재한다면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제22.2조는 과실책임이 아닌 행위자가 고의로 행위한 경우 기업의 형사책임을 규정하고 있다.²¹⁾ 이때에 행위자는 '고위 임원(senior officer)' 이며, 적어도 부수적으로라도 조직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

¹⁹⁾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A Plain Language Guide to Bill C-45, p. 4.

²⁰⁾ Goetz, BILL C-45: AN ACT TO AMEND TE CRIMINAL CODE, Library of Parliament, 2003, p. 10.

²¹⁾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A Plain Language Guide to Bill C-45, p. 7.

고위 임원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조직의 이익을 위한 의사로 범죄의 당사자가 된 경우 기업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고위 임원이 조직을 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다른 종업원을 지시한 경우에도 기업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 경우 지시에 따른 종업원에게 조직의 이익을 위한 의사는 요구되지 않는다.²²⁾ 마지막으로 고위 임원이 종업원의 행위로 인하여 범죄행위의당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업에게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217.1조에 의하여, 작업자 등에 대한 생명·신체보호의 무 부과 조항으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작업자가 사상되는 경우 형법상 과실 치사상죄(제219조, 제222조)로 의율된다.

4) 호주

호주의 각 주는 최근들어 '작업장 과실치사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하고 있다. 최근의 작업장 과실치사죄 도입 전에도 수도 준주, 퀸즈랜드, 빅토리아 및 노던 준주 등에서는 형법 또는 각 주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사건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최근의 '작업장 과실치사죄' 도입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법인 및 사업주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호주 연방에서의 통일적 규율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의 작업장 과실치사죄의 도입에 따라 빅토리아주, 퀸즈랜드주, 노던준 주,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신설규정되었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및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논의 중에 있다. 타즈메니아주에서는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²²⁾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A Plain Language Guide to Bill C-45, p. 7.

최근 도입된 작업장 과실치사죄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여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에 대하여 노던준주에서는 최대 무기징역, 빅토리아주에서는 25년, 퀸즈랜드주에서는 20년,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주에서는 20년, 수도준주에서는 20년 이하의 자유형을 규정하고 있고,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는 5백만 호주달러의 벌금형도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인에 대하여는 빅토리아주 약천팔백만, 수도준주 약 천육백만, 퀸즈랜드 천삼백만,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와 노던준주 약 천만 호주달러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의 작업장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은 대동소이하다. 먼저 작업장과실치사죄에 따라 단체(Organisation)나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 고위임원 등이 처벌될 수 있다. 각 주의 법문은 이를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PCBU)로 규정하고 있어 호주에서 작업장과실치사죄는 신분범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행위주체의 의무위반이 전제되고, 이는 주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의무가 문제된다. 또한 안전보건 등에 관한 의무담지자는 과실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나아가 단체 또는 개인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실행위가사망의 결과의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망의원인이라고 인정되면 족하다.

5) 요약 및 비교

이상의 조사대상국인 영국, 독일, 캐나다 및 호주의 법제를 요약하여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Ⅲ. 각국의 중대재해 처벌 사례 비교 및 시사점

〈표 Ⅲ-1〉 조사대상국의 중대재해처벌 법제 비교

대상	분야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법제	산업안전보건 분야 기본법	• 1974년 산업보건안전 법(the Health and Safty at Work Act 1974)	• 근로보호법 (Arbeitsschutzgesetz)	• 직장안전과 보건법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	• 각 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여부	•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	없음	• 2004년 'Westray Bill'을 통한 형법 제 22.1조 등 및 제217.1 조의 신설을 통한 입법	•각 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에 '작업장 과실치사죄' 규 정을 두고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존재하는 경우 산안법과의 관계	• 기본적으로 기업처벌 은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고, 경영자 등 개 인처벌은 산업보건안 전법을 적용	없음	• 직장안전과 보건법 및 형법 제217.1조에 따라 동시에 기소될 수 있으며 또한 개별 법률에 따라 독자적으로도 기소될 수 있다	• 각 주의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으나,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특별법적 관계로 우선 적용됨
법인	처벌의 근거	• 기업과실치사법 제2조 (의무) • 산업보건안전법 제2조, 제3조(의무규정) 및 위 반에 대한 처벌규정으 로서 제33조	• 법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없고, 질서위반 법을 통하여 행정질서 벌(과태료)로 처벌	형법 제22.1조 : 과실 범죄에 대해 기업이 법 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 형법 제22.2조 : 고의 범죄에 대해 기업이 법 적 책임을 지도록 규정 형법 제217.1조 : 타인 의 업무수행방법을 지 시하거나 지시할 권한	• '작업장 과실치사죄'에서 법인을 처벌 대상으로 함

대상	분야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을 갖는 자가 업무로부 터 발생하는 상해를 예 방하기 위한 합리적 조 치를 취해야 한다는 새 로운 법적 의무를 신설	
	처벌규정 적용대상자	• 기업과실치사법 제1조 • 동법의 적용대상인 단체(organisation)은기업뿐만 아니라 정부부처, 이에 준하는 조직이나 경찰,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를 모두포괄	-	• 형법 제217.1조의 '자 (사람)'에는 공공기관, 비정부조직, 법인, 기 업, 민간기업, 자선단 체, 사회, 파트너십, 노 동조합, 지방자치단체 및 특정협회가 포함되 어 기업의 형사책임을 모든 조직으로 확대	• 조직(Organisation)에 적용되고, 이에는 법인, 회 사, 법정기관, 비법인 단체 및 비법인 조합, 정부기관 등이 포함됨
	중대재해 (근로자 사망) 해당시 법정형	• 기업과실치사법: 상한 없는 벌금 • 산업보건안전법: 중대한 법령위반의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선택 또는 병과), 일부 위반은 징역형 없이벌금 (영국은 위반행위처벌을 개별 조문별로하지 않고 별표3으로하고 있음)	_	직장안전과 보건법 : 상한없는 벌금 형법 : 전과기록에 등록, 보호관찰 명령, 상한없는 벌금, 15% 이하의 피해배상금	• 법인에 대하여 벌금형 부과 • 각 주별로 상이하나, 최고 1천8백만 호주달러(빅토리아주), 최저 1천만 호주달러(웨스턴오스트리아) 등으로 규정

대상	분야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주의의무의 근거	• 기업과실치사법 제2조 (의무)에 따른 모든 의무(고용주가 직원 및 기타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 건물 점유자로서 부담하는 의무, 상품 또는 서비스 지는 의무, 상품 또는 서비스 의무, 강급과 관련하여 지는 의무, 건설 또는 이무, 건설 또는 이무, 건설 함께 관련하여 지는 의무, 식물이나 차량 또는 기타물건의 사량 또는 의무, 소 또는 의무, 소 또는 의무, 소 또는 의무, 안전한 지는 의무, 안전한 지는 의무 등이 무근된 환자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자, 안전한 책임을 모든 기업과실치사법 제8조(피고인이보건 및 안전 법교원기사업기 중은 제8조(피고인이보건 및 안전 법교원기사업기 중수하지 않았다면, 그의반이 않았다면, 그의반이 않았다면, 그의반이	_	• 형법 제22.1조(주의의 무) 제22.2조(예방조 치의무) 제217.1조(합 리적인 예방조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 안전의무

대상	분야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 준수하지 않음이 얼마나 많은 사망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증거들이 제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나정책,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조직 내에서수용되는 시스템 또는 관행, 그러한 결과를 조장했는지 여부, 위반혐의와 관련된 모든 보건 및 안전 지침의 내용, 치명적인 사고와 무관한 위반의 증거는 조직내 보건과 안전에대한 바람직하지 않는 태도)			
	법원심리에서의 주된 쟁점	• 대부분의 사건은 기업 의 유죄인정(Guilty Plea)에 의하여 양형판 단에 집중	_	• 대부분의 사건은 양형 판단에 집중	•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위반 여부와 정 도
	양형	• 2015년 개정되어 2016년 2월 1일부터 최종 선고지침을 발표	_	• 벌금형 결정 시 : 형법 제718.21조제15항 • 보호관찰 명령 시 : 형	• 객관적으로 나타난 법익 침해의 중대성, 형벌에 의 한 일반적·개별적 범죄억

대상	분야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한 "건강 및 안전범죄, 기업과실치사 및 식품 안전과 위생위반범죄 양형기준(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guidelines) 지침		법 제732.1조	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주요 양형인자	기업의 유죄인정(감경 요소) 주의의무 위반 정도 안전보건기록 등 산업 보건안전청 지침 준수 여부 산업안전보건청으로부터 주의, 경고 등을 받은 전력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보상 여부 검찰의 기소 이후 재판의 지연 정도(가중 요소) 벌금 부과로 인한 기업의 파산 가능성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기업에 의한 지역경제	_	• 벌금형 결정 시 : ①도 덕적 책임관련 요소(범 죄로 획득한 경제적 이 득의 규모, 범죄의 복잡 성 등), ②공익관련 요 소(조직이나 기업을 계 속 운영하고 고용을 유 지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 형의 영향, 범죄의 수사 및 기소 비용, 범 죄에 대해 조직이나 기 업에 부과되는 형법과 구별되는 모든 규제의 처벌 조항 등), ③재활 의 전망요소(범죄에 대 한 조직이나 기업의 역 할에 대해 관리자와 직	사전유죄인정 여부 법인의 과거 산업안전법 위반 여부 범죄규명을 위한 적극적 인 협조 범행 후 피해자 또는 유족 등에 대한 배려 법인의 안전시스템 개선 여부

대상	분야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및 고용 창출효과(감경 요소)		원에게 부과된 형벌, 과 거의 유죄판결 또는 규 제 위반 등), ④피해회 복관련 요소(조직이나 기업이 피해배상 등 피 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의 정도, 피해과징 금 납부를 피하기 위하 여 조직이 재산을 은닉 하거나 전환하려는 모 든 시도, 추가 범죄행위 의 가능성을 하기 위한 조치 등) • 보호관찰 명령 시 : ① 손해배상, ②후속 위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정책, 표준 및 절차 수 립, ③조직이 유죄 판결 을 받은 범죄, 부과된 선고, 조직이 추가 범죄 를 거기 위해 취한 조치, ④조직에 의한 후속 범 죄를 방지하거나 범죄 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 기 위해 양형법원이 바 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분야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기타 합리적인 조건을 준수하는 것 등	
자연인 (경영 책임자	처벌의 근거	 산업보건안전법 제37 조(경영자 등의 동의 또 는 묵인 하에 행해진 근 로자 사망 처벌) 보통법(Commin Law)상 중과실치사죄 (gross negligence manslaughter) 	형법 제222조(업무상 과실치사죄) 근로자 사망시 형법의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되고, 별도의 가중 처벌 법규 및 규정 없음	• 형법 제22.1조(주의의 무 위반), 제22.2조(고 의로 조치의무 위반), 제217.1조(고의 및 과 실로 합리적인 조치의 무 위반) • 위 의무위반에 따른 결 과로서 형법 제220조 (업무상 과실치사), 제 221조(업무상 과실치 상), 제222조(5)(a)항 (불법행위로 사망에 이 르게 한 형사과실)	•각 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상 '작업장 과실치사죄' 규 정
등)	처벌규정 적용대상자	•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 • 기업의 유죄인정으로 면책되는 경우 있음.	•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비신분범이므로 범행 주체에 제한 없음 • 법인의 기관(이사, 대 표 등)은 형법 제14조 (타인을 위한 행위)를 통하여 행위주체성 인 정	•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비신분범이므로 범행 주체에 제한 없음 • 법인의 기관(이사, 대 표 등)은 형법 제22.1 조, 제22.2조 및 제 217.1조(타인을 위한 행위)를 통하여 행위주 체성 인정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PCBU) 단체의 고위직에 있는 자로 기업의 임원 또는 부서장, 개인으로서 비지니스전체 또는 상당 부분에 영향을 주는 결정을 내리거나 또는 결정에 참여하는사람 등 포함
	중대재해	• 중대한 법령위반의 경	• 5년 이하 자유형 또는	• 무기징역형, 상한없는	•각 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상	분야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근로자 사망) 해당시 법정형	우 벌금 또는 2년 이하 의 징역(선택 또는 병 과), 일부 위반은 징역 형 없이 벌금	벌금형(형법 제222조)	벌금형, 15% 이하의 피해배상금	따라 상이함 • 최대 무기징역(노던준주), 25년(빅토리아주) 또는 20년의 자유형(퀸즈랜드 주 등) •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는 5백만 호주달러의 벌금형 도 규정하고 있음
	주의의무의 근거	산업보건안전법 제37 조 보통법상의 주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위의무 및 민법 등 계약상 주의의무	직장안전과 보건법상 행위의무형법 제22.1조의 주의 의무, 제217.1조의 조 치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 안전의무
	법원심리에서의 주된 쟁점	• 경영자의 인식 또는 가 담 정도 • 경영자의 이사자격 박 탈여부 및 박탈기간	사업주의 조치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 여부 사업주의 조치의무 또는 보호의무와 근로자사망간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주의의무위반관련성(합법적 대체행위)인정에 기초한 과실배제 여부 사업주의 조치의무 위반관련성에 기초한 과실배제 여부	• 일반적으로 벌금형 선고 • 다수 사망자 발생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며예외적 실형선고	• 법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위반 여부와 정도
	양형	일반적으로 벌금형 선고(일수벌금제) 다수 사망자 발생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	일반적으로 벌금형 선고(일수벌금제)다수 사망자 발생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집	• 피해자의 과실	• 객관적으로 나타난 법익 침해의 중대성, 형벌에 의 한 일반적·개별적 범죄억 제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대상	분야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
		행유예가 선고되며 예 외적 실형선고	행유예가 선고되며 예 외적 실형선고	• 피고인의 자백	고려 • 작업장과실치사죄로 개인 이 의율된 사례는 두 건으로, 첫 번째 사례에서는 최소 18개월 복역을 조건으로 하는 5년의 실형, 두 번째 사례에서는 10개월의자유형에 20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음
	주요 양형인자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 피해자 과실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발생결과의 중대성 피고인의 전과 유무 당해 사건의 형사절차의 장기화 피고인의 자백 	•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 피해자 과실 등	사전유죄인정 여부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범죄규명을 위한 적극적 인 협조 범행 후 피해자 또는 유족 등에 대한 배려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 환경 등

3.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각 국가별 평가

1) 영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사례 자체가 매우 적은 편이고, 그 형량 역시 상한없는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무색하리만큼 낮은 편이다. 이러한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면, 우선 기업 기소로 인한 경영진 개인의 면책이 다수 사례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대형사건에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드믈고 중소 또는 영세기업의 근로자 1-2인의 사망사고를 처벌하는 판결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특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 기소로 인한 경영진 개인의 면책이 다수 사례에서 인정된다는 점이다. 기업과실치사법 제18조의 "No Individual Liability"를 통해 고위 경영자와 이사에게 보장된 면제규정을 둠으로써 기업을 처벌할 경우 책임있는 개인이사 또는 경영자의 처벌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자는 대체로 최초에는 중과실치사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으나, 기업이익을 위해 유죄인정을 함으로써(a guilty plea on behalf of the company) 실제로 재판 전에 기소가 철회되고 있다. 나아가 보통법상의 중과실치사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인과관계 판단이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 기소 자체가 매우 적은 편이다.

둘째, 동법은 대형 산재나 다수인명피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함을 제정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들은 매우 소규모이거나 중소기업에서의 단일 사망사건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한편으로 2017년 발생한 Grenfell Tower사건과 같이 다중사망의 대형사고가 2022년 현재까지도 기소되지 못한다는 점은 매우 상반된 결과이다.

셋째, 적용사례 자체가 매우 적다. 영국은 전세계적으로 산업재해규모가 인구비례 매우 적은 편이며 특히 사망사고 자체가 연간 평균 150건을 넘지 않지만, 기소는 더욱 적은 편이어서 평균 연간 5건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현재까지 적용된 건수나 처벌의 양만 본다면 실패에 가깝다고 평

가된다. 기업과실치사법은 위험형법과 유사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면책 특권을 거의 훼손하지 못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현저히 낮은 벌금액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기업과실치사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액을 '상한 없는 벌금'이라고 하였으나, 순이익이나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하지 않는 현저하게 적은 벌금액이 부과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응보나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다. 즉, 상한 없는 벌금의 의미를 최초의 사건처럼 기업과실치사로 인하여 범죄를 범한 기업이 파산할 정도에 이르는 정도라고 해석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한 정도이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양형, 형사재판절차, 사법부와 관련된 공식통계는 법무부에 의해서 관리되지만, 검찰의 경우 CPS관리 하에 IT시스템 및 수기 기록을 통해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각 기소된 사건들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범죄들에 관하여 기업은 기업과실 치사법, 기업과 개인은 모두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 및 작업장 보건 및 안전 규정 등 관련 규칙, 보통법상의 중과실치사죄가 검찰이 제출한 정식 공소장의 기재 위반범죄가 될 수 있다.

다음은 기본적으로 기업과실치사죄로 기소된 기업들에 대한 정보로서, 해당 기업이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혐의와 관련하여 부과된 벌금 총계를 나타내는 표이다. ²³⁾ 동 표에서는 기업과실치사죄 이외의 범죄로서 H&S는 산업보건 안전법을, GNM은 보통법(commin law)상의 중과실치사죄를 의미한다.

²³⁾ 검찰청, 앞의 보고서, 3-4면 및 2021년 판결을 추가한 것이다. https://www.cps.gov.uk/sites/default/files/documents/publications/2020-foi-disclosure-13.pdf

기업 이름	기업 H&S 기소 여부	개인 경영진 H&S 및 GNM 기소 여부	판결내용 및 판결 년도	총 벌금 액수 (소송비용 제외) (환산:2022년 기준)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Υ	GNM and H&S.	유죄(Guilty)-2011	£385,000 (약 6억 1490만원)
Lion Steel Equipment Ltd	N	GNM and H&S.	유죄인정(Guilty Plea)- 2012	£480,000 (약 7억 7461만원)
Princes Sporting Club Ltd	Υ	H&S	유죄인정(Guilty Plea)- 2013	£134,579.79 (약 2억 1494만원)
Mobile Sweepers (Reading) Ltd	Υ	GNM and H&S.	유죄인정(Guilty Plea)- 2014	£183,000 (약 2억 9227만원)
PS & JE Ward	Υ		무죄(Not Guilty)- 2014	
MNS Mining Ltd (Fyfields)	N	GNM	무죄- 2014	
Sterecycle (Rotheram) Ltd	N	H&S	유죄- 2014	£500,000 (약 7억 9857만원)
Cavendish Masonry Ltd	Υ		유죄- 2014	£150,000 (약 2억 3957만원)
Peter Mawson Ltd	Υ	GNM and H&S	유죄인정(Guilty Plea) - 2015	£220,000 (약 3억 5137만원)
Pyranha Mouldings	Υ	H&S	유죄 - 2015	£200,000 (약 3억 1942만원)
Huntley Mount Engineering Ltd	Υ	GNM	유죄인정(Guilty Plea) - 2015	£150,000 (약 2억 3957만원)
CAV Aerospace Ltd	Υ		유죄 - 2015	£600,000 (약 9억 5828만원)
Linley Developments Ltd	Υ	GNM and H&S	유죄인정(Guilty Plea) - 2015	£200,000 (약 3억 1942만원)
Kings Scaffolding Ltd	N		유죄 - 2015	£300,000 (약 4억 7914만원)
Baldwin's Crane Hire Ltd	Υ		유죄 - 2015	£700,000 (약 11억 8000만원)
Cheshire Gate and Automation Ltd	N	GNM	유죄인정(Guilty Plea) - 2015	£50,000 (약 7985만원)

기업 이름	기업 H&S 기소 여부	개인 경영진 H&S 및 GNM 기소 여부	판결내용 및 판결 년도	총 벌금 액수 (소송비용 제외) (환산:2022년 기준)
Maidstone and Tunbridge Wells NHS Trust	N	GNM	판사가 무죄선고 - 2016	
Sherwood Rise	Υ	GNM and H&S	유죄 - 2016	£300,000 (약 4억 7914만원)
Bilston Skips Ltd	N	GNM and H&S	유죄인정(Guilty Plea) - 2016	600,000 (약 9억 5828만원)
Monavan Construction Ltd	Υ	H&S	유죄인정(Guilty Plea) - 2016	£550,120 (약 8억 7862만원)
Ozdil Investments	Υ	H&S	유죄 - 2017	Ozdil £660,000 (약 10억 5411만원) Koseoglu £400,000 (약 6억 3885만원)
SR and RJ Brown	Υ	GNM and H&S	유죄 - 2017	£300,000 (약 4억 7914만원)
JTF Wholesale	Υ	H&S	유죄인정(Guilty Plea) - 2017	£1,000,000 (약 15억 9714만원)
Master Construction Products Ltd	Υ	H&S	유죄인정(Guilty Plea) - 2017	£225,000 (약 3억 5935만원)
Martinisation Ltd	Υ	H&S	유죄 - 2017	£1,200,000 (약 19억 1657만원)
Roofing Consultants Ltd	Υ	H&S	무죄 - 2020	H&S 위반으로 인한 벌금 £100,000 (약 1억 5971만원)
Ace Waste Haulage Ltd	Υ	H&S	무죄 - 2020	H&S위반으로 인한 벌금 £240,000 (약 3억 8331만원)
Wood Limited Treatment	Υ	GNM and H&S	무죄(항소심) - 2021	
W H Malcolm Limited	Υ	GNM and H&S	유죄 - 2021	£6,500,000 (약 103억 8143만원)

또한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이로 인한 기업의 도산과 근로자의 직업상실을 벌금액 산정에 상당한 수준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다.

사망사건이라 하더라도 인명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아니라는 점은, 동일한 인명사고라 하더라도 벌금액이 다르며, 해당 벌금액 산정시에 기업규모와 재정상태가 핵심요소였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독일

독일의 중대재해 관련 하급심 판례를 검토해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산업안 전보건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과실로 인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그 형사 책임의 소재가 기업의 대리권을 가진 기관(예: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의 과정에서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관철한 기관(예: 공동경영책임자 등)에게도 있다. 그리고 근로자 사망사건에서 형사책임의 요건으로서 과실, 즉 예견가능성과 관련하여 법원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규정들을 위반한 것만으로 예견가능성의 정황적 의미를 가진다고 판사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견습생이나 훈련생 등으로 하여금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분야에 일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예견가능했음을 인정하였다.

둘째, 근로자 사망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주로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을 무죄변론의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독일 법원은 행위자의행위가 없었더라면 구체적인 형상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인과관계에서 전통적인 조건설을 취하고 있다.특히 법원은 인과관계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은 항상 구체적인 결과(konkreter Erfolg)와 실제 사건(wirkliche Geschehen)간에 인과적 연결

고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위반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만약 안전설비가 설치되어 있었더라도 피해자의 의도적 행위로동일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히려 당해사고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사망의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대상이 되므로 합법적 대체행위를 이유로 의무위반관련성이 부정된다고 봐서는 안된다.

셋째, 양형에 관하여 독일 법원은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임에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 자유형을 선 고하는 예도 있지만 피고인에게 자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중대재해 사건에서 독일 법원의 비교적 관대한 양형의 배경은 독일의 경우 형사사건 선고형의 전체적인 경향이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에 더하여 중 대재해사건에 적용되는 죄명도 우리나라와는 달리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과실치사죄(제222조)로 의율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캐나다

2004년 캐나다의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Westray Bill' 제정 이후 10여년 간 검사가 기소한 사건은 5개의 기업과 12명의 개인을 대상으로 한 10건 정도에 불과하다. 2020년 Norm Keith 및 안드레아 퍼트의 분석에 따르면 'Westray Bill'에 근거한 검사의 기소가 적었던 이유를 다음과 같은 4가 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경찰과 검찰 내부에 중대재해기업처벌을 위한 전문적인 수사팀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캐나다경찰과 검찰이 'Westray Bill'의 존재 여부를 잘모르고 있으며 기업 내 상위 책임자와 의사결정과정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 수사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수사능력을 구비한 경찰이나 검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보건과 안전 감독관, 경찰, 연방정부 검사 간의 협력체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경찰, 연방검찰, 주의 안전보건 감독관들은 산재 사망과 중대재해의 후과와 형사처벌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즉 산재 사망과 중대재해는 주의 규제에 관한 문제이지 형법적 제재의 영역이 아니라는 믿음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셋째,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이다. 즉 경찰이 송치해도 검사 측이 중대재해 기업처벌을 규정한 'Westray Bill'의 규정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산업안 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HSA)'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Westray Bill'의 적용에 대한 캐나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 즉 정부와 사용자들은 심각한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과실범죄를 기업이 책임지게 만드는 방법과 바램을 약화시키는 방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캐나다의 경우에는 형법의 일부로서 중대재해처벌규정을 포섭하고 있지만, 영국과 마찬가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 이고 있다.

4) 호주

각 주의 작업장과실치사죄의 구성요건은 대동소이하다. 먼저 작업장과실치사죄에 따라 단체(Organisation)나 자영업자(self-employed person), 고위임원 등이 처벌될 수 있다. 각 주의 법문은 이를 사업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PCBU)로 규정하고 있다. 즉 작업장 과실치사죄는 일정한 신분을 갖는신분범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행위주체의 의무위반이 전제되고, 이는 주로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의무가 문제된다. 또한 안전보건 등에 관한 의무담지자는 과실행위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켜야 한다. 나아가 단체 또는 개인의 과실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해당 과실행위가 사망의 결과의 유일한 원인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시적인

수준에서 사망의 원인이라고 인정되면 족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호주는 최근 각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작업장 과실치 사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소수의 주를 제외하고 입법을 완료하였다. 그러 나 작업장 과실치사죄 외에 종전 산업현장에서 중대한 과실로 노동자가 사망 하는 경우 적용될 있는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어 적용상 순위가 문제될 수 있 다. 먼저 호주의 각주에서 작업장 과실치죄의 도입 전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보건·안전의무위반죄이다. 동죄의 카테고리 1에서는 중과실로 사망 및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카테고리 2에는 사망, 상해 및 질병의 위험을 야기한 경우 적용된다. 작업장 과실치사죄의 경우 위의 규정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갖고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법인에 대하여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적용되는 경우, 개인에 대하여는 보건·안전의무 준수 위반죄 중 카테고리 1 또는 카테고리 2의 죄가 적용된다고 한다. 예컨대 소개된 호주 제2번 사례 '자동차 재활용 사업장 지게차 충돌 사망사건(2020)' 의 경우 회사는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자연인인 이사 2명에 대하여는 보건·안 전의무위반죄 중 카테고리 1이 적용되었다. 다만 기소될 수 있는 법인이 없거 나, 자연인이 법인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개인에 대하여 작업장 과 실치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소개된 호주 제1번 사례 '지게차 하 역 사망사건(2022)'에서 볼 수 있다. 동사건에서 사업주인 개인이 작업장 과 실치사죄로 기소되어 최소 18개월 복역을 조건으로 하는 5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호주의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최근 도입되어 동 규정이 적용된 판례는 아직 많지 않다. 근로자 사망이라는 중대재해 발생 자체는 상당한 수에 이르지만,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확정판결이 난 사례는 2건에 불과하다. 향후 작업장 과실치사죄에 관한 호주의 판결례를 추적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호주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의무 위반이 문제되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이 '작업장에 특유한 위험 평가(SSRA)'를 적절히 실행하였는지,

또한 각 회사의 '안전작업방법설명서(SWMS)'를 준수하였는지도 의무위반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다.

호주 사례에서 의무위반행위와 사망자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쟁점이 된사례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소개된 사례에서 법원이 인관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자세한 견해를 밝힌 사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작업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사건의 발생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은 존재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영미법계 국가에서 사전유죄인정이 있는 경우 구성요건충족 여부가 인정되고, 쟁점화 되지 않는 것이 이유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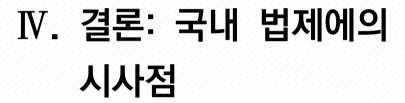
호주 법원은 형벌을 양정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나타난 법익침해의 중대성, 형벌에 의한 일반적·개별적 범죄억제기능, 범죄자의 전력, 양심의 가책 및 기 타 개인적 사정 등 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특히 벌금액의 산정에 있어 선고될 벌금의 책임 상응성 및 범죄억제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벌금 납부를 위한 피고인의 자력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책임에 상응하고, 범죄억제기능이 발휘될 수 있는 액수가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산상태가 벌금형을 이행하기에 충분치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점이 적절한 벌금형을 선고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의 고려요소로 범죄자의 전력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많은 사례에서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대한 설시가 있었고, 해당 범죄 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이 피고인의 양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죄 후 유족 등에 대한 배려 등도 양정에 있어서 참작사항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다. 나아가 범죄규명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역시 양정의 고려요소로 참작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양정에 있어 사전 유죄인정을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개된 거의 모든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사전 유죄인정 절차에 따라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각각의 사건의 성질에 따라 25% 또는 40%의 감경이 이루어졌다. 소개된 사건 중 유일하게 무죄주장을 한 1번 사례(지게차 하역사건, 2022)에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은 주목할만하다.

호주 법원은 중대재해 관련 사건에서 비교적 엄격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개인에 대하여 최소 18개월 복역을 조건으로 하는 5년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고, 10개월의 자유형에 20개월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 있다. 법인에 대하여는 노동자 사망사건에서 소기업의 존재자체를 위협할 수 있던 상황에서 약 26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작업장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에 대하여 10억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



Ⅳ. 결론: 국내 법제에의 시사점

1. 개관

본 연구에서는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중대재해 처벌 법제와 이를 적용한 실제 판결의 태도들을 살펴보았다. 독일과 같은 대륙법계 국가와 영국을 비롯한 영미법계 국가는 기본적인 법제 및 기업에 대한 범죄능 력 인정여부가 상반됨으로 인하여, 기업처벌의 방식이나 태도 역시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07년 기업과실치사법을 제정하면서 기업의 범죄주체성을 정면으로 인정하고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규제하기 위한 영국의 움직임은 다른 국가들에 부여하는 시사점도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국가의 실제 판결을 살펴보면 중대재해 처벌에 있어서 현실적인 장애요소로 인하여 그효과가 긍정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영역의 입법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도 담고 있다. 오로지 중형주의화의 측면에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한 기업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외에 보다 중한 처벌법을 제정한 것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윤리의식을 고취한다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못할 우려가 있다. 반면, 형벌목적을 응보와 예방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형법이론에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근로자 사망이라는 행위결과에 대한 응보 뿐만 아니라, 적극적 일반예방의 측면에서 기업의 규범준수의식을 고취하고 사망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한 고도의 주의조치를 사전에 취하도록 계도하는 작용을 목적으로 한다고 해석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이나 적용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기에서는 결론을 대신하여 우선 영국의 경우 중대재해처벌을 위하여 제정·시행하여 온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에 관한 영국내에서의 평가를 살펴보고 해당 법시행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보고자 한다. 그리고 외국의 중대재해처벌 사례의 분석이 우리 법제,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부여할 수 있는 함의 또는 시사점을 검토하는 것으로 마치고자 한다.

2. 영국 내의 기업과실치사법에 대한 평가

1) 주요 사건의 기업과실치사법 적용 결과

다음은 주요 사건의 기업과실치사법 적용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연번. 연도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1. 2011년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사건	근로자가 토양 샘플을 채취하기 위하여 시험광구에 혼자 들어갔다가 추락하여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385,000 파운드 벌금을 10년간 38,500 파운드 분할 납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위반죄의 기소는 배심원들의 혼동을 우려하여 공소취소)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 및 산업보건안전법 제37조 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말기암으로 인하여 소송중지	2007년 기업과실치 사법 최초 적용 사례
2. 2012년	JMW Farms Limited 사건	근로자가 지게차 금속통 내부를 세척하다가 추락하고, 그 위로 쓰레기통이 떨어져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피고회사의 유죄인정(guilty plea)으로 벌금액 25% 감액 187,500파운드 벌금을 6개월 유예납부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로 기소되었으나 회사의 유죄인정에 의하여 재판전 기각	두 번째 적용 하급심 사례
3. 2021년	Lion Steel Equipment Ltd 사건	근로자가 산업시설 지붕에 올라갔다가 13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산업보건안전법 제2조 위반죄 2005년 작업장 고도규정((the Work at Height Regulation	산업보건안전법 제37조 위반죄, 보통법상 중과실치사죄로 기소, 이사 1명은 산업보건안전법	

연번. 연도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2005) 위반죄 산업보건안전법 제33조 위반죄 3년간 480,000 파운드 벌금 납부	위반죄와 중과실치사죄 무죄, 다른 한명은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 기소 부분은 법인과실치사죄 유죄인정 조건 취하	
4. 2013년	J Murray & Son Ltd 사건	근로자가 동물사료 혼합 공장의 혼합기에 빨려들어가서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유죄인정(guilty plea)벌금액 1/3 감액하여 5년간 20,000파운드씩 총 100,000 파운드 벌금	이사의 중과실치사죄 기소는 회사의 유죄인정으로 취하	
5. 2013년	Prince's Sporting Limited 사건	프린스 스포츠 클럽에서 학생이 바나나보트를 타다가 넘어져서 견인하던 보트에 치여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유죄인정(guilty plea) 134,579.69 파운드 벌금		기업 전체 자산 가치에 해당하는 벌금액 부과. 기업은 판결전에 폐쇄됨. 예방효과를 위해 공표명령 부과
6. 2014년	Mobile Sweepers (Reading) Ltd 사건	근로자가 도로 청소 트럭 아래에서 수리작업을 하다가 깔려서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8,000 파운드 벌금	산업보건안전법 제2조 위반죄, 183,000 파운드의 벌금을 12개월이내 납부. 5년간 이사자격 박탈	공표명령 부과
7. 2014년	PS & JE Ward Ltd 사건	근로자가 견인하던 금속 유압식 리프트 트레일러가 가공 전력선에 닿아 감전되어 사망	무죄		첫 번째 무죄판결 사례

연번. 연도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8. 2014년	MNS Mining Limited 사건	광산이 폭발하여 650,000갤런의 물이 범람한 결과 드리프트 광산에 갇혀 4명의 근로자가 사망	무죄		다수 근로자 사망사례
9. 2015년	CAV Aerospace Ltd 사건	케임브리지 공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배달된 금속더미가 위로 쓰러지면서 밑에 깔려서 사망	모회사가 기업과실치사죄로 인한 벌금 600,000 파운드,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로 인한 벌금 400,000 파운드 납부		자회사 부지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모회사를 처벌한 사례
10. 2016년	Monavon Construction Ltd 사건	아파트 건설과 관련된 부지의 보수공사 중 금속난간이 고정되지 않아서 다툼을 하던 두 명의 근로자가 무너진 임시울타리로 인해 추락하여 사망	추락한 두명에 대한 두 건의 기업과실치사죄 및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 기업과실치사죄 각 25만 파운드씩 50만 파운드, 산업보건안전법위반죄 50,000파운드		2015년 개정되어 2016년 2월 시행된 양형기준이 최초 적용된 사례. 공표명령이 부과된 사례
11. 2017년	Koseoglu Metal works Ltd 사건	창고 지붕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추락방지 그물망 등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 Ozdil Investments는 해당 건물 소유주,	Ozdil Investments는 기업 과실 치사 범죄로 500,000 파운드, HSWA 위반에 대해 160,000 파운드의 벌금. Koseoglu Metal Work는 기업 과실치사죄 300,000 파운드, HSWA 위반으로 100,000 파운드의 벌금	Ozdil Investments Limited의 이사 Firat Ozdil는 12개월의 징역형, Ozgur Ozdil은 10개월의 징역형, Koseoglu Metal Work의 단독 이사 Kadir	하나의 사건으로 두 기업이 처벌된 사례

연번. 연도	사례	사실관계	법인처벌	개인(경영진 등) 처벌	비고
		Koseoglu Metal Work는 건물수리업체		Kose는 8개월의 징역형. 3명 모두 10년간 회사의 이사 자격 박탈	
12. 2017년	Grenfell Tower 화재사건	런던 시내 사회주택인 Grenfell Tower가 전소하여 72명 사망			5년이 된 2022년에도 형사기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례
13. 2021년	Wood Limited Treatment 사례	목재분쇄를 하는 작업장에서 화재폭발로 인하여 4명의 근로자가 사망		최고 경영진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8개월, 벌금 12,000 파운드를 선고 받았고 4년간 회사의 이사직 금지	항소심 무죄판결 사례
14. 2021년	W H Malcolm Limited 사건	국제철도 화물터미 널 운영업체인 피 고회사에 11살 소 년이 축구공을 회 수하기 위하여 접 근하였다가 머리 위 케이블 전기충 격으로 사망	기업과실치사죄 산업보건안전법 제3조제1항 위반죄 6,500,000 파운드 벌금 및 120 파운드 피해자 과징금(surcharge)		기업과실치 사법 적용으로 가장 고액의 벌금을 판결한 사례

2) 기업과실치사법 적용 이후 사회적 비판

이하의 내용은 2007년 기업 과실치사 및 기업살해죄(CMCHAct)에 따라 11번째 유죄판결에 이어 선고가 내려졌던 R. v Pyranha Mouldings Ltd Unreported January 12, 2015 (Crown Ct (Liverpool))에 대한 평론의 일부이다.1) 동 평론에서는 기업 살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동법이 제18조 "기업책임없음(No Individual Liability)"를 통해 고위 관리자와

¹⁾ Steve Tombs, "Corporate Killing With Impunity", International Centre for Comparative Criminological Research, The Open University, 2015 내용을 참조한 것이다.

이사에게 보장된 면제 규정을 둠으로써, 노동현장에서의 사망에 대한 기업의 면책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데 실패하였다고 평가한다. 해당 면제규정은 실제로 입법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던 기업의 동법 제정 반대를 잠잠 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함이 일반적이다.

또한 기업과실치사법의 한가지 효과로서 기업 책임을 추구하기 위해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포기하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실제로 2011년부터 기업과실치사법이 적용된 4건의 유죄판결 중에서 3건은 기업 과실치사 기소를 위한 결정이 중과실치사죄에 해당하는 개인 이사들에 대한 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그 근거라고 한다.

따라서 일부 법률 평론가들은 이미 기업 과실치사 혐의 인정에 대한 '미끼'로 개인 이사들에 대한 고발 위협을 새로운 추세로 언급하였고, 검찰이 개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가로 유죄를 인정하겠다는 회사로부터의 제의는, 교도소 수감의 위험에 직면한 이사들에게 더 매력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거론한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유죄 판결에 대한 추가 조사는 법의 두 가지 주요 결함을 드러낸다고 본다. 첫째,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기소된 모든 기업들은 과실치사라는 보통법에 따라 성공적으로 기소될 수 있었던 중소기업들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업과실치사법이 표면적으로 설계된, 거대하고 복잡한 기업들은 지금까지 그 범위를 벗어났다. 지금까지 확보된 모든 유죄 판결은 단일 사망자를 포함한 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기업과실치사법의 이면에 있는 주요 의도는 여러 개의 사망 사건을 비롯한 대형 사고를 포괄하는 것이었다.

둘째, 판결선고 당시 부과된 벌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CMCHA법의 통과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법에 따른 성공적인 기소에 따른 적절한 처벌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결정적 지침을 2016년에 발표하였다. 동 지침은 벌금이회사 이직률의 백분율 범위 내에서 계산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2007] 지침초안에서 '매우 중요한 후퇴'로 표시되었다. 확정된 지침은 벌금 수준을 정하는

주요 근거는 '범죄의 심각성'과 이에 기여하는 요소들과 함께 매출액과의 연관성을 제거하였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벌금은 '피고인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고 징벌적'이어야 하며, 따라서 '적절한 벌금은 대부분 50만 파운드 이하로 되지 않으며 수백만 파운드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Sterecycle [Rotherham] Ltd 사건에서는 재판 시작 시점에 실제 관리 중인회사에 50만 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 법에 따른 현행 양형 관행의 빈곤에 대한 인식은 현재 검토 중인 새로운 일련의 지침 초안을 촉발시켰는데,이 지침 초안은 비록 제안이 아직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더 큰 규모의회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벌금과 이직률 사이에 더 명확한 연관성이 있다고 제안되었다.

영국에서는 매년 최대 5만 명의 노동자들이 치명적인 부상과 업무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데, 이 중 상당수는 고용주들에 의한 법적 위반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 이 연간 총계는 영국에서 기록된 거의 모든 자연사 아닌 다른조기 사망 원인과 비교했을 때 높은 순위를 차지하며, 영국 3개 관할권에서가장 최근에 기록된 600건이 조금 넘는 '관습적'살인 사건 수치들을 적게 보이게 할만 하다. 이러한 점에서 CMCHA법에 따른 유죄판결의 비율은 수사와기소면에서 극적인 실패처럼 보인다고 평가된다. CMCHA법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하는 기업들에게 책임을 부과하려는 상징적 시도로서, 그러나 이는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함으로써 기업들이 누리는면책특권을 거의 훼손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3) 사회적 비판의 핵심

요약컨대,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사례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점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1) 기업 기소로 인한 경영진 개인의 면책

동법이 제18조에 "개인책임없음(No Individual Liability)를 통해 고위 관리자와 이사에게 보장된 면제규정을 둠으로써 기업을 처벌할 경우 책임있는 개인이사 또는 경영자의 처벌이 현실적으로 더욱 어려워졌다. 경영자는 대체로 최초에는 중과실치사가 인정되어 기소되었으나, 기업이익을 위해 유죄인정을 함으로써(a guilty plea on behalf of the company) 실제로 재판 전에 기소가 철회되고 있다.

즉, 기업과실치사법이 적용된 사례에서 거의 대부분 동법을 적용한 기업의 기소와 산업보건안전법 제37조 위반을 적용한 이사의 기소가 처음에는 동시에 시작되었지만, 기업의 유죄인정(company's guilty plea)에 비추어 개인인 이사의 기소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기업 기소가 오히려책임있는 개인(이사)의 면책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2) 대형 사건에의 적용상 문제점

동법이 대형 산재나 다수인명피해 사건에 대처하기 위함을 제정목적으로 하였으나 실제로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들은 매우 소규모이거나 중소기업에서 의 단일 사망사건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Grenfell Tower사건과 같이 다중사망의 대형 사고에 대하여 기업 과실치사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다 못해서 5년 여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기소를 하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1인 사망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적은 건수이지만 기소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비교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저조한 적용 사례

동법이 현재까지 적용된 건수나 처벌의 양만 본다면 실패에 가깝다고 평가된다. 기업과실치사법은 위험형법과 유사하게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기업이윤을 우선시하는 기업들이 누리고 있는 면책특권을 거의 훼손하지 못한다고 본다.

다음은 검찰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동법이 도입된 이후 2008년부터 2019년 까지 기소건수이다.²⁾

년도	건수	년도	건수
2008	0	2014	6
2009	1	2015	5
2010	0	2016	5
2011	1	2017	1
2012	1	2018	2
2013	5	2019	0

(4) 현저히 낮은 벌금액

동법은 기업에 대한 벌금액을 '상한 없는 벌금'이라고 하였으나, 순이익이나 매출액 또는 당기순이익에 비례하지 않는 현저하게 적은 벌금액이 부과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응보나 위하력을 가지기 어렵다. 즉, 상한 없는 벌금의의미를 최초의 사건처럼 기업과실치사로 인하여 범죄를 범한 기업이 파산할정도에 이르는 정도라고 해석하지만, 실제 부과되는 벌금액은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거의 불가능한 정도이다.

다만 W H Malcolm Limited 사건에서 65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한 것이외에는 매출액에 현저히 미달되는 벌금액이 부과되었으며, Malcolm

²⁾ CPS,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Request, Figures regarding prosecutions of Corporate Manslaughter since Feb 2019, 2020/3/5, 2면.

Limited 사건 또한 벌금액 자체는 규모가 크지만 실 매출액이 2억 파운드 이 상임을 고려할 때 전체 매출액의 3%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상한 없는 벌금의 의미가 무색해 진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 이후 양형, 형사재판 절차, 사법부와 관련된 공식통계는 법무부에 의해서 관리되지만, 검찰의 경우 CPS관리 하에 IT시스템 및수기 기록을 통해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우선 기업과실치사법의에 따른 기업처벌과 개인 경영진에 의한 보통법상의중과실치사죄 및 기업과 경영진의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 위반죄가 동시에기소될 수 있다.

(5) 법원의 양형재량에 관한 평가

어떠한 기업이든 벌금의 가장 중대한 결과는 파산일 것이다. 2015년 양형 기준에서는 사업의 중단이 "허용되는 결과(acceptable consequence)"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법원은 벌금 납부 시간의 유예를 허용하거나 분할 납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한 최초의 사례3에서 법원은 "회사가 청산되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판단에 따르면 이는 심각한 의무위반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일(the fact that the company would be put into liquidation would be unfortunate, but in [their] judgment, this was unavoidable and inevitable given the serious breach of duty committed)" 이라고 판결하였다.

실제로 법원이 기업과실치사죄를 유죄로 판결할 때에는 이미 의무위반을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만, 그와 같은 파산에 이르게 하는 벌금액을 부과할 것인가는 아무 죄 없는 노동자들의 잠재적인 피해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따라서 몇 년간의 벌금 납부를 선고하는 이유가 된다.

³⁾ R. v Cotswold Geotechnical Holdings Ltd [2011] EWCA Crim 1337; [2012] 1 Cr. App. R. (S.) 26

양형재량과 관련하여 벌금의 분할납부는 다수의 판결에서 회사의 청산(폐업) 여부를 고려하여 판결되어 왔다. 예컨대, 2013년의 Murray &son Ltd 사건4)에서도 Weir 판사는 "제출된 계정과 공인회계사의 증거 모두 회사가 번창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과 주로 이와 같은 농촌 지역에서 고용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기준에 따르면 모든 벌금은 징벌적이어야 하고 회사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해야 한다"5)고 판시하였다. 이 때문에 징벌적인 벌금액을 부과하되, 분할납부를 통해 회사의 폐업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동 판결에서도 매년 2만 파운드의 벌금을 5년간 분할납부할 것을 선고하였다. 분할납부의 선고시 회사 직원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는 사유는 장래 죄 없는 직원의 해고될 가능성을 벌금 산정에 고려한 것이다.

이처럼,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법에 의한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면서도 이로 인한 기업의 도산과 근로자의 직업상실을 벌금액 산정에 상당한 수준으로 고려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망사건이라 하더라도 인명을 금전적 가치로 평가하려는 시도는 아니라는 점은, 동일한 인명사고라 하더라도 벌금액이 다르며, 해당 벌금액 산정시에 기업규모와 재정상태가 핵심요소였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을 기소하는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었던 보통법상 기업과실치사죄가 약 15,000 파운드에서 90,0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기업과실치사법 하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벌금액이 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⁴⁾ R. v J Murray & Son Ltd [2013] NICC 15.

^{5) &}quot;careful account of the fact that the accounts presented and the evidence of the Chartered Accountant both indicate that the company is not flourishing and I have no wish to see it forced out of business, principally because it is providing employment in a rural area in these difficult times. Nonetheless the guidelines require that any fine must be punitive and sufficient to have an impact on the company"

3. 국내 법제에의 시사점

1) 기업 처벌과 개인 처벌의 분리 문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경우에는 사업현장의 근로자 사망사고 자체가 연간 150건을 넘지 않는다.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적은 수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기업과실치사 사고에 대하여 실제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여 기소하는 사례는 연간 평균 5건도 채 되지 않는다. 나아가 해당 기소 사례들도 일반인이 예상하는 중대재해 또는 다수 사망사고가 아니라 1~2명 근로자의 주의의무위반에 의한 사망사고가 대부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 사망사고 중 단 5%도 안되는 기소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우선 상한 없는 벌금이라는 중한 처벌의 부담이 오히려 기업과실치사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기존의 산업보건안전법의 기소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기업 자체에 대한 처벌과 기업의 고위 임원에 대한 처벌을 분리하는 입법방식과 유죄인정(Guilty Plea)라는 영미법상 전형적인 유죄협상제도로 인하여 기업의 처벌로 개인의 처벌이 면책되거나 기소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영미법상 유죄인정(Guilty Plea)은 영국, 호주 등에서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에도 적용되는 바, 기업의 임원이 기업의 정신(Mind)으로서 기업범죄가 유죄임을 인정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처벌이 감형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개인인 임원의 기소를 철회하거나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이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전체 사건 중에서 회사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이사가 과실치사로 유죄판결을 받는 건수는 1/10 미만에 해당하였다.

반면 우리나라 법제는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양벌규정을 통해서만 기업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목적은 기업이 아닌 기본적으로 기업의 임원이 되고, 임원의 처벌을 근거로 하여 양벌

규정에 의한 기업처벌을 하는 방식이 되므로 영미법상 기업과실치사법과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기업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외국 법제 또는 판결내용의 차용에 있어서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 결과 기업 자체의 책임과 기업윤리를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임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인과성 판단과 결과 귀속의 문제

영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법 제1조에 따라 기업은 활동이 관리 또는 조직되는 방식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조직이 사망자에 대하여 책임져야하는 관련 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어야 한다. 이는 호주나 독일 역시마찬가지여서, 주의의무위반과 사망의 결과사이에 인과성을 요구하고 있다. 즉, 기업과실치사법 역시 근로자 사망의 결과와 관련 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사이의 인과관계가 판명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관리 또는 조직되는 방식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중대한 위반 여부에 대한 고려사항을 법률에 제시함으로 인하여, 반대로 그와 같은 고려사항들이 준수되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그 자체가 인과성 판단을 부정하는 사유로 작용할 우려가 있게 된다.

동법 제8조는 배심원들이 이를 판단함에 기준이 되는 인자로서, 피고인이 보건 및 안전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만일 준수하지 않았다면, 그 위반이 얼마나 심각한지의 정도, 준수하지 않음이 얼마나 많은 사망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지 여부, 증거들이 제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나 정책, 조직이 보 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조직 내에서 수용되는 시스템 또는 관행, 그와 같 은 시스템이나 관행이 사망의 결과를 조장하였는지 여부, 위반혐의와 관련된 모든 보건 및 안전 지침의 내용의 존재 등을 제시하고, 이를 검토할 것을 요 청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기업이 그와 같은 보건 안전지침을 가지고 있고, 그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왔고, 관련 법률에서 제시하는 의무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면 기업과실치사법이 요구하는 결과와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기소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한다.

기업과실치사법 제정 이전에는 위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974년 산업보건안전법(the Health and Safty at Work Act 1974)에 의하거나 보통법(Common law)이 적용되었는바, 산업보건안전법은 제2조 내지 제4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위반시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와같은 개인에게 제33조에 의하여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법인의 규정상 의무의 위반이 이사나 경영자 등의 동의나 묵인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동법 제37조에 의하여 해당 이사나 경영자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즉, 인과성 입증의 어려움이 오히려 기업과실치사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요 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우리 법제의 적용에 있어서 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에 요구하는 의 무규정이 많아지고, 이에 대한 의무이행이 결과발생의 귀속을 부정하는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와 같은 의무이행은 그 자체로 중대재 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과거 안전의식의 미비가 초래한 대형 참사들을 고려한다면, 중대재해처벌 법이 예방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무규정을 정치하게 정비하고 기업의 준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목적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회피 또는 인과성 판 단의 부정적 요인으로서 해당 의무규정들이 작용할 것이지 여부는 매우 정치 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상징형법과 안전형법으로서의 중대재해처벌법

현대사회에서 안전에 대한 욕구는 사전적 안전장치의 요구와 함께 국가의 강한 개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제기된 위험형법의 논의들은 이제는 더 나아가 안전을 화두에 두고, 위험과 안전을 동등한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위험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대립되는 듯 보이는 개념은 형법을 매개로 하여 안전을 위한 국가의 강한 조치가 예방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안전형법이라는 용어는 예방형법이자 상징형법을 의미하게 된다. 6) 형법의 예방적 기능, 즉예방형법은 새로이 창출되는 법익으로서 불명확하고 보편적인 법익의 보호와형법 개입의 전치화를 통한 상징형법적 측면을 드러내게 된다. 이를 드러내는 특징으로서, 보호법익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또는 국가적 법익의 모습을 띠면서 보편적 법익개념을 도입한다는 점, 인과관계를 요구하지 않거나 그것이 기존의 형법에서의 해석보다 불명확해지거나 범죄성립에 인과성을 요구하지 않는 점, 경제문제나 환경 또는 보건정책과 같은 영역에 형법을 수단으로 개입시킨다는 점 등을 특징으로 하게 된다. 7) 이는 형법이 위험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보편적 법익이 형사정책에 있어서 중심사상으로서 대두되었고, 예방지향적 사고가 지배하는 법익론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대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8)

이는 경제와 근로현장에서의 예방형법의 측면을 드러내기도 한다. 특히 개인적 법익의 차원을 넘어서는 사회적 또는 국가적 법익으로의 해석, 인과성판단의 배제, 경제문제 등에의 형법개입과 사회적 낙인 등은 전형적으로 중대

⁶⁾ 안전형법, 예방형법, 상징형법 등과 관련하여서는 김혜경, 처벌의 원리, 마인드탭, 2018, 24면 이하 참조.

⁷⁾ Lothar Kuhlen, Zum Strafrecht der Risikogeschellschaft, Goltdammer's Archiv für Strafrecht, Decker, 1994, 353년; Cornelius Prittwitz, Strafrecht und Risiko: Untersuchungen zur Krise von Strafrecht und Kriminal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Klostermann, Vittorio, 1993, 366년

⁸⁾ 이용식, "위험사회에서의 법익보호와 적극적 일반예방", 형사정책 제13권 제1호, 한국 형사정책학회, 2001, 43면.

재해처벌법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그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감독의무 해태로 인한 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사고는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죄라는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영역이었던 것을 중대재해처벌법 제1조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사회적 법익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중대재해처벌법은 제4조 이하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행하여야 하는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양벌규정을 통해 그 행위자 외에 법인 또 는 기관도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조치의무의 위반과 중대산업재해의 발생 이라는 결과 간에 그와 같은 위반이 있으면 발생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귀 속시킨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셋째, 중대재해처벌법 제12조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제도를 두고 있다. 동법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형사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이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에 의한 공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치 신상공개제도와 유사하게 공표명령제도가 보안처분의 일종으로서, 재범예방의 효과를목적으로 한다면 공표명령 여부도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행정부의 장에 의한 공표는 행정처분의 성격을가지는 것이고, 그 부과 여부 및 절차 또한 용이해진다. 뿐만 아니라 범죄사실의 공표를통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목적으로 함으로써 예방보다는 기업이미지 손상과 이로 인한 경제적 타격, 주가 하락, 매출전략실패등의 부수적이고 부정적인 경제효과까지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강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 기업과실치사죄를 범한 기업 중 이미 파산하여 존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하여도 공표명령을 부과하는 이유에 관하여, 비록 해당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기업과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현존하는 동종 기업들에 대한 경고 또는 위하의 효력을 가질 것을 기대한다는 점을 판결문에 명시한 바 있다. 이는 동법이 가지는 유사 기업들에 대한 경고와 예방목적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은 중대 재해처벌법이 가지는 안전형법의 모습으로서, 행위결과 그 자체에 대한 처벌로서 형벌의 효과보다는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상징적인 형법으로서의 의미를 뜻한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송기동, "영미 기업범죄 형사책임의 전개", 형사정책 제20권 제2호, 한국형사 정책학회, 2008/12, 50-55면 참조.
- 신동운, 회사의 대표기관 등에 대한 형사책임과 배임죄(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29 전원합의체판결) (공 1984,1816.), 상사판례연구 제1권, 박영사, 1996, 528쪽.
- 이진국,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제도 도입에 따른 제도 마련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 2018, 87쪽.
- 전형배 외, 경영책임자의 산업재해예방의무 강화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2021.
- 전형배·정영훈·김기선,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 분석,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보고서, 2019, 104-121쪽 참조.
- 최수영,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 처벌법 향후 정책방향", 건설관리 제22권 제2호, 2021/4, 23면 인용.
- DAC BEACHCROFT, 2016/10/4(https://www.dacbeachcroft.com/es/gb/articles/2016/october/first-firm-to-be-sentenced-under-new-corporate-manslaughter-sentencing-guidelines-is-fined-550-000/)
- Allens Linklaters, Industrial manslaughter laws around Australia, 31. 01.2022(: https://www.allens.com.au/insights-news/insights/2022/01/Industrial-manslaughter-laws-around-Australia/)
- British Safty Council, Safe Management, 2017/5/23(https://www.britsafe.org/publications/safety-management-magazine/safety-magazine/safety-magazine/safety-magazine/safety-magazine/safe

- ent-magazine/2017/three-directors-jailed-over-workers-roof-fall -death/)
- Bundesanstalt fü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Arbeitswelt im Wandel, Zahlen-Daten-Faakten, 2021.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Sicherheit und Gesundheit bei der Arbeit Berichtsjahr 2020.
- Burges Salmon, Parent company liable for safety breaches of its subsid iary, 2015/12(https://www.burges-salmon.com/-/media/files/pub lications/open-access/parent_company_liable_for_safety_breaches _of_its_subsidiary.pdf)
- Caylor/Shaheen, Canadian Corporate Criminal Liability, Program on Corporate Compliance and Enforement(https://wp.nyu.edu/compliance_enforcement/2019/03/07/canadian-corporate-criminal-liability/?utm_source=Mondaq&utm_medium=syndication&utm_campaign=LinkedIn-integration).
- Corporate Manslaughter, Updated: 16 July 2018 | Legal Guidance, Violent crime(https://www.cps.gov.uk/legal-guidance/corporate-manslaughter)
- CPS, 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 Request, Figures regarding prosec utions of Corporate Manslaughter since Feb 2019, 2020/3/5.
- Department of Justice Canada, Criminal Liability of Organizations, A Plain Language Guide to Bill C-45.
- Donaldson/Watters, Corporate Culture as a Basis for the Criminal Liability Of Corporations, Allens Arthur Robinson, 2008.

- Dylan Steel, Proposed Industrial Manslaughter law reform for South Aus tralia, 2022.3.13.(https://www.molawyers.com.au/news-events/news/proposed-industrial-manslaughter-law-reform-for-south-australia).
- G. Janner, Compendium of Health and Safty Law, Random House Busin ess Books, 1982.
- Goetz, BILL C-45: AN ACT TO AMEND TE CRIMINAL CODE, Library of Parliament, 2003.
- Involuntary Manslaughter (Law Com No. 237) at para 8.3; R v Misra & Srivastava (2005) 1 Cr App R 21 at para 56; R (Rowley) v DPP (2003) EWHC 693.
- Jocelyn Ledward, Corporate manslaughter: more and larger companies are due to pay the penalty(https://www.qebholliswhiteman.co.uk/cms/document/nfdc_corporate_manslaughter.pdf)
- Judiciary of England and Wales, T 2011 7411(https://www.judiciary.uk/wp-content/uploads/JCO/Documents/Judgments/hhj-gilbart-qc-sentence-remarksr-v-lion-steel.pdf
- KINGSLEY NAPLY, Review of recent corporate manslaughter cases: Deco -Pak, Bosley Mill, Aster Healthcare, 2022/2/2(https://www.kingsleyna pley.co.uk/insights/blogs/criminal-law-blog/review-of-recent-corporate-manslaughter-cases-deco-pak-bosley-mill-aster-healt hcare)
- Madison K. Bergen, HAS THE APPLICATION OF SECTION 217.1 OF THE CRIMINAL CODE SUCCEEDED IN REMEDYING THE DEFICIENC IES IN CANADIAN CRIMINAL LAW AT THE TIME OF THE WESTRAY DISASTER?, Acadia University April, 2020.

- Ministry of Justice, Understanding the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2007, 2007.
- Morton Fraser, "Prince's Sporting Club corporate manslaughter", LE XOLOGY(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4d60 ebc-40a5-4fef-b7a5-a0807497b554)
- Perreault Lemelin, The Transpavé Inc. Case: a Quebec Company Pays for its Negligence, Labour and Employment, 2008.05.
- Pinsent Masons,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Ongoing prosecutions and verdicts, IOSH, 2017/5.
- safe work austraila, 「Key work health and safety statistics Australia 2021」(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resources-and-publi cations/statistical-reports/key-work-health-and-safety-statistics-australia-2021).
- safe work austraila, Comparative Perfomance Monitoring Report 23, Work Health and Safety Compliance and Enforcement, 2021.11.29. (https://www.safeworkaustralia.gov.au/comparative-performance-monitoring-report-23rd-edition).
- Sentence handed down following fifth corporate manslaughter conviction, 2014/7/17(https://www.brownejacobson.com/training-and-resources/resources/legal-updates/2014/01/sentence-handed-down-following-fifth-corporate-manslaughter-conviction)
- Steve Tombs, "Corporate Killing With Impunity", International Centre for Comparative Criminological Research, The Open University, 2015.

- The Open University, 3.2 The history of corporate manslaughter prosecutions in the UK(https://www.open.edu/openlearn/money -business/corporate-responsibility-industrial-incidents/content-section-3.2)
- Thomas Wilrich, Arbeitsschutz-Strafrecht, Erich Schmidt Verlag, 2020.
- Venables Legal Resources(https://www.venables.co.uk/2021/04/07/the-uks-most-dangerous-industries-for-accidents-in-the-workplace/)
- 영국 산업보건안전청, Fatal injuries reportable under the Reporting of Injuries, Diseases and Dangerous Occurrences Regulations (RID DOR).
- 영국 통계청, Number of fatal injuries to workers in Great Britain from 1974 to 2021(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92272/fatal-injuries -at-work-great-britain-by-employment-y-on-y/)
- 영국산업보건안전청, Workplace fatal injuries in Great Britain, 2021, 2021/12/16.

연구진

연구기관: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김혜경 (교수, 계명대학교)

공동연구원: 이진국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동연구원: 도중진 (교수, 충남대학교)

공동연구원: 차종진 (연구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상대역: 송안미(연구위원, 정책제도연구부)

연구기간

2022. 04. 06. ~ 2022. 10. 31.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2022년도 위탁연구 용역사업에 의한 것임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해외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사례 분석 (2022-산업안전보건연구원-534)

발 행 일: 2022년 10월 31일

발 행 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원장 김은아

연구책임자 : 계명대학교 교수 김혜경

발 행 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주 소 : (44429)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0

전 화: 052-703-0827

팩 스: 052-703-0332

Homepage: http://oshri.kosha.or.kr

공공안심글꼴: 무료글꼴, 한국출판인회의, Kopub바탕체/돋움체